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530호

2019. 7. 18.(목)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721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721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8
제721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9
제721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721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
제7217호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18
제7218호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24
제7219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7220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
제7221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7222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7223호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7
제7224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7225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7226호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7227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	46
제7228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7229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7230호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제7231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7232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723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7234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723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7236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723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7238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62

제7239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7240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7241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7242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7243호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7244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제7245호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72
제7246호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74
제7247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7248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제7249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7250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7251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82
제725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제7253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4
제7254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725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7256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88
제7257호 서울특별시 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7258호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3
제7259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7260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726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제726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제7263호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102
제7264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제726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7266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제7267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110
제7268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7269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727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727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입법예고]

제2019-1905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7
제2019-1906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18
제2019-1914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9

◆ 고 시

제2019-229호 용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20
제2019-230호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129
제2019-231호 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29
제2019-233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41
제2019-234호 도시관리계획(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16
제2019-235호 도시관리계획(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49
제2019-236호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68

◆ 공 고

제2019-1823호 시유평허권 처분 공고	274
제2019-1863호 2019년 상반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 공고	288
제2019-1869호 도시계획시설(경의선숲길 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288
제2019-1871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	289
제2019-1875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290
제2019-1876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292
제2019-1877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294
제2019-1882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297
제2019-1883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03
제2019-189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323
제2019-1897호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324
제2019-189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332

제2019-1899호 측량업 등록 공고	340
제2019-1902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340
제2019-1903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341
제2019-190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42

◆ 구 고 시

제2019-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종로구)	374
제2019-94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385
제2019-95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388
제2019-117호 도시계획시설(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성북구) ..	391
제2019-8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영축산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 ...	396
제2019-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 ...	400
제2019-8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은평구)	407
제2019-5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409
제2019-6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동작구)	414
제2019-93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445
제2019-97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동구)	448

◆ 구 공 고

제2019-76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성동구)	451
제2019-68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호선, 주차장③)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대문구)	453
제2019-900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성북구)	465
제2019-1085호 도시계획시설(염창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강서구)	477
제2019-1100호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강서구)	479
제2019-110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 열람공고(송파구)	493

◆ 사업소고시

제2019-1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4
제2019-1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4

제2019-1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5
제2019-1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5
제2019-1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6
제2019-17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7

◆ 사업소공고

제2019-17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98
제2019-17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503

◆ 기 타

제2019-19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507
제2019-19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507
제2019-198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508
제2019-199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509
제2019-20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510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721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4급지	100	
5급지	50	

<비고>

-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간주차"라 함은 1일 내 임시적으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정기주차"라 함은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급지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급지를 적용한다.
-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주차여건 등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시간까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주차여건, 기관의 운영 등을 감안하여 정기주차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라.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 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 아.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전체 주차면의 50% 이상은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현재 서울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직원 대상 정기주차 사용료가 저렴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제한적이므로,
- 나. 현행 정기주차 사용료를 인상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의 비율도 상향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교육청 부설 주차장 정기주차 사용료를 6만원으로 인상
- 나.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현행 4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 서울특별시조례 제721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학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학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사립중등학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 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립중등학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채용정보 공시 권고 등)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교원 임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임용 교원의 인원·등급 및 기간
2. 임용 자격 및 조건
3.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4.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및 주요 변동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시는 사유발생 시점의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용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후에도 사립학교의 내부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시기와 방법으로 공개한다.

⑤ 임용권자가 채용정보 공시를 허위로 한 경우 즉시 정정 공시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사립중등학교원 임용시험 위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시 사립중등교원의 임용시험 위탁 권장 및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나. 교육감으로 하여금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제2조).
- 다. 교원 채용정보 공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라. 교육감은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1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 및 학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각종 교류와 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의 기본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교류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남북교육교류협력정책

제6조(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협력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5.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인 및 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및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장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제1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따른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남북교육교류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존속기한은 최초 설치일로 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부교육감과 소관 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3조(포상) 교육감은 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다차원적인 남북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교육·학예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화해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협력사업의 기본 원칙과 범위를 규정함(제4조 ~ 제5조).
- 라. 협력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제6조).
- 마.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과 해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13조).
- 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와 재원 조성, 용도, 관리 운용,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제17조).
- 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제22조).
- 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1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의3(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4(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학부모 안내,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제8조제1항 중 “유지·관리를”을 “유지·관리와 미세먼지 대응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선”을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관내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 조례의 경우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교 실내·외를 모두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규정이 부족한 실정임.
- 나. 이에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실내·외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도록 규정함(제6조의2).
- 나.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함(제6조의3).
- 다.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야외수업 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의4).

◆ 서울특별시조례 제721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차별”이란 「특수교육법」 제4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
 2.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서울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입학·전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특수교육대상자자들의 학습권 보장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제4조).
- 다.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규정함(제5조).
- 라. 특수학급 설치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17호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공사품질관리 지침」 별표 5”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을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2조제4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 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노인복지법」 제39조19”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15호”를 “법 제2조제25호”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2”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아목”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사목2)”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의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를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 냉매”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특별법 제2조제3호”를 “특별법 제7조제2호”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진동관리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0조제1항”을 “영 제80조”로 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법 제17조”를 “법 제29조”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1항제6호”를 “영 제24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법 제4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을 “「식생활교육지원법」”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법 시행령 제2조”를 “법 시행령 제2조의2”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7조제3항”을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아동복지법」 제27조”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법 제94조제4항제12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2호”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94조제5항제5호”를 “법 제94조제4항제5호”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78조”를 “「지방회계법」 제39조”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충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과 같은 법 제36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도법시행령」을 “「수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등 42건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반영

- 법령명 변경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 조항 변경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주택법」 제9조 → 제4조 등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간 조문의 이관사항 반영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16. 11. 30. 시행)으로 이관되는 등의 변동사항 반영

▶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 「지방회계법」 제18조 등

다.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조문 중 오기사항 등 정비

- 「노인복지법」 제39조19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등

◆ 서울특별시조례 제7218호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실·본부·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3. “공기업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4. 그 밖에 공기업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수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법제심사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시의 정책 및 사업 등,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제작하는 홍보물(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公衆)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시 소관 정책
 3. 공기업 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선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등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의 장에게 자치법규,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 등의 개선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1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성평등 정책·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성별영향평가기관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여성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이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전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의장이 된다.
- ⑥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2.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4. 위원회의 운영
5. 성별영향평가 교육
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담당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성별영향평가기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적절한 방향 설정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5조 ~ 제12조)

- 市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 대상 성별영향평가 실시
- 市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선정된 조례·규칙, 정책, 공기업 등 수행 사업의 특정성별영향평가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제13조 ~ 제17조)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성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

다.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기관 설치 및 지원(제19조 ~ 제20조)

라. 성별영향평가서 및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서울특별시의회 제출하도록 함(제2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19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노동자 권리존중 및 도시노동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 및 계획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축
 2. 국제노동기구(ILO)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이하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이라 한다)의 개발 및 확산
 3.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
 4. 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
 5.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의 유치 및 지원
 6.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
 7. 그밖에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③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앞에 “제3장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노동자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도시 간 우수 노동정책 및 지원방안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여 도시 간 국제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사무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정례적인 국제포럼 및 공동연구, 인적자원교류 등을 통해 도시노동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에 대한 정책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시장의 노력(제12조제1항)

나.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시장의 업무

- (1)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구축(제12조제2항제1호)
- (2) 국제노동기구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의 구축 및 확산(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3) 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제12조제2항제4호)
- (4)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제12조제2항제5호)
- (5)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제12조제2항제6호)

다.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지원(제12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220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2.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3.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4.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6.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재단의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시청자 보호 및 참여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
10. 정관의 변경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임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은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단 운영에 관한 최고의 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시청자위원회) ① 재단은 시·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역할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③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시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시와 그 산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재단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교통방송에 소속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제2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설립된 날 시에서 퇴직하고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방송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시민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과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전환을 위하여 市 사업소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티비에스(tbs)’로 전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제3조)

-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등

나. 정 관(제5조)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임직원, 이사회, 사업, 시청자 보호 및 참여, 예산과 회계, 정관 변경, 해산, 공고의 방법 등

다. 임 원(제6조, 제7조)

- 11명 이내 이사(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감사 1명
- 이사장·대표이사·감사 임기 3년, 대표이사 상근, 기타 비상근

라. 이사회(제9조)

-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이사장(의장)

마. 시청자위원회(제10조)

- 시·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

바.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제11조)

- 시장은 재단사업과 관련된 시의 사무 효과적 추진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가능

사. 예산편성 및 결산(제12조)

-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
-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아. 공무원의 파견(제14조)

-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소속공무원 파견 가능

◆ 서울특별시조례 제7221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제4조의2)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22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한다.

제3조부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 제12조,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전의 제3조) 중 “바를”을 “바에”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서울시”를 “시의”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제3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관광기본권을 시민의 권리로 법제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의 생활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의 권리로서의 ‘관광기본권의 정의’ 규정(제3조)
- 나. ‘시민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신설(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23호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곡산업단지의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곡광장”이란 마곡산업단지 내의 강서구 마곡동 368-3번지 일원에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해당구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2. “마곡산업단지”란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마곡산업단지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곡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3. “사용”이란 마곡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부속시설물을 제외한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광장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 중 상가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전거보관소는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사용신청)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마곡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하 “사용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이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 ② 시장은 동일한 사용일에 중복되는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하 “신청일”이라 한다)에 따라 우선 허가하고,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사용 목적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곡산업단지 조례 제14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
 2.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5.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노인 관련 행사
- ③ 시장은 광장의 안전 관리, 사용 독점 방지, 의무 불이행시 조치 등을 위해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여부의 통지)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신청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불허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변경)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광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서 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지를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원상회복 등)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혁신기술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혁신기술의 시범사업을 위해 광장 및 부속시설물 이용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사 용 료	m ² /시간	10원~20원	
기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 다음날 06:00)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 ※ 행사관련 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별지 서식]

마곡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제5조 관련)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 시 분 (시간 분)			
주최자 또는 주 최 단체의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AX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성 별		
			직 업		
연락 책임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	
행 사 내 용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아
하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 시설물 설치시)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광장의 부속시설물인 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는 각각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함(제3조)
- 나.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마곡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4조)
- 다.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제5조)
- 라. 시장은 사용 목적과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음(제6조제1항)
- 마.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일 순서로 허가하고,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며, 사용 목적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곡 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가함(제6조제2항)
- 바.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되,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제7조)
- 사. 불허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제8조)
- 아. 시장은 사용허가 이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제9조)
- 자. 사용자가 신청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10조)
- 차.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고, 사용일이 지난 후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제11조)
- 카. 혁신기술 시범사업을 위해 광장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24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한글맞춤법”을 “한글 맞춤법”으로 한다.

제3조 중 “등을”을 “등에”로,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을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로 한다.

제4조 중 “국어”를 “이 조례는 국어”로,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만료 전”을 “임기가 끝나기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기간의”를 “오랫동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의미 파악이”를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로, “낱말의 경우”를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로, “문자”를 “글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쓰이는 국어를”을 “쓰는 표현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한글맞춤법”을 “한글 맞춤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5조”를 “시장은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하여 수행”을 “위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부서 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위탁하여 실시”를 “위탁”으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에서 수요자인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국어 사용 조례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못된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과 다른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은 원칙적으로 시민 중심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함(제13조 제2항제4호 신설).
- 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수정함(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 제8조의2, 제13조제1항 단서, 제2항제1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225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시정에 대한”으로, “확대하고”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청년의회가 연1회 개최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울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정례화하고,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청년의 시정 참여를 정례화하고,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26호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를 “장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증장애의원”을 각각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증장애의원”을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증장애의원”을 각각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증장애의원”을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중증장애에”를 “장애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증장애를”을 “장애를”로, “중증장애에 해당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중증장애에”를 “장애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각각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중증장애의원”을 각각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장애정도로 수정함(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27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심신장애”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호 중 “심신의 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2호 중 “심신의 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하고, 제36조 제5항제1호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나”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심신상의 장애가”를 “심신쇠약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10건을 일괄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228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와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에 대하여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함(제22조의3)

나. 출자·출연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

◆ 서울특별시조례 제7229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나목 중 “일가족양립”을 “일·생활 균형”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일·가족 양립 지원”을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을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

제7장의 제목 “보칙”을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로 한다.

제7장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제57조 및 제58조로 하고,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직장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2.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3.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4.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7장 제47조를 제59조로 한다.

제8장(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제48조(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성평등 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노동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평등노동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평등노동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4.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
 - 가.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 나. 성평등 노동실태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 다. 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개선
 - 라. 그 밖의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49조(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이하 “격차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격차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민간기업의 성평등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평등노동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격차개선위원회 구성) ① 격차개선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노동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노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노동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1조(격차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2조(격차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5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격차개선위원회 회의) ① 격차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격차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전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전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55조(격차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 ① 격차개선위원회에는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는 격차개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차별조사관) ① 시장은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별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연구소·민간기업의 노무부서·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여성정책 또는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조사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7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49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기존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관련된 법·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과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시의성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나. 또한 현재 우리사회 노동의 성 불평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에 성평등한 여성일자리 정책 추진의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 따라서 성별 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 등 서울시의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성평등노동정책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라. 한편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설치·운영 근거를 동 조례에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5조~ 제조)
- 나.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
- 다.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9조~제55조)
- 라. 차별조사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제5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30호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옮기고,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0조~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31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를 “시장은 제3조의 단체·법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시가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에 ‘노동관련 단체’가 노동자가 조직한 ‘노동단체’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만으로 제한된 현행 조례의 제명과 지원대상 등을 “비영리법인·단체”까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개정 함

나. 이에 따라, 노동단체 및 법인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 확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단체·법인으로(제3조). 지원범위를 단체·법인으로 개정함(제4조제1항).

2. 주요내용

노동단체 및 법인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 확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단체·법인으로 개정(제3조) 및 지원범위를 단체·법인으로 개정함(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232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을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한다.

제3조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정보화기본계획”을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정보화 전략위원회”를 “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를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로,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11조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나.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3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를 “대표이사,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으로 하고,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상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표이사가 공석인 경우에도 책임경영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없도록 진흥원 내부의 직무대행 체제를 만들기 위해 상근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도록 함(제7조제2항)
- 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함(제7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234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정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정신장애”를 들고 있는바, 단순히 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용어를 변경함(제5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23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고용승계)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위·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기관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승계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236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시복지재단”을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전문적인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에는 노인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건전성, 이용자 만족도,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증의 표시)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좋은돌봄 인증업무의 효율성과 인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행 서울시복지재단으로 한정되어 있는 인증심사 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해줌으로써 시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 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제8조제1항)

나. 인증기준의 필수항목을 명시함.(제8조의2)

다. 인증기관 지원 내용에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10조제1항제3호)

라. 인증 표시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723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을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에는 센터장”을 “기관에는 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장”을 “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를 “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센터는”을 각각 “기관은”으로 한다.

제9조의3 전단 중 “센터”를 “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4 전단 중 “센터”를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별도의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센터’를 ‘기관’으로 ‘센터장’을 ‘기관장’으로 변경(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 서울특별시조례 제7238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 주민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활동체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거주·생활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 “지역”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4. “지역의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발굴 및 지원
3.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
4.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상시 이웃돌봄 안전망 구축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찾동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시 또는 자치구의 찾동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 계획 등) ① 시장은 찾동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 분석 및 평가
4. 소요 자원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찾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행계획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실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동의를 거쳐 직접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1. 65세 도래자 등 어르신 가정, 출산가정, 양육수당 수급가정
2. 빈곤위기가정, 학대·폭력 등 위기가정
3. 그 밖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지역 내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사회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돌보며 나눔을 실천 하는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 및 복지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의 시행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치구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을 배치에 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통장 및 반장 참여) ① 시장은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구의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여 찾동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반장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역량강화) ① 시장은 찾동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찾동 사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동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찾동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시장은 구청장과 협력하여 찾동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 방문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2. 방문간호사
3. 통합사례관리사
4. 그 밖의 시장 및 구청장이 찾동업무 수행인력으로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구청장과 협력하여 찾동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역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증진하고자 정책사업으로서 집행하고 있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함.)사업의 목적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주민의 소속감을 확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생활 속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나. 찾동 사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며,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들도 찾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찾동 사업의 구체적 사업 시행방식과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다. 찾동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찾동 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찾동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찾동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발굴·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과 협력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음.(제4조)
- 나. 시장은 찾동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제6조 및 제7조)
- 다. 시장은 65세 도래자 등 어르신 가정, 출산가정, 양육수당 수급가정 등을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지역 내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라. 학대·폭력 등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자치구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0조)
- 마. 시장은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통반장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신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통반장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39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 추진 시 시장과 구청장 간 행정사항 협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문제해결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추진 시 시장과 구청장간 행정사항 협의를 규정함(제5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240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공채(이하“도시철도공채”라 한다)”를 “도시철도공채”로 한다.

제2조 중 “도시철도공채”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채상환의 공고와 안내) ① 시장은 매년 상환개시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및 장소
2. 공채의 소멸시효일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상환일 이전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우편 등으로 그 환급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안내는 1회로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철도공채의 만기 후 시효만료로 시민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한 민원도 잦으므로 상환공고 또는 상환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환 개시일 20일 전 상환 공고 의무화(제4조의2제1항)
- 나. 상환일 이전 우편 등을 통한 상환 안내 의무화(제4조의2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241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를 제11호로 한다.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10.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
11.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사의 사업범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신설함(제19조제1항제8호)
- 나. 공사의 사업범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신설함(제19조제1항제9호)
-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신설함(제19조제1항제10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242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4호·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6조부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마다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육원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교통문화교육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 및 일반시민을 위한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역량향상과 생활편의 등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한편, 운영에 있어 공익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금 및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및 결산,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관련 조항이 미비한바 해당 조항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개정 시행사항 반영 (제1조)
- 나. 공휴일인 선거일에 대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5조제2항)
- 다. 수탁자는 교통문화교육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는 조항 신설 (제16조)
- 라. 시장은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조항 신설 (제17조)
- 마. 시장은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밖에 교통문화교육원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제1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43호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증표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사용을 막고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제5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244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하여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 ③ 교통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의 대중교통 이용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나. 교통약자의 사건사고 경감을 위한 안내방송, 스티커 부착,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시 사건사고를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도록 규정함(제18조제2항)
- 나.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용안전을 위한 안내방송과 스티커 부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8조제3항)
- 다.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5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245호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학진흥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세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및 관련 학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 등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장을 간사로 둔다.

⑨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단체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단체 등에게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가 회수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화관과 관련법인·단체 등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등록문화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학향유 기회 제고로 문화수준을 고양시키고 서울을 품격있는 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학진흥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 나. 문학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
- 다. 문학관지역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등록 문학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46호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시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체제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마을미디어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함 (제3조)
- 나.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다.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 라.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의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마.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47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정책 위원회”를 “에너지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은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2명으로 한다”를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실·본부·국장
2. 위촉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2조제3항 중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에너지정책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장 수를 현행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장 수를 현행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2조제2항)
- 나. 위원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함(제12조제3항)
- 다. 관련 규정을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부칙)

◆ 서울특별시조례 제7248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 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중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19년 하반기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 시행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제2조 제4호)
- 나.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4항)
- 다.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으로 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49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5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정지원조건등)”을 “(재정지원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대기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을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 후단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운행경유차”를 “운행경유자동차 등”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저공해 엔진개조”를 “저공해엔진 개조”로,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후단 중 “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를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10%”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해”를 “따라”로,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각각 “의무대상 자동차”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조기폐차”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19.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배출가스 5등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수요에 맞게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에 따라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차량공해저감과장을 추가함(제10조제3항)
- 나. 총중량 2.5톤 미만이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명령과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다.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 라.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250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 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9년 하반기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 시행중인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 추가함(제2조제5호 신설)
나.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을 하도록 함(제3조제1항)
다.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251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토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설비로서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①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제5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의 마련) ① 시장은 태양광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성 확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기준 준수의 권고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도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시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제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을 다루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 없이 이에 의존하여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나. 이에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 제정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본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함(제4조)

나. 시장은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5조)

다. 시장은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공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제6조)

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태양광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함(제7조)

마. 시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5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19.7.1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조례 내에 있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 방지(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53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의 생활지원금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생활안정금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제비 지급) ①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장제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발전해 왔음에 따라 이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을 예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인들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제1조)
- 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다.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라. 시장이 지원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명시함.(제4조)
- 마.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장제비 지급 등을 명시함 (제5조, 제6조)
- 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를 명시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54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를 “특수학교와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공립 특수학교 외에도 사립 특수 학교까지 학교보안관 배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보안관 배치 학교의 범위에 사립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고, 2020년부터 사립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배치를 시행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25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신체와 환경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청소년 상담’과 관련한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성인상담과 달리 청소년 상담은 상담동기가 부족하고 상담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아 청소년 상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청소년 안전등을 위한 조치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도록 함(제14조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256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 “마이스 전담조직”이란 관광,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이스산업 육성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
7.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연구조사
2. 마이스행사 유치·발굴 또는 개최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8.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9. 마이스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10.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행사 유치 및 개최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및 기업체 육성 등 지원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5.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통계 및 실태조사

6. 마이스관련 국내·외 협력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마이스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서울소재 마이스기업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마이스산업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이스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이스기업의 인력양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이스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제7조에 의한 마이스전담조직에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과 시 소재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인턴십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마이스홍보대사 임명) ① 시장은 마이스행사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이스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홍보대사로 위촉한자가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마이스 개최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립시설의 대관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서울마이스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서울마이스의 경쟁력강화와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 소재 마이스기업들로 구성된 서울마이스기업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마이스기업간 네트워킹과 협력강화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개인 등이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 및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협력) ① 시장은 시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마이스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4. 마이스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6. 마이스행사 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육성위원회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MICE산업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실·본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마이스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를 삭제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고 마이스 유치 촉진 및 개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마이스산업에 대하여 정의함(제1조~제2조)
- 나. 서울시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3조)
- 다.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법과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제5조~ 제6조)
- 라.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와 마이스산업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7조~제8조)
- 마. 마이스 분야 미스매칭 해소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알선 관련 사항에 관해 규정함(제9조)
- 바.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이스홍보대사 임명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 사. 마이스 개최와 마이스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11조~제12조)
- 아.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제14조~제1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57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입장료) ③ 제1항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의 가항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로 제5항의 라항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체육시설의 청소년 이용과 관련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12세이하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향후 감면 혜택 또한 감소할것으로 예상됨. 서울시립 체육시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청소년 이용률이 2.6%로 극히 저조한 실정임,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정임. 이에따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시 12세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을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 입장료 감액 대상 중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로 변경
- 나. 사용료 감면 대상 중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로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조례 제7258호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돌봄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말한다.
2. “건강돌봄서비스”란 건강고위험군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돌봄서비스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건강고위험군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고위험군을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① 건강돌봄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3.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5. 재활서비스 지원
 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건강고위험군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건강돌봄 환경 조성) ① 시장은 건강고위험군의 욕구를 고려하여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기관, 자치구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건강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단) ①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단을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

다. 건강돌봄은 재가서비스로 제공 가능하며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평가, 관리계획 수립,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영양·재활 집중관리하고 필요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등 건강돌봄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에 관하여 정함(제4조)

라. 유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건강돌봄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마. 건강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제6조)

바.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59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구청장”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호 중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법 제33조의3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공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
- 나. 시장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2항)
- 다. 시장 또는 구청장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260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 특별시도	○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안전총괄실장
		○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 녹지 및 가로수	안전총괄실장
		○ 도로시설물	안전총괄실장
도 로 부 속 물	공동구	○ 공동구	안전총괄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안전총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 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낙석방지망· 절개지·도로 옹벽· 방음벽·맨홀 등)	○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안전총괄실장
		○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 통 관 리 시 설	지능형 교통체계	○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실장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	○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실장
	도로표지	○ 문안검토	도시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안전총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 통 안 전 시 설	신호기·안전표지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지	안전총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사업소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안전총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교통섬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교통섬	자치구청장	
하천 시설	한강	○ 한강의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육)갑문의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한강사업본부장
		○ (육)갑문의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자치구청장
	국가 및 지방 하천(한강 제외) ·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 수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 등 관련 시설 ○ 갑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통로청소·수문개폐 등 ○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 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물순환안전국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안전총괄실장 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라. <삭 제> 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층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특별시도의 차도 노면표시 관리와 포장관리가 도시교통실과 안전총괄실로 이원화된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지보수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면표시 관리 업무는 도시교통실에서 안전총괄실로 이관하고, 안전총괄실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업무를 명문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안전총괄실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에 “서울특별시의 노면표시”를, 도로사업소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중 차도관리에 “버스전용차로”를 각각 추가함(별표 1).

◆ 서울특별시조례 제726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관리)

-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생활권 단위로 상세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 동 규모의 지역생활권과 1개 이상의 자치구 규모인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
-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역생활권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중심지 육성방안,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방안,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실행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3.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제39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정비계획(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제5항 중 “한양도성 역사도심(이하 “역사도심”이라 한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소단위 정비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상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을 “한양도성 역사도심(이하 “역사도심”이라 한다)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의 건폐율은”으로 한다.

제55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㉓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내의 기숙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생활권계획의 수립·운영·실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기부채납 대상 시설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추가하며,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서는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 정비구역의 건폐율은 법적 건폐율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에는 조례상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생활권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생활권 정의를 명확히 하며,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과 부합하여 지역생활권계획안 및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계획의 수립·운영·실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기부채납 대상 시설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추가함(제19조 제2항)
- 다.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8항)
- 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 정비구역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법적 건폐율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5항)
- 마. 유효기간이 경과된, 준공업지역 역세권 내 직주근접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한 조항을 삭제함(제55조제4항제4호 삭제)
- 바. 학교 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에는 조례상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제2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26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철도역”을 “철도역·지하철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하의 지역 (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을 “이하의 지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바탕색은 관혼상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불법 현수막을 예방하고, 홍보수단이 취약한 지역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전자게시대 설치지역에 지하철역을 포함하고 전통시장 주변의 국·공유지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현수막 바탕색 사용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자게시대 설치 지역에 지하철역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1호가목)
- 나. 전통시장 주변 전자게시대 설치지역을 사유지에 한정된 단서를 삭제함(제9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삭제)
- 다. 현수막의 바탕색은 관혼상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토록 함(제11조제1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263호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안전 취약거처”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택이외의 거처를 말한다.
 -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고시원업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 라. 「건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 마.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로서, 차임을 지불하고 숙박하는 거처
 - 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거처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화재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루어지는 예방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가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화재 예방 및 진화 용구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3.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영업용으로 운영되는 경우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의 유지·관리
4.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5.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이동 지원
6.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
7.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업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때로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을 권고할 수 한다.

제7조(의용소방대의 배치)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또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표준계약서)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표준계약서식을 만들어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권 확보와 주거 수준 향상,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 및 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거안전 취약거처,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전관리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나.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시장의 책무로 함(제3조)
- 다.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함(제4조~제5조)
- 라. 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화재 예방 및 진화용구, 소방 시설의 설치, 방화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
- 마. 주거안전 취약거처 또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배치 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64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을 “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 및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역세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면적을 완화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장의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제2조제1호)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제2조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26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축 해제”를 각각 “해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사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2호라목 중 “3)까지”를 “4)까지”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를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 및 관리”를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시가지·특화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높이 기준은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한양도성 역사도심”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3조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한양도성 역사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있는 횡수는 총 5회로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5조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48조 제목 “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을 “부설주차장 및 미술작품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4.23., 일부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을 축소($85\text{m}^2 \rightarrow 60\text{m}^2$)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2019.4.23.)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개공지 설치 후 관리미흡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개공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시홍물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기준 등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 해임·해촉 사유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로 인지될 수 있는 ‘장애’ 단어를 변경함(제5조의3제1호).
- 나.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을 확대함(제7조제1항제1호사목3) 및 제2호라목).
- 다. 대지의 조경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해석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제24조제3항).
- 라. 공개공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치함(제26조 제6항 신설).
- 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추가하여 향후 정비구역 등 해제 시 추가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 '19.1.3)을 즉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한양도성 역사도심 안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관련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33조제2호부터제4호까지).

- 바.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기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축소함(제45조제1항).
- 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최대 5회) 규정을 폐지함(제45조제3항).
- 아. 공개공지의 임의 훼손 및 공개공지 변경 등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지시 미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기준을 신설함(제45조제7항).
- 자. 미술품의 법적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제48조제2항).
- 차.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개정조문은 건축법[법률 제16380호]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함(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66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입장료 감면 규정에 새로 도입된 ‘장애정도’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원 입장료 감면 규정에 인용된 장애등급(1급에서 3급까지)을 ‘장애정도’로 표현을 수정함(제20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267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시의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시설 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각각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에 근거해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 및 전기 공사에 포함되어 통합발주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사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저가로 하도급 하여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의 결과를 가져와 국민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바, 하도급 공사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 동시에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업종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규정함.(제1조)
- 나. 조례에 적용되는 공공시설물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제3조)
- 다. 시장에게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토록 함. (제4조)
- 라.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하고 예외 규정을 명시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68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서는 수도계량기 이후 지점에서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음. 그러나 누수량 경감 사유 중 양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다만 누수 감면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함에 따라 조례 시행에 앞서 홍보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어 부칙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 부터로 함.)

2. 주요내용

- 가.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에 한함(제26조 제3항).
- 나. 개정부분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 부터로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269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5호 중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서울관광재단에 관한 사항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37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제3항 중 “제6항, 제7항”을 “제4항, 제7항, 제8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2호 러목 신설 규정은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18년 4월 설립된 ‘서울관광재단’과 시장 직속으로 신설(2019.7.25.)될 예정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추가함(제33조제1항제2호).
- 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중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의 출자 등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서울관광재단’으로 변경함(제33조제1항제5호).
- 다. 일부 조문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27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9조의2”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경제정책실장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을, 복지정책실장 밑에 복지기획관을 둔다.

제5장제3절(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제128조(설치) 법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29조(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0조(소관사무)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민관협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의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제128조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3급 이상 실·국·본부 수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확대하여 시정 핵심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1) 시·도 자율신설기구 근거 신설에 따른 목적규정 개정(제1조)

(2) 경제활성화 핵심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경제일자리기획관’을, 사람중심 서울형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기획관’을 각각 보조기구로 신설 (제4조)

(3) 시민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신설(제128조부터 제13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7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472명”을 “18,53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437명”을 “10,415명”으로, 제4호 중 “328명”을 “333명”으로, 제5호 중 “160명”을 “238명”으로 한다.

별표 3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8,533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536	

같은 표 2·3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급	24	18		1	3	2

같은 표 3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20	10		1	9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46	145	17	8	67	9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이하 소계	10,120	

같은 표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62	4		34	24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청 연구관 1명 감축과 사업소 연구관 1명 증원 조정하는 사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3급 이상 행정기구 수를 확대하고, 출자·출연기관 감사·조사 기능 확대 등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 하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설 등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정원을 18,472명에서 18,533명으로 61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 3급 이상 행정기구 신설, 출자·출연 기관 감사·조사 전담기구인 ‘공공감사담당관’ 신설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 (+56명)
- 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인력 증원(+5명)
- 다. 행정기구 신설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58명)
 -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 본청 4급 △3명, 5급 이하 △55명→ 합의제 4급 +3명, 5급 이하 +55명
 - (2) 납세자보호관 업무 이관(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법무담당관): 합의제 5급 이하 △1 → 본청 5급 이하 +1
 - (3) 서울생활사박물관 업무 이관(박물관과 → 서울역사박물관): 본청 연구관 △1 → 사업소 연구관 +1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05호****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하여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정제품’ 용어 정의 조항 삭제 (안 제2조)
- 나. 계약심사 대상사업 관련법령 조문 수정 (안 제3조)
- 다. 계약심사 제외사업 삭제 및 수정 (안 제4조)
- 라. ‘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 규정 삭제 (안제5조의2)
- 마. ‘특정제품 선정 심의여부’ 검토 근거규정 수정(안 제6조)
- 바. 원가분석자문회의 소위원회 구성 시 계약심사과장이 의장인 재무국장의 직매대행 가능 규정 추가(안 제8조)
- 사. 기타 계약심사요청서식 개선 등(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계약심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전화: 02-2133-3303, FAX: 02-2133-1032, E-mail: healingmoo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06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정기술 선정심사 의뢰 시 구비서류 및 서식 규정 (안 제2조)
- 나. 기술 검토의견 제출 및 검토서식 규정 (안 제3조)
- 다. 위원회 소집 방법 등 규정(안 제4조)
- 라. 발주부서에 특정기술 선정 심사결과 통지 의무 규정(안 제5조)
- 마. 청렴서약서 제출(안 제6조)
- 바.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작성 서식 (안 제7조)
- 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3년간 보관 규정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계약심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전화: 02-2133-3303, FAX: 02-2133-1032, E-mail: healingmoo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14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2019. 7. 1.자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28호)에 따라 기존 장애의 구분이 “1~6등급” → “정도가 심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되었음.
- 나. 이에 따라, 우리시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 등급”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춰 변경하여, 주거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거지원(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대상자의 요건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인 경우”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호가목)
- 나. 주택개조지원 대상자의 요건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2호가목)
 - 다만, 종전의 “장애4급”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정도를 재판정받을 때까지는 주택개조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
- 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함(안 제3조)
- 라. 그 밖에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제명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명, 제1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장애인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전화:02-2133- 7461, e-mail:sanchos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29호

용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81호(2017.3.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용왕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용왕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낡은 공중화장실 및 관리실을 철거하고 주변경관을 고려한 건축물로 통합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199-51번지

3. 면 적 : 213,552.0㎡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5) 및 양천구 공원녹지과(☎ 2620-3574)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양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양천구 목동 199-51번지 일대)

구	본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수)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합	계	213,552	24,979	6동	833.48	868.48	18	213,552	25,180	5동	904.64	1038.64	18	213,552	25,180	5동	904.64	1038.64	18	건물 1동 철거	
		9,538	9,538					9,593	9,593						9,593	9,593					증 55
		9,538	9,538					9,593	9,593						9,593	9,593					증 55
		-	-					-	-						-	-					-
기	반	26	26				15	26	26				15	26	26					15	
		3,450	3,450					3,450	3,450					3,450	3,450						
		349	349					349	349					349	349						
		10,816	10,816	1동	558	558		10,816	10,816	1동	558	558		10,816	10,816	1동	558	558			
유	의	325	325	1동	119.64	119.64		325	325	1동	119.64	119.64		325	325	1동	119.64	119.64			
		413	413	3동	134.00	169.00	3	621	621	3동	227	361	3	621	621	3동	227	361	3	증 208	
		62	62	1동	21.84	21.84		0	0		0	0		0	0		0	0		감 62 (편익시설 에 편입)	
		188,573	-					188,372	-					188,372	-					감 201	
녹지 및 기타	시설율 (법정 40%)	(24,979 / 213,552) x 100 = 11.69 %					(25,180 / 213,552) x 100 = 11.79 %														
건폐율 (법정 10%)	시설율 (법정 40%)	(833.48 / 213,552) x 100 = 0.39 %					(904.64 / 213,552) x 100 = 0.42 %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 계			213,552	24,979		6동	833.48	868.48	18			213,552	25,125		5동	904.64	1,038.64	18
	계			9,538	9,538								9,593	9,593					
	도 로		전 지 역	9,538	9,538							전 지 역	9,593	9,593					증 55
	계			26	26					15			26	26					15
조 경 시 설	관상용 식수대	가	2개소	26	26						가	2개소	26	26					
		가-1	목동 199-51	(13)	(13)						가-1	목동 199-51	(13)	(13)					
		가-2	목동 199-51	(13)	(13)						가-2	목동 199-51	(13)	(13)					
	파고라	①	전 지 역							14	①	전 지 역							(14)
	정자	②	전 지 역							1	②	전 지 역							(1)
	계			3,450	3,450								3,450	3,450					
휴 양 시 설	휴게소	나	12 개소	3,450	3,450						나	12 개소	3,450	3,450					
		나-1	목동산23-5, 산24-3	(1,374)	(1,374)						나-1	목동199-51	(1,374)	(1,374)					증감없음 (지번통합)
		나-2	목동 산29-4	(203)	(203)						나-2	목동199-51	(203)	(203)					증감없음 (지번통합)
		나-3	목동 산29-5	(157)	(157)						나-3	목동199-51	(157)	(157)					증감없음 (지번통합)
		나-4	목동 산26, 산29-17	(334)	(334)						나-4	목동199-51	(334)	(334)					증감없음 (지번통합)
		나-5	목동산22-3, 산22-4	(47)	(47)						나-5	목동199-51	(47)	(47)					증감없음 (지번통합)
		나-6	목동 산12-3	(130)	(130)						나-6	목동 202-16	(130)	(130)					증감없음 (지번통합)
		나-7	목동 산9-1	(257)	(257)						나-7	목동199-51	(257)	(257)					증감없음 (지번통합)
		나-8	목동 산7-3	(106)	(106)						나-8	목동199-51	(106)	(106)					증감없음 (지번통합)
		나-9	목동 산7-3	(175)	(175)						나-9	목동199-51	(175)	(175)					증감없음 (지번통합)
	나-10	목동 산9-1, 산12-3	(248)	(248)						나-10	목동199-51, 202-16	(248)	(248)					증감없음 (지번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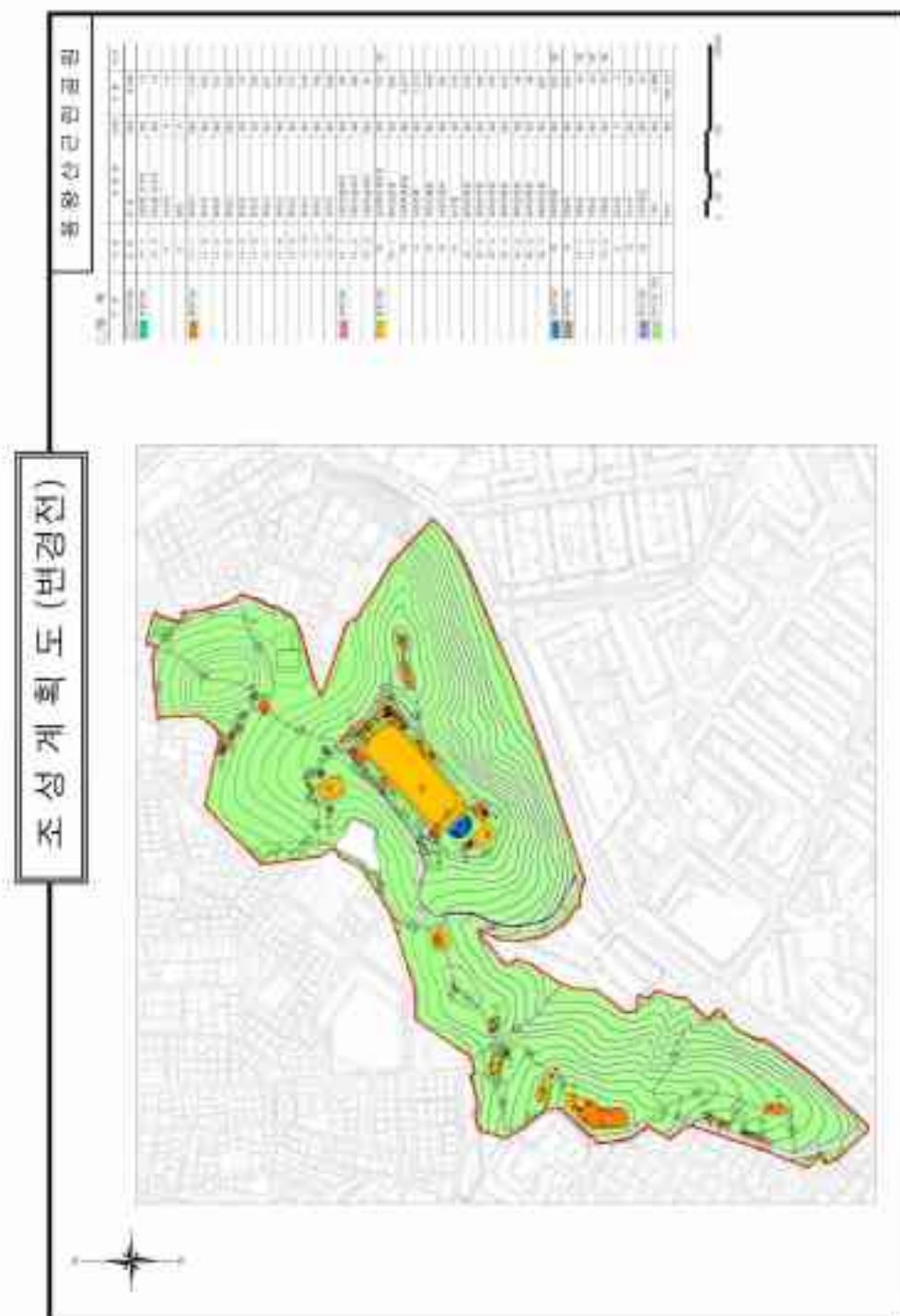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전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표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유 회 시 설		나-11	목동 산9-1	(193)	(193)							정감없음 (지번통합)
		나-12	목동 산9-1	(226)	(226)							정감없음 (지번통합)
	계			349	349				349	349		
	어린이 놀이터	다	3 개소	349	349				349	349		
		다-1	목동 산29-5	(66)	(66)				(66)	(66)		정감없음 (지번통합)
		다-2	목동 산10-9, 산11	(186)	(186)				(186)	(186)		정감없음 (지번통합)
		다-3	목동 산7-3	(97)	(97)				(97)	(97)		정감없음 (지번통합)
	계			10,816	10,816	철근, 철골	1동	558	558	558	558	
	실내 배드민턴장	라	목동 200-16	730	730	철근, 철골	1동	558	730	730	558	
	배드 민턴장	마	1 개소	490	490				490	490		
안 료 시 설		마-1	목동199-51	(490)	(490)							
	다목적 운동장	바	1개소	5,617	5,617							
		(바)	목동199-51, 202-16	(5,617)	(5,617)				5,617	5,617		
	조깅트랙	사	목동199-51, 202-16	1,275	1,275				1,275	1,275		
	게이트볼장	아	목동199-51	459	459				459	459		
	간강자이로	차	목동199-51	190	190				190	190		
	농구장	타	목동199-51	476	476				476	476		
	체력단련장	파	6개소	1,579	1,579							
		파-1	목동199-51	(478)	(478)				1,579	1,579		
		파-2	목동199-51	(180)	(180)				(478)	(478)		

구분	시설명	전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바닥면적 (㎡)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파-3	목동202-16	(165)	(165)					
		파-4	목동199-51	(373)	(373)					
		파-5	목동199-51	(48)	(48)					
		파-6	목동199-51	(48)	(48)					
		파-7	목동199-51	(287)	(287)					
	계			325	325	철근, 철골	119.64	119.64		
	아외무대	하	목동199-51, 202-16	325	325	철근, 철골	119.64	119.64		
관 양 시 설	계			413	413	조적조	35	35	3	증 208
	전망대	가	목동199-51	250	250		250	250	70 (1)	
	화장실	나	3 개 소	99	99	조적조	99	99	291	(증 208)
		나-1	목동199-51	(33)	(33)	조적조	(33)	(33)	(33)	
		나-2	목동199-51	(33)	(33)	조적조	(33)	(33)	(33)	
		나-3	목동199-51	(33)	(33)	조적조	(33)	(33)	(33)	
								(225) - 화장실 57㎡ 관리사무소 90㎡ + 쉼터 및 공용 78㎡	(2)	(증 208)
관 리 시 설	음수대	㉓	목동199-51							
	약수터	다	목동199-51	64	64		64	64		감 62
	계			62	62	목조	21.84	21.84		
녹 지 및 기 타	관리창고	라	목동 산7-4	62	62	목조	21.84	21.84		(감 62)
	계			188,573				188,372		감 201
	기타			1,966				1,966		
	독지			186,607				186,406		(감 201)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249	9,538				
변경					3,287	9,593				증 55
당초	소로	계			1,139	5,817				
당초		2	1	8	222	1,776	진입로	목동 산29-16	목동 산29-4	
당초		3	1	6	332	1,992	진입로	목동 산10-3	목동 산12-3	
당초		3	2	4.5	82	369	연결로	목동 산7-11	목동 산7-3	
당초		3	3	4.5	114	513	연결로	목동 산7-20	목동 산7-12	
당초		3	4	3	378	1,134	연결로	목동 산12-3	목동 산9-1	
당초		3	5	3	11	33	연결로	목동 산12-3	목동 산12-3	
당초	산책로	계			2,110	3,721				
변경					2,148	3,776				증 55
당초			1	3	39	117	산책로	목동 산29-4	목동 산23-5	
당초			2	3	78	234	산책로	목동 산9-1	목동 산9-1	
당초			3	2	178	356	산책로	목동 산26	목동 산23-5	
당초			4	2	99	198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5	2	141	282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199-51	
당초			6	2	123	246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2-4	
당초			7	2	56	112	산책로	목동 산12-3	목동 산12-3	
당초			8	2	150	300	산책로	목동 산12-3	목동 산9-1	
당초			9	2	91	182	산책로	목동 산7-4	목동 산 13-3	
당초			10	2	94	188	산책로	목동 산9-1	목동 산7-3	
당초			11	1.5	52	78	산책로	목동 산29-17	목동 산29-17	
당초			12	1.5	30	45	산책로	목동 산29-5	목동 산29-5	
당초			13	1.5	164	246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14	1.5	74	111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15	1.5	12	18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16	1.5	66	99	산책로	목동 산11	목동 산22-4	
당초			17	1.5	44	66	산책로	목동 산13-3	목동 산12-3	
당초			18	1.5	62	93	산책로	목동 산9-1	목동 산9-1	
당초			19	1.5	76	114	산책로	목동 산7-3	목동 산7-3	
당초			20	1.5	140	210	산책로	목동 산7-3	목동 산7-11	

당초			21	1.5	50	75	산책로	목동 520-10	목동 520-10	
당초			22	1.5	120	180	산책로	목동 산7-3	목동 산7-3	
당초			23	1	51	51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24	1	24	24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25	1	10	10	산책로	목동 24-7	목동 산23-5	
당초			26	1	15	15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27	1	71	71	산책로	목동 산13-3	목동 산12-3	
신설			28	1.4	38	55	산책로	관리실 진입 마당	상부 배수지 운동장 지점	



조성계획도 (변경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0호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구로구민 체육센터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45길39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과	구로구민 체육센터는 연면적 5,263㎡로서 2종시설물 대상이나, 착오로 3종시설물로 지정되었기에 3종시설물에서 해제하고 2종시설물로 관리하고자 해제 신청함. (운동시설 3종 시설물 범위 : 1,000㎡ 이상 ~ 5,000㎡ 미만)	-	
서원동 주민센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2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행정과	서원동 주민센터 보수 공사 완료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 종합등급 상향(C등급→A등급)	-	
			- 이 하 여 백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1호

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91호(2019.6.13.)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용산구 한남동 산10-214 일원 남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남산도시자연공원내 공원 및 철도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된 구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대피터널을 조성하여 재난시 철도 이용자 대피 및 구급 활동을 위한 긴급차량 진입시설로 이용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10-214 일대

3. 면 적 : 1,785,083㎡

4.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3783-5966~7)

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10-214임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86,508	76,961.15	4	1,031.46	1,031.46	2	주1) 1,785,083	86,331.55	4	1,031.46	1,031.46	2	부지면적 감)1,425.0
기본 시설	소 계	125,762					125,762	50,398					
	도 로	124,988					124,988 (76,240)	48,748 (76,240)					
	생태통로	774					774 (774) (876)	1,650 (774) (876)					
	광 장												
조 경 시 설													
유희 시 설													
휴 양 시 설	7,100	7,100					7,100	7,100					
교 양 시 설	510	510				2	510	510					
운 동 시 설	27,741.3	18,270.9	3	999.21	999.21		27,741.30	27,641.30	3	999.21	999.21		시설면적 전산오류 보정 증) 9,370.4㎡
편 의 시 설	692.21	692.25	1	32.25	32.25		692.21	692.25	1	32.25	32.25		
관 리 시 설													
녹지 및 기타	1,624,702.49						1,623,277.49						학교부지 공원면적 및 해제면적(2012.7.12.) 감)1,425.0㎡ 철도제단대피시설 공원종복결정 (공원화복) 1,515㎡
시 설 율 (법정 20%)	(76,961.15 / 1,786,508) x 100 = 4.30%				(86,331.55 / 1,785,083) x 100 = 4.83%				증)0.53%				
건 폐 율 (법정 4%)	(1,031.46 / 1,786,508) x 100 = 0.05%				(1,031.46 / 1,785,083) x 100 = 0.05%								

주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변경결정 및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12-177호/2012.7.12.)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사항 반영
【학교부지 공원 편입(1,418㎡) 및 학교 진입도로 공원 해제(2,843㎡)】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786,508	76,961.15	4	1,031.46	1,031.46					1,785,083	86,331.55		4	1,031.46	1,031.46	2	
기반 시설	소 계		125,762	50,398								125,762	50,398						
	도 로		124,988	48,748 (76,240)							전지역	124,988	48,748 (76,240)						
	생태통로		774	1,650 (774) (876)								774	1,650 (774) (876)						
	광장																		
휴양 시설	소 계		7,100	7,100								7,100	7,100						
	휴식지	가	7,100	7,100						가		7,100	7,100						
	휴식지-3	가-3	(5,500)	(5,500)						가-3	이태원동 산1-138	(5,500)	(5,500)						
	휴식지-4	가-4	(1,100)	(1,100)						가-4	장충동 2가 산14-21	(1,100)	(1,100)						
	휴식지-6	가-6	(500)	(500)						가-6	예장동 산2-5	(500)	(500)						
교양 시설	소 계		510	510				2				510	510					2	
	동상기념비	①	510	510				2	①			510	510					2	
	4.19 학생기념비	①-6	(500)	(500)				(1)	①-6	장충동 2가 산5-5	(500)	(500)	(500)					(1)	
	이희승선생	①-7	(10)	(10)				(1)	①-7	필동 84-1	(10)	(10)	(10)					(1)	
	소 계		27,741.3	18,270.9	3	999.21	999.21					27,741.3	27,641.30	3	999.21	999.21			
운동 시설	테니스장	다	2,026.3	2,026.3					다			2,026.3	2,026.3						
	HYATT 테니스장	다-1	(2,026.3)	(2,026.3)					다-1	한남2동 747-7	(2,026.3)	(2,026.3)	(2,026.3)						
	타워수영장 및 골프연습장	5	17,000	17,000	R.C	2	903.21	903.21	5	장충동 2가 산5-5	17,000	17,000	17,000	R.C	2	903.21	903.21		반양트리 추가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전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후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	
오동 시절	베드민턴장	라		5,465	5,365	1	96.0	96.0			라		5,465	5,365		1	96.0	96.0		
	베드민턴장-1	라-1	용산동 2가 산14-21	(900)	(900)						라-1	용산동 2가 산14-21	(900)	(900)						
	베드민턴장-2	라-2	이태원동 산 1-5	(150)	(150)						라-2	이태원동 산 1-5	(150)	(150)						
	베드민턴장-3	라-3	이태원동 산 10-16	(350)	(350)						라-3	이태원동 산 10-16	(350)	(350)						
	베드민턴장-4	라-4	한남2동 산 10-16	(3,065)	(2,965)	(1)	(96)	(96)			라-4	한남2동 산 10-16	(3,065)	(2,965)	조적	(1)	(96)	(96)		
	베드민턴장-7	라-7	용산동 2가 산2-14	(1,000)	(1,000)						라-7	용산동 2가 산2-14	(1,000)	(1,000)						
	체력단련장	마		3,250	3,250						마		3,250	3,250						
	체력단련장-1	마-1	용산동 2가 산1-3	(1,200)	(1,200)						마-1	용산동 2가 산1-3	(1,200)	(1,200)						
	체력단련장-4	마-4	용산동 2가 산1-7	(250)	(250)						마-4	용산동 2가 산1-7	(250)	(250)						
	체력단련장-5	마-5	이태원동 산 1-5	(1,000)	(1,000)						마-5	이태원동 산 1-5	(1,000)	(1,000)						
파이 시절	체력단련장-6	마-6	한남2동 산10-606	(800)	(800)						마-6	한남2동 산10-606	(800)	(800)						
	소계			692.21	682.25	1	32.25	32.25					692.21	682.25		1	32.25	32.25		
	공중변소	10		42.21	32.25		32.25	32.25			10		42.21	32.25			32.25	32.25		
	남산제8호 변소(83호소)	10-1	이태원동 산1-138	(42.21)	(32.25)	(1)	32.25	32.25			10-1	이태원동 산1-138	(42.21)	(32.25)	조적	(1)	32.25	32.25		
	약수터	바		650	650						바		650	650						
	후암약수터	바-1	후암동 427-1	(100)	(100)						바-1	후암동 427-1	(100)	(100)						
	남산체육 약수터	바-2	용산동 2가 산1-7	(100)	(100)						바-2	용산동 2가 산1-7	(100)	(100)						
	천일약수터	바-3	용산동 2가 산1-7	(50)	(50)						바-3	용산동 2가 산1-7	(50)	(50)						
	용암약수터	바-4	이태원동 산1-5	(100)	(100)						바-4	이태원동 산1-5	(100)	(100)						
	수북천 약수터	바-5	이태원동 산1-5	(50)	(50)						바-5	이태원동 산1-5	(50)	(50)						
	남산약수터	바-6	한남2동 산10-606	(100)	(100)						바-6	한남2동 산10-606	(100)	(100)						
	상촌약수터	바-7	한남2동 산10-16	(50)	(50)						바-7	한남2동 산10-16	(50)	(50)						

구 분	경 전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 시설	바-8	한남2동 산10-16	(100)	(100)						바-8	한남2동 산10-16	(100)	(100)						
			1,624,702.49									1,623,277.49							
녹지 및 기타			1,624,702.49									1,623,277.49						감)1,425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2,938.0	124,988.00				
변경					12,938.0	124,988.00				
당초	중로	소 계			5,981	(76,240)				
당초		2	1	20	3,350	(21,160)	도시 계획도로	남대문5가 825	한남2동 726-94	
당초		2	3	30	150	(4,500)	도시 계획도로	한남2동 산19	한남2동 726-181	
당초		2	4	20	1,500	(30,000)	도시 계획도로	장춘2가 38-7	한남2동 산9-19	
당초		2	5	20	600	(12,000)	도시 계획도로	예장동 산4-30	예장동 산5-86	
당초		2	6	20	381	(8,580)	도시 계획도로	한남동 산10-143	한남동 산10-33	
		*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면적에는 산입, 시설면적에는 ()로 표시하여 미 산입시킴으로서 시설율에 미포함.								
당초	소로	소 계			4,120	41,200				
당초		1	1	10	460	4,600	공원순환 도로	남산제1근린 공원 소로3-6	남산제2근린 공원 소로1-2	
당초		1	2	10	1,498	14,980	공원순환 도로	남산제2근린 공원 소로3-8	남산제2근린 공원 소로3-3	
당초		1	3	10	358	3,580	공원순환 도로	남산제2근린 공원 소로1-2	남산제2근린 공원 소로1-1	
당초		1	4	10	1,220	12,200	공원순환 도로	남산제2근린 공원 소로1-1	남산제3근린 공원 소로1-3	
당초		1	5	10	584	5,840	공원순환 도로	남산제1근린 공원 소로3-2	남산제1근린 공원 소로3-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소 계			2,837	7,548				
당초		-	2	2~3	260	650	산책로	소월길	천일약수터	
당초		-	4	2~3	260	650	산책로	남산제4근린 공원 산책로5	휴식지4	
당초		-	6	1~2	80	120	산책로	소로1-4	상춘약수터	
당초		-	7	1~2	260	390	산책로	소로1-4	남산산악회 약수터	
당초		-	8	4~5	546	2,457	산책로	소로1-4	남산제1근린 공원 산책로48	
당초	산책로	-	10	1~2	140	210	산책로	소로1-4	남산제3근린 공원 산책로20	
당초		-	11	1~2	50	75	산책로	장충2가 산14-47	소로1-4	
당초		-	12	3~4	80	280	산책로	예장동 산7	소로1-4	
당초		-	13	2~3	510	1,275	산책로	소로1-1	남산 제1근린공원	
당초		-	14	1~2	140	210	산책로	예장동 산4-20	소로1-1	
당초		-	17	3	36	108	산책로	남산제2근린 공원 산책로5	소로1-1	
당초		-	18	3	209	627	산책로	남산 제4근린공원	휴식지4	
당초			19	2	65	130	산책로	중로2-3	산책로	
당초			20	2	19	38	산책로	생태통로1	산책로	
당초			21	1.8	81	146	산책로	소로1-4	장충동2가 산14-55	
당초			22	1.8	101	182	산책로	한남동 산9-9	한남동 산9-9	

2. 조성계획 결정(변경)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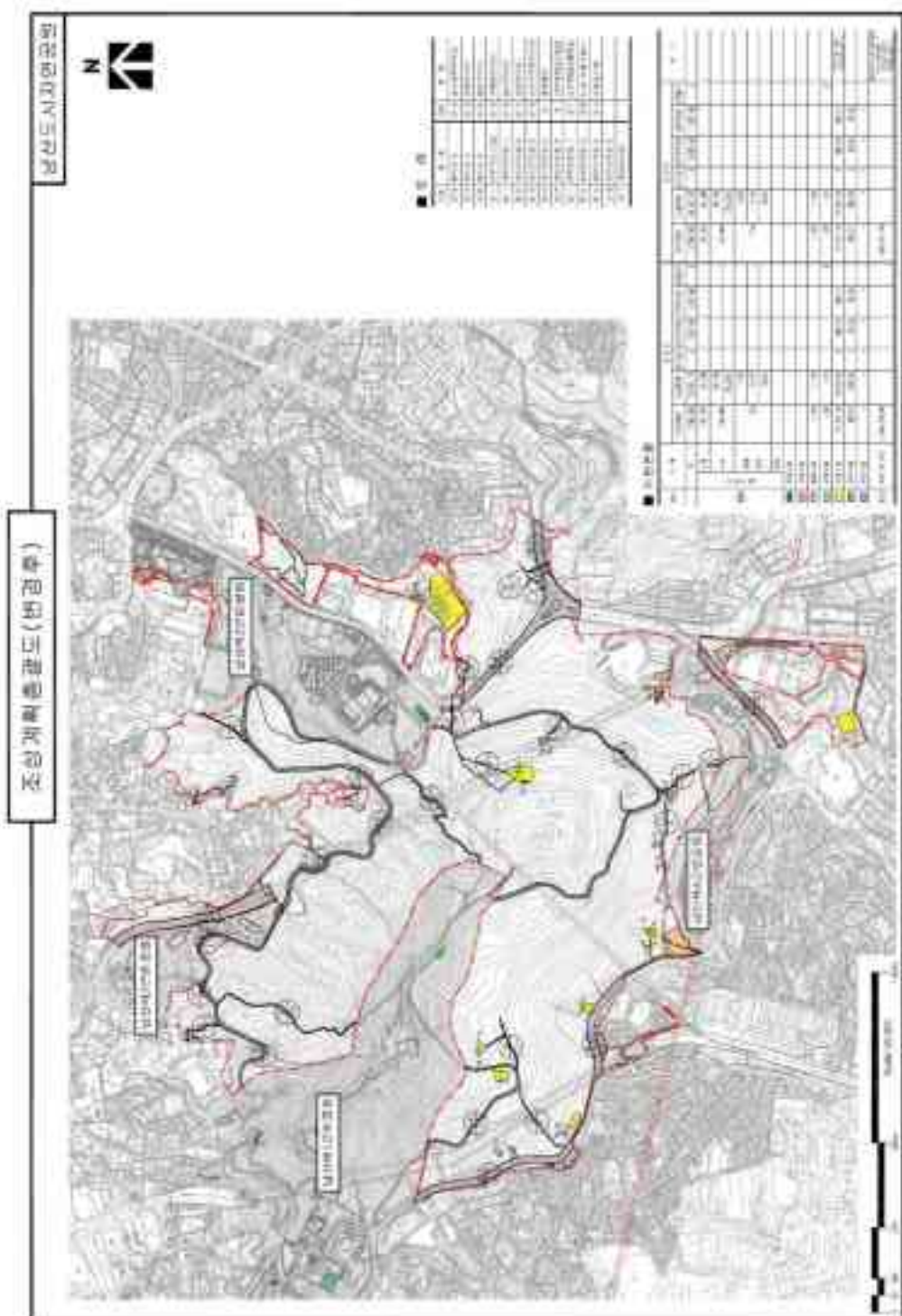
가. 위치도(S=1/16,000)

나. 토지이용계획도(S=1/5,000)

다. 조성계획총괄도(S=1/5,000)

라. 시설배치계획도(S=1/5,000)

마. 동선계획도(S=1/5,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3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8호(1996.6.27.)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63호(200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호(2011.4.7.)로 결정(변경)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2019.5.2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장

I. 결정 취지

-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연접지역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지침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도래에 따라 기존 계획의 실효성을 개선하여 실현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양동 18-1호 일대	306,559	-	306,559	1996.6.27 (서고시제1996-178호)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06,559	-	306,559	100.0	-
주거지역	소 계	261,523	-	261,523	85.3	-
	제1종전용주거지역	65,045	-	65,045	21.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966	-	3,966	1.3	-
	제3종일반주거지역	87,859	-	87,859	28.7	-
	준주거지역	104,653	-	104,653	34.1	-
상업지역	소 계	45,036	-	45,036	14.7	-
	일반상업지역	45,036	-	45,036	14.7	-

(2) 용도지구 결정

1) 경관지구

■ 경관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①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능동 18-11호	57,172(9,403)	77.12.3(건고시 제235호)	어린이회관내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26	4,950	75,501	2	832	20,254	6	1,674	37,288	18	2,444	17,959
대 로	3	1,652	50,150	1	572	17,535	2	1,080	32,615	-	-	-
중 로	2	259	3,819	-	-	-	-	-	-	2	259	3,819
소 로	21	3,039	21,532	1	260	2,719	4	594	4,673	16	2,185	14,140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45	35~43	주간선도로	572	능동18-22호	화양동2-49호	일반도로	-	-	-	능동로
기정 대로	2	23	30	주간선도로	333	군자동355번지	화양동23-40호	일반도로	-	-	-	동일로
기정 대로	2	25	30~33	주간선도로	747	화양동21-6호	화양동199-4호	일반도로	-	-	-	광나루로
변경 대로	2	25	30~34	주간선도로	747	화양동21-6호	화양동199-4호	일반도로	-	-	-	일부구간 확폭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74	화양동17-70호	화양동2-49호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3	15	6	국지도로	374	화양동17-70호	화양동2-49호	일반도로	-	-	-	현황도로쪽 으로 축소
기정 중로	3	1	11~12	집산도로	145	화양동18-27호	화양동17-70호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3	1	11~15	집산도로	145	화양동18-27호	화양동17-70호	일반도로	-	-	-	일부구간 확폭
기정 중로	3	57	15~21	주간선도로	114	군자동361-1호	군자동360-24호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0	군자동361-23호	군자동360-30호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2	10	국지도로	260	능동18-11호 (광나루로)	능동18-11호 (능동로)	일반도로	-	2000.2.3	-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260	능동18-11호 (광나루로)	능동18-11호 (능동로)	일반도로	-	-	-	잘못 분류된 도로번호 단순수정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62	군자동373-8호	군자동98-21호	일반도로	-	2002.5.8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95	화양동121-9호	화양동113-2호	일반도로	-	2002.5.8	-	
기정 소로	2	5	8~10	국지도로	297	화양동111-204 호	화양동132-6호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58	6~9	국지도로	111	군자동361-8호	군자동361-14호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	6~10	국지도로	140	화양동132-64호	화양동111-40호	일반도로	-	1993.8.2 1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	6~8	국지도로	57	화양동111-94호	화양동111-11호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	4~6	국지도로	273	화양동199-4호	화양동93-2호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16	화양동192번지	화양동111-139호	일반도로	-	1993.8.2 1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138	화양동111-206 호	화양동111-139호	일반도로	-	1993.5.4	
기정	소로	3	6	4	국지도로	33	군자동361-14호	군자동361-15호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7	7	국지도로	56	화양동111-72호	화양동111-180호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80	화양동67-2호	화양동110-29호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8	6	국지도로	189	화양동67-2호	화양동110-29호	일반도로	-		중로2-1 시설 변경에 따른 연장 확대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150	화양동2-9호	화양동1-20호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9	6	국지도로	159	화양동2-9호	화양동1-20호	일반도로	-		중로2-1 시설 변경에 따른 연장 확대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85	화양동2-1호	화양동2-31호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10	6	국지도로	96	화양동2-1호	화양동2-30호	일반도로	-		중로2-1 시설 변경에 따른 연장 확대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75	화양동39-4호	화양동93-2호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47	화양동111-84호	화양동111-13호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54	화양동21-1호	화양동21-26호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267	화양동21-15호	화양동18-26호	일반도로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대로 2-25	대로 2-25	•구역내 도로 일부구간 확폭 - 폭원 30~33m → 30~34m	•필지분할선에 의해 분할된 도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중로 2-1	소로 3-15	•폭원 변경 : 15m → 6m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기존 현황도로에 맞게 축소
중로 3-1	중로 3-1	•구역내 도로 일부구간 확폭 - 폭원 11~12m → 11~15m	•필지분할선에 의해 분할된 도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소로 2-2	소로 1-1	•도로번호 변경	•잘못 분류된 도로번호 폭원에 맞게 재분류
소로 3-8	소로 3-8	•연장 확대 - 연장 : 180m → 189m	•중로2-1이 소로3-15로 시설 변경함에 따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선형 변경
소로 3-9	소로 3-9	•연장 확대 - 연장 : 150m → 159m	•중로2-1이 소로3-15로 시설 변경함에 따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선형 변경
소로 3-10	소로 3-10	•연장 확대 - 연장 : 85m → 96m	•중로2-1이 소로3-15로 시설 변경함에 따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선형 변경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군자동 374-5호 일대	1,516	-	1,516	1997.7.9 (서고시제163호)	
변경	②	주차장	화양동 110-67호 일대	657	증)471	1,128	2004.10.24 (서고시제336호)	
기정	③	주차장	화양동 63-2호 일대	664	-	664	1996.7.9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②	주차장	•면적 증가 (657㎡ → 1,128㎡, 증 471㎡)	•화양8지구 해제에 따라 현재 토지 소유(국공유지) 및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주차장 시설 확대

3)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철도 (7호선)	어린이대공원 정거장 (도시철도)	성동구 모진동 3일대(광진구 군자동 374일대)	6,374.7	-	6,374.7	'92.12.12 (서고 제420호)	광장 중복결정 (331㎡)

(2)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광장	일반 광장	군자동 374번지 일대	4,052	-	4,052	2003.10.24 (서고시 제319호)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공공공지	군자동 360-30호	58	-	58	2003.12.10 (서고시 제2003-396호)	

3)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공원	소공원	화양동 110-34호 일대	2,382	-	2,382	2010.5.13 (서고시 제180호)	

(3) 공공문화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청사	화양동 122번지 일대	901	-	901	2002.6.24 (서고시 제2002-230호)	

- 건축물의 범위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공공청사	50%이하	250%이하	4층 이하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	공공청사	•건축물의 범위 신설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250% 이하 - 높이 4층 이하	•기 조성된 공공청사(화양동 주민센터)로 현 용도 지역 및 건축현황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범위 결정

2)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청소년 수련시설	능동 18-11호 일대	3,966	-	3,966	2000.2.3 (서고시 제2000-27호)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

(1) 최대개발규모 계획 결정(변경) 조서

적 용 지 역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간선도로변		2,000㎡ 이하	-	2,000㎡ 이하	
이면도로변	화양지구	800㎡ 이하	-	800㎡ 이하	기준단일화
	능동로지구	500㎡ 이하	증)300㎡	800㎡ 이하	

주) 1.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 이상인 경우 예외

주) 2.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최대개발규모로 한다.

주) 3. 건축협정에 의해 건축되는 부지의 경우 건축협정을 체결한 부지 전체를 최대개발규모 이하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 4. 특별계획구역, 공동개발로 계획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득하여야 한다.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이면도로변 최대개발규모 변경	•구역내 형평성 및 평균대지규모를 고려하여 이면도로변에 동일한 기준 적용

(2) 공동개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기 준		비고
		기정	변경	
공동 개발	지정	①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필지 ②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③ 간선부에 입지한 필지로서 공공시설 설치에 따라 필지의 규모가 작아짐으로서 단독개발이 곤란한 경우	①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필지 ② 과소필지 또는 맹지 ③ 도로의 확폭에 따라 발생하는 과소필지 ④ 간선변에 입지한 필지로서 차량출입이 불가한 필지	
	권장	① 입지여건상 잠재력이 큰 지역(교차로변, 역사인접지역, 간선도로변등)의 소규모 필지 ② 공공시설 설치에 따라 필지의 규모가 작아진 경우 인접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③ 접근성이 특히 불량한 필지 및 전면도로 진출입 불허가 필요한 필지	-	폐지
건축협정 (권장)		-	① 간선변, 능동로19길, 동일로30길, 군자로변 필지	

※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해 공동개발이 지정 또는 권장된 필지 이외의 필지들에 있어서 공동개발에 의한 건축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형화하여 건축한계선, 필지분할선 등 해당 필지의 지구단위계획 지침 사항을 준수하고, 도로등 기반시설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가로연속성 증대를 위해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단, 간선변의 경우 건축협정을 통해 이면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개별건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개발 변경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획지계획 : 없음

(3)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군자동	355호	339	
기정			군자동	355-1호	690	•공동개발(권장)
			군자동	355-2호	119	
기정			군자동	355-3호	522	
변경			군자동	355-1호	690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군자동	355-2호	119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355-3호	522	
기정			군자동	355-5호	792	
기정			군자동	355-13호	20	
기정			군자동	355-14호	387	
기정			군자동	355-6호	46	•공동개발(권장)
			군자동	355-10호	357	
			군자동	355-11호	298	
			군자동	355-12호	585	
			군자동	355-29호	165	
변경			군자동	355-6호	46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355-10호	357	
			군자동	355-11호	298	
			군자동	355-12호	585	
			군자동	355-29호	165	
기정			군자동	355-16호	126	
기정			군자동	355-18호	122	
기정			군자동	355-19호	145	
변경			군자동	355-16호	126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355-18호	122	
			군자동	355-19호	145	
기정			군자동	355-20호	162	
기정			군자동	355-21호	443	
기정			군자동	355-22호	169	
기정			군자동	355-23호	188	
기정			군자동	355-24호	159	
			군자동	355-25호	129	
변경			군자동	355-24호	159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355-25호	129	
기정			군자동	355-26호	167	
기정			군자동	355-27호	171	
기정			군자동	355-28호	191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B	3,692	군자동	356호	197		
기정			군자동	356-1호	145		
기정			군자동	356-2호	149		
기정			군자동	356-3호	145		
기정			군자동	356-4호	228		
기정			군자동	356-5호	231		
기정			군자동	356-6호	413		
기정			군자동	356-7호	56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356-8호	247		
			군자동	356-9호	15		
변경			군자동	356-6호	413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356-7호	56		
			군자동	356-8호	247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356-9호	15		
기정				군자동	356-10호	372	
기정				군자동	356-12호	185	
기정				군자동	356-13호	179	
기정				군자동	356-14호	177	
기정				군자동	356-15호	179	
기정				군자동	356-16호	183	
기정				군자동	356-17호	173	
기정				군자동	356-18호	203	
기정				군자동	356-19호	215	
기정	C	2,321	군자동	357호	167		
기정			군자동	357-1호	167		
기정			군자동	357-2호	171		
기정			군자동	357-3호	215		
기정			군자동	357-4호	167		
기정			군자동	357-5호	215		
기정			군자동	357-6호	179		
기정			군자동	357-7호	179		
기정			군자동	357-8호	356		
기정			군자동	357-9호	167		
기정			군자동	357-10호	167		
기정			군자동	357-11호	171		
기정	D	8,182	군자동	358-4호	179		
기정			군자동	358-5호	179		
기정			군자동	358-6호	179		
기정			군자동	358-7호	179		
기정			군자동	358-8호	179		
기정			군자동	358-9호	1,461		
기정			군자동	358-10호	89		
기정			군자동	358-11호	89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D	8,182	군자동	358-12호	89	
기정			군자동	358-13호	89	
기정			군자동	358-14호	96	
기정			군자동	358-15호	96	
기정			군자동	360호	96	
기정			군자동	360-1호	96	
기정			군자동	360-2호	89	
기정			군자동	360-3호	89	
기정			군자동	360-4호	89	
기정			군자동	360-5호	89	
기정			군자동	360-20호	3,397	•2 특별계획구역 : 4,184㎡ (기반시설 면적 미포함)
기정			군자동	360-23호	132	•공동개발(권장)
			군자동	360-24호	152	
			군자동	360-25호	99	
			군자동	360-26호	116	
변경			군자동	360-23호	132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군자동	360-24호	152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군자동	360-25호	99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360-26호	116	
기정			군자동	360-27호	112	•공동개발(권장)
			군자동	360-28호	99	
			군자동	360-29호	89	
변경			군자동	360-27호	112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군자동	360-28호	99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360-29호	89	
기정			군자동	360-35호	89	
기정			군자동	360-37호	89	
기정			군자동	360-38호	89	
기정			군자동	360-39호	89	
기정			군자동	360-40호	89	
기정			군자동	360-41호	89	
기정	E	10,760	군자동	503호	4,608	•1 특별계획구역 : 5,374㎡ (기반시설 면적 미포함)
기정			군자동	361-13호	136	•공동개발(권장)
			군자동	361-14호	132	
변경			군자동	361-13호	136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군자동	361-14호	132	•공동개발(권장) 폐지
기정			군자동	361-15호	321	
기정			군자동	361-16호	155	
기정			군자동	361-17호	162	
기정			군자동	361-18호	155	
기정			군자동	361-19호	119	
기정			군자동	361-20호	145	

구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E	10,760	군자동	361-21호	159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361-24호	149	
변경			군자동	361-21호	159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군자동	361-24호	149	•공동개발(지정) 폐지
기정			군자동	361-22호	142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361-23호	129	
변경			군자동	361-22호	142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군자동	361-23호	129	•공동개발(지정) 폐지
기정			군자동	361-25호	182	
기정			군자동	361-26호	331	
기정			군자동	361-27호	684	
기정			군자동	361-28호	383	
기정			군자동	361-29호	1,540	•361-29, 361-42 공동개발(지정) •361-29, 361-31 공동개발(권장) •361-30, 361-31 공동개발(권장) •361-30, 361-42 공동개발(권장)
			군자동	361-30호	142	
			군자동	361-31호	189	
			군자동	361-42호	172	
변경			군자동	361-29호	1,540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361-30호	142	
			군자동	361-31호	189	
			군자동	361-42호	172	
기정			군자동	361-32호	625	
기정	F	4,660	군자동	98-8호	53	
기정			군자동	98호	2,390	•98번지 필지분할 후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211호	318	
			군자동	212호	228	
			군자동	213호	182	
			군자동	217호	291	
			군자동	218호	215	
			군자동	220호	17	
기정			군자동	215호	936	•공동개발(지정)
			군자동	221호	30	
기정	G	76,284	능동	18-41호	3,966	•7 특별계획구역 : 3,966㎡
기정			능동	18-42호	2,648	•6 특별계획구역 : 15,937㎡
기정			능동	18-43호	13,289	
기정			능동	18-10호	2,939	
기정			능동	18-11호	53,442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H	9,761.6	화양동	111-72호	592	•3 특별계획구역 : 1,674㎡
			화양동	111-182호	195	
			화양동	111-183호	188	
			화양동	111-184호	188	
			화양동	111-185호	130	
			화양동	111-186호	175	
			화양동	111-196호	178	
			화양동	111-256호	28	
기정			화양동	111-15호	1,083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6호	152	
			화양동	111-175호	145	
			화양동	111-176호	73	
			화양동	111-177호	93	
			화양동	111-178호	122	
			화양동	111-179호	155	
			화양동	111-180호	129	
			화양동	111-188호	13	
			화양동	111-193호	3	
			화양동	111-194호	3	
			화양동	111-195호	73	
화양동			111-199호	94		
화양동			111-200호	109		
기정			화양동	111-117호	708	
기정			화양동	111-11호	6	•4 특별계획구역 : 2,532㎡
			화양동	111-12호	129	
			화양동	111-13호	811	
			화양동	111-81호	126	
			화양동	111-82호	172	
	화양동	111-84호	83			
	화양동	111-85호	281			
	화양동	111-86호	79			
	화양동	111-93호	190			
	화양동	111-94호	107			
	화양동	111-95호	129			
	화양동	111-96호	129			
	화양동	111-99호	99			
	화양동	111-143호	8			
	화양동	111-255호	183			
기정	화양동	527호	2,600.6	•5 특별계획구역 : 2,600.6㎡ (기반시설 면적 미포함)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I	4,405	화양동	111-105호	185	•111-105, 111-107, 196, 197 공동개발(지정) •111-106, 203, 204, 205 공동개발(지정) •192, 193 공동개발(지정) •192, 196 공동개발(권장) •111-106, 111-107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1-107호	115	
			화양동	196호	172	
			화양동	197호	136	
			화양동	111-106호	112	
			화양동	203호	162	
			화양동	204호	53	
			화양동	205호	149	
			화양동	192호	136	
			화양동	193호	282	
변경			화양동	111-105호	185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07호	115	
			화양동	196호	172	
			화양동	197호	136	
			화양동	111-106호	112	
			화양동	203호	162	
			화양동	204호	53	
			화양동	205호	149	
			화양동	192호	136	
			화양동	193호	282	
기정	화양동	202호	403			
기정	화양동	112-20호	1			
기정	화양동	111-124호	170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225호	238			
	화양동	227호	33			
	화양동	228호	96			
	화양동	229호	33			
	화양동	230호	73			
	화양동	233호	41			
변경	화양동	111-124호	17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25호	238			
	화양동	227호	33			
	화양동	228호	96			
	화양동	229호	33			
	화양동	230호	73			
	화양동	233호	41			
기정	화양동	206호	364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207호	96			
	화양동	210호	94			
기정	화양동	212호	380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213호	100			
변경	화양동	206호	364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07호	96			
	화양동	210호	94			
	화양동	212호	380			
	화양동	213호	100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I	4,405	화양동	216호	165	•216, 220, 221 공동개발(지정) •217, 221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217호	98		
			화양동	220호	221		
			화양동	221호	99		
기정 변경				화양동	226호	198	•공동개발(권장) 폐지
			화양동	217호	98		
변경				화양동	216호	165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20호	221	
		화양동	221호	99			
		화양동	226호	198			
기정	J	9,938	화양동	111-18호	122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1-79호	126		
			화양동	111-80호	83		
			화양동	111-118호	218		
변경				화양동	111-18호	12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79호	126	
				화양동	111-80호	83	
				화양동	111-118호	218	
기정				화양동	111-22호	367	
기정				화양동	111-235호	114	
변경				화양동	111-22호	367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235호	114	
기정				화양동	111-23호	115	
기정				화양동	111-24호	138	
기정				화양동	111-237호	106	
변경				화양동	111-24호	138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237호	106	
기정				화양동	111-25호	331	
기정				화양동	111-172호	7	
변경				화양동	111-25호	331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72호	7	
기정				화양동	111-26호	31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32호	172	
기정				화양동	111-27호	318	•111-27, 111-108, 112-17, 112-18(일부)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1-108호	10	
				화양동	112-17호	96	
				화양동	112-18호	27	
변경				화양동	111-27호	318	•111-27, 111-108, 112-17, 112-18(일부)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08호	10	
				화양동	112-17호	96	
				화양동	112-18호	27	
기정				화양동	111-28호	232	
기정				화양동	111-29호	169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J	9,938	화양동	111-34호	86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1-73호	291	
변경			화양동	111-34호	8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73호	291	
기정			화양동	111-35호	198	
기정			화양동	111-36호	149	
기정			화양동	111-37호	13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97호	165	
기정			화양동	111-126호	9	
기정			화양동	111-38호	9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63호	70	
변경			화양동	111-126호	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38호	99	
			화양동	111-63호	70	
기정			화양동	111-50호	298	
			화양동	111-163호	83	
			화양동	111-164호	93	
			화양동	111-171호	13	
			화양동	111-189호	13	
변경			화양동	111-50호	298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63호	83	
			화양동	111-164호	93	
			화양동	111-171호	13	
			화양동	111-189호	13	
기정			화양동	111-51호	93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1-165호	99	
			화양동	111-166호	119	
기정			화양동	111-162호	23	•공동개발(지정)
변경			화양동	111-51호	93	
			화양동	111-162호	23	
변경			화양동	111-165호	9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66호	119	
기정			화양동	111-62호	108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4-9호	13	
기정			화양동	111-64호	51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98호	122	
기정			화양동	111-67호	156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1-78호	165	
			화양동	111-159호	205	
변경			화양동	111-67호	15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78호	165	
			화양동	111-159호	205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J	9,938	화양동	111-75호	198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1-76호	185	
			화양동	111-119호	393	
			화양동	111-121호	215	
			화양동	111-206호	218	
변경			화양동	111-75호	198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111-76호	185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111-119호	393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21호	215	
			화양동	111-206호	218	
기정			화양동	111-114호	159	•111-128, 111-204 공동개발(지정) •111-114, 111-127 공동개발(권장) •111-127, 111-128 공동개발(권장) •111-204, 111-131 공동개발(권장) •111-130, 111-131 공동개발(권장) •111-129, 111-130 공동개발(권장) •111-114, 111-129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1-127호	102	
			화양동	111-128호	99	
			화양동	111-129호	159	
			화양동	111-130호	106	
			화양동	111-131호	169	
			화양동	111-204호	76	
			변경	화양동	111-114호	
변경			화양동	111-127호	102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111-128호	9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31호	169			
	화양동	111-204호	76			
변경	화양동	111-129호	15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30호	106			
기정	화양동	111-133호	122			
기정	화양동	111-134호	122			
기정	화양동	111-135호	145			
기정	화양동	111-136호	136			
기정	화양동	111-137호	122			
기정	화양동	111-138호	136			
변경	화양동	111-137호	12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38호	136			
기정	화양동	111-139호	165			
기정	화양동	111-203호	387			
기정	화양동	111-238호	7			
기정	화양동	112-3호	231			
기정	화양동	112-12호	235			
기정	화양동	112-14호	265			
기정	화양동	112-16호	209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화양동	119-5호	372.2	
기정			화양동	110-17호	175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6-2호	420	
			화양동	116-3호	190	
			화양동	116-16호	225	
변경			화양동	110-17호	175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6-2호	420	
			화양동	116-3호	190	
			화양동	116-16호	225	
기정			화양동	111-5호	106	•111-5, 111-161 공동개발(권장) •111-5, 18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61호	446	
			화양동	186호	195	
			화양동	111-5호	106	
변경			화양동	111-161호	44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86호	195	
			화양동	111-47호	79	
			화양동	111-59호	89	
기정			화양동	182호	33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84호	50	
			화양동	111-49호	133	
			화양동	115-6호	189	
기정			화양동	116-5호	89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74호	53	
			화양동	111-49호	133	
			화양동	115-6호	189	
변경			화양동	116-5호	8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74호	53	
			화양동	111-60호	165	
			화양동	111-61호	165	
기정			화양동	111-70호	15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6-1호	397	
			화양동	111-102호	933	
			화양동	115-7호	231	
기정			화양동	115-8호	149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6-9호	277	
			화양동	115-8호	149	
			화양동	116-9호	277	
변경			화양동	116-7호	198	•117-1, 119-4 공동개발(권장) •119-4, 118-5 공동개발(권장) •118-5, 117-1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7-1호	179	
			화양동	118-5호	125	
			화양동	119-4호	417	
기정			화양동	132-102호	8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7-1호	179	
			화양동	118-5호	125	
			화양동	119-4호	417	
변경			화양동	132-102호	8	
			화양동	117-1호	179	
			화양동	118-5호	125	
			화양동	119-4호	417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L	1,867	화양동	113-1호	1,513	
기정			화양동	114-5호	338	
기정	M	6,323	화양동	110-37호	2,724	
기정			화양동	110-40호	230	
기정			화양동	119-3호	70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9-6호	36	
			화양동	132-7호	101	
			화양동	132-22호	132	
변경			화양동	119-3호	70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119-6호	36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132-7호	101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32-22호	132	
기정			화양동	121-9호	317	
기정			화양동	132-27호	130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32-34호	56	
			화양동	132-35호	201	
			화양동	132-91호	145	
변경			화양동	132-27호	130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132-91호	145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132-34호	5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32-35호	201	
기정			화양동	132-36호	148	
기정			화양동	132-37호	174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32-74호	152	
변경			화양동	132-37호	174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132-74호	152	•공동개발(권장) 폐지
기정			화양동	132-63호	229	•132-93, 132-69 공동개발(지정) •132-63, 132-93 공동개발(권장) •132-69, 132-63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32-69호	187	
			화양동	132-93호	145	
변경			화양동	132-63호	229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132-69호	187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32-93호	145	
기정			화양동	132-73호	2	
기정			화양동	132-6호	284	
기정			화양동	132-75호	338	
기정			화양동	132-115호	39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N	5,831.1	화양동	18-1호	64.0	•18-1, 18-2 공동개발(지정) •18-2, 18-3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8-2호	310.8	
			화양동	18-3호	407.9	
변경			화양동	18-1호	64.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8-2호	310.8	
			화양동	18-3호	407.9	
기정			화양동	18-5호	552.7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8-6호	362.7	
변경			화양동	18-5호	552.7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8-6호	362.7	
기정			화양동	18-9호	924.6	
기정			화양동	18-23호	129.9	
기정			화양동	18-10호	505.5	
기정			화양동	18-11호	330.6	
기정			화양동	18-12호	493.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8-14호	243.0	
기정			화양동	18-16호	469.1	
기정			화양동	18-21호	125.6	
기정			화양동	18-24호	132.6	
기정			화양동	18-25호	131.6	
기정			화양동	18-26호	182.8	
기정			화양동	18-32호	463.8	
기정	O	2,926.3	화양동	17-1호	116.5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7-2호	125.6	
기정			화양동	17-4호	234.7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7-5호	208.3	
변경			화양동	17-4호	234.7	•공동개발(권장) 폐지
			화양동	17-5호	208.3	
기정			화양동	17-6호	71.9	•17-6, 17-7 공동개발(지정) •17-7, 17-8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7-7호	96.9	
			화양동	17-8호	104.5	
변경			화양동	17-6호	71.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7-7호	96.9	
변경			화양동	17-8호	104.5	•공동개발(권장) 폐지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O	2,926.3	화양동	17-10호	175.5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7-11호	154.7		
변경			화양동	17-10호	175.5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7-11호	154.7		
기정			화양동	17-16호	208.2	•17-80, 17-82 공동개발(지정) •17-16, 17-80 공동개발(권장) •17-16, 17-82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7-80호	222.5		
			화양동	17-82호	214.8		
변경			화양동	17-16호	208.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7-80호	222.5		
			화양동	17-82호	214.8		
기정				화양동	17-17호	279.1	
기정				화양동	17-19호	122.6	
기정			화양동	17-34호	217.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7-79호	200.7		
			화양동	17-83호	140.0		
기정	P	1,581	화양동	19-1호	180		
기정			화양동	19-2호	220.6		
기정			화양동	19-7호	166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9-34호	120		
변경			화양동	19-7호	166	•공동개발(권장) 폐지	
			화양동	19-34호	120		
기정			화양동	19-33호	136		
기정			화양동	19-38호	226		
기정			화양동	19-39호	206		
기정			화양동	19-47호	169		
기정			화양동	19-48호	138		
기정			Q	6,731.8	화양동	21-1호	600
기정	화양동	21-2호			355.4		
기정	화양동	21-3호			10.4		
기정	화양동	21-4호			316.8		
기정	화양동	21-5호			301.4		
기정	화양동	21-21호			112		
기정	화양동	21-39호			105		
기정	화양동	21-40호			106		
변경	화양동	21-2호			355.4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1-3호			10.4		
	화양동	21-4호			316.8		
	화양동	21-5호	301.4				
	화양동	21-21호	112				
		화양동	21-39호	105			
		화양동	21-40호	106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Q	6,731.8	화양동	21-6호	866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21-49호	472		
변경				화양동	21-6호	86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1-49호	472	
기정				화양동	21-7호	8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1-8호	114	
				화양동	21-14호	134	
				화양동	21-15호	403	
				화양동	21-20호	966	
				화양동	21-46호	216	
				화양동	21-61호	38	
기정				화양동	21-22호	122.8	
기정				화양동	21-26호	104.6	
기정				화양동	21-34호	111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1-35호	132	
변경				화양동	21-22호	122.8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1-26호	104.6	
				화양동	21-34호	111	
				화양동	21-35호	132	
기정				화양동	21-23호	469	
기정				화양동	21-38호	272	
기정				화양동	21-41호	260	
기정	R	1,281	화양동	20-1호	205		
기정				화양동	20-2호	118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20-29호	253	
				화양동	20-30호	205	
				화양동	20-30호	205	
변경				화양동	20-2호	118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20-29호	253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20-30호	205	•공동개발(권장) 폐지
기정				화양동	20-31호	186	
기정				화양동	20-35호	157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20-37호	157	
변경				화양동	20-35호	157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20-37호	157	•공동개발(권장) 폐지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S	3,768	화양동	23-1호	135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23-2호	115	
			화양동	23-3호	118	
			화양동	23-4호	134	
			화양동	23-10호	110	
			화양동	23-11호	106	
변경			화양동	23-1호	135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23-2호	115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23-3호	118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3-4호	134	
변경			화양동	23-10호	110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23-11호	106	•공동개발(권장) 폐지
기정			화양동	23-5호	165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23-6호	139	
			화양동	23-7호	220	
			화양동	23-8호	99	
			화양동	23-9호	135	
변경			화양동	23-5호	165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3-6호	139			
	화양동	23-7호	220			
	화양동	23-8호	99			
	화양동	23-9호	135			
기정	화양동	23-15호	110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23-16호	102			
	화양동	23-17호	120			
	화양동	23-18호	123			
	화양동	23-19호	108			
	화양동	23-20호	111			
변경	화양동	23-15호	11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3-16호	102			
	화양동	23-17호	120			
	화양동	23-18호	123			
	화양동	23-19호	108			
	화양동	23-20호	111			
기정	화양동	23-26호	111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23-27호	110			
	화양동	23-28호	125			
	화양동	23-29호	125			
	화양동	23-30호	106			
	화양동	23-31호	110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변경	S	3,768	화양동	23-26호	111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3-27호	110	
			화양동	23-28호	125	
			화양동	23-29호	125	
			화양동	23-30호	106	
			화양동	23-31호	110	
기정			화양동	23-37호	133	
기정			화양동	23-38호	136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23-39호	152	
변경			화양동	23-38호	13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3-39호	152	
기정			화양동	23-40호	510	
기정	T	38,842.1	화양동	110-33호	468	•8 특별계획구역 : 8,997㎡ (기반시설 면적 미포함)
			화양동	123호	132	
			화양동	123-1호	176	
			화양동	124-1호	122	
			화양동	124-2호	165	
			화양동	125-2호	38	
			화양동	125-3호	275	
			화양동	125호	282	
			화양동	127-3호	382	
			화양동	131호	1,501	
			화양동	131-3호	200	
			화양동	132-101호	169	
			화양동	132-106호	30	
			화양동	132-10호	136	
			화양동	132-12호	192	
			화양동	132-13호	106	
			화양동	132-14호	17	
			화양동	132-15호	159	
			화양동	132-29호	93	
			화양동	132-31호	361	
			화양동	132-3호	636	
			화양동	132-45호	241	
			화양동	132-49호	202	
			화양동	132-4호	202	
			화양동	132-50호	40	
			화양동	132-53호	221	
			화양동	132-54호	30	
			화양동	132-56호	3	
			화양동	132-64호	215	
			화양동	132-65호	317	
			화양동	132-66호	93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T	38,842.1	화양동	132-68호	708	•8 특별계획구역 : 8,997㎡ (기반시설 면적 미포함)
			화양동	132-89호	52	
			화양동	132-8호	769	
			화양동	132-94호	128	
			화양동	132-9호	136	
			화양동	132-112호	7	
			화양동	132-113호	14	
변경			화양동	110-33호	468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23호	132	•8 특별계획구역 폐지
			화양동	123-1호	176	•공동개발(지정)
변경			화양동	124-1호	122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24-2호	165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25-2호	38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25-3호	275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25호	282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27-3호	382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1호	1,501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1-3호	200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101호	169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106호	30	•8 특별계획구역 폐지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32-45호	241	
			화양동	132-66호	93	
			화양동	132-112호	7	
			화양동	132-113호	14	
변경			화양동	132-10호	136	•8 특별계획구역 폐지
			화양동	132-50호	40	•공동개발(지정)
변경			화양동	132-12호	192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13호	106	•8 특별계획구역 폐지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32-14호	17			
	화양동	132-9호	136			
변경	화양동	132-15호	159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29호	93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31호	361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3호	636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49호	202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4호	202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53호	221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54호	30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56호	3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64호	215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65호	317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68호	708	•8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경	화양동	132-89호	52	•8 특별계획구역 폐지		
	화양동	132-8호	769	•공동개발(지정)		
변경	화양동	132-94호	128	•8 특별계획구역 폐지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화양동	1-1호	194.5	
기정			화양동	1-2호	89	
기정			화양동	1-3호	130	
기정			화양동	1-6호	100	
기정			화양동	1-7호	115	
기정			화양동	1-10호	116	
기정			화양동	1-8호	138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9호	121	
			화양동	1-11호	132	
변경			화양동	1-8호	138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1-11호	132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1-9호	121	•공동개발(지정) 폐지
기정			화양동	1-12호	14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20호	153	
변경			화양동	1-12호	140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1-20호	153	•공동개발(지정) 폐지
기정			화양동	1-13호	123	
기정			화양동	1-14호	114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9호	149	
변경			화양동	1-14호	114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T	38,842.1	화양동	1-19호	149	•공동개발(지정) 폐지
기정			화양동	1-15호	133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6호	137	
			화양동	1-17호	138	
변경			화양동	1-15호	133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1-16호	137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1-17호	138	•공동개발(지정) 폐지
기정			화양동	1-21호	127.1	
기정			화양동	1-22호	127.3	
기정			화양동	1-23호	123	
기정			화양동	1-24호	95	
기정			화양동	1-26호	114	
기정			화양동	1-27호	103	
기정			화양동	1-30호	101	
기정			화양동	1-31호	102	
기정			화양동	1-32호	112	
기정			화양동	1-33호	122.9	
기정			화양동	2-1호	210	
기정			화양동	2-3호	178.7	
기정			화양동	2-5호	150	
기정			화양동	2-6호	108.6	
기정			화양동	2-7호	114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T	38,842.1	화양동	2-8호	13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9호	143	
기정			화양동	2-10호	104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11호	66	
			화양동	2-12호	169	
			화양동	2-56호	196	
변경			화양동	2-8호	13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9호	143	
			화양동	2-10호	104	
변경			화양동	2-11호	6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12호	169	
변경			화양동	2-56호	196	•공동개발(지정) 폐지
기정			화양동	2-14호	90	
기정			화양동	2-61호	105	
변경			화양동	2-14호	9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61호	105	
기정			화양동	2-15호	179	
기정			화양동	2-18호	157	
기정			화양동	2-19호	142	
기정			화양동	2-20호	187	
기정			화양동	2-21호	164	
기정			화양동	2-22호	283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23호	156	
			화양동	2-24호	134	
변경			화양동	2-22호	283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2-23호	156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2-24호	134	•공동개발(지정) 폐지
기정			화양동	2-25호	168	
기정			화양동	2-26호	1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27호	95	
			화양동	2-25호	168	
변경			화양동	2-26호	1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27호	95	
변경			화양동	2-27호	95	•공동개발(지정) 폐지
기정			화양동	2-28호	205	
기정			화양동	2-29호	16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32호	129	
변경			화양동	2-29호	162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2-32호	129	•공동개발(지정) 폐지
기정			화양동	2-30호	206	
기정			화양동	2-35호	10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36호	73	
			화양동	2-37호	113	
			화양동	2-39호	210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T	38,842.1	화양동	2-47호	45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48호	144	
			화양동	2-49호	355	
기정			화양동	2-42호	143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43호	148	
			화양동	2-44호	246	
			화양동	2-45호	230	
			화양동	2-46호	271	
변경			화양동	2-35호	10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36호	73	
변경			화양동	2-37호	113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2-39호	210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2-46호	271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47호	459	
			화양동	2-48호	144	
변경			화양동	2-49호	355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2-42호	143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2-43호	148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2-44호	24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45호	230	
기정			화양동	2-57호	132	
기정			화양동	2-58호	151	
기정			화양동	2-60호	191	
기정			화양동	22-3호	11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2-5호	208	
			화양동	60-2호	89	
기정			화양동	61-2호	139	
변경			화양동	22-5호	208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22-3호	11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61-2호	139	
			화양동	60-2호	89	
기정			화양동	53-2호	3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54-2호	164	
			화양동	55호	139	
변경			화양동	54-2호	164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53-2호	3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55호	139	
기정			화양동	56호	10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56-1호	148	
기정			화양동	57호	273	
기정			화양동	58-10호	166	
기정			화양동	58-13호	166	
기정			화양동	529호	607.6	
기정			화양동	51-1호	152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T	38,842.1	화양동	51-3호	83	
기정			화양동	51-5호	63	
기정			화양동	51-6호	129	
기정			화양동	77호	144	
기정			화양동	78-1호	248	
기정			화양동	80호	89	
변경			화양동	78-1호	248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80호	89	
기정			화양동	81호	132	
기정			화양동	82호	225	
기정			화양동	83-1호	223	
기정			화양동	83-5호	253	
기정			화양동	64-2호	248	•64-2, 68-2 공동개발(지정) •68-2, 68-3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68-2호	189	
			화양동	68-3호	178	
변경			화양동	64-2호	248	•공동개발(지정) 폐지
			화양동	68-2호	189	•공동개발(지정,권장) 폐지
			화양동	68-3호	178	•공동개발(권장) 폐지
기정			화양동	66-2호	175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66-5호	132	
			화양동	67-2호	50	
변경			화양동	67-3호	145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66-2호	175	
			화양동	66-5호	132	
변경			화양동	67-2호	50	
변경			화양동	67-3호	145	•공동개발(지정) 폐지
기정			화양동	67-1호	113	
기정			화양동	68-1호	393	
기정			화양동	68-4호	123	
기정			화양동	69호	136	
기정			화양동	70호	241	
기정			화양동	71호	407	
기정			화양동	72호	311	
기정			화양동	74-1호	135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74-3호	147	
변경			화양동	74-1호	135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74-3호	147	•공동개발(권장) 폐지
기정			화양동	74-2호	231	
기정			화양동	75-1호	147	
기정			화양동	75-2호	186	
기정			화양동	75-3호	187	
기정			화양동	75-6호	105	
기정			화양동	75-7호	100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T	38,842.1	화양동	106호	83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06-1호	109	
기정			화양동	107호	251	
기정			화양동	107-1호	22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08호	192	
변경			화양동	107-1호	222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108호	192	•공동개발(지정) 폐지
기정			화양동	109-7호	99	
기정			화양동	109-8호	82	
변경			화양동	109-7호	9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09-8호	82	
기정			화양동	84-1호	132	
기정			화양동	84-2호	172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84-3호	116	
변경			화양동	84-2호	172	•공동개발(권장) 폐지
변경			화양동	84-3호	116	•공동개발(권장) 폐지
기정			화양동	86-1호	86	
기정			화양동	86-2호	76	
기정			화양동	86-3호	72	
기정			화양동	86-4호	7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87-2호	26	
기정			화양동	88호	18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89-2호	218	
			화양동	90-3호	218	
			화양동	90-4호	377	
변경			화양동	86-3호	7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86-4호	76	
변경			화양동	87-2호	2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88호	182	
			화양동	89-2호	218	
			화양동	90-3호	218	
			화양동	90-4호	377	
기정			화양동	94-1호	278	
기정			화양동	94-4호	16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4-7호	340	
			화양동	94-59호	70	
			화양동	94-82호	102	
기정			화양동	94-6호	324	
기정			화양동	94-11호	271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T	38,842.1	화양동	94-9호	241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4-10호	162	
			화양동	94-31호	63	
			화양동	94-60호	112	
			화양동	94-61호	241	
			화양동	94-75호	89	
변경			화양동	94-76호	8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4-9호	241	
			화양동	94-10호	162	
			화양동	94-31호	63	
변경			화양동	94-75호	8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4-76호	89	
기정			화양동	94-60호	11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4-61호	241	
			화양동	94-12호	83	
기정			화양동	94-77호	17	
			화양동	96-1호	66	
기정			화양동	94-39호	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4-44호	89	
기정			화양동	94-78호	9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5-1호	146	
기정			화양동	95-5호	152	•공동개발(지정)
기정			화양동	95-3호	205	
기정			화양동	96-2호	165	
기정			화양동	97호	188	
기정			화양동	98-1호	299	
기정			화양동	99호	315	
기정			화양동	100호	207	
기정			화양동	101-1호	298	
기정			화양동	101-2호	185	
기정			화양동	101-3호	246	
			화양동	102-5호	12	•공동개발(지정)
기정			화양동	102-1호	165	•공동개발(지정)
기정			화양동	102-2호	13	
			화양동	102-4호	99	
변경			화양동	102-1호	165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02-2호	13	
			화양동	102-4호	99	
기정			화양동	102-3호	99	
기정			화양동	103-1호	146	
기정			화양동	103호	161	
기정			화양동	104호	331	
기정			화양동	105호	348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T	38,842.1	화양동	109-1호	99		
기정			화양동	109-2호	104		
기정			화양동	109-3호	111		
기정			화양동	109-4호	100		
			화양동	109-5호	83		
변경			화양동	109-4호	10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09-5호	83		
기정			화양동	110-11호	126		
기정			화양동	110-21호	175		
기정			화양동	110-22호	139		
기정			화양동	110-23호	112		
기정			화양동	110-48호	140		
			화양동	110-49호	146		
			화양동	110-8호	161		
			변경	화양동	110-48호	14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0-49호	146	
화양동				110-8호	161		
기정	U	7,017	화양동	29-22호	184	•29-22, 29-33 공동개발(지정) •29-33, 29-34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29-33호	208		
			화양동	29-34호	218		
변경			화양동	29-22호	184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29-33호	208		
			화양동	29-34호	218		
기정			화양동	29-29호	185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38-2호	53		
기정			화양동	29-26호	172		
기정			화양동	29-10호	360		
			화양동	29-25호	314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393-20호	40		
기정			화양동	29-24호	212		
기정			화양동	93-1호	28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4-15호	13		
			화양동	499-66호	20		
기정			화양동	93-2호	24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3-14호	31		
변경			화양동	93-2호	246	•공동개발(지정) 폐지	
변경			화양동	93-14호	31	•공동개발(지정) 폐지	
기정			화양동	111-41호	16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499-85호	28		
기정			화양동	111-42호	182		
기정			화양동	111-89호	601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U	7,017	화양동	93-3호	281	•공동개발(지정)
기정			화양동	93-4호	163	
변경			화양동	93-3호	281	
			화양동	93-4호	163	
기정			화양동	111-40호	11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499-117호	7	
변경			화양동	111-40호	116	
			화양동	499-117호	7	
기정			화양동	94-73호	49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94-74호	28	
			화양동	111-100호	156	
			화양동	111-43호	20	
			화양동	111-57호	40	
변경			화양동	94-73호	4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4-74호	28	
			화양동	111-100호	156	
			화양동	111-43호	20	
			화양동	111-57호	40	
기정			화양동	111-146호	20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1-168호	36	
			화양동	111-170호	13	
			화양동	111-88호	413	
			화양동	111-90호	3	
변경			화양동	111-258호	1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46호	20	
			화양동	111-168호	36	
			화양동	111-170호	13	
			화양동	111-88호	413	
기정			화양동	111-90호	3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1-258호	12	
			화양동	94-46호	20	
			화양동	94-45호	26	
			화양동	94-56호	199	
			화양동	94-40호	1	
			화양동	94-66호	1	
			화양동	94-25호	227	
			화양동	94-41호	63	
			화양동	94-52호	79	
화양동			94-47호	20		
화양동			94-24호	3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기정	U	7,017	화양동	94-73호	49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94-74호	28	
			화양동	111-100호	156	
			화양동	111-43호	20	
			화양동	111-57호	40	
변경			화양동	94-73호	4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4-74호	28	
			화양동	111-100호	156	
			화양동	111-43호	20	
			화양동	111-57호	40	
기정			화양동	111-146호	20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1-168호	36	
			화양동	111-170호	13	
			화양동	111-88호	413	
			화양동	111-90호	3	
변경			화양동	111-258호	12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111-146호	20	
			화양동	111-168호	36	
			화양동	111-170호	13	
			화양동	111-88호	413	
기정	화양동	111-90호	3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111-258호	12			
	화양동	94-46호	20			
	화양동	94-45호	26			
	화양동	94-56호	199			
	화양동	94-40호	1			
	화양동	94-66호	1			
	화양동	94-25호	227			
	화양동	94-41호	63			
	화양동	94-52호	79			
기정	화양동	94-47호	20	•94-13 필지분할 후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94-24호	3			
	화양동	94-23호	198			
	화양동	111-58호	159			
기정	화양동	94-20호	194	•공동개발(권장)		
	화양동	94-13호	256			
	화양동	39-2호	159			
	화양동	39-4호	86			
변경	화양동	92-2호	229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2-3호	104			
	화양동	39-2호	159			
변경	화양동	39-4호	8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2-2호	229			
	화양동	92-3호	104			
변경	화양동	94-46호	20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4-46호	20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동	위 치	면적(㎡)	
변경	U	7,017	화양동	94-45호	26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4-56호	199	
			화양동	94-40호	1	
			화양동	94-66호	1	
			화양동	94-25호	227	
			화양동	94-41호	63	
변경			화양동	94-52호	79	•94-13 필지분할 후 공동개발(지정)
			화양동	94-47호	20	
			화양동	94-24호	3	
			화양동	94-23호	198	
			화양동	111-58호	159	
			화양동	94-20호	194	
			화양동	94-13호	256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1) 불허용도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준주거 지역 (A)	간선 (A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1호의 단독주택 •제3,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25호의 발전시설중 발전소 •제28호의 장례식장 ※ 화양6특별계획구역에 한하여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불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1호의 단독주택(간선변에 한함)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간선변 : 주차장 제외 -이면부 : 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25호의 발전시설중 발전소 •제28호의 장례식장
	이면 (E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25호의 발전시설중 발전소 •제28호의 장례식장	※ 화양6특별계획구역에 한하여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불허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일반 상업 지역	간선 (A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3,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15호의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제외)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8호의 장례식장 ※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된 지역은 주거복합 불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15호의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제외)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8호의 장례식장
	이면 (E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15호의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제외)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8호의 장례식장 ※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된 지역은 주거복합 불허 주1)	

주 1) 용적률체계가 기준300%이하, 허용630%이하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 주거복합을 불허함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C)	이면 (E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관계법령에 따른 불허용도 재설정 및 도시미관 저해용도 설정	•관련법령에 따른 제한된 건축용도의 불필요한 명시 삭제 및 용도지역별 불허용도 분류 단순화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 유도 •이면주거지를 고려한 주거환경저해요소 불허 •특별계획구역 개발활성화 유도

(2) 권장용도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기정	변경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및 준주거지역 이면부 (H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먹자골목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H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전시장, 공연장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과 금융업소 (1층)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전시장, 공연장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과 금융업소 (1층) 제외)	세종대 인근지역
일반상업지역 (H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과 금융업소 (1층) 제외)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과 금융업소 (1층) 제외)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역세권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기정	변경	
일반상업지역 (H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단, 동·식물원제외) •제7호의 판매시설 •제9호의 의료시설 (단, 불허용도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단,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과 금융업소 (1층) 제외)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의 판매시설 •제9호의 의료시설 (단, 불허용도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단,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과 금융업소 (1층) 제외)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광나루로 능동로변
준주거지역 (H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관, 음악당, 전시장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과 금융업소 (1층)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관, 음악당, 전시장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과 금융업소 (1층) 제외)	특별계획구 역
준주거지역 (H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단, 동·식물원제외) •제9호의 의료시설 (단, 불허용도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과 금융업소 (1층)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9호의 의료시설 (단, 불허용도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과 금융업소 (1층) 제외)	
제3종 일반주거지역 (H8)	-	•1층 권장용도 - 비주거용도(준주택, 주차장 제외) - 6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 전층 권장용도는 건축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인 경우 준수된 것으로 봄

※ 1층 권장용도는 1층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인 경우 준수된 것으로 봄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용도지역별 허용가능한 권장용도 추가 지정 및 일반 주거지역내 1층 권장용도 신설	•관련 정책 및 가로특성을 반영한 권장용도의 추가 지정 •일반주거지역내 가로환경보호를 위해 1층이 전부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저층에 비주거용도 유도

(3) 건폐율 계획 결정 조서

구 분	건폐율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화양7 특별계획구역	30% 이하	자연경관지구내 건폐율 적용

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용도지역·지구내 건축제한 예외 적용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

(4) 용적률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이하	1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100% 이하	1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제1종전용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0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5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230% 이하	25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630% 이하	800% 이하	300% 이하	630% 이하	800% 이하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400% 이하	660% 이하	800% 이하	400% 이하	660% 이하	800% 이하	
기존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α : 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후 대지면적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 허용용적률은 본 지침에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 2002년 이후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은 관련법령 내에서 기정지침을 따른다.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시 용적률 및 용도제한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을 적용한다.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200% → 230%로 기준용적률 상향	• 구역외 지역과의 형평성 제고 및 허용용적률 달성이 가능 토록 기준용적률 상향

■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 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시 개정된 지침 준수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구분	용적률 적용기준	비고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 주거복합 건축물 건축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기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alpha / \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beta - \alpha) / \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 다만,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를 감안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 계획 가능

※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포함)에서 인정한 경우 제외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공개공지 의무면적 이상 추가 확보시 용적률 완화

구 분	산 식	비 고
공개공지 의무면적 추가확보시	•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른 완화산식 적용 • $[1 + \{ \text{공개공지 면적} - (\text{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 \text{대지면적}] \times \text{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의 1.2배 이하
공개공지 의무면적 추가확보 후 지하철출입구, 환기구 등 지장물 설치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립지침에 따른 완화 산식 적용 • 건축법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이내	

※ 용도지역 변경(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치구 포함)에서 인정하는 경우 적용 가능

(5)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경	비고
일반 상업지역	간선부	광나루로, 능동로변	•최고높이 90m이하	•최고높이 90m이하	
		동일로변	•최고높이 70m이하	•최고높이 70m이하	
		전후면 통합개발시	•최고높이 100m이하	•최고높이 100m이하	
	이면부		•최고높이 60~48m이하	•최고높이 60~48m이하	
준주거 지역	간선부	광나루로, 능동로변	•최고높이 70m이하	•최고높이 70m이하	
	특별 계획구역	화양1,2특별계획구역	•최고높이 80m이하	•최고높이 80m이하	
		화양5특별계획구역	•최고높이 55m이하	•최고높이 55m이하	
		화양6특별계획구역	•최고높이 40m이하	•최고높이 40m이하	
	이면부		•최고높이 40m이하	•최고높이 40m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화양8특별계획구역		•최고높이 50m이하	•삭제	
	이면부		•최고높이 30m이하	•최고높이 30m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화양7특별계획구역		•최고높이 12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 건축법 제60조에 의한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 도로사선 배제

※ 화양동 110-34번지 일대 서울시기념물 제2호 화양동 느티나무 문화재 주변 인근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에서 50m 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높이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 지표면에서 7.5m를 기준으로 하여 양각 27°선 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 2002년 이후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은 관련법령 내에서 기정지침을 따른다.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화양8특별계획구역의 높이기준 삭제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높이계획 변경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배치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고
		기정	변경	
필지분할선	간선도로변	3m	3m	광나루로 차로확폭구간만 유지
	이면도로변	1 ~ 4m	-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3m ~ 10m	3m ~ 10m	
	이면도로변	1m ~ 7.5m	0.5m ~ 7.5m	건축한계선 재조정
벽면한계선	동일로변	3m	-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간선가로변	4m	-	주차통로변 벽면한계선 폐지
건축지정선	광진광장변	2m	2m	

■ 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필지분할선	광나루로 차로확폭구간을 제외한 구간 및 동일로, 능동로변 필지분할선 3m 폐지	•교통체계 및 용량, 연계성 및 실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간선변내 과도한 필지분할선 일부 폐지
	이면부 필지분할선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이면부 과도한 필지분할선에 따른 주민부담 및 실현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지분할선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 재조정
건축한계선	이면부 주거지역내 6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및 일부 조정	•주거지역내 접도조건 및 가로연속성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지정된 건축한계선 재조정
벽면한계선	동일로변 벽면한계선 →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로 저층 벽면한계선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능동로변 벽면한계선 폐지	•주차통로에 지정된 건축선으로 능동로변 주차출입구 변경에 따라 벽면한계선 폐지

2)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적용지역	기정	변경
건축물 형태	광나루로변, 동일로 등 간선변, 특별계획구역	•1층 전면부 투시형처리 70% 이상(권장) •1층 층고제한 4.5m이상	•1층 전면부 투시형처리 70% 이상(권장) •1층 층고제한 4.5m이상
	군자로변	-	•필로티구간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의 40% 이상인 형태 권장 •단, 전면부 필로티 노출 지양을 위해 1층 부 시설 전면부 배치 권장

※ 건축물의 형태 중 벽면, 외벽, 외관, 1층 서터, 1층 바다 마감높이와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운영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군자로변 1층 건축물형태 신설	•군자로변 가로환경개선을 위해 과도한 필로티 설치 방지

(7)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1) 대지내 공지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전면공지		•1~10m	•1~10m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에 의한 대지내공지
쌈지형공지		•7개소	•3개소	주요 보행결절점
공개공지	쌈지형	•6개소	•6개소	
	침상형	•2개소	•4개소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쌈지형공지 7개소 → 3개소	•능동로변으로 과도하게 지정되어 규제에 적용될 수 있음을 감안,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대지에 한하여 지정 최소화
•공개공지(침상형) 2개 추가 지정	•화양삼거리 교차로 부근 휴게공간 및 지하연결통로 조성 등을 위한 공개공지(침상형) 위치 추가지정

2) 대지내 통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공공보행통로	•3개소	•2개소	
보차혼용통로	•11개소	•12개소	1개소 폐지, 2개소 신설
입체보행통로	•3개소	•3개소	
보행자전용도로	•1개소	-	폐지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공공보행통로	1개소 폐지	•짧은 구간내 불필요하게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폐지
보차혼용통로	1개소 폐지, 2개소 신설	•지형(경사) 고려시 보차혼용통로 조성이 불가한 구간 폐지 및 건축한계선에 의해 통로로 조성이 필요한 구간 신설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현황상 보행자전용도로가 불필요한 구간이며, 제한적 금지 및 시간제 허용에 따른 비효율적 이용으로 폐지

(8)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광나루로변 •능동로변	•광나루로변 •능동로변 •동일로변	•일부구간 차량출입 허용
주차출입구	•13개소 (임시허용 2개소 포함)	•4개소 (임시허용 2개소 포함)	
공동주차 출입구	-	•4개소	•신설
주차통로	•1개소(폭4m)	-	

주1) 화양동 111-117호는 화양4특별계획구역 내 북측 6m 도로개설 전까지 간선도로(능동로)에서 출입을 한시적 허용
 주2) 화양동 111-199 ~ 111-179호간 보차혼용통로는 이면도로 여건이 개선(소로3-7호선 유효폭원 6m이상 확보 또는 화양3특별계획구역 이면부 전면공지 2m 차도형으로 조성 등) 될 때까지 간선도로(능동로)에서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동일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추가지정 및 일부구간 차량출입 허용	•조서상 누락된 동일로변 추가지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에 따른 막다른 도로 형성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도로에서의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주차출입구 9개 폐지	•공동개발 완료에 따라 불필요한 주차출입구 폐지 •간선변 차량출입 최소화
•공동주차출입구 신설 및 주차통로 삭제	•공동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주차통로 폐지, 공동주차출입구 신설 •간선변 차량출입 최소화를 위한 공동주차출입구 신설

(9) 인센티브 운영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적률 인센티브 (기정)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만 인정되며,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전층권장 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면적(전용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특정층 권장의 경우는 해당층 바닥면적(공용면적 제외)의 50%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6)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필지 수를 변경하여 공동개발시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7) 미관지구내에서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미관지구 이후부터 후퇴한 건축한계선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8) 조정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 9)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시설을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공개공지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단,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공개공지 면적에서는 제외)

내 용			항 목	완화기준	비 고		
규제형 인센티브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일반상업지역) 2필지 : 0.05 3필지 : 0.1 4필지이상 : 0.15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일반상업지역) 피로티구조 : a=1.25 개방형구조 : a=2.5 (준주거지역) 피로티구조 : a=0.25 개방형구조 : a=0.5			
		대지내 통로		(보차혼용도로/ 공공보행도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일반주거지역) 피로티구조 : a=0.75 개방형구조 : a=1.5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 × 2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일반상업지역) 2필지 : 0.05 3필지 : 0.1 4필지이상 : 0.15			
유도형 인센티브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 × 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일반상업지역) 2필지 : 0.05 3필지 : 0.1 4필지이상 : 0.15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 a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침상형구조 : a=2.5~3 피로티구조 : a=1.25~1.5 개방형구조 : a=2.5~3			
		쌈지형, 침상형 공지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피로티구조 : a=1.5~2 개방형구조 : a=3~4			
				(일반상업지역 역세권) 침상형구조 : a=2			
				(준주거지역 간선부) 피로티구조 : a=0.3 개방형구조 : a=0.6			
				(준주거지역 이면부, 역세권) 침상형구조 : a=1 피로티구조 : a=0.4~0.5 개방형구조 : a=0.8~1			
				(일반주거지역) 피로티구조 : a=0.25 개방형구조 : a=0.5			
	건축물 용도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a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a=0.35~0.4 이면부 :a=0.4~0.5 역세권 :a=0.4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해당층 바닥면적) × 0.3	(준주거지역) 간선부 :a=0.15 이면부 :a=0.2~0.25 역세권 :a=0.8			
	도시경관 개선	지하철 및 지중화 시설 건축물내 설치	기준용적률 × 0.3~0.8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건축물 등 형태	기준용적률 × 0.05 ~ 0.15	지하철출입구, 연결통로, 환기구시설을 건물내부 또는 대지 내 설치시			
주차계획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 0.2	1층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건물내 공공시설 제공시	건물내 공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3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 등)으로 제공 할 경우				

항 목		내 용	완화기준	비 고													
의무규제 인센티브	환경친화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용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기준용적률 × 0.05														
		중수도 설치	기준용적률 × 0.04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5 또는 대지 면적 × 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 × 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에너지 절감율</th><th>에너지성능지표</th><th>친환경건축물인증</th><th>인센티브량</th></tr> </thead> <tbody> <tr> <td>1등급</td><td>33.5% 이상</td><td>81점 이상</td><td>85점 이상</td><td>기준용적률 × 0.08이내</td></tr> <tr> <td>2등급</td><td>23.5~33.5%미만</td><td>74~81점 미만</td><td>75~85점 미만</td><td>기준용적률 × 0.05이내</td></tr> </tbody> </table>		구분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 × 0.08이내	2등급	23.5~33.5%미만	74~81점 미만
구분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 × 0.08이내													
2등급	23.5~33.5%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 × 0.05이내													

■ 일반상업지역 역세권

도면번호	위치	계획목표	항목		완화기준	비고
3특별계획 구역	화양동 111-72호 일대	•적정개발규모 유도 •지구중심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보행환경 개선(1층부 전면부 입면처리) 및 휴게공간 조성	유도형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4	주차장을 제외한 총면적의 40%이상 준수시 인정
				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2.0	위치준수
				지하철 및 지중화시설 건축물내 설치	기준용적률 × 0.3	지하철출입구, 환기구시설을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 × 0.2	1층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규제형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5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제공면적 제외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도면번호	위치	계획목표	항목		완화기준	비고
4특별계획 구역	화양동 111-13호 일대	•적정개발규모 유도 •지구중심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보행환경 개선(1층부 전면부 입면처리) 및 휴게공간 조성	유도형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4	주차장을 제외한 총면적의 30%이상 준수시 인정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0	위치준수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 × 0.3	1층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규제형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5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제공면적 제외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도면 번호	위치	계획목표	항목		완화기준	비고
H-③	화양동 111-15호 일대	•적정개발규모 유도 •지구중심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보행환경 개선(1층부 전면부 입면처리) 및 휴게공간 조성	유도형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1 4필지이상 : 0.15
I-①	화양동 192번지 일대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0.4	주차장을 제외한 총면적의 30%이상 준수시 인정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 3.0	위치준수
J-②	화양동 111-114호 일대			지하철 및 지중화시설 건축물내 설치	기준용적률 ×0.8	지하철출입구, 환기구시설을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 × 0.3	1층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J-③	화양동 111-118호 일대		규제형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2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1 4필지이상 : 0.15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 2.5	미관지구내 건축 한계선 제공면적 제외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도면 번호	위치	계획목표	항목		완화기준	비고
K-①	화양동 118-5호 일대	•적정개발규모 유도 •지구중심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보행환경 개선(1층부 전면부 입면처리) 및 휴게공간 조성	유도형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1 4필지이상 : 0.15
K-②	화양동 116-1호 일대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0.35	주차장을 제외한 총면적의 30%이상 준수시 인정
N-①	화양동 18-32호 일대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 2.5	위치준수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 × 0.1	1층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Q-①	화양동 21-6호 일대		규제형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2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1 4필지이상 : 0.15
S-①	화양동 23-7호 일대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 2.5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제공면적 제외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목표	항목		완화기준	비고
J-①	화양동 111-36호 일대	•적정개발규모 유도	유도형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1 4필지이상 : 0.15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5	주차장을 제외한 총면적의 30%이상 준수시 인정
I-②	화양동 205번지 일대	•지구중심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휴게공간 조성	유도형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 4.0	위치준수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2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1 4필지이상 : 0.15
			규제형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 2.5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도면 번호	위치	계획목표	항목		완화기준	비고
K-③	화양동 119-5호 일대	•적정개발규모 유도 •지구중심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휴게공간 조성	유도형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 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1 4필지이상 : 0.15
L-①	화양동 114-5호 일대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div \text{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times 0.4$	주차장을 제외한 총면적의 30%이상 준수시 인정
N-②	화양동 18-12호 일대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3.0$	위치준수
			규제형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2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1 4필지이상 : 0.15
Q-②	화양동 21-26호 일대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2.5$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 준주거지역 역세권

도면번호	위치	계획목표	항목	완화기준	비고
6특별계획구역	능동 18-43호 일대	•지구중심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보행환경 개선(1층부 전면부 입면처리) 및 휴게공간 조성	유도형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총연면적) × 0.8 주차장을 제외한 총연면적의 40%이상 준수시 인정
				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0.8 위치준수
				지하철 및 지중화시설 건축물내 설치	기준용적률 × 0.8 지하철출입구, 환기구시설을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 × 0.3 1층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규제형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5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제공면적 제외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 준주거지역 간선부

도면번호	위치	계획목표	항목	완화기준	비고
A-①	군자동 355번지 일대	•적정개발규모 유도 •지구중심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보행환경 개선(1층부 전면부 입면처리) 및 휴게공간 조성	유도형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06 4필지 : 0.07 5필지 : 0.08 6필지 : 0.09 7필지이상 : 0.1
B-①	군자동 356-6호 일대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15 주차장을 제외한 총연면적의 30%이상 준수시 인정
D-① (2특별계획구역 포함)	군자동 360-20호 일대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0.6 위치준수
E-① (1특별계획구역)	군자동 503번지 일대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 × 0.05 1층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E-②	군자동 631-32호 일대		규제형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06 4필지 : 0.07 5필지 : 0.08 6필지 : 0.09 7필지이상 : 0.1
F	군자동 215번지 일대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5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제공면적 제외
5특별계획구역	화양동 527번지 일대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T-①	화양동 94-59호 일대				
U-①	화양동 111-88호 일대		의무형		

■ 준주거지역 이면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목표	항목		완화기준	비고
E-③	군자동 631-32호 일대	•적정개발규모 유도 •지구중심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휴게공간 조성	유도형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 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06 4필지 : 0.07 5필지 : 0.08 6필지 : 0.09 7필지이상 : 0.1
J-④	화양동 111-25호 일대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2	주차장을 제외한 총면적의 20%이상 준수시 인정
J-⑤	화양동 111-63호 일대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 0.8	위치준수
T-②	화양동 105번지 일대		규제형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2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06 4필지 : 0.07 5필지 : 0.08 6필지 : 0.09 7필지이상 : 0.1
U-②	화양동 111-89호 일대			건축한계선 (보차혼용도로/ 공공보행도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 0.5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도면 번호	위치	계획목표	항목		완화기준	비고
L-②	화양동 113-2호	•적정개발규모 유도 •지구중심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휴게공간 조성	유도형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 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06 4필지 : 0.07 5필지 : 0.08 6필지 : 0.09 7필지이상 : 0.1
S-②	화양동 23-1호 일대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25	주차장을 제외한 총면적의 20%이상 준수시 인정
M-①	화양동 132-6호 일대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0	위치준수
M-②	화양동 110-37호 일대		규제형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2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06 4필지 : 0.07 5필지 : 0.08 6필지 : 0.09 7필지이상 : 0.1
O	화양동 17-2호 일대					
P	화양동 19-1호 일대					
R	화양동 20-1호 일대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치	계획목표	항목		완화기준	비고
A-②	군자동 355-28호 일대	적정개발규모 유도 지구중심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휴게공간 조성	유도형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 0.5	위치준수
B-②	군자동 356-12호 일대		규제형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 1.5	
C	군자동 357-8호 일대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도면번호	위치	계획목표	항목		완화기준	비고
D-②	군자동 358-4 일대	적정개발규모 유도 지구중심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휴게공간 조성	유도형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 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06 4필지 : 0.07 5필지 : 0.08 6필지 : 0.09 7필지이상 : 0.1
T-③	화양동 67-2 일대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 0.5	위치준수
T-④	화양동 122 일대		규제형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2a	공동개발에 따른 적용계수(a) 2필지 : 0.05 3필지 : 0.06 4필지 : 0.07 5필지 : 0.08 6필지 : 0.09 7필지이상 : 0.1
8특별계획 구역	화양동 132-64 일대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 1.5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2)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친환경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공동개발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기 개발된 동일소유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건축협정시 공동개발 인센티브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건축협정을 체결한 필지수를 기준으로 계수를 산정한다. 단, 건축협정이 권장된 대지에 한하며, 간선변의 경우 이면부로의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5. 전층 권장용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1층 권장용도의 경우 1층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지상층 연면적(용적률)의 10% 이상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립시 주택규모, 임대대상, 임대료 등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대지 전체를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사업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7. 구분지상권 제공이란 건축물 내 일부 공간에 공연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용범위 등 대하여는 입안권자 등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8.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하여 지정고시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광나루로, 동일로, 능동로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
9.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10. 건축한계선 등 인센티브 적용부분 지하부의 자연지반 보존은 중복하여 계산할 수 있다.
11. 공동개발에 의해 적용되는 인센티브 유형이 둘 이상일 경우 전면도로폭이 넓은 도로에 면하거나 동일 도로에 면할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인센티브 유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건축물 내 공익시설이라 함은 캠퍼스타운연계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시 건축물 개방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층부(3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에 적용될 경우 중복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환경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 공급률 20%초과 : 기준용적률 x 0.12 · 공급률 20%이하 15%초과 : 기준용적률 x 0.10 · 공급률 15%이하 10%초과 : 기준용적률 x 0.08 · 공급률 10%이하 5%초과 : 기준용적률 x 0.06 · 공급률 5%이하 3%초과 : 기준용적률 x 0.04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 침투 시설 · 침투량(ton/hr)의 함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2	·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유형	계획방향
		기준	허용		
일반상업지역	60%	400%	660%	C1	•간선변 가로활성화 & 이면 차량출입 유도 - 공동개발, 공지 확보, 권장용도, 건축물형태
				C2	•이면부 개발규모 확대 및 권장용도 유도 - 공동개발, 공지 확보, 권장용도, 공익시설
	300%	630%		C3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별계획구역 개발 활성화 및 지하철 출입구 유도 - 지하철 출입구 건축물내 설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C4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별계획구역 개발 활성화 유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지 확보
				C5	•역세권 기능 강화 및 이면 차량출입 유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개발, 권장용도, 공익시설
				C6	•이면부 개발규모 확대 및 권장용도 유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개발, 권장용도
				C7	•이면부 개발규모 확대 및 공지 확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개발, 공지 확보
준주거지역	60%	300%	400%	S1	•이면부 개발규모 확대 및 권장용도 유도 - 공동개발, 권장용도, 공익시설
				S2	•이면부 개발규모 확대 및 공지 확보 - 공동개발, 공지 확보, 공익시설
		300%	360%	S3	•간선변 가로활성화 & 이면 차량출입 유도 - 공동개발, 공지 확보, 권장용도, 공익시설, 건축물형태
				S4	•역세권 기능 강화 및 학교와 연계 - 공동개발, 권장용도, 공익시설, 입체보행통로
				S5	•이면부 개발규모 확대 및 공지 확보 - 공동개발, 공지 확보, 공익시설, 건축물 형태
	50%	200%	330%	S6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별계획구역 개발 활성화 유도 - 공지 확보, 권장용도, 공익시설
		200%	300%		
	60%	100%	250%	S7	•역세권 기능 강화 및 지하철출입구 유도 - 지하철 출입구 건축물내 설치, 공익시설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230%	250%	R1	•가로환경 보호를 위해 6m 이상 도로변 1층 비주거 및 가로 활성화 유도 - 1층 권장용도, 공익시설, 건축물 형태
				R2	•이면부 개발규모 확대 - 공동개발, 공익시설

나)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일반상업지역(C1)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간선변(광나루로, 동일로)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400%/6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건축물 형태, 가로지장물 이전 설치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1)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alpha=0.15$ •3필지 $\alpha=0.18$ •4필지 이상 $\alpha=0.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및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개방형 $\alpha=1.5$ •침상형 $\alpha=1.5$ •필로티 $\alpha=0.7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 $\times 0.6$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15$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 $\times 0.1$	•1층 전면부 투시형 처 리 70% 이상 계획시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주1) 공동개발이라 함은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을 말하며, 공동개발로 이면부 주차출입 가능시 이면도로변 주차 출입구 설치

■ 일반상업지역(C2)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400%/6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가로지장물 이전 설치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1)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alpha=0.15$ •3필지 $\alpha=0.18$ •4필지 이상 $\alpha=0.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및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개방형 $\alpha=1.5$ •필로티 $\alpha=0.7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 $\times 0.6$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2$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주1) 공동개발이라 함은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을 말하며, 공동개발로 이면부 주차출입 가능시 이면도로변 주차 출입구 설치

■ 일반상업지역(C3)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화양3특별계획구역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630%	
인센티브 유도계획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하철출입구 이전 설치,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건축물 형태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및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개방형 $\alpha=2.0$ •침상형 $\alpha=2.0$ •필로티 $\alpha=1.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7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0.8	
	청년주거 공간지원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기준용적률×(제공면적/전체 연면적)×3.5	•지상층 연면적(용적률)의 10% 이상 조성시
	보행 개선	지하철출입구 설치	기준용적률×0.35	•건물 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0.05	•1층 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일반상업지역(C4)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화양4특별계획구역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630%	
인센티브 유도계획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건축물 형태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및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개방형 $\alpha=2.0$ •침상형 $\alpha=2.0$ •필로티 $\alpha=1.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0.8	
	청년주거 공간지원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기준용적률×(제공면적/전체 연면적)×3.5	•지상층 연면적(용적률)의 10% 이상 조성시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0.05	•1층 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일반상업지역(C5)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역세권(반경 250m이내)내 간선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630%		
인센티브 유도계획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개발,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가로지장물 이전, 공익시설, 건축물 형태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1)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alpha=0.15$ •3필지 $\alpha=0.2$ •4필지 이상 $\alpha=0.25$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및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개방형 $\alpha=1.0$ •침상형 $\alpha=1.0$ •필로티 $\alpha=0.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 $\times 0.5$	
	청년주거 공간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전체 연면적) $\times 3.5$	•지상층 연면적(용적률)의 10% 이상 조성시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1$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 $\times 0.05$	•1층 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연면적) $\times 3.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주1) 공동개발이라 함은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을 말하며, 공동개발로 이면부 주차출입 가능시 이면도로변 주차 출입구 설치

■ 일반상업지역(C6)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역세권(반경 250m이내)내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630%		
인센티브 유도계획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개발,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가로지장물 이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1)	기준용적률× α	•2필지 $\alpha=0.15$ •3필지 $\alpha=0.2$ •4필지 이상 $\alpha=0.25$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및 썬지형 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개방형 $\alpha=2.0$ •필로티 $\alpha=1.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0.8	
	청년주거 공간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기준용적률×(제공면적/전체 연면적)×3.5	•지상층 연면적(용적률)의 10% 이상 조성시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기준용적률×0.1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주1) 공동개발이라 함은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을 말하며, 공동개발로 이면부 주차출입 가능시 이면도로변 주차 출입구 설치

■ 일반상업지역(C7)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역세권(반경 250m이내)내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630%	
인센티브 유도계획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개발,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가로지장물 이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 획 유 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1)	기준용적률× α	•2필지 $\alpha=0.15$ •3필지 $\alpha=0.2$ •4필지 이상 $\alpha=0.25$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0.8	
	청년주거 공간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기준용적률×(제공면적/전체 연면적)×3.5	•지상층 연면적(용적률)의 10% 이상 조성시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기준용적률×0.1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주1) 공동개발이라 함은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을 말하며, 공동개발로 이면부 주차출입 가능시 이면도로변 주차 출입구 설치

■ 준주거지역(S1)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먹자골목 및 군자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40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가로지장물 이전, 공익시설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1)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alpha=0.05$ •3필지 $\alpha=0.1$ •4필지 이상 $\alpha=0.15$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및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 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개방형 $\alpha=1.0$ •필로티 $\alpha=0.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 의무면적/대지면적)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 $\times 0.4$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06$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연면적) $\times 1.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주1) 공동개발이라 함은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을 말하며, 공동개발로 이면부 주차출입 가능시 이면도로변 주차 출입구 설치

■ 준주거지역(S2)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40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가로지장물 이전, 공익시설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1)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alpha=0.15$ •3필지 $\alpha=0.2$ •4필지 이상 $\alpha=0.25$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 의무면적/대지면적)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 $\times 0.7$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06$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연면적) $\times 1.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주1) 공동개발이라 함은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을 말하며, 공동개발로 이면부 주차출입 가능시 이면도로변 주차 출입구 설치

■ 준주거지역(S3)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광나루로, 동일로, 능동로)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가로지장물 이전, 건축물형태, 공익시설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1)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alpha=0.05$ •3필지 $\alpha=0.1$ •4필지 이상 $\alpha=0.15$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및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개방형 $\alpha=0.4$ •필로티 $\alpha=0.2$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0.3$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 $\times 0.3$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04$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 $\times 0.03$ •1층 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연면적)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주1) 공동개발이라 함은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을 말하며, 공동개발로 이면부 주차출입 가능시 이면도로변 주차 출입구 설치

■ 준주거지역(S4)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역세권(반경 250m이내)내 간선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건축물 형태, 공익시설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1)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이상 $\alpha=0.05$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0.3$
		입체보행통로	기준용적률 $\times 0.03$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 $\times 0.2$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 $\times 0.03$ •1층 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연면적)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주1) 공동개발이라 함은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을 말하며, 공동개발로 이면부 주차출입 가능시 이면도로변 주차 출입구 설치

■ 준주거지역(S5)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가로지장물 이전, 공익시설, 건축물 형태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1)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alpha=0.1$ •3필지 $\alpha=0.15$ •4필지 이상 $\alpha=0.2$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0.3$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 $\times 0.2$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04$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연면적)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 $\times 0.02$ •필로티 구간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의 40% 이상(군자로변에 한함)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주1) 공동개발이라 함은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을 말하며, 공동개발로 이면부 주차출입 가능시 이면도로변 주차 출입구 설치

■ 준주거지역(S6)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화양1,2,5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00%/330%, 200%/300%	
인센티브 유도계획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건축물형태, 공익시설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및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개방형 $\alpha=1.5$ •침상형 $\alpha=1.5$ •필로티 $\alpha=0.7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의무면적/대지면적)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 $\times 0.5$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 $\times 0.05$ •1층 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연면적) $\times 3.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준주거지역(S7)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화양6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100%/250%		
인센티브 유도계획		•지하철출입구 이전 설치, 대지내공지, 건축물용도, 공익시설, 건축물형태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및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개방형 $\alpha=4.0$ •침상형 $\alpha=4.0$ •필로티 $\alpha=2.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3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 연면적)	
	보행 개선	지하철출입구설 치	기준용적률×0.5	•건물 내부 또는 대지내 설 치시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0.1	•1층 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시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4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제3종일반주거지역(R1)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			•6m 이상 도로변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30%/25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대지내공지, 1층 권장용도, 가로시설물 이전 설치, 건축물 형태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1)	기준용적률× α	•2필지 $\alpha=0.04$ •3필지 $\alpha=0.08$ •4필지 이상 $\alpha=0.12$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2	
	건축물 용도	1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1층 바닥면적)×0.05	•6m 이상 도로변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기준용적률×0.02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0.5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0.02	•필로티 구간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의 40% 이상(군자로변에 한함)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주1) 공동개발이라 함은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을 말하며, 공동개발로 이면부 주차출입 가능시 이면도로변 주차 출입구 설치

■ 제3종일반주거지역(R2)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			•이면부(6m 이상 도로변 제외)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30%/25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대지내공지, 가로시설물 이전 설치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 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1)	기준용적률× α	•2필지 $\alpha=0.04$ •3필지 $\alpha=0.08$ •4필지 이상 $\alpha=0.12$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3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기준용적률×0.03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0.6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주1) 공동개발이라 함은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을 말하며, 공동개발로 이면부 주차출입 가능시 이면도로변 주차 출입구 설치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화양1특별계획구역	군자동 361-1호 일대	5,374	-	5,374	
기정	②	화양2특별계획구역	군자동 360-20호 일대	4,184	-	4,184	
기정	③	화양3특별계획구역	화양동 111-72호 일대	1,674	-	1,674	
기정	④	화양4특별계획구역	화양동 111-85호 일대	2,532	-	2,532	
기정	⑤	화양5특별계획구역	화양동 227번지 일대	3,472.3	-	3,472.3	
기정	⑥	화양6특별계획구역	능동 18-43호 일대	15,937	-	15,937	
기정	⑦	화양7특별계획구역	능동 18-41호 일대	3,966	-	3,966	
폐지	-	화양8특별계획구역	화양동 131번지 일대	10,135	감) 10,135	-	구역 해제

■ 변경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폐지	화양8특별계획구역	화양동 131번지 일대	10,135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해제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 화양1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세부개발계획 서고시 제2005-52호(2005.2.24) 광진구고시 제2005-31호(2005.5.26)		
위치		•군자동 361-1호 일대	•군자동 361-1호 일대		
면적		•5,341.3㎡	•5,374㎡	측량결과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발전소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발전소		
		권장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판매 및 영업시설(소매시장)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용 적 률	기준	•200% 이하	•200% 이하	
		허용	•333% 이하	•333% 이하	
		상한	•400% 이하	•4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80m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	
	배 치	건축 한계선	•광나루로변 : 13m •이면도로변(서측) : 8m •이면도로변(북측) : 5m	•광나루로변 : 10m •면목동길변 : 5m •북측 이면도로변 : 2m •동측 인접대지경계부 : 6m	
필지 분할선		-			
교통처리계획		•광나루로, 면목동길 차량출입불허 구간 지정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광나루로변 : 10m •이면도로변(서측) : 5m •이면도로변(북측) : 2m	•광나루로변 : 10m •면목동길변 : 5m •북측 이면도로변 : 2m •동측 인접대지경계부 : 6m(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전면 공개공지(최소폭10m) 설치	•광나루로, 면목동길 결절부 109.98㎡ (침상형 쌈지공원)		
	공공보행통로	•동측 인접대지경계부 확보	•남측 광나루로와 북측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6m 확보 (동측인접대지부)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구역내 도로·공원 및 공공공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면적 : 12.6%이상 (지하보 도 설치-침상형 공개공지, 육교를 지 하보도로 변경 시설) － 측면 및 이면도로 확장	－ 기부채납율 : 12.7% － 공공시설(도로)면적 : 683㎡		

■ 화양2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세부개발계획 서고시 제2003-396호(2003.12.10) 광진구고시 제2007-43호(2007.12.6) 광진구고시 제2008-3호(2008.1.24)		
위치		•군자동 360-20호 일대	•군자동 360-20호 일대		
면적		•4,183.4㎡	•4,184㎡	측량 결과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발전소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발전소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비율 80%이하)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용 적 률	기준	•200% 이하	•200% 이하	
		허용	•333% 이하	•333% 이하	
		상한	•400% 이하	•4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80m이하	•최고높이 80m이하		
	배 치	건축 한계선	•광나루로변 : 13m •면목동길변 : 6m •이면도로변(북측) : 10m •이면도로변(서측) : 1m	•광나루로변 : 10m •동측도로변 : 3m •이면도로변(북측) : 2m •이면도로변(서측) : 1m	
필지 분할선		-	-		
교통처리계획		•광나루로, 면목동길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광나루로, 동측도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광나루로변 : 10m •면목동길변 : 3m •이면도로변(북측) : 2m •이면도로변(서측) : 1m	•광나루로변 : 10m •동측도로변 : 3m •이면도로변(북측) : 2m •이면도로변(서측) : 1m		
	공개공지	•전면 공개공지(최소폭10m) 설치	•침상형 공개공지 조성(119.6㎡)		
	보행동선	•서측 보차혼용통로 조성	•서측 보차혼용통로 6m 설치(56.4㎡) •서측 부지경계 부분에 남북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4m 설치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구역내 도로·공원 및 공공공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면적 : 15%이상 (지하보도 설치-침상형 공개공지) - 이면도로 설치 8m - 측면 및 전면도로 확장 3m	•구역내 도로·공원 및 공공공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면적 : 18.81%(787㎡)		

■ 화양3 특별계획구역(변경)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화양동 111-72호 일대		
면적		•1,674㎡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불허용도 A2 ※ 주거복합 불허	•불허용도 B ※ 주거복합 허용	
	권장용도	•권장용도 H4		
	건폐율	•60% 이하		
	용 적 률	기준	•300% 이하	
		허용	•63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90m 이하	
	배 치	건축 한계선	•광나루로 대로 2-25 : 3m •능동로 대로 1-45 : 3m •소로 3-7 : 2m	남측 성당 부지내 보차혼용통로 불규칙형태 조정
		필지 분할선	•광나루로 대로 2-25 : 3m	•광나루로 대로 2-25 : 3m
	형 태		•1층 전면부 투시형 입면처리 70% 이상 (유도형 인센티브 권장사항) •1층 층고제한 4.5m 이상	
교통처리계획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광나루로 대로 2-25 : 3m •능동로 대로 1-45 : 3m •소로 3-7 : 2m	•광나루로 대로 2-25 : 3m •능동로 대로 1-45 : 3m •소로 3-7 : 2m •남측 : 0.5~3m	
	공개공지	•위치 권장(침상형 공개공지)		
	기 타	•지하철과 연계개발		
청년주거공간지원1)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설치 권장 - 인근 대학생 거주공간으로 활 용 -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구역내 도로·공원 및 공공공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 •조성후 기부채납 •기부채납면적 : 20%이상 •지하철 출입구 이설등 포함	•구역내 도로 및 건축물내 공공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 •조성후 기부채납 (ex : 캠퍼스타운연계시설 등) •기부채납면적 : 20%이상 •지하철 출입구 이설등 포함	

주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립시 주택규모, 임대대상 및 임대료 등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한다.

주2) 건축물내 공공시설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구 관련부서 및 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구체적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전체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화양4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세부개발계획 서고시 제2018-364호(2018.11.8)	
위치		•화양동 111-85호 일대	•화양동 111-85호 일대	
면적		•2,532㎡	•2,53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의료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 주거복합 불허	•좌동	
	권장용도	•문화및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불허용도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금융업소(1층) 제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좌동	
	건폐율	•60% 이하	•좌동	
	용적률	기준	•300% 이하	
		허용	•63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90m이하	
	배치	건축 한계선	•광나루로변 : 3m •소로 3-2 : 2m •소로 3-3 : 2m •북측 : 1m	•좌동 보도 조성
		필지 분할선	•소로 3-2 : 2m •소로 3-3 : 도시계획시설 도로 폭 6m 확보 •북측 : 6m	•좌동 도시 계획 도로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세부개발계획 서고시 제2018-364호(2018.11.8)	
건축물의 형태		1층 전면부 투시형처리 70% 이상 (유도형 인센티브 권장사항) 1층 층고제한 4.5m 이상	- 지하1층~지상1층 전면도로변 전체 벽면적의 70% 이상 투시형 처리 - 지하1층~지상1층 층고제한 4.5m 이상 - 능동로변의 지상1층 벽면은 인접 건축물과 조화롭게 배치 - 저층부(지상3층이하)와 고층부의 입면은 입체적 분절 - 건축물의 입면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게 계획 - 능동로와 공개공지 연계한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하1층~지상1층을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할 수 있는 건축물 내 보행통로 설정 (폭2m, 유효높이 3m이상)	
기타사항	전면공지	- 능동로 대로 1-45 : 3m - 소로 3-2 : 2m - 소로 3-3 : 2m - 북측 : 1m	좌동	
	공개공지	- 위치권장 - 공개공지 위치 : 대지 남서측	- 공개공지 최소 폭 5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 높이는 6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공개공지-1은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능동로변 보도와 남측 소로3-2호선을 연계하는 250㎡이상 규모(가로 40m X 세로 5m)로 계획하며, 청년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미술장식품 설치 - 공개공지-2는 배후 주거지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북측 이면부 100㎡이상 규모(가로 14m X 세로 9m)로 계획 ※ 공개공지 면적은 개방형·필로티형 면적을 합한 면적임	
교통처리계획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간선변(능동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 차량진출입구 도로 중심선은 능동로변 차도로부터 15m이상 이격하여 설치 - 차량진출입구로 인한 보행동선 단절 최소화 및 보행안전을 위해 주변보도와 높이차이가 없도록 조성하고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구역내 도로·공원 및 공공공지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면적 : 20% 이상	- 기부채납 : 690㎡ (27.26%) - 도로 : 482㎡ - 구역외 기부채납 : 208㎡	

주1) 구역외 기부채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화양동 111-91, 111-225, 111-226, 111-227, 111-255 (일부) 총 5필지(208㎡)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 가능(구역외 기부채납에 따른 구역계 면적 증가 없음)

■ 화양5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세부개발계획 서고시 제2002-477호(2003.1.6) 광진구고시 제2004-69호(2004.12.20)		
위치		•화양동 227번지 일대	•화양동 227번지 일대		
면적		•3,580㎡	•3,472.3㎡	측량 결과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발전소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발전소		
		지정용도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적률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기준	•200% 이하	•200% 이하	
			허용	•300% 이하 (2003년6월30일 이전까지 350%이하)	•300% 이하 (2003년6월30일 이전까지 350% 이하)
	상한	•완화조건 이행에 따른 별도의 산식에 의하여 결정	•400% 이하 (2003년6월30일 이전까지 518.5% 이하)		
	높이	•최고높이 55m 이하	•최고높이 55m 이하		
	배치	건축 한계선	•광나루로 : 6m •이면도로변(남,동측) : 3m •이면도로변(서측) : 2m	•광나루로 : 3m •이면도로변(동측) : 3m •이면도로변(서측) : 2m	
필지 분할선		-			
교통처리계획		-	•이면도로(구역동측)에 주차진출입구 설치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광나루길 : 3m •이면도로변(남,동측) : 3m •이면도로변(서측) : 2m	•광나루길 : 3m •이면도로변(남,동측) : 3m •이면도로변(서측) : 2m		
	공개공지	•위치 지정	•1개소 설치(196.89㎡)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구역내 도로·공원 및 공공공지 등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기부채납면적 : 15% 이상 •이면도로 설치	•구역내 도로·공원 및 공공공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기부채납면적 : 19.41%(672.02㎡)		

■ 화양6 특별계획구역(변경)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능동 18-43호 일대		
면적		•15,937㎡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불허용도 A1	•불허용도 A	
	권장용도	•권장용도 H6		
	건폐율	•60% 이하		
	용 적 률	기준	•100% 이하	
		허용	•250% 이하	
		상한	•4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40m 이하 (10층 이하)		
	배 치	건축 한계선	•광나루로 대로 2-25 : 5m •능동로 대로 1-45 : 5m	
		필지 분할선	-	
	형 태	•1층 전면부 투시형 입면처리 70% 이상 (유도형 인센티브 권장사항) •1층 층고제한 4.5m 이상		
교통처리계획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광나루로 대로 2-25 : 5m •능동로 대로 1-45 : 5m		
	공개공지	•위치 권장 (침상형 공개공지)		
	기 타	•지하철과 연계개발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구역내 도로·공원 및 공공공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기부채납면적 : 15%이상 •지하철 출입구 이설 등 포함 •녹지율 20% 이상 확보(기존 우수 비오톱 유형의 훼손 최소화)	•구역내 도로·공원 및 공공공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기부채납면적 : 15%이상 •지하철 출입구 이설, 건축물내 공공시설 등 포함 •녹지율 20% 이상 확보(기존 우수 비오톱 유형의 훼손 최소화)	

■ 화양7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정	
위치		•능동 18-41호 일대	
면적		•3,966㎡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용 도	•청소년수련시설	
	건폐율	•30% 이하	
	용 적 률	기준 •200% 이하	
		허용 •200% 이하	
		상한 -	
	높 이	•최고높이 12m 이하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교통처리계획		-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공개공지	-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용도지역·지구내 건축제한 예외 적용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

5.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폐지 포함)
3. 공동개발 변경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4. 지정된 차량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5.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6.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7.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8.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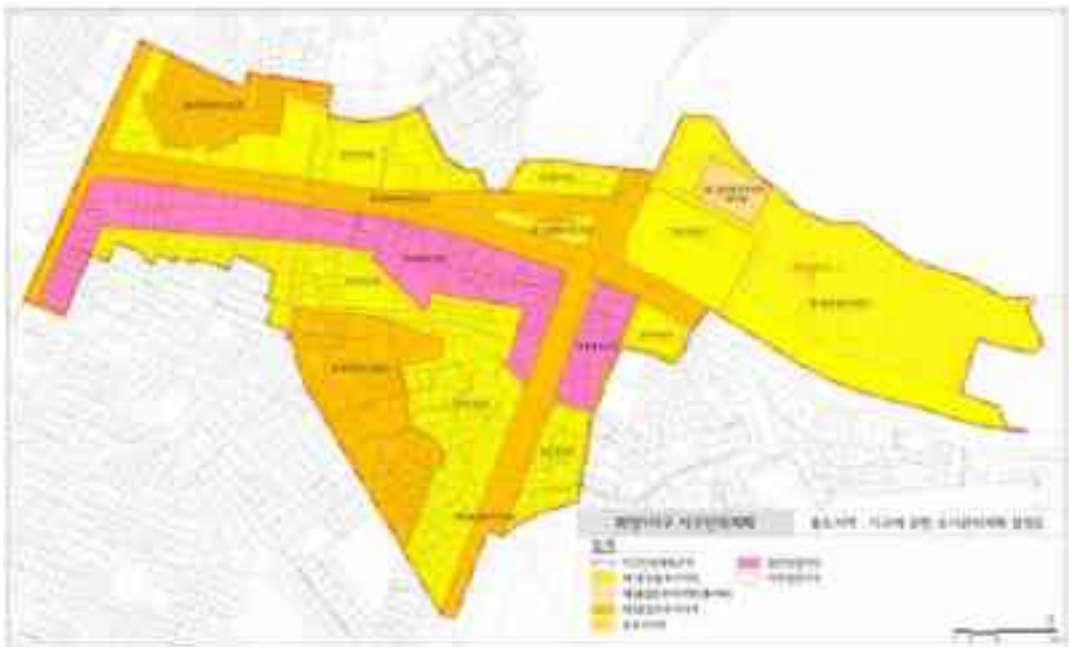
IV.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2133-8382)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 (☎450-1385)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화양1지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 화양1지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화양1지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화양1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화양1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4호

도시관리계획(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1996.8.2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03.0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0호(2011.03.24.)로 결정(변경) 고시된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19년 제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5.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신사동삼거리 일대의 교육특화가로 구상을 통한 가로활성화 유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소 및 공동개발 정비, 건축물 용도 차별화를 통해 생활권 기능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신사동 19번지 일대	88,000	-	88,00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 (1996.8.21)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88,000	-	88,000	100.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 (1996.8.21)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5	16,150 (1,544)	21,597	5	(528)	5,678	1	5,600 (98)	1,470	9	10,550 (918)	14,449
대로	2	10,550 (421)	10,525	-	-	-	-	-	-	2	10,550 (421)	10,525
중로	3	5,600 (255)	3,354	-	-	-	1	5,600 (98)	1,470	2	(157)	1,884
소로	10	(868)	7,718	5	(528)	5,678	-	-	-	5	(340)	2,040

주) ()는 구역내 연장이고, 면적은 대상지내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1,800 (168)	응암동	신사동	일반도로		'63.12.24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8,750 (253)	연희동	신도읍	일반도로		'66.06.21	
기정	중로	2	1	15~18	집산도로	5,600 (412)	갈현동	수색동	일반도로		'63.12.24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103	신사동 19-191대	신사동 19-60대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54	신사동 19-100대	신사동 19-166대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30	신사동 19-145대	신사동 19-176대	일반도로		'06.01.12	
기정	소로	1	2	11	국지도로	61	신사동 17-1대	신사동 17-17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1	국지도로	160	신사동 20-26대	신사동 20-7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1	국지도로	27	신사동 30-39대	신사동 30-37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	11	국지도로	150	신사동 40-6대	신사동 40-23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59	신사동 17-17대	신사동 17-13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65	신사동 29-1대	신사동 29-5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5	신사동 30-10대	신사동 30-6대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81	신사동 228-35대	신사동 235-13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50	신사동 19-109대	신사동 19-106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11	신사동 29-25대	신사동 29-124대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6	6	국지도로	111	신사동 29-25대	신사동 29-124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30	신사동 228-12대	신사동 41-19대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7	6	국지도로	130	신사동 228-12대	신사동 41-19대	일반도로			

주) ()는 구역 내 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6	-	•도로 폐지 - L=111m, B=6m	•도로개설에 따라 일부구간 급경사 발생으로 안전상 우려 •이면부 현황도로 및 건축선을 통한 접근 개선
소로3-7	-	•도로 폐지 - L=130m, B=6m	•저축건축물 다수 발생으로 도로개설의 효용성 저하 •현황도로 및 보차혼용통로 등을 통한 접근 개선

나) 공공문화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공공청사	은평구 신사동 29-2번지 일대	870.9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 구 번 호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준주거지역	1	2,395	2,395	
	2	12,340	12,340	
	3	6,692	6,692	
	4	8,359	8,939	도시계획도로 폐지
	5	16,416	16,425	도시계획도로 폐지
	6	5,198	5,198	
	7	5,550	5,550	

주) 가구 결정 계획의 변경은 없으나 가구 내 결정되었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2개소)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	•가구 면적 변경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2개소)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2) 단위 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준주거 지역	간선부	3,000이하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① 공동개발 계획이 수립된 필지 ② 기존 필지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 ③ 기 공동건축된 경우(하나의 대지로 이용)
	이면부	1,000이하	

주) 최대개발규모 기준은 변경이 없으나, 가구 및 획지계획(공동개발) 조정에 따른 도면표시 변경

3)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 기 정(공동개발 필지만 표현)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1	①	신사동 17-8대	667.7	◦공동개발 권장
		신사동 17-9대		
		신사동 17-11대		
		신사동 17-10대		
1	②	신사동 19-100대	5,703.0	◦신사동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신사동 19-101대		
		신사동 19-192대		
		신사동 19-193대		
		신사동 19-102대		
		신사동 19-103대		
		신사동 19-104대		
		신사동 19-105대		
		신사동 19-106대		
		신사동 19-107도		
		신사동 19-108대		
		신사동 19-109대		
		신사동 19-194대		
3		신사동 19-98대	3,062.0	◦공동개발 지정 : 19-98, 19-168, 19-169,19-170 ◦공동개발 권장 : 19-147, 19-170, 19-189
		신사동 19-147대		
		신사동 19-168대		
		신사동 19-169대		
		신사동 19-170대		
4		신사동 19-189대	994.4	◦공동개발 지정
		신사동 19-153대		
		신사동 19-161대		
		신사동 19-160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5	②	신사동 19-156대	945.0	◦공동개발 지정 : 19-156, 19-155, 19-157, 19-158 ◦공동개발 권장 : 19-157, 19-162
		신사동 19-155대		
		신사동 19-157대		
		신사동 19-158대		
		신사동 19-162대		
1	③	신사동 20-7대	769.9	◦공동개발 지정
		신사동 20-15대		
		신사동 20-14대		
		신사동 20-12대		
		신사동 20-13대		
2		신사동 20-8대	777.2	◦공동개발 지정
		신사동 20-20대		
3		신사동 20-29대	807.2	◦공동개발 지정
		신사동 20-10대		
		신사동 20-32대		
		신사동 20-30대		
4		신사동 20-11대	1,008.6	◦공동개발 지정
		신사동 20-4대		
5		신사동 20-3대	536.2	◦공동개발 지정
		신사동 20-24대		
6		신사동 20-1대	1,223.5	◦공동개발 지정
		신사동 20-26대		
1	④	신사동 228-35대	423.2	◦공동개발 지정, 구적면적
		신사동 228-31도		
		신사동 229-21대		
		신사동 228-30대		
2		신사동 228-10대	860.1	◦공동개발 지정, 구적면적
		신사동 228-22대		
		신사동 228-23대		
		신사동 228-24대		
		신사동 228-5대		
		신사동 228-8대		
		신사동 228-5대		
3		신사동 228-7대	473.0	◦공동개발 지정, 구적면적
		신사동 228-10대		
		신사동 228-11대		
4		신사동 41-21대	663.5	◦공동개발 지정, 구적면적
		신사동 41-1대		
5		신사동 41-25대	588.6	◦공동개발 지정, 구적면적
		신사동 41-26대		
		신사동 41-24대		
		신사동 41-16대		
6		신사동 41-17대	524.7	◦공동개발 지정, 구적면적
		신사동 41-19대		
		신사동 41-18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1	5	신사동 29-196대	1,028.7	◦공동개발 지정, 구적면적
		신사동 29-29대		
		신사동 29-28대		
		신사동 29-30대		
2		신사동 29-120대	790.4	◦공동개발 지정, 구적면적
		신사동 29-121대		
		신사동 29-123대		
		신사동 29-122대		
3		신사동 29-161도	553.7	◦공동개발 지정, 구적면적
		신사동 29-25대		
		신사동 29-147대		
		신사동 29-119도		
4		신사동 29-98대	1,134.9	◦공동개발 지정, 구적면적
		신사동 29-192대		
		신사동 29-169대		
		신사동 29-168대		
		신사동 29-160대		
		신사동 29-157대		
5		신사동 29-13대	574.9	◦공동개발 지정
		신사동 29-152대		
6		신사동 29-1대	741.1	◦공동개발 지정
		신사동 29-31대		
		신사동 29-33대		
		신사동 29-32대		
1	6	신사동 30-39대	714.7	◦공동개발 지정 : 30-39, 30-40 ◦공동개발 권장 : 30-36, 30-39
		신사동 30-40대		
		신사동 30-36대		
		신사동 30-37대		
1	7	신사동 40-1대	361.7	◦공동개발 지정
2		신사동 40-2잡	903.2	◦공동개발 지정 : 40-2, 40-27 ◦공동개발 권장 : 40-2, 40-27, 40-28
		신사동 40-27도		
		신사동 40-28대		
3		신사동 40-4대	333.8	◦공동개발 지정
		신사동 40-12대		
4		신사동 40-16대	314.4	◦공동개발 지정
		신사동 40-5대		
5		신사동 40-18대	705.4	◦공동개발 지정
		신사동 40-37대		
		신사동 40-6대		

■ 변 경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면적(㎡)	비고
		위치	면적(㎡)			
1	2,395	신사동	17-1	403.6		
			17-2	161.5		
			17-7	139.2	• 공동개발권장 : 17-7⊖17-8⊖17-9 ⊖17-10⊖17-11	
			17-8	143.8		
			17-11	157.0		
			17-9	180.8		
			17-10	186.1		
			17-16	177.3		
			17-17	176.2		
			17-18	44.3		도로/사유지
			17-3	126.6		
			17-4	130.9		
			17-5	130.6		
			17-6	80.0		도로/사유지
			17-12	116.4		
			17-13	165.3		
2	12,340	신사동	19-100	1,261.9		신사동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 구역
			19-101	746.2		
			19-102	149.4		
			19-103	139.7		
			19-104	144.2		
			19-105	144.6		
			19-106	434.7		
			19-107	236.8		
			19-108	164.3		
			19-109	164.3		
			19-192	858.0		
			19-193	1,094.6		
			19-194	164.3		

주1) 가구내 도로(사유지/공유지)는 가구면적에서 제외

주2) 가구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면적(㎡)	비고
		위치	면적(㎡)			
2	12,340	신사동	19-97	41.5	• 공동개발지정 : 19-97⊕19-170 ⊕19-98 ⊕19-169⊕19-168	도로/사유지
			19-98	168.8		
			19-168	415.1		
			19-169	966.3		
			19-170	184.3		
			19-147	1,140.8		
			19-149	332.8	• 공동개발권장 : 19-149⊖19-203 ⊖19-150 ⊖19-173	
			19-150	1,266.5		
			19-203	120.4		
			19-173	109.9		도로/사유지
			19-152	286.4		도로/사유지
			19-153	653.0	• 공동개발지정 : 19-153⊕19-160 ⊕19-161	
			19-160	212.9		
			19-161	128.5		
			19-162	1,019.8		
			19-189	264.5		
3	6,692	신사동	20-1	593.7	• 공동개발권장 : 20-1⊖20-26	
			20-26	629.8		
			20-3	203.3	• 공동개발권장 : 20-3⊖20-24	
			20-24	332.9		
			20-4	385.8	• 공동개발지정 : 20-4⊕20-11	
			20-11	622.8		
			20-23	89.3		도로/사유지
			20-25	91.6		도로/사유지
			20-28	48.8		도로/사유지
			20-2	169.6		
			20-5	203.0		
			20-6	124.6		

주1) 가구내 도로(사유지/공유지)는 가구면적에서 제외

주2) 가구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면적(㎡)	비고	
		위치	면적(㎡)				
3	6,692	신사동	20-7	154.0	• 공동개발지정 : 20-7⊕20-12⊕20-13 • 공동개발권장 : (20-7⊕20-12⊕20-13) ⊖20-14⊖20-15	769.9	
			20-12	134.9			
			20-13	134.9			
			20-14	178.5			
			20-15	167.6			
			20-8	568.9	• 공동개발지정 : 20-8⊕20-20	777.2	
			20-20	208.3			
			20-10	209.5	• 공동개발권장 : 20-10⊖20-32⊖20-29 ⊖20-30	807.2	
			20-29	151.7			
			20-30	158.3			
			20-32	287.7			
			20-16	394.8			
			20-17	141.5			도로/사유지
			20-18	106.1			
			20-19	208.3			
			20-21	146.4			
			20-22	216.5			
			20-28	141.0			도로/사유지
4	8,939	신사동	41-1	331.9	• 공동개발지정 : 41-1⊕41-21	663.5	필지분할 가능선
			41-21	331.6			
			41-5	43.2			
			228-5	413.0	• 공동개발지정 : 228-5⊕228-22⊕228-23 • 공동개발권장 : (228-5⊕228-22⊕228-23) ⊖228-24⊖228-8	1,026.0	
			228-8	159.0			
			228-22	182.0			
			228-23	136.0			
			228-24	136.0			
			228-7	363.0	• 공동개발권장 : 228-7⊖228-11⊖228-10	647.0	
			228-10	152.0			
			228-11	132.0			
			228-30	152.0	• 공동개발권장 : 228-35⊖228-30⊖229-21	509.0	
			228-35	225.0			
			229-21	132.0			

주1) 가구내 도로(사유지/공유지)는 가구면적에서 제외

주2) 가구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면적(㎡)	비고
		위치	면적(㎡)			
4	8,939	신사 동	228-31	129.3		도로/사유지
			235-13	159.0		
			226-1	165.0		
			226-2	136.0		
			226-3	301.0		
			226-5	383.0		
			226-7	13.0		도로/사유지
			227	185.0		
			227-1	129.0		
			227-2	132.0		
			227-3	116.0		도로/사유지
			227-4	169.0		
			228-12	153.0	• 공동개발권장 : 228-12⊕228-44	155.0
			228-44	2.0		
			228-13	159.0	• 공동개발권장 : 228-13⊕228-43	162.0
			228-43	3.0		
			228-14	149.0		도로/사유지
			228-15	132.0		
			228-16	142.0		
			228-17	126.0		
			228-18	126.0		
			228-19	139.0		
			228-25	132.0		
			228-26	120.0		
			228-27	116.0		
			228-28	116.0		
			228-29	139.0		
			228-31	49.7		도로/사유지
			228-40	2.0		
			229-12	281.0		
			229-13	40.0		도로/사유지
			229-14	136.0		

주1) 가구내 도로(사유지/공유지)는 가구면적에서 제외

주2) 가구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면적(㎡)	비고
		위치	면적(㎡)			
4	8,939	신사동	229-15	129.0		
			229-16	145.0		
			229-17	139.0		
			229-18	132.0		
			230-4	350.0		
			230-10	180.0		
			230-24	3.0		
			41-2	5.7		도로/사유지
			41-5	128.8		도로/공유지
			41-16	150.1	• 공동개발권장 : 41-16⊖41-24 ⊖41-25 ⊖41-26	640.7
			41-24	145.7		
			41-25	166.5		
			41-26	178.4		
			41-17	295.9	• 공동개발권장 : 41-17⊖41-19 ⊖41-18	591.8
			41-18	148.1		
			41-19	147.8		
			41-22	17.1		도로/사유지
5	16,425	신사동	29-25	187.1	• 공동개발권장 : 29-25⊖29-147	375.9
			29-147	188.8		
			29-28	338.8		
			29-29	249.9	• 공동개발지정 : 29-30⊕29-29⊕29-196	902.1
			29-30	469.1		
			29-196	183.1		
			29-119	113.6		도로/공유지
			29-120	229.8	• 공동개발지정 : 29-122⊕29-123 • 공동개발권장 : (29-122⊕29-123) ⊖29-120⊖29-121	932.5
			29-121	233.1		
			29-122	239.8		
			29-123	229.8	• 공동개발권장 : 29-23⊖29-150 ⊖29-149	772.5
			29-23	337.2		
			29-149	185.1		
			29-150	250.2		

주1) 가구내 도로(사유지/공유지)는 가구면적에서 제외

주2) 가구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면적(㎡)	비고
		위치	면적(㎡)			
5	16,425	신사동	29-98	340.8	• 공동개발권장 : 29-98⊖29-192 ⊖29-168 ⊖29-160⊖29-169⊖29-157	1,186.8
			29-157	168.6		
			29-160	177.2		
			29-168	265.6		
			29-169	169.3		
			29-192	65.3		
			29-153	507.1		
			29-1	309.4	• 공동개발권장 : 29-1⊖29-31 ⊖29-32 ⊖29-33	741.1
			29-31	145.8		
			29-32	145.1		
			29-33	140.8		
			29-9	74.7		
			29-10	102.8		
			29-11	325.1		
			29-13	340.5	• 공동개발권장 : 29-13⊖29-152	574.9
			29-152	234.4		
			29-177	334.9		
			29-178	334.9		
			29-186	391.6		
			29-26	323.3		
			29-27	178.9		
			29-114	182.8		
			29-115	220.8		
			29-116	329.6		
			29-117	187.1		
			29-118	224.8		
			29-119	134.0		도로/공유지
			29-124	157.9		
			29-175	161.7		
			29-176	161.7		
			29-187	178.8		
			29-188	3.0		도로/사유지
			29-189	48.1		도로/사유지

주1) 가구내 도로(사유지/공유지)는 가구면적에서 제외

주2) 가구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면적(㎡)	비고
		위치	면적(㎡)			
5	16,425	신 사동	29-190	158.0		
			29-22	112.1		
			29-109	162.3		
			29-151	258.8		
			29-154	268.4		
			29-155	151.7		
			29-161	257.2		도로/사유지
			29-162	156.4		
			29-163	181.8		
			29-165	155.0		
			29-166	169.9		
			29-191	114.0		
			29-2	870.9		공유지
			29-4	45.0		도로/사유지
			29-5	216.2		
			29-6	171.2		
			29-8	212.2		
			29-14	184.5		
			29-37	81.0		도로/사유지
			29-133	171.9		
			29-134	122.0		
			29-135	226.7		
			29-136	348.1		
			29-138	62.5		도로/사유지
			29-139	125.7		
			29-140	208.2		
			29-141	183.5		
			29-142	124.0		도로/사유지
			29-143	161.0		
			29-144	165.3		
			29-145	171.9		
			29-174	13.9		도로/사유지
			29-179	128.7		도로/사유지

주1) 가구내 도로(사유지/공유지)는 가구면적에서 제외

주2) 가구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면적(㎡)	비고
		위치	면적(㎡)			
5	16,425	신사동	29-180	273.1		
			29-182	200.7		
			29-183	259.5		
			29-185	135.5		
6	5,198	신사동	30-10	377.5		
			30-12	59.9		도로/공유지
			30-33	206.2		
			30-37	179.5	• 공동개발권장 : 30-37㉸30-39 ㉸30-40	547.8
			30-39	199.7		
			30-40	168.6		
			30-50	333.9		
			30-51	333.9		
			30-52	202.1		
			30-6	235.7		
			30-7	142.1		
			30-9	118.7		
			30-11	266.4		
			30-12	268.1		도로/공유지
			30-13	155.4		
			30-14	232.7		
			30-26	224.1		
			30-35	205.0		
			30-36	166.9		
			30-41	220.5		
			30-42	251.2		
			30-43	240.3		
			30-44	148.8		
			30-45	194.0		
			30-46	95.5		도로/사유지
			30-47	122.0		
			30-48	137.5		
			30-49	135.5		

주1) 가구내 도로(사유지/공유지)는 가구면적에서 제외

주2) 가구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면적(㎡)	비고	
		위치	면적(㎡)				
7	5,550	신 사 동	40-1	361.7	• 공동개발권장 : 40-2⊖40-27 ⊖40-28	903.2	도로/사유지
			40-2	560.0			
			40-27	123.0			
			40-28	220.2			
			40-4	166.9	• 공동개발권장 : 40-4⊖40-12	333.8	
			40-12	166.9			
			40-5	145.8	• 공동개발권장 : 40-5⊖40-16	314.4	
			40-16	168.6			
			40-6	241.1	• 공동개발권장 : 40-6⊖40-37 ⊖40-18	705.4	
			40-18	233.7			
			40-37	230.6			
			40-17	110.4			도로/사유지
			40-3	184.8			
			40-7	167.7			
			40-19	168.3			
			40-22	237.7			도로/공유지
			40-23	158.0			
			40-24	154.7			
			40-25	158.0			
			40-26	178.2			
			40-30	282.3			
			40-32	199.9			
			40-33	115.4			
			40-34	122.3			
			40-35	0.8			도로/사유지
			40-36	3.9			도로/사유지
			40-8	124.5			
			40-13	166.9			
			40-14	172.2			
			40-15	219.5			
			40-20	168.3			
			40-21	190.1			

주1) 가구내 도로(사유지/공유지)는 가구면적에서 제외

주2) 가구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구 분	불 허 용 도
A (상업·업무·복합)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단, 주상복합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B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C (주거)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참조

2. 불허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본 지침에서 불허하는 용도임

■ 변 경

구 분	불 허 용 도
A (간선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단, 주상복합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게임관련시설(청소년게임업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B (이면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게임관련시설(청소년게임업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참조

2. 불허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본 지침에서 불허하는 용도임

3. 불허A와 공동개발 이행시 불허A의 용도기준을 따름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교육 및 정주환경에 부적합한 불허용도 추가	●주거중심의 생활권으로써 교육 및 정주환경에 불부합한 불허용도 지정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구 분	권 장 용 도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4호의 업무시설

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참조

■ 변 경

구 분	권 장 용 도
1 (간선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등 주민진료 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요양병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2 (이면부1)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서적판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독서실, 학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도서관
3 (특화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서적판매), 공공업무시설, 주민공동이용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독서실, 공연장,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체육활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4 (이면부2)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식품·잡화판매), 판매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세탁·수선시설(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 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참조
 2. 권장2가 권장1 또는 권장3과 공동개발 이행시 각각 권장1, 권장3의 용도기준을 따름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특성화에 필요한 용도와 연계한 권장용도 지정 - 특화가로(교육) 관련 시설 권장	●은평로 교육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전략적 용도 제안을 위해 교육관련 용도를 권장용도로 지정
●이면부에 권장용도 추가 지정	●간선부 가로활성화 용도 지원 및 구역외 주거지의 생활 서비스 용도로 계획

3)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 조서

가)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준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 변 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준주거지역	유형1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유형2	70% 이하 특화가로구간 저층부(3층이하)적용

- 주) 1. 건폐율 완화기준
 - 권장용도(공공,교육관련) : 전층 연면적 20%이상 수용
 또는,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3층이하) 연면적 50%이상 확보(가로활성화 용도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 유형1이 유형2와 공동개발 이행시 유형2의 건폐율을 따름

■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유형-2(특화가로)의 건폐율 완화 (60% → 70%)	•은평로 특화거리(교육) 조성을 위해 특화가로의 건폐율 완화

나)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용도지역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 고
준주거 지역	상업·업무·복합	300% 이하	360% 이하	
	근린생활시설	300% 이하	36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주거	300% 이하	36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 변 경

용도지역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 고
준주거 지역	유형 1	300% 이하	360% 이하	상한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유형 2	300% 이하	330% 이하	

- 주)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 및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 주거부분 :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 용적률의 10%이상(지상부 설치)
 2. 상한용적률 = 허용 or 기준용적률 X (1+1.3 × 가중치_{상토지} + 0.7×α_{원급·건축물})
 3. 유형2가 유형1과 공동개발 이행시 유형1의 용적률을 따름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

1.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1991. 5. 11 이후)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만큼 허용

구 분	내 용	비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alpha/\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beta - \alpha)/\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2.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함. 다만, 입지
 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를 감안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 계획 가능
 ※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 용적률 10%이상 설치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다) 용적률 완화 항목 및 내용

■ 기 정

내 용			항 목	완화기준	비 고
공동개발	선택적 공동개발	준 수 시		기준용적률 × 0.5a	• 2필지 : a=0.1 • 3~4필지 : a=0.15 • 5필지 이상 : a=0.2
	공동개발 지정/권장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div \text{건축연면적}) \times a$	• 권장용도는 건축연면적에 20% 이상 인정 - a = 0.2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1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2
	쌈지형, 침상형 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1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1.2$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보차혼용통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	
환경 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3$	•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준수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 구체적인 설치방안이 있는 경우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서울시기준 준수시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자연지반보존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2$	
주차 및 차량 등선	공동주차도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 × 0.2	• 지정시 적용

- 주) 1. 단, 경관지구가 적용된 대지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부분을 제외한다.
2.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확보하여야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3. 권장용도 및 연면적에 대한 면적 산정기준은 순수 당해 용도(전용면적)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옥상녹화는 전체지붕, 옥상 바닥 유효면적의 50% 이상, 최소 45㎡ 이상 녹화하여야한다. 이 때 옥상 바닥 유효면적이란 옥상 설비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5. 자연지반 보존은 관련법규에 의해 확보하여야하는 면적을 제외한 전체 바닥면적의 50%이상, 최소 45㎡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녹색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10% 이상이 녹색주차장으로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단, 지상주차장에 한함)

■ 변 경

○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방향

1. 용적률 인센티브는 크게 친환경, 계획유도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친환경 계획 준수시 (30%이상)	유도 및 규제항목 준수시 (70%이내)	공동개발(특별지정)시 공공시설 또는 부지 제공시

2.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 중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100분의 30이상, 계획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고 100분의 30이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불가. 반면, 친환경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하다.

단, 연면적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100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하다.

주) 소규모 건축물 기준 500㎡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사업계획 승인대상 기준임

○ 공통사항(친환경 인센티브)

완 화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환경 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기준용적률 x 0.06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X 0.4이내	
		우수	기준용적률 x 0.04		
		우량	기준용적률 x 0.02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 x 0.04		
		2등급	기준용적률 x 0.03		
		3등급	기준용적률 x 0.02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1등급	기준용적률 x 0.06		
		2등급	기준용적률 x 0.05		
		3등급	기준용적률 x 0.04		
		4등급	기준용적률 x 0.03		
		5등급	기준용적률 x 0.02		
	중수도 시설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4		
	빗물관리 시설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4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x(녹화면적/대지면적)x0.1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x(보존면적/대지면적)x0.2		
녹색 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x(설치면적/대지면적)x0.2			

○ 계획유도 인센티브(권장 유형1 / 간선부)

항목	세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2필지 α=0.05 3~4필지 α=0.07 5필지이상 α=0.1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2필지 α=0.04 3~4필지 α=0.06 5필지이상 α=0.08
	자율적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2필지 α=0.02 3~4필지 α=0.03 5필지이상 α=0.04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α=1.2
	쌈지형공지			α=0.5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α=1.0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 α=0.5 (필로티형) - α=1.0 (개방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 연면적) × α	α=0.2 (건축연면적 20%이상 수용시 인정)
주차 계획	공동주차출입구	설치시	기준용적률 × α	α=0.1

○ 계획유도 인센티브(권장 유형2, 4 / 이면부)

항목	세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2필지 α=0.05 3~4필지 α=0.07 5필지이상 α=0.1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2필지 α=0.04 3~4필지 α=0.06 5필지이상 α=0.08
	자율적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2필지 α=0.02 3~4필지 α=0.03 5필지이상 α=0.04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α=1.2
	쌈지형공지			α=0.5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α=1.0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 α=0.5 (필로티형) - α=1.0 (개방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 연면적) × α	α=0.2 (건축연면적 20%이상 수용시 인정)
주차 계획	공동주차출입구	설치시	기준용적률 × α	α=0.1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설치시	기준용적률 × α	α=0.05 (법정주차규모 120% 확보시 기준용적률 × α)

○ 계획유도 인센티브(권장 유형3 / 특화가로)

항목	세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 2필지 α=0.07 • 3~4필지 α=0.1 • 5필지이상 α=0.15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 2필지 α=0.06 • 3~4필지 α=0.09 • 5필지이상 α=0.12
	자율적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 2필지 α=0.03 • 3~4필지 α=0.04 • 5필지이상 α=0.06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 α=1.2
	쌈지형공지			• α=0.5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 α=1.0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 α=0.5 (필로티형) • α=1.0 (개방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 연면적) × α	• α=0.3 (건축연면적 20%이상 수용시 인정)
주차 계획	공동주차출입구	설치시	기준용적률 × α	• α=0.1
	미니버스 정차대 추가확보	설치시	기준용적률 × α	• α=0.05 (미니버스 9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및 항목 변경 (친환경인센티브 항목 추가 등)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부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수정 • 특화가로의 활성화를 위한 적정 인센티브 계수 신설 및 설정

4)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구분	최고높이계획	비고
상업·업무복합	70m 이하	특별계획구역(신사동 19-193번지 일대)
	50m 이하	
근린생활시설	50m 이하	
	30m 이하	
주 거	50m 이하	
	30m 이하	

■ 변 경

구분	최고높이계획	비고
특별계획구역	70m 이하	신사동 19-193번지 일대
간선부	50m 이하	
이면부	30m 이하	

- 주) 1.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높이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 공공시설부지의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정 및 높이완화는 중복하여 적용함)
 -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당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 면적))이내
 3. 이면부 필지가 간선부와 공동개발 이행시 간선부 높이 기준을 따름

5)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선(변경)

■ 기 정

구 분	적용 구역	적용기준	비 고
건축한계선	•간선변(은평로, 가좌로) 대부분 필지	•3~6m	
	•이면부 내부필지	•1~3m	

■ 변 경

구 분	적용 구역	적용기준	비 고
건축한계선	•간선변(은평로, 가좌로)	•3~6m	
	•이면부	•1~3m	
벽면지정선	•특화가로변 저층부(1층)	•3m	

■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특화가로변 저층부(1층) 벽면지정선 지정	•특화가로내 휴먼스케일 보행가로 형성을 위한 건축한계선(전층) → 벽면지정선(1층) + 건축한계선(전층) 변경

6)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탑상형 건축물	•주요간선변의 이미지 제고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유도 - 단변에 대한 장변의 비율이 1/2이하이고 건폐율이 40%이하인 건축형태	•권장사항으로 수용시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

※ 도로폭원이 25m이상인 간선도로변에서 위 규정을 준수 할 경우 최고높이를 70m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함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적용대상	비고
건축물 형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적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셔터 설치시 투시형을 사용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좌로변 은평로변	규제
	1층 바닥높이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 기준	구역 전체	규제
	개구부	•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 필요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불가 • 다만, 벽면에 조명,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구역 전체	규제
건축물 색채 및 외관	외벽면의 통일성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구역 전체	권장
	측면공지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식재, 담장, 문 등으로 차폐 • 이때 담,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	구역 전체	권장
건축물 색채 및 외관	야간경관 조명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시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 • 간선가로변에 10층 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 설치 미술 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것을 권장	구역 전체	권장
	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옥탑, 냉각탑, 에어컨 실외기 등의 건축설비가 도로변에 노출 불가 • 보행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기계 환기설비 및 쓰레기통 등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구역 전체	권장
	탑상형 건축물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 권장 • 탑상형 건축물은 건축물의 장변에 대한 단변의 비율이 4분의 1 이상이고, 건폐율 40%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 •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4분의 1 이상이고 그 부분의 건폐율이 40% 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한다.	가좌로변 은평로변	권장
기타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 개선방안 등 관련규정 준수	구역 전체	규제
	담장 및 옹벽 처리	•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사고 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울타리 조성 또는 투시형 헨스를 설치하고 차폐식재를 권장 • 지하주차장 옹벽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면부에 최소 20cm~30cm 정도의 선형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벽면녹화를 권장	구역 전체	권장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 건축물 형태 · 색채계획 등의 전면적 변경	•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근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추세에 맞게 기준 변경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정

제어요소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간선부	•간선가로변의 미관증진 및 보행환경 제고 - 주차장, 보행장애시설 설치금지(폭3~5m)	•경관지구
	이면부	•도로와 일체형으로 조성하여 도로폭원 확장(폭1~2m)	-
공개공지 위치지정		•주요간선변 및 보행결절점 주변에 지정(쌈지공원) - 이미지 제고 및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 피로티구조일 경우 유효높이 6m이상으로 하여야 함	•권장사항으로 수용시 인센티브 부여

■ 변경

구분	계획내용	적용대상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통한 확보 •보도와 일체 조성 •주차장, 보행장애시설 설치 금지	•간선부 3~6m •이면부 1~2m
공개공지(위치지정)	•가각부 주변 일정규모 이상 •인접 공개공지와 조화 유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설치	•3개소
쌈지형 공지(위치지정)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조성 •일반 상시개방	•7개소
공공보행통로	•일반인 상시개방 원칙	•2개소
보차혼용통로	•건축한계선을 통한 공공보행통로 확보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금지	•2개소

주)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에 관한 계획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의 개정에 따라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에서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으로 이관함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보차혼용통로 신설(2개소)	•도로 폐지로 인한 보차혼용통로 설치 및 위치 변경
•공공보행통로 신설(1개소)	•도로 폐지로 인한 공공보행통로 설치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정(1개소)	•보행자우선도로를 현재 소유관계에 따라 보차혼용통로 전환

2)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간선도로변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주요교차로 및 간선가로의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이면도로에서의 주차통로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동주차 출입구 지정	•공동주차출입구 지정과 병행하여 운용
공공보행통로	•보행활동의 단절 및 침해 최소화 - 신사동 41-21, 41-22, 41-25, 228-7, 228-11 공공보행통로지정(6m)	•수용시 인센티브 부여
보행자우선도로	•가로공원조성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지구 남측경계부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인접한 배후주거지역과 연계되는 완충적 공간으로의 활용	

주)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에 관한 계획은 서울시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의 개정에 따라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에서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으로 이관함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적용구역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간선도로변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주요교차로 및 간선가로의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이면도로에서의 주차통로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동주차 출입구 지정	•공동주차출입구 지정과 병행하여 운용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	•도로시설 변경 및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으로 인한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

라.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신사동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은평구 신사동 19-193번지 일대	5,703.0	최초 결정일 2007.3.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 세부개발계획수립 2011.03.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0호)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 적 (㎡)	비고
합계		5,703.0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5,703.0	-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① 교통시설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30	신사동 19-145대	신사동 19-176대	일반 도로	-	-	- 도시기반시 설 중 도로 의 기부채 납 면적 : 680.0㎡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103	신사동 19-191대	신사동 19-60대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54	신사동 19-100대	신사동 19-166도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1	15~18	집산도로	5,600 (98)	갈현동	수색동	일반도로	-	-	- 기부채납 비율 : 11.92%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50	신사동 19-109대	신사동 19-106대	보행자 전용도로	-	-	

주) ()는 특별계획구역내 사항임. 상기 기부채납 비율은 특별계획구역 확정측량 성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1	②	신사동 19-100대	5,703.0	신사동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기존 특별계획구역 + 공동개발(권장))
			신사동 19-101대		
			신사동 19-192대		
			신사동 19-193대		
			신사동 19-102대		
			신사동 19-103대		
			신사동 19-104대		
			신사동 19-105대		
			신사동 19-106대		
			신사동 19-107도		
			신사동 19-108대		
			신사동 19-109대		
			신사동 19-194대		

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결정

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용도

구 분		계획지침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좌동	-
	권장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좌동	

㉡ 건폐율

구 분	계획지침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건폐율 60% 이하 •고층부 건폐율 제한(30%이하)	•좌동	-

㉢ 용적률

구 분		계획지침	계획내용	비 고
용적률	기준	•300% 이하	•좌동	-
	허용	•360% 이하	•좌동	
	상한	•4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의함 - 허용용적률 X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좌동	

㉣ 높이

구 분	계획지침	계획내용	비 고
기정	•최고높이 70m 이하	•좌동	

②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지침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대상지 동측(중로2-1) : 3m •대상지 서측(소로1-1) : 2m •대상지 북측(중로3-2) : 2m •대상지 남측 도로 : 1m	•대상지 동측(중로2-1) : 3m •대상지 서측(중로3-1) : 2m •대상지 북측(중로3-2) : 2m •대상지 남측(소로3-8) : 1m	•기반시설(도로) 확폭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조정
건축물 형태	고층부	•고층부 건폐율 제한 (30%이하, 단변에 대한 장변비율 1/2이하)	•좌동	-

③ 대지내 공개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지침	계획내용	비 고
전면 공지	차도형	•대상지 북·서측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에 의해 2m 조성	•좌동	—
	보도형	•대상지 동측(갈현동길변) 건축한계선에 의해 3m조성	•대상지 동측(갈현동길변) 건축한계선에 의해 3m조성 •대상지 북·서측(갈현동길변) 건축한계선에 의해 2m조성 •대상지 남측(갈현동길변) 건축한계선에 의해 1m조성	—
공개공지 위치지정		•대상지 북동측 (서울시 건축조례 22조에 의거 대지면적의 5% 이상 조성)	•대상지 동측 중앙부 공공 연결통로에 좌우로 공개공지 조성 (서울시 건축조례 22조에 의거 대지면적의 5%이상 조성)	—

주) 본 세부개발계획에서 결정한 전면공지는 정하여진 위치 및 조성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성형태 등은 건축허가권자와 협의시 조정가능함

④ 대지내 공공시설확보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지침	계획내용	비 고
공공 시설 확보 계획	기부 채납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상	•좌동	—
	대상 시설	•공공시설 확보대상은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대상지 북측도로의 경우 최소 4m이상 확보 •구체적인 선형, 면적 등은 세부개발계획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좌동	—

⑤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지침	계획내용	비 고
교통처리	•차량동선 : 갈현동길변 차량진출입 규제	•좌동	

⑥ 친환경 계획

구 분	계획지침	계획내용	비 고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

⑦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지침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 형태 (권장)	탑상형 건축물	•간선도로변(폭원 25m이상)에 접한 대지에 한해 건축할 것을 권장 •탑상형 조성 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진 최고높이 계획을 20m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운용함	•좌동	-
	저층부 형태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좌동	-
건축물 외관 (규제)	외벽면의 통일성	•모든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건물과 조화를 유지하며, 동일건축물에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 고려	•좌동	-
	야간 경관 조명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 조명 등 설치를 권장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설치 권장	•좌동	-
옥상녹화		•전체지붕, 옥상 바닥 유효면적(옥상설비 제외면적)의 50%이상, 최소 45㎡ 이상 녹화	•좌동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따라 지상3층 및 지붕층에 옥상녹화 계획
옥외광고물 (규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 준수	•좌동	-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민간부문(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 (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
-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따른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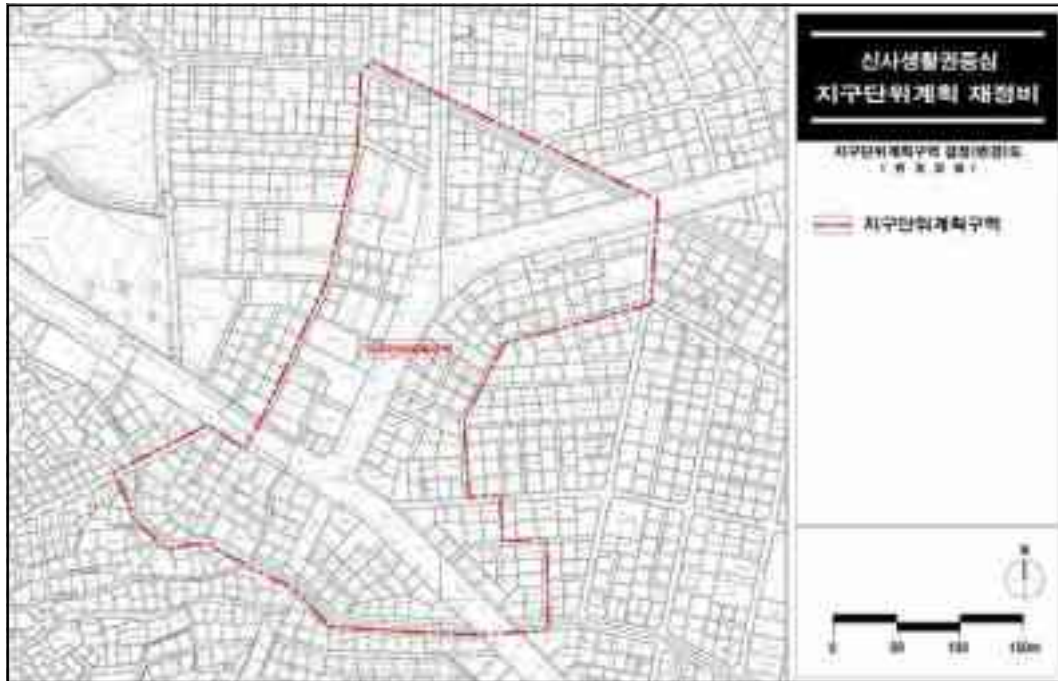
III. 관계도면 :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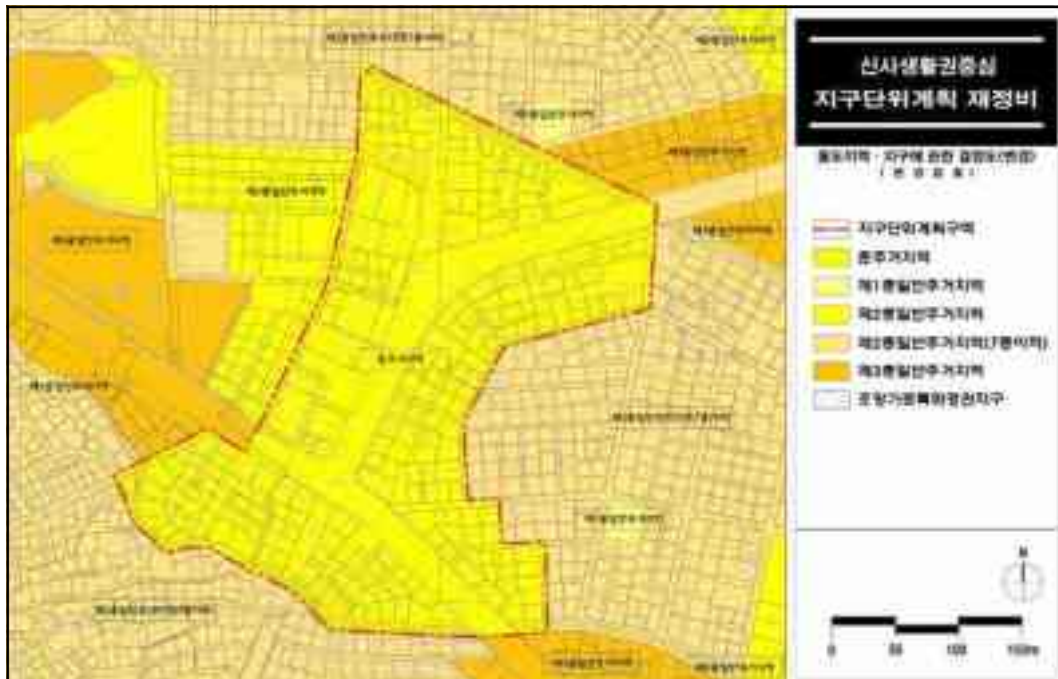
IV.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213-8385),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1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 예정
[붙임]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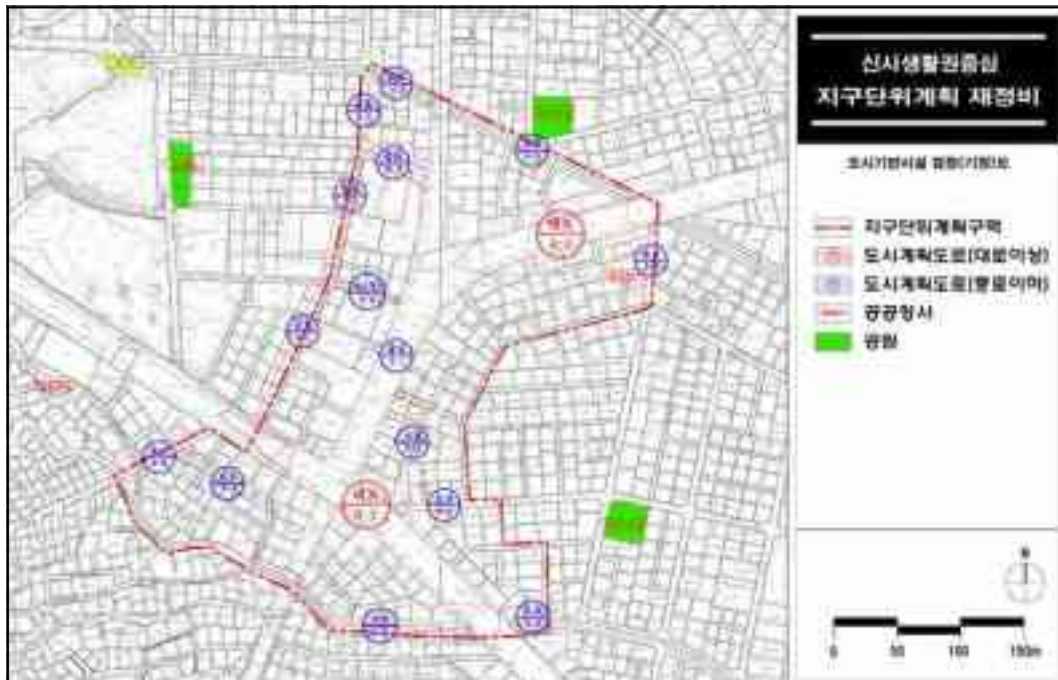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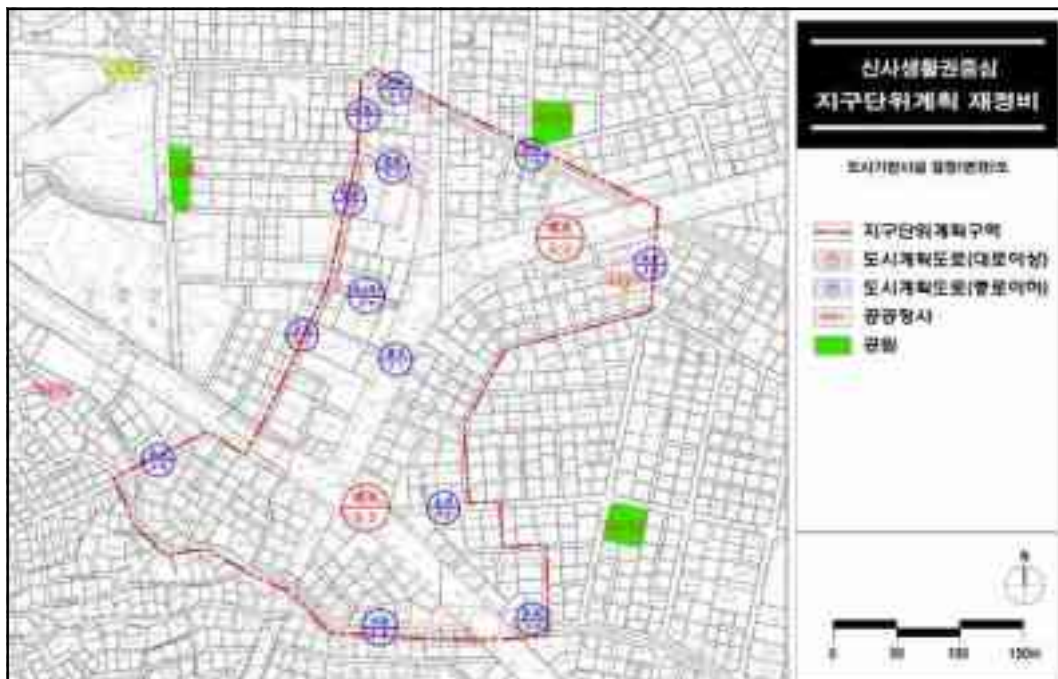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5호

도시관리계획(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1996.3.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82호(2006.08.1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18년 제1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12.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응암역일대의 가로활성화 유도과 불합리한 획지계획 재조정 및 주거생활 중심지 기능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신사동 23-1번지 일대	30,000	-	30,00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 (1996.3.1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30,000	-	30,000	100.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 (1996.3.15)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1,462 (490)	18,132	-	-	-	3	9,538 (410)	15,004	3	1,924 (80)	3,128
대로	2	11,000 (490)	14,300	-	-	-	1	9,200 (410)	12,300	1	1,800 (80)	2,000
중로	1	64	768	-	-	-	-	-	-	1	64	768
소로	3	398	3,064	-	-	-	2	338	2,704	1	60	360

주) ()는 구역내 연장이고, 면적은 대상지내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번호	구분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 도로	9,200 (410)	함정동	불광동	일반도로		63.12.24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1,800 (80)	응암동	신사동	일반도로		63.12.24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64	신사동 23-25대	신사동 23-45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93	역촌동 85-47대	역촌동 85-7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45	신사동 23-5대	신사동 23-45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60	역촌동 83-39대	역촌동 83-62대	일반도로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소공원	은평구 역촌동 85-34, 85-36번지	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82호 (2006.8.17.)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 구 번 호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준주거지역	1	11,074	11,394	
	2	9,454	9,446	

- 2) 단위 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준주거 지역	간선부	3,000이하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① 공동개발 계획이 수립된 필지 ② 기존 필지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 ③ 기 공동건축된 경우(하나의 대지로 이용)
	이면부	1,000이하	

- 3)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 기 정(획지, 공동개발 필지만 표현)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1	①	역촌동 85-1대	1,159.3	◦ 공동개발 지정
		역촌동 85-3대		
		역촌동 85-5대		
		역촌동 85-4대		
2		역촌동 85-12대	2,918.6	◦ 획지
3		역촌동 85-28대	592.8	◦ 공동개발 지정
		역촌동 85-29대		
		역촌동 85-30도		
		역촌동 85-32대		
4		역촌동 85-33대	1,522.3	◦ 획지
		역촌동 85-41대		
5		역촌동 85-46대	739.2	◦ 공동개발 권장
		역촌동 85-47대		
		역촌동 85-48대		
		역촌동 85-49대		
1	②	신사동 23-1대	1,004.2	◦ 획지
		신사동 23-4대		
		신사동 23-2대		
		신사동 23-50대		
		신사동 23-3대		
		신사동 23-51도		
2		신사동 23-20대	526.6	◦ 공동개발 지정
		신사동 23-6대		
		신사동 23-19대		
		신사동 23-16대		

■ 변 경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공동개발면 적(㎡)	비고
		위치	면적(㎡)			
1	11,394	역촌 동	85-1	332.9	◦ 공동개발지정 : 85-4⊕85-1⊕85-3 ⊕85-5	1,159.3
			85-3	247.9		
			85-4	367.9		
			85-5	210.6		
			85-12	2,918.6	◦ 공동개발지정 : 85-28⊕85-29⊕85-30 ⊕85-33⊕85-32	592.8
			85-28	105.8		
			85-29	116.7		
			85-30	65.8		
			85-32	151.4		
			85-33	153.1		
			85-34	184.1		
			85-35	58.8		
			85-36	133.9		
			85-41	1,522.3	◦ 공동개발권장 : 85-48⊕85-49⊕85-46 ⊕85-47	739.2
			85-44	193.4		
			85-47	226.8		
			85-48	159.7		
			85-46	177.2		
			85-49	175.5	◦ 공동개발권장 : 85-16⊕85-18⊕85-38	2,790.1
			85-6	159.3		
			85-7	173.6		
			85-8	189.4		
			85-9	180.8		
			85-10	47.6		
			85-11	197.4		
			85-15	191.4		
			85-16	288.8		
			85-18	117.0		
			85-38	2,384.3		
			85-45	167.6		
			85-50	159.7		

주1) 가구내 도로(사유지/공유지)는 가구면적에서 제외

주2) 가구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면적(㎡)	비고
		위치	면적(㎡)			
2	9,446	신 사동	85-58	11.6		도로/공유지
			85-59	49.0		도로/공유지
			23-1	422.1	◦ 공동개발지정 : 23-1⊕23-2⊕23-3 ⊕23-51⊕23-50⊕23-4	
			23-2	107.4		
			23-3	171.9		
			23-4	141.5		
			23-50	152.7		
			23-51	8.6		도로/사유지
			23-5	513.7		
			23-6	119.3	◦ 공동개발지정 : 23-6⊕23-20⊕23-19 ⊕23-16 ◦ 공동개발권장 : (23-6⊕23-20⊕23-19 ⊕23-16)⊖23-17⊖23-18	
			23-16	116.4		
			23-17	114.4		
			23-18	143.1		
			23-19	143.1		
			23-20	147.8		
			23-7	324.2		
			23-8	124.3		
			23-10	252.2		
			23-21	181.2		도로/사유지
			23-25	252.2		
			23-46	174.2		도로/사유지
			23-55	221.8		도로/사유지
			23-56	367.6		
			23-57	8.0		도로/사유지
			23-58	2.0		도로/사유지
			23-26	228.4		
			23-27	181.8		
			23-40	201.3		
			23-45	201.3		
			23-33	358.3		도로/사유지
			23-34	190.7		
			23-35	190.7		
			23-36	190.7		

주1) 가구내 도로(사유지/공유지)는 가구면적에서 제외

주2) 가구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면적(㎡)	비고
		위치	면적(㎡)			
2	9,446	신 사동	23-37	222.1		
			23-9	191.4		
			23-11	194.4		
			23-12	167.3		
			23-13	139.8		
			23-14	143.5		
			23-15	62.1		도로/사유지
			23-22	150.1		
			23-23	153.4		
			23-24	152.4		
			23-28	170.9		
			23-29	170.9		
			23-30	170.6		
			23-31	170.6		
			23-32	170.6		
			23-38	166.6		
			23-39	166.6		
			23-41	226.4		도로/사유지
			23-42	194.4		
			23-43	186.4		
			23-44	186.4		
			23-47	200.7		
			23-48	207.6		
			23-49	201.0		
			23-52	191.4		
			23-53	186.4		
			23-54	191.4		

주1) 가구내 도로(사유지/공유지)는 가구면적에서 제외

주2) 가구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구 분	불 허 용 도
A (상업·업무·복합)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단, 주상복합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B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C (주거)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참조

2. 불허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본 지침에서 불허하는 용도임

■ 변 경

구 분	불 허 용 도
A (상업·업무복합)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단, 주상복합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B (주거+근생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참조

2. 불허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본 지침에서 불허하는 용도임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구분 B(근린생활시설), C(주거)를 B(주거+근린생활시설)로 통합	•이면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주거지역에 준하는 용도제어를 통하여 주거환경 보호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구 분	권 장 용 도
1 (상업·업무복합)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의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2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의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참조

■ 변 경

구 분	권 장 용 도
1 (간선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2 (이면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서적판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독서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참조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특성화에 필요한 용도와 연계한 권장용도 지정 - 교육기능 관련 시설 권장	•시장논리에 의해 당면 입지용도는 권장용도에서 배제 •주변 특화성격(교육기능)과 연계된 교육관련 용도 권장용도로 지정

3)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 조서

가)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준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나)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용도지역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 고
준주거지역	상업·업무·복합	300% 이하	360% 이하	
	근린생활시설	300% 이하	36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주거	300% 이하	36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 변 경

용도지역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 고
준주거지역	유형-1	300% 이하	360% 이하	상한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유형-2	300% 이하	330% 이하	

- 주)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 및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 주거부분 :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 용적률의 10%이상(지상부 설치)
 2. 상한용적률 = 허용 or 기준용적률 X (1+1.3 × 가중치_{a토지} + 0.7×_{a원급·건축물})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유형2(이면부)의 용적률 상향 (250%~300% → 300%~330%)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범위 내에서 현실화

■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

1.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1991. 5. 11 이후)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만큼 허용

구 분	내 용	비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alpha / \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beta - \alpha) / \beta$	
	]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2.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함. 다만,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를 감안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 계획 가능

※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 용적률 10%이상 설치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다) 용적률 완화 항목 및 내용

■ 기 정

내 용			완화기준	비 고
항 목				
공동개발	선택적 공동개발	준 수 시	기준용적률 × 0.5a	• 2필지 : a=0.1 • 3~4필지 : a=0.15 • 5필지 이상 : a=0.2
	공동개발 지정/권장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div \text{건축면적}) \times a$	• 권장용도는 건축면적에 20% 이상시 인정 - a = 0.2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1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2
	쌈지형, 침상형 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1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1.2$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보차혼용통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	
환경 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3$	•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준수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 구체적인 설치방안이 있는 경우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서울시기준 준수시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자연지반보존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2$	
주차 및 차량 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 × 0.2	• 지정시 적용

- 주) 1. 단, 경관지구가 적용된 대지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부분을 제외한다.
2.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확보하여야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3. 권장용도 및 연면적에 대한 면적 산정기준은 순수 당해 용도(전용면적)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옥상녹화는 전체지붕, 옥상 바닥 유효면적의 50% 이상, 최소 45㎡ 이상 녹화하여야한다. 이 때 옥상 바닥 유효면적이란 옥상 설비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5. 자연지반보존은 관련법규에 의해 확보해야하는 면적을 제외한 전체 바닥면적의 50%이상, 최소 45㎡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녹색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10% 이상이 녹색주차장으로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단, 지상주차장에 한함)

■ 변경

○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방향

1. 용적률 인센티브는 크게 친환경, 계획유도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친환경 계획 준수시 (30%이상)	유도 및 규제항목 준수시 (70%이내)	공동개발(특별지정)시 공공시설 또는 부지 제공시

2.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 중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100분의 30이상, 계획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고 100분의 30이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불가. 반면, 친환경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하다.

단, 연면적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100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하다.

주) 소규모 건축물 기준 500㎡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사업계획 승인대상 기준임

○ 공통사항(친환경 인센티브)

완 화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환경 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기준용적률 x 0.06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X 0.4이내	
		우수	기준용적률 x 0.04		
		우량	기준용적률 x 0.02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 x 0.04		
		2등급	기준용적률 x 0.03		
		3등급	기준용적률 x 0.02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1등급	기준용적률 x 0.06		
		2등급	기준용적률 x 0.05		
		3등급	기준용적률 x 0.04		
		4등급	기준용적률 x 0.03		
		5등급	기준용적률 x 0.02		
	중수도 시설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4		
	빗물관리 시설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4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x(녹화면적/대지면적)x0.1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x(보존면적/대지면적)x0.2		
	녹색 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x(설치면적/대지면적)x0.2		

○ 계획유도 인센티브(권장 유형1)

항목	세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2필지 α=0.07 3~4필지 α=0.1 5필지이상 α=0.15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2필지 α=0.05 3~4필지 α=0.07 5필지이상 α=0.1
	자율적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2필지 α=0.03 3~4필지 α=0.04 5필지이상 α=0.05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α=1.2
	쌈지형공지			α=0.5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α=1.0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α=0.5 (필로티형) - α=1.0 (개방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 α	α=0.2 (건축연면적 20%이상 수용시 인정)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설치시	기준용적률 × α	α=0.1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법정주차규모 120%이상 확보시

○ 계획유도 인센티브(권장 유형2)

항목	세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2필지 α=0.07 3~4필지 α=0.1 5필지이상 α=0.15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2필지 α=0.05 3~4필지 α=0.07 5필지이상 α=0.1
	자율적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α	2필지 α=0.03 3~4필지 α=0.04 5필지이상 α=0.05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α=1.2
	쌈지형공지			α=0.5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α=1.0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α=0.5 (필로티형) - α=1.0 (개방형)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설치시	기준용적률 × α	α=0.1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법정주차규모 120%이상 확보시

4)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구분	최고높이계획	비고
상업·업무복합	50m 이하	
근린생활시설	50m 이하	
	30m 이하	
주 거	50m 이하	
	30m 이하	

■ 변 경

구분	최고높이계획	비고
상업·업무복합	50m 이하	
주거 + 근생	50m 이하	
	30m 이하	

주) 1. 최고높이 계획은 변경이 없으나 유형 단순화

2. 상이한 높이규제를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병 또는 공동개발 할 경우에는 본 지침 제15조(최고높이) 제2항에 따라 적용
3.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 공공시설부지의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정 및 높이완화는 중복하여 적용함)
 -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당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5)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적용 구역	적용기준	비 고
건축 한계선	●간선변(연서로, 증산로, 은평로) 대부분 필지	●3~6m	
	●이면부 내부필지	●1~2m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인 도로의 너비 6m이상' 기준 준수 (양측 1.25m→1.5m)

※ 적용기준의 변경은 없으나, 이면부 1.25m 2개소를 1.5m로 조정

6)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탐상형 건축물	●주요간선변의 이미지 제고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유도 - 단변에 대한 장변의 비율이 1/2이하이고 건폐율이 40%이하인 건축 형태	●권장사항으로 수용시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
고층부 탐상형 건축물	●주요간선변의 경관수준 향상, 이미지 제고 및 시각통로 확보 - 전체층수가 10층 이상이며 고층부(건폐율 40%이하)의 층수가 저층부(건폐율60%)층수 이상으로 건축된 건축물 형태	●권장사항으로 수용시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

※ 도로폭원이 25m이상인 간선도로변에서 위 규정을 준수 할 경우 최고높이를 70m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함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적용대상	비고
건축물 형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적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셔터 설치시 투시형을 사용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연서로변 증산로변 은평로변	규제
	1층 바닥높이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 기준	구역 전체	규제
	개구부	•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 필요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불가 • 다만, 벽면에 조명,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구역 전체	규제
건축물 색채 및 외관	외벽면의 통일성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구역 전체	권장
	측면공지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식재, 담장, 문 등으로 차폐 • 이때 담,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	구역 전체	권장
건축물 색채 및 외관	야간경관 조명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시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 • 간선가로변에 10층 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 설치 미술 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것을 권장	구역 전체	권장
	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옥탑, 냉각탑, 에어컨 실외기 등의 건축설비가 도로변에 노출 불가 • 보행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기계 환기설비 및 쓰레기통 등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구역 전체	권장
	탑상형 건축물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 권장 • 탑상형 건축물은 건축물의 장변에 대한 단변의 비율이 4분의 1 이상이고, 건폐율 40%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 •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4분의 1 이상이고 그 부분의 건폐율이 40% 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한다.	연서로변 증산로변 은평로변	권장
기타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 개선방안 등 관련규정 준수	구역 전체	규제
	담장 및 옹벽 처리	•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사고 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울타리 조성 또는 투시형 헨스를 설치하고 차폐식재를 권장 • 지하주차장 옹벽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면부에 최소 20cm~30cm 정도의 선형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벽면녹화를 권장	구역 전체	권장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 건축물 형태 · 색채계획 등의 전면적 변경	• 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근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추세에 맞게 기존 변경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제어요소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간선부	•간선가로변의 미관증진 및 보행환경 제고 - 주차장, 보행장애시설 설치금지(폭3~5m)	•경관지구
	이면부	•도로와 일체형으로 조성하여 도로폭원 확장(폭1~2m)	-
공개공지 위치지정		•주요간선변 및 보행결절점 주변에 지정(쌈지공원) - 이미지 제고 및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 피로티구조일 경우 유효높이 6m이상으로 하여야 함	•권장사항으로 수용 시 인센티브 부여

■ 변 경

제어요소	계획내용	적용대상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을 통한 확보 •보도와 일체 조성 •주차장, 보행장애시설 설치 금지	•간선부 3~6m •이면부 1m
공개공지(위치지정)	•가각부 주변 일정규모 이상 •인접 공개공지와 조화 유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설치	•1개소
쌈지형 공지(위치지정)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조성 •일반 상시개방	•3개소
공공보행통로	•일반인 상시개방 원칙	•1개소

주)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에 관한 계획은 서울시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의 개정에 따라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에서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으로 이관함

2)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간선도로변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주요교차로 및 간선가로의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이면도로에서의 주차통로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동주차 출입구 지정	•공동주차출입구 지정과 병행 하여 운용
공공보행통로	•보행활동의 단절 및 침해 최소화 - 신사동 41-21, 41-22, 41-25, 228-7, 228-11 공공보행통로지정(6m)	•수용시 인센티브 부여

주)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에 관한 계획은 서울시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의 개정에 따라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에서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으로 이관함

■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적용구역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간선도로변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주요교차로 및 간선가로의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이면도로에서의 주차통로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공동주차출입구 지정과 병행하여 운용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	•도로시설 변경 및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으로 인한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민간부문(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 (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
-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따른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 변경

III. 관계도면 :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213-8385),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1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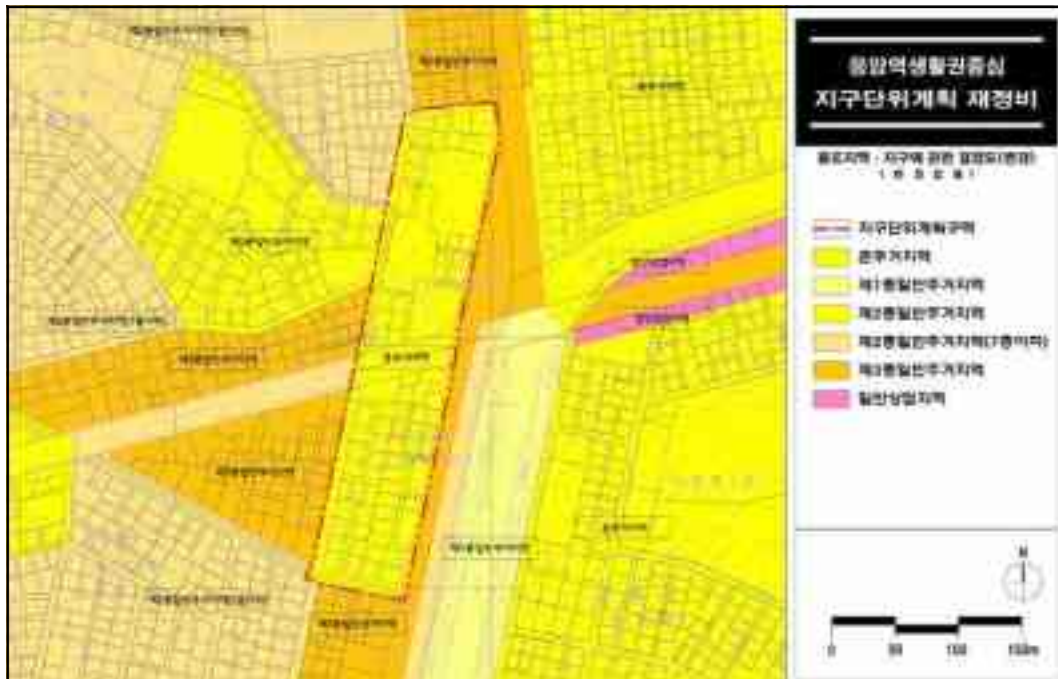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 예정

[붙임] 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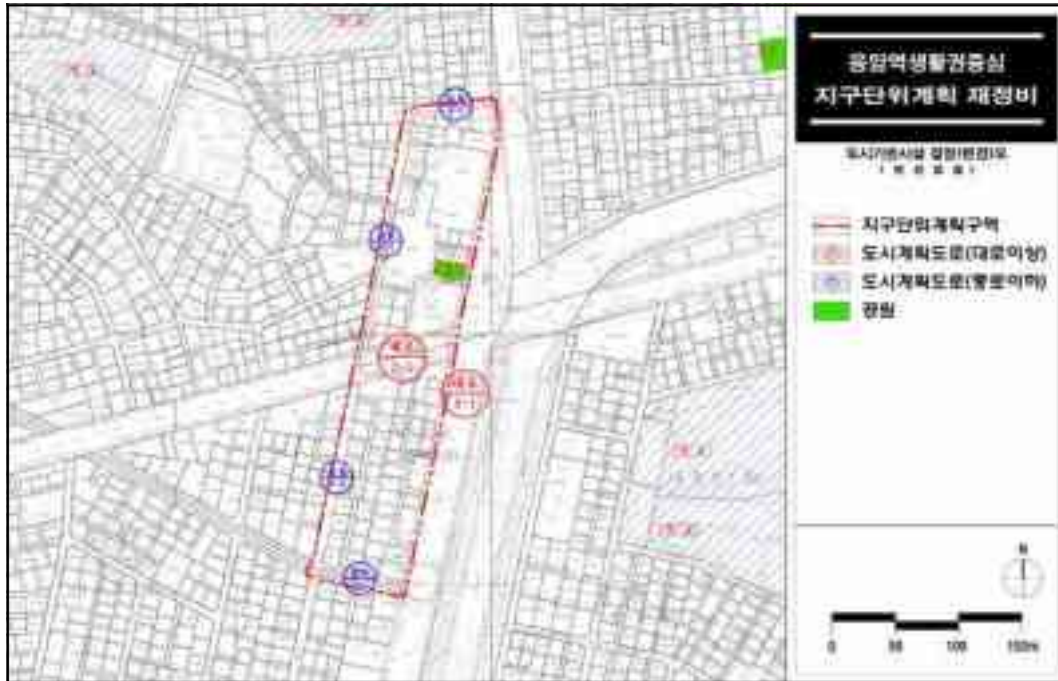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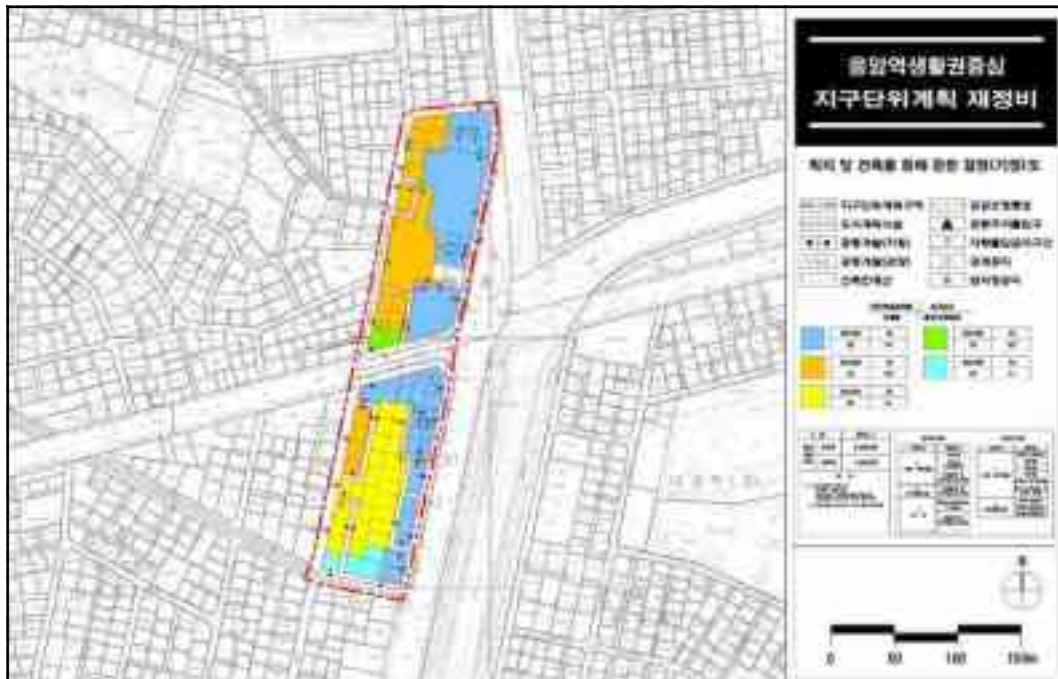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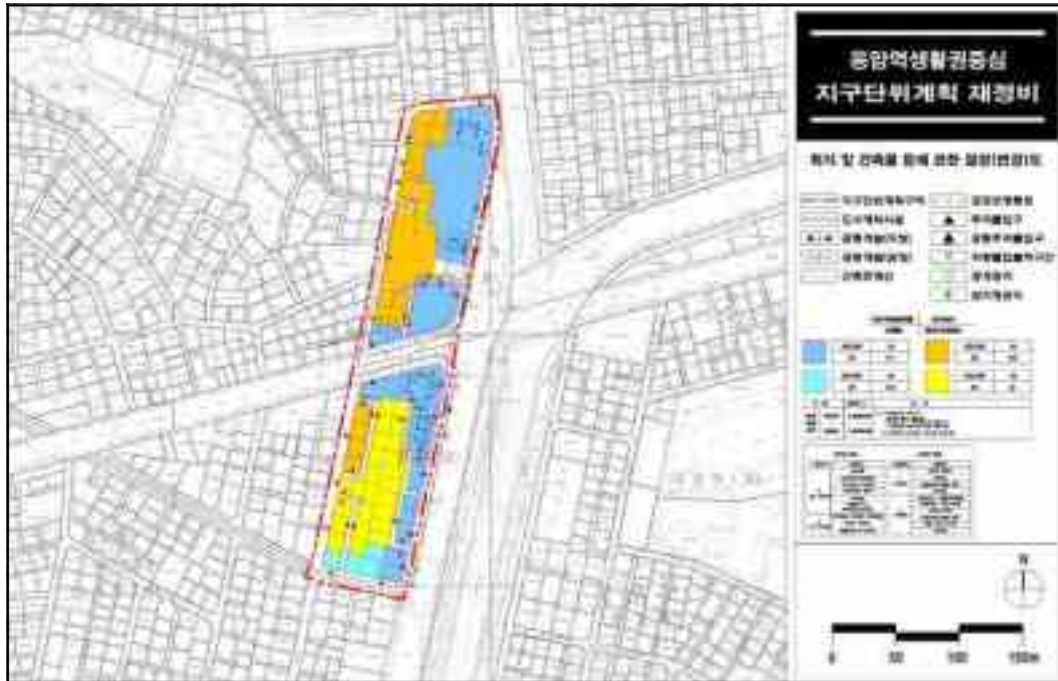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6호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2호('08.12.04.)로 합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호('10.01.21.)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1호('11.12.15.), 제2012-145호('12.06.07.), 제2012-269호('12.10.11.), 제2013-196호('13.06.27.), 제2014-65호('14.02.27.), 제2015-89호('15.04.02.), 제2015-225호('15.07.30.), 제2015-232호('15.08.06.), 제2018-253호('18.08.09.)로 변경 결정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지정된 마포구 합정동 382-20 개별 대지에 대하여 최근 관광산업의 침체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정용도 폐지 등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정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마포구 합정동, 서교동, 망원동 일대	297,998.2	-	297,998.2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297,998.2	－	297,998.2	
촉진구역	소계			69,108.8	－	69,108.8	
	도시환경 정비사업	합정1구역	합정동 419-1 일대	37,309.4	－	37,309.4	
		합정2구역	합정동 385-1 일대	16,297.3	－	16,297.3	
		합정3구역	합정동 384-1 일대	10,544.9	－	10,544.9	
		합정4구역	합정동 382-44 일대	4,957.2	－	4,957.2	
존치정비	합정5~9구역		합정동 383-14 일대	21,616.0	－	21,616.0	
존치관리	－			207,273.4	－	207,273.4	

3. 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합정동 419 일대	207,273.4	-	207,273.4	

4.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지정 및 권장용도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지정용도1 폐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합정동 382-20
변경	권장용도A	-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의 금융업소, 사무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 종합병원, 한방병원 -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일반상업지역

■ 변경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마포구 합정동 382-20번지	• 건축물 지정용도1 폐지 후 일반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권장용도A로 환원	- 관광산업 침체, 소유자변동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 폐지 - 합정지구중심에 상업·업무시설이 입지토록 최초 지구단위계획 상 권장용도로 환원

2) 불허용도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불허용도a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위락시설 중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공장, 창고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일반상업지역

주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주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축시 관련규정 준수(학교보건법 제6조①항 및 시행령 제4조②항)

다.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2) 용적률 : 변경

위 치	용도지역	세부 변경내용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20번지 (가구번호: GC-6)	일반 상업 지역	기정	300%	630% 이하
		변경	300%	630% 이하

주1)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주2)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상한용적률 완화

구분	완화내용	비 고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창업지원센터)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산정식 :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_{\text{토지}} + 0.7 \times \alpha_{\text{현금} \cdot \text{건축물}})$ ※ $\alpha_{\text{토지}}$: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면적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alpha_{\text{현금} \cdot \text{건축물}}$: 공공시설 등 부지 (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596.38\% + (630\% \times 1.3 \times 1 \times 0.081510) + (630\% \times 0.7 \times 0.108794) = 711.11\%$ ※ $\alpha_{\text{토지}} = (54.46) \div (722.6 - 54.46) = 0.081510$ ※ $\alpha_{\text{현금} \cdot \text{건축물}} = (72.69) \div (722.6 - 54.46) = 0.108794$	공공시설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완화량 산정 시 시설 부지가액 및 표준건축비(건축공사비)는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그에 따라 공공기여량은 변경 가능한.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 (2019. 1. 16.) 적용

■ 변경사유서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20번지 (가구번호 : GC-6)	상한용적률 산정 시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적용 삭제	여건변화를 고려한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 변경 및 상업업무시설 도입을 위해 최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상 상한용적률 산정식 적용

라.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최고높이

구분	최고높이	비고
간선도로변(양화로변) (지구단위계획도 참조)	80m	-

마.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건축한계선

구분	내용	적용기준	비고
기점	- 양화로변 - 간선도로변 시각적 개방감으로 가로 경관 확보 - 역세권주변 보행환경 개선	건축한계선 대지경계로부터 5m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적용기준	비고
기점	전면공지	- 가로보행환경 제고 - 녹지 및 휴게시설과 연계	- 간선변 건축한계선 후퇴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사. 교통처리계획 : 변경

■ 차량출입불허구간 : 변경

구분	적용목표 및 제어내용	위 치	비 고
기점		- 위 치 : 합정동 382-20 - 적용구간 : 동측경계에서 20m이격 후 약 6m폭원 진출입 가능토록 위치 변경	
변경	- 간선가로변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 양화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위 치 : 합정동 382-20 - 적용구간 : 동측경계에서 24m이격 후 약 6m폭원 진출입 가능토록 위치 변경 ※ 향후 건축계획 내용에 따라 진출입구 위치는 좌우측 각 3m 이내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20번지 (가구번호 : GC-6)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위치 조정 - 당초 : 사업대상지 서측 - 변경 : 사업지 형태 및 건축계획(안)을 고려한 동측으로 위치 조정	현재 진출입구 위치 및 건축계획(안) 고려

아. 인센티브 운영규정 : 변경없음

III.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가. 2019년 제6차('19.05.07.)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심의의견	조치의견
대상지는 기계식주차로 주차대기로 인한 양화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지상1층에 주차대기 및 화차 등의 주차공간계획을 검토할 것.	- 지상1층에 주차대기 공간 1개소를 추가확보 하였음. - 양화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진입부 완화차선 연장 18m를 계획하였음. - 오진입, 주차 만차시 화차를 예방하기 위해 진입부에 주차정보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겠음.
공공시설의 위치는 접근성, 인지성을 고려하여 지상부(2~3층) 배치를 우선 검토하고, 부득이하게 지하 1층에 배치할 경우 채광, 환기 등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선로 등 공간계획을 검토할 것.	- 공공시설은 지하1층→지상3,4층에 설치하고, 복층으로 계획하여 창업지원시설로의 개방감 있는 독립적 공간활용을 배려함. - 공공시설로 개방형 통로 설치를 통해 24시간 전용출입구 조성.
공공시설 주차장은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용 주차구획을 지상에 설치를 검토할 것.	- 소규모 부정형토지 및 건축선 지정 등으로 인한 제약으로 지상부에 공공시설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대신에, 공공시설을 위한 주차시설은 기계식주차 프로그램을 통해 3개소를 저층에 우선배치.(조건부여) - 추가적으로, 지상1층에 추가확보한 주차대기공간을 공공시설 이용차량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나. 2019년 제7차('19.06.04.)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심의의견	조치의견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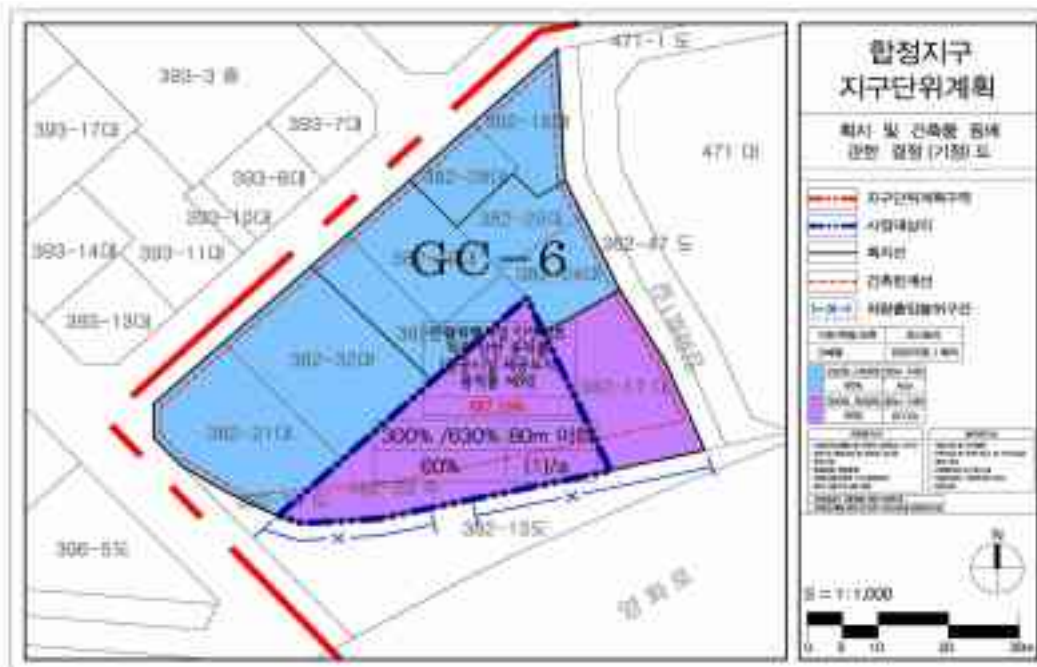
IV. 기타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V. 관계도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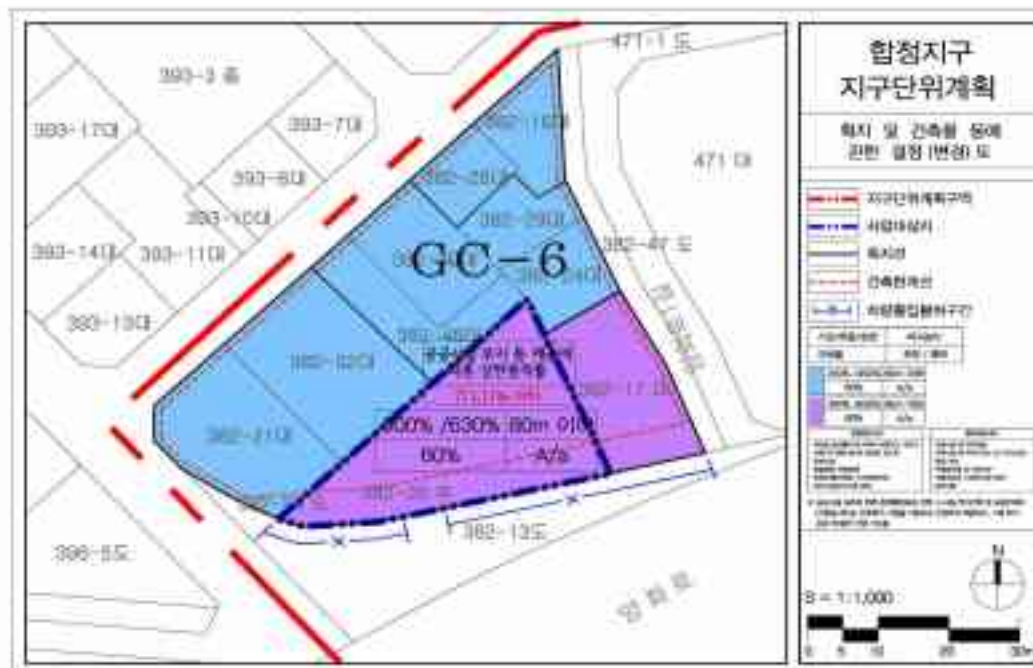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I.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27) 및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7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합정동 382-20) - 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합정동 382-20) - 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23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발굴된 시유특허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해외 특허권)의 사업화로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유 시유특허권에 대한 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시유특허권의 정의

-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입니다.

2.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처분종류: 통상실시권 허락)

가. 국내 시유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	포장체의 온도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포장체의 차열성능 평가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971609	통상실시권 허락	2019-04-17
특허	2	교량 무인 점검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934490	통상실시권 허락	2018-12-26
특허	3	방수 겹이음 시공 공법 및 이를 위한 방수 겹이음 시공장치	10-1929499	통상실시권 허락	2018-12-10
특허	4	분할식 라이닝품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906546	통상실시권 허락	2018-10-02
특허	5	변형 가능한 환자 이송 장비	10-1889068	통상실시권 허락	2018-08-09
특허	6	비상 탈출 장치	10-1881455	통상실시권 허락	2018-07-18
특허	7	맨홀 덮개 개폐 장치	10-1865366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31
특허	8	고내구성 급경화 상온식 균열 보수제 제조방법 시공 방법	10-1864547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29
특허	9	고내구성 급경화 상온식 균열 보수제 제조방법	10-1864548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29
특허	10	드레인 밸브	10-1861844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21
특허	11	프리스트레스 도입형 강재 및 이의 제작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798416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10
특허	12	밸브 상대 확인장치	10-1847732	통상실시권 허락	2018-04-04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3	비산촉정용 고효율 시료포집 장치	10-1824130	통상실시권 허락	2018-01-25
특허	14	하수관로 물 돌리기 시스템	10-1814880	통상실시권 허락	2017-12-27
특허	15	칼슘제를 이용한 수돗물 처리 시스템 및 방법	10-1805350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29
특허	16	소방용 스탠드 파이프	10-1796386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03
특허	17	유지관리가 용이한 프리캐스트 신축이음장치 및 시공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785624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9
특허	18	하수슬러지 소각제로부터 인(P)의 회수 방법	10-178524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8
특허	19	배출수지 순차제어 시스템 및 방법	10-178309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2
특허	20	가로등 부하선로 측정장치 및 그 방법	10-1772823	통상실시권 허락	2017-08-23
특허	21	도로포장용 차열성 도로조성물	10-1754943	통상실시권 허락	2017-07-12
특허	22	역류 방지용 수도 미터기(서울시 지역 제한)	10-173989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19
특허	23	환자 이송용 들것	10-1714316	통상실시권 허락	2017-03-02
특허	24	조류퇴치장치	10-1743707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30
특허	25	다기능 안전벨트	10-1723634	통상실시권 허락	2017-03-30
특허	26	심폐소생술 실습장치 (2)	10-170574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2-06
특허	27	복합 프로파일 및 이를 구비한 지주구조물	10-1683630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01
특허	28	출동정보전달 시스템	10-156724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1-02
특허	29	등기구	10-1696149	통상실시권 허락	2017-01-06
특허	30	중온화 펠렛형 아스팔트용 박리방지제 조성물 및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수분저항성이 우수한 중온화 아스팔트 혼합물	10-1687114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09
특허	31	분할식 라이닝품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	10-1687308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12
특허	32	다기능 안전면제	10-1692524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28
특허	33	다기능 구조낭	10-1674165	통상실시권 허락	2016-11-02
특허	34	물 흐름 감지형 제수밸브	10-1643173	통상실시권 허락	2016-07-21
특허	35	이동차 흡식 부유물 제거장치	10-164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16-07-19
특허	36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출동 지령 전달 시스템	10-1614510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15
특허	37	심폐소생술 실습장치(1)	10-1610289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01
특허	38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가진 모바일 웹 페이지 생성 장치 및 제공 시스템	10-1592496	통상실시권 허락	2016-02-01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39	흙 콘크리트 조성물(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57579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2-02
특허	40	무장에 스마트 통신 장치 및 그 방법	10-157420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1-27
특허	41	호흡면체 직결 공기정화용 어댑터	10-1551675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03
특허	42	물 유출 지연 장치	10-155167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03
특허	43	배수지용 수돗물 재담수 시스템	10-1543736	통상실시권 허락	2015-08-05
특허	44	흉부 압박 시스템	10-1532418	통상실시권 허락	2015-06-23
특허	45	야간 관측이 용이한 하천 수위 측정장치	10-151959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5-06
특허	46	플라스터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514809	통상실시권 허락	2015-04-17
특허	47	가교형 반침 구조물의 시공방법	10-1511265	통상실시권 허락	2015-04-06
특허	48	정수 슬러지를 재활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의 제조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478422	통상실시권 허락	2014-12-24
특허	49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용 첨가제 및 첨가제가 포함된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10-142475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7-23
특허	50	정수처리 공정에서 염소투입량 결정방법	10-1400950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22
특허	51	용적확장형 캐리어	10-140094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22
특허	52	장거리방수용 방수포	10-139566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53	구멍장치	10-139566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54	토석류 저감 장치	10-1395667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55	통합건설 정보관리 시스템	10-1395665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56	고분자를 이용하여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안료 및 이를 포함하는 장수명 갈라 아스팔트 조성물 (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39241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4-29
특허	57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동단말기	10-1345266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9
특허	58	방화커튼장치	10-1343047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2
특허	59	내식성이 향상되는 수도시설용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용접부 후처리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309980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11
특허	60	휴대용 검사장치	10-1279624	통상실시권 허락	2013-06-21
특허	61	굴착방지 가변형 제수밸브	10-1279625	통상실시권 허락	2013-06-21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62	국지도로용 광방향성 반사블록을 구비한 BUG제어 LED조명등(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259539	통상실시권 허락	2013-04-24
특허	63	수용액 내 암모니아성질소의 측정방법	10-1244614	통상실시권 허락	2013-03-11
특허	64	요동방지 호스지지체	10-1234541	통상실시권 허락	2013-02-13
특허	65	투수포장 구조체	10-1225072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16
특허	66	오거장비용 가림막 자동화 장치 (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224693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15
특허	67	수도관용 동결 해빙못 시공구조	10-1205468	통상실시권 허락	2012-11-21
특허	68	유지보수 발판이 구비된 도로 전광표시	10-1197458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30
특허	69	DMP 개질아스팔트 및 그 제조방법	10-11952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70	급수관 구경확대를 위한 새들볼이 분수전 무단수 차단장치	10-1195199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71	상수도용 자석 부착형 스트레이너	10-1195200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72	DMP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10-1188092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73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 화재진압용 분사노즐을 구비한 분사건	10-1188064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74	복합형 빗물받이 뚜껑 및 그 시공구조	10-1188005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75	정수지 또는 배수지 내에서 유수지 정체부 형성을 방지하는 배플	10-1179008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7
특허	76	수도계량기 카운터 걸림 검사장치	10-1179023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7
특허	77	전력절감을 위한 맥동식침전지 운영 방법	10-11786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4
특허	78	화재진압용 복합형 소화장치	10-116821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18
특허	79	수증기 응결이 발생하지 않는 계량기의 카운터 제조방법	10-11646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04
특허	80	표면장력 저감을 이용한 막의 완결성 시험방법	10-116460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04
특허	81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및 방법	10-1131767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23
특허	82	음식물 쓰레기통	10-1131124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15
특허	83	필지경계점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10-1090346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30
특허	84	자가 공기호흡장치	10-1083726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09
특허	85	수영장 청소시스템	10-1081507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02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86	제설제 재활용장치	10-1074857	통상실시권 허락	2011-10-12
특허	87	부유물 제거장치	10-1069375	통상실시권 허락	2011-09-26
특허	88	전염소 투입물 산출 시스템 및 방법	10-1043521	통상실시권 허락	2011-06-15
특허	89	무동력으로 초기 기동가능한 펌프 시스템	10-1042676	통상실시권 허락	2011-06-13
특허	90	침전슬러지 배출유동화 장치	10-1019206	통상실시권 허락	2011-02-24
특허	91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10-1005335	통상실시권 허락	2010-12-24
특허	92	하수도 맨홀용 역지변	10-0994795	통상실시권 허락	2010-11-10
특허	93	바야형상의 파지부를 구비한 소화기	10-098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10-09-09
특허	94	저소음·배수성아스팔트포장도로기능유지차	10-097976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8-27
특허	95	방음벽 지주의 연결구조물	10-097663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8-11
특허	96	펌프의 실링수 공급밸브	10-0970322	통상실시권 허락	2010-07-07
특허	97	후타재가 필요없는 교량용 평거 조인트 결합 구조물	10-095769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5-04
특허	98	이동식 소방호수 두루마리 장치	10-095509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4-20
특허	99	다기능 세척장치	10-0952293	통상실시권 허락	2010-04-02
특허	100	정밀하게 부피를 잴 수 있는 일정용적을 갖는 용량 코니칼 튜브	10-0947767	통상실시권 허락	2010-03-09
특허	101	수도관의 급속동결장치	10-0936841	통상실시권 허락	2010-01-06
특허	102	식생블록 녹화용 모듈	10-0925849	통상실시권 허락	2009-11-02
특허	103	누설방지장치	10-0922996	통상실시권 허락	2009-10-14
특허	104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10-0890246	통상실시권 허락	2009-03-17
특허	105	하수관거 차수로봇용 가물막이 수밀 패널(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86461	통상실시권 허락	2009-02-24
특허	106	약품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시스템	10-0834690	통상실시권 허락	2008-08-12
특허	107	수도의 절수장치	10-0848466	통상실시권 허락	2008-07-18
특허	108	2단 침지형 막여과조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43656	통상실시권 허락	2008-06-27
특허	109	약품 및 케익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 시스템	10-0852939	통상실시권 허락	2008-05-27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10	미세먼지 청소차(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10152	통상실시권 허락	2008-02-27
특허	111	수도관의 부식억제 방법	10-0797847	통상실시권 허락	2008-01-18
특허	112	안정기 수납부가 형성된 보수용 커버를 갖는 가로 등주	10-0796449	통상실시권 허락	2008-01-15
특허	113	자동제어를 이용한 선택적 전처리 막여과 고도처리 장치 및 그 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91896	통상실시권 허락	2007-12-28
특허	114	미끄럼방지용 다짐롤러장치	10-0784031	통상실시권 허락	2007-12-03
특허	115	기초구조물과 분리결합이 용이한 가로등주	10-0775816	통상실시권 허락	2007-11-06
특허	116	빗물받이 받침대	10-0747772	통상실시권 허락	2007-08-02
특허	117	막분리 정수처리장치의 수질 등급코드를 이용한 운전모드 선택장치 및 그 운영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20140	통상실시권 허락	2007-05-14
특허	118	막분리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의 막오염 지수 연속 모니터링에 의한 응집 전처리공정 제어장치 및 그 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20139	통상실시권 허락	2007-05-14
특허	119	신축이음장치의 고무셀 보호부재	10-0700947	통상실시권 허락	2007-03-22
특허	120	복공판(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665967	통상실시권 허락	2007-01-02
특허	121	다용도 수중점검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342154	통상실시권 허락	2002-06-14
특허	122	황산염 환원균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방법	10-0283403	통상실시권 허락	2000-12-07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실용신안	1	제설재 살포장치용 비산방지장치	20-0486350	통상실시권 허락	2018-04-27
실용신안	2	대기전력 차단용 검전 플러그	20-0487241	통상실시권 허락	2018-08-20
실용신안	3	음식을 쓰레기 퇴비화 장치	20-0485115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22
실용신안	4	다짐도 평가장치	20-0485051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16
실용신안	5	소형 LED 식물재배기 자동관수장치	20-0484008	통상실시권 허락	2017-07-12
실용신안	6	친환경 교육용 원형 상자텃밭	20-0483156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4
실용신안	7	그레이팅 개폐기	20-0481637	통상실시권 허락	2016-10-19
실용신안	8	다기능 방화담요	20-0481506	통상실시권 허락	2016-10-19

실용신안	9	잔수제거용 호스말이	20-0480708	통상실시권 허락	2016-06-22
실용신안	10	정화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공기호흡기	20-0475460	통상실시권 허락	2014-11-26
실용신안	11	소화기용 도구	20-0472691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실용신안	12	등주형 분전함	20-0470661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26
실용신안	13	맨홀뚜껑 개방장치	20-0470567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9
실용신안	14	산화된 철분거름기구	20-0465120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29
실용신안	15	조명장치	20-045919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05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디자인	1	창문 비상탈출용 브래킷(2)	30-0962210	통상실시권 허락	2018-06-21
디자인	2	창문 비상탈출용 브래킷(1)	30-0962209	통상실시권 허락	2018-06-21
디자인	3	상수도용 공기밸브 뚜껑	30-090824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22
디자인	4	관아음매용 플랜지(거치대를 장착한 밸브)	30-0902760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7
디자인	5	맨홀받침 블록(1)(2)(매물형 지하식 소화전 맨홀하부 기초블록)	30-0902711-0001/000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7
디자인	6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30-081472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18
디자인	7	수도용 가변 이형관(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30-072573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1-13
디자인	8	가로등	30-0743445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디자인	9	가로등	30-0723292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26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또는 서울시)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나. 해외 시유평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명칭	국가	출원번호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비고
특허	1	홍부압박시스템	일본	JP/2015-036270	6391497	통상실시권 허락	2018-08-31	국내특허 10-1532418
특허	2	소화장치	중국	CN/2013101588529	103372271	통상실시권 허락	2016-03-16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특허	3	소화장치	일본	JP/2013-95853	5681748	통상실시권 허락	2015-01-16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특허	4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미국	US/2011/0220558	8834711	통상실시권 허락	2014-09-16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5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중국	CN/200980122574	102066271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11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6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일본	JP/2011-512410	5356512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06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7	조류퇴치장치	미국	US/2014/631663	9655358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23	국내특허 10-1743707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각 시유평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전역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평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3. 신청방법

가. 기 간 : 수시접수 가능

나. 방 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조직담당관 유진 앞
- 이메일 : rasrad1357@seoul.go.kr

다. 구비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4. 신청자격

- 대상 시유평특허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해외특허)의 실시 가능업체(사업자등록 업체)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계약대상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나. 통상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다만, 시유평특허권 실시료 건적금액은 수의계약신청서에 기재한다.

※ 실시료 건적금액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평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기본 3%. 다만, 해당 시유평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할 수 있음

라. 실시료 건적금액은 예상금액을 기재할 뿐 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납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마. 공공성·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사. 계약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등본(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유평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이 된 이후에는 제품 홍보를 위해 계약자의 업체명,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6. 계약 및 실시료 정산 방법

가. 계약대상자가 결정되면 계약대상자에 한해 실시를 위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나. 계약내용

1) 실시기간은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으로 한다.

※ 특허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구조물 및 처리시스템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본 공고와 별도로 특허가 반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로 한다.

2)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및 제품의 판매단가 기준은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수량 및 가격으로 한다.

3) 실시료 건적금액 산정식의 점유율은 계약체결시 협의하여 확정한다.

4) 기본율은 기본 3%로 하여 년 단위로 실시료를 산정*한다.

* 다만, 해당 시유평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조정 할 수 있음

다. 지정된 처분범위와 건적금액을 내용으로 계약서 확인과 함께 서울시가 날인한 “시유평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2부)”에 계약대상자 날인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시유평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정산내용

1)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년 단위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확인하여 실시료

납부액을 산정한다.

※ 실시료산정식 = 제품의 총판매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총판매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평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계약 체결시 확정함)
- 기본율: 기본 3%(계약 체결시 확정함)

- 2) 실시료 정산시 실시실적 증빙서류로 총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 1부를 제출한다.
- 3)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는 해당제품의 재고자산수불부, 거래처별 납품내역서, 제품판매 현황자료, 회계장부,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은 과세 서류 등 공인된 제품별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 4) 실시료 매출액 미발생시 사유서 제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7. 문의처

- 기타 시유평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권설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주무관 유진(☎ 02-2133-6747,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시유평허권 처분)

신 청 인	① 명칭(대표자)	(예시) (주) 기업체명 (홍길동)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권 리 의 표 시		(예시) 특허등록 제10-00000000호		
⑤ 발명 (고안) 의 명칭				
⑥ 처 분 의 종 류		☐ 매 수 ☐ 전용 실시(권) ☒ 통상 실시(권)		
⑦ 실 시 범 위		기 간 : 201 . . - 201 . . (년간) 지 역 : 대한민국 전역 내 용 : 특허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⑧ 건 적 금 액		(예시) 금 960천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 청 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당해 시유평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사 업 계 획 서(예시)

1. 회 사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명)			

2. 회 사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대표자 이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경력	기간	기업체명	주생산 품목	최종직위

4. 인원 현황

부서명	경영직	사무직	영업직	...	합계
인사/총무					
생산					
영업					
⋮					
합계					

5. 시유평혀 사업화 추진계획

- ① 당해 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 ②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실 시 료 건 적 서

권리의 표시	특허 제 호
발명의 명칭	
실시료 건적금액	금 960천원

[예시]

- 실시료의 건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100개
 - 제품의 판매단가/단위 : 400천원/개
 - 점유율 : 80%
 - 기본율 : 3%
 - ※ 해당제품의 경우 특허10-00000호의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점유율 80%로 신청함
- 실시료 산출금액
 - $100\text{개} \times 400\text{천원/개} \times 80\% \times 3\% = 960\text{천원}$

※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판 매 단 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 유 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 본 율 : 3%

2019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이사 홍길동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63호

**2019년 상반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 공고**

2019년 상반기(4월 ~ 6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 이수증 발급 대상자

- 제22호 마들농요 : 김대식
- 제25호 판소리고법 : 황영남, 김선호, 정주리, 한인석
- 제39호 아쟁산조 : 김예지나, 박재성, 윤세림
- 제45호 한량무 : 박미경, 박성욱, 강미숙, 안영환, 김신자, 박철순, 김은영, 김상열
- 제46호 살풀이춤 : 김경희, 유미라, 장관순, 이희진

□ 안내사항

- 이수증은 이수심사 결과 공고 후 30일 이내 이수심사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 또는 보존회 사무실로 송부해 드릴 예정입니다.(직접수령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이수심사 담당 (02-2133-2616, 신영문 주무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69호

도시계획시설(경의선숲길 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1호(2011.12.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0호(2013.10.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20호(2013.12.12)로 공원조성계획결정, 제2014-78호(2014.3.6.)로 실시계획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1호(2017.7.17.), 제2015-184호(2015.6.25.)로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3호(2015.7.9.)로 실시계획 재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제2019-71호(2019.02.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경의선숲길 공원’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1. 사업 주요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의선 지상구간(용산문화체육센터 ~ 가좌역)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정의선숲길 공원조성사업
- 다. 사업면적 : 102,715.6㎡(근린공원)
- 라.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장(공원녹지정책과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마.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에 따른 면적 증감 및 시설 귀속 결정 사항 반영
- 바. 사업의 착수, 준공일 : 2019.2.21 ~ 2019.6.30.
- 사.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등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2. 비치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2133-202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71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한 과학관을 같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기 준	변 경
1. 명 칭 : 한생연실험누리과학관	1. 명 칭 : 한생연실험누리과학관
2. 등록번호 : 제 서-6호	2. 등록번호 : 제 서-6호
3. 구 분 : 전문과학관(사립)	3. 구 분 : 전문과학관(사립)
4. 설 립 자 : 정구민, 박현주	4. 설 립 자 : 정구민, 박현주
6. 대 표 자 : 정구민	6. 대 표 자 : 정구민
7. 연 면 적 : 763.19㎡	7. 연 면 적 : 567.4㎡
8. 과학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6층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호)	8. 과학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6층 (606, 607, 608, 609, 61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75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2016년도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9. 7.18. ~ 2019. 8. 1.(15일간)
5.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해 주차요금 및 납부기한 확인하여 납부
6. 유의사항
 - 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메일(joaing@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독촉 납부기한(2019.8.15.)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담당 조근희, ☎02-2133-5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2016년도분) 공시청달 대상명단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원)	대표소유자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계	13건					86,300			
1	000627	83소7662	2016-01-13	16:25	18:00	9,000	조형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폐문부재
2	000595	63무8867	2016-03-11	17:23	18:00	800	이희숙, 장석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주소불명
3	000599	68어9367	2016-03-16	16:24	18:00	9,000	안승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폐문부재
4	000627	70오5989	2016-04-12	16:56	18:00	6,000	김숙자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폐문부재
5	000724	42거1887	2016-06-16	17:34	18:00	2,000	김철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12길	보관기간경과
6	000753	83루5561	2016-07-22	16:01	18:00	12,000	김종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보관기간경과 후 반송함
7	000762	65도6882	2016-08-16	16:58	18:00	6,000	이승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보관기간경과
8	000766	03다5721	2016-08-29	17:27	18:00	3,000	양영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폐문부재
9	000771	04조7768	2016-09-06	16:53	18:00	7,000	이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폐문부재
10	000778	12나8033	2016-09-26	15:03	18:00	9,000	김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보관기간경과
11	000779	12나8033	2016-09-27	17:30	18:00	1,500	김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보관기간경과
12	000780	12나8033	2016-09-28	12:24	18:00	16,500	김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보관기간경과
13	000810	18무2699	2016-11-02	16:30	18:00	4,500	홍수빈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76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2016년도분, 2차)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9.7.18. ~ 2019.8.1.(15일간)
5.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해 주차요금 및 납부기한 확인하여 납부
6. 유의사항

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메일(joaing@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경과시, 향후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담당 조근희, ☎02-2133-5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원(2016년도분, 2차) 공시충달 대성명단

(단위:원)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	대표소유자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계	2건					19,000			
1	000865	59너7534	2016-06-14	17:39	18:00	2,000	(주)에이스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이사불명
2	000868	04하1416	2016-09-19	15:06	18:00	17,000	유월수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수취인불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77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2017년도분, 2차)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9. 7.18. ~ 2019. 8. 1.(15일간)
5.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해 주차요금 및 납부기한 확인하여 납부
6. 유의사항
 - 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메일(joaing@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독촉 납부기한(2019.8.15.)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담당 조근희, ☎02-2133-5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2017년도분, 2차) 공시송달 대상명단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원)	대표소유자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계	41건					502,900			
1	000189	05다0538	2017-01-13	17:29	18:00	3,000	주식회사 해밀테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101번길	수취인불명
2	000190	42누6951	2017-01-17	16:12	18:00	5,500	김소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32길	폐문부재
3	000212	45두6168	2017-04-04	17:30	18:00	600	김재룡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주소불명
4	000216	51러9720	2017-04-07	16:37	18:00	8,000	임동준	경기도 부천시 소항로	폐문부재
5	000219	16루5680	2017-04-13	17:19	18:00	4,000	정종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6길	주소불명
6	000225	09다1367	2017-04-24	17:17	18:00	4,000	정대현(공채면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폐문부재
7	000228	67보9368	2017-05-01	7:09	18:00	54,000	양영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폐문부재
8	000239	48조5664	2017-05-19	15:12	18:00	8,000	정길영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폐문부재
9	000252	11루3381	2017-06-05	9:00	18:00	54,000	황돈영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397번길	폐문부재
10	000257	42고8245	2017-06-09	15:39	18:00	14,000	이승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호대로1길	수취인불명
11	000268	46오6544	2017-06-27	17:21	18:00	4,000	박현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8길	보관기간경과후 반송(불요)
12	000270	42소0606	2017-06-30	12:53	18:00	31,000	최은창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8길	폐문부재
13	000271	86모9183	2017-06-30	17:33	18:00	3,000	이진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34길	폐문부재
14	000276	19나3750	2017-07-04	16:37	18:00	8,000	최규철	경기도 하남시 신정로56번길	폐문부재
15	000290	12다2832	2017-07-17	8:41	18:00	54,000	박성규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폐문부재
16	000298	60나6438	2017-07-21	16:22	18:00	5,000	조인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9길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불요
17	000301	02저5208	2017-07-24	17:03	18:00	1,200	김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이사불명
18	000303	60버1234	2017-07-24	17:38	18:00	2,000	송운창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폐문부재
19	000304	27구2960	2017-07-25	16:43	18:00	8,000	김승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웃말1길	폐문부재
20	000306	37버5499	2017-07-28	17:06	18:00	5,000	신은희	경기도 과천시 공원마을4길	폐문부재
21	000309	49조7967	2017-08-03	15:16	18:00	8,000	이민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50번길	폐문부재
22	000317	60터5054	2017-08-14	14:11	18:00	4,600	이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27길	주소불명
23	000326	41조1527	2017-08-21	17:26	18:00	1,500	이명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21번길	폐문부재
24	000328	09루6286	2017-08-22	15:03	18:00	18,000	용소습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75번길	보관기간경과반송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원)	대표소유자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25	000332	14루6142	2017-08-25	15:57	18:00	6,000	박현광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78번길	주소불명
26	000335	19모0505	2017-08-25	17:38	18:00	2,000	유호성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26가길	폐문부재
27	000342	25너4961	2017-08-31	17:40	18:00	1,000	서경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소성로	보관기간경과후 반송
28	000348	27오2874	2017-09-07	13:37	18:00	26,000	윤현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53번길	폐문부재
29	000362	18노8512	2017-09-21	15:18	18:00	16,000	홍정환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둔지길	폐문부재
30	000375	22로7800	2017-09-29	17:30	18:00	1,500	박상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폐문부재
31	000378	55다0322	2017-10-11	16:46	18:00	7,000	MOON JAMES JAE WON(문재원)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폐문부재
32	000380	34나0626	2017-10-13	16:48	18:00	3,000	김동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27번길	보관기간경과
33	000382	60아6734	2017-10-17	17:38	18:00	1,000	한상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8아길	폐문부재
34	000385	64다5457	2017-10-20	17:35	18:00	2,000	김현복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폐문부재
35	000392	01노2453	2017-11-01	8:49	18:00	54,000	전종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52가길	보관기간경과후 반송(불요)
36	000405	29주0875	2017-11-17	17:16	18:00	4,000	김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47길	보관기간경과후 반송(불요)
37	000409	46마8734	2017-11-23	16:01	18:00	12,000	홍위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0길	폐문부재
38	000417	19조0123	2017-11-23	17:26	18:00	1,500	강태현,강성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63번길	이사불명
39	000429	11부2993	2017-11-28	17:25	18:00	1,500	김하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임로694번길	보관기간경과
40	000441	80라5678	2017-12-08	8:46	18:00	54,000	주시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856번길	폐문부재
41	000450	43루5650	2017-12-19	17:37	18:00	2,000	신상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길	보관기간경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82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64건)

경고 대상차량 차주분께서는 본 고지일로부터 2019년 8월 2일(금)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8월 2일(금)이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여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	01모6396	김*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0 13:11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	01주3569	쥬디자인*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30 14:49	철산대교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	02노5073	코*임팩스-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17 18:51	개화역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03나7058	티*비전파기술-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12 12:21	강변북로 (서울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	03마8601	한*제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01 14:45	도봉로시계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	03버3662	조*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5-06 17:01	삼육대입구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7	04가4459	최*숙외1(안*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5-17 21:35	북부간선도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8	10모3533	서*덕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11 21:51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	14두6627	고*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01 21:38	강일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	14머9728	LI Y*NJI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11 16:19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1	19무2464	JIN M*GHA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07 11:22	상일IC주도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	24서9971	윤*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5-30 13:52	북부간선도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3	25나3653	김*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5-31 10:45	안양천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	27너3691	이*형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15 18:11	도봉로시계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5	29고5700	이*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9 16:11	경인고속도로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	32더8368	고*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10 23:29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7	33라1633	박*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05 21:38	양재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8	36고4529	박*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5-13 19:18	양재IC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9	36오8636	윤*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5-26 10:15	북부간선도로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	39고5870	한*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5-04 14:54	강일IC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1	43나8839	임*범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22 19:43	혜화문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2	43다9452	최*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11 13:28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23	43저4159	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20 15:52	철산대교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4	46더8853	이*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5-18 20:28	양재IC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5	54주9464	이*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06 17:44	동일로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6	58여9534	이*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5-21 13:31	덕은교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7	62거1146	김*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05 14:24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8	64주0504	노*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12 01:57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9	70다3010	이*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5-03 15:30	광희문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0	71누1117	성*중앙교회(김*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30 10:26	대곡교후방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1	74거6462	이*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31 09:58	서오릉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2	74저1863	LI KA*YI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30 18:40	철산대교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3	76소5668	고*옥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23 16:05	삼육대입구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4	78조1116	김*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22 18:36	대곡교후방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5	80구2934	주-모*재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5-29 14:32	흥인지문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6	80누5571	김*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20 14:14	강일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7	80루1007	김*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16 11:49	수서IC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8	80주1243	구*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6 13:21	화곡로입구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39	85마1477	주식회사 연*커뮤니케이션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5-31 13:57	개화역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0	86노6835	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5-08 15:32	강변북로 (서울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1	88가4840	김*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30 15:57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2	89보5043	유*형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13 12:51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3	89소3537	최*형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24 19:16	대곡교후방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4	90가9447	유*욱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5-12 16:08	도봉로시계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5	90로4795	(주)엘*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22 10:29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6	90마3528	김*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5-23 21:07	삼육대입구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7	90우6354	주식회사 아*기획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31 15:37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8	92가1252	권*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5-11 13:23	서오릉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9	92모6767	김*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5-29 17:41	강일IC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0	92보3318	양*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17 17:01	양재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1	92보6778	이*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5-28 12:03	북부간선도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2	94수5869	신*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31 06:15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3	97오2883	손*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5-05 09:49	강일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4	경기33도9660	정*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14 09:23	삼육대입구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55	서울30노1901	유*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04 23:59	지방도309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6	서울34더9946	임*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06 08:03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7	서울39더8425	이*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07 10:27	동일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8	서울45로4079	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26 23:19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9	서울46노6850	박*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31 11:58	북부간선도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0	서울51로9890	전*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19 12:37	광희문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1	서울73나7161	백*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20 10:29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2	서울82구7022	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5-28 13:01	돈의문터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3	서울83더3132	㈜도*스프리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5-31 15:30	석수역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4	서울85거1593	이*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30 18:09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공 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9년 8월 2일(금)

나. 본 경고조치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Fax 02-2133-1025)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83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355건)

과태료부와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88오9945	김*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5-01 02:30	광희문 3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74가3969	오*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02 15:46	도봉로시계 2차로	"	"
3	54가5112	이*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5-03 15:06	혜화문 1차로	"	"
4	01보2023	강*환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04 17:46	삼성역 1차로	"	"
5	02모1791	이*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05 17:12	소의문터 2차로	"	"
6	서울43고5424	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05 14:38	수서IC 2차로	"	"
7	서울54로7716	이*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05 19:14	개봉교후방 2차로	"	"
8	96조1184	김*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06 10:59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2차로	"	"
9	13더3732	이*봉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07 23:29	소의문터 2차로	"	"
10	87러7845	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07 14:17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1	90나1989	아*조경건설 (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07 12:19	철산대교 3차로	"	"
12	서울31머4250	박*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07 15:49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13	05나5335	신*철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08 07:35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14	70더9143	장*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5-09 20:32	오쇠삼거리 1차로	"	"
15	80로4063	주식회사 민*산업개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09 11:45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16	85노3945	권*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09 22:14	경인고속도로 4차로	"	"
17	27루4519	서울중*교회 (권*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11 19:52	도봉로시계 2차로	"	"
18	49조5954	박*숙외1인(김*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11 19:35	경인고속도로 3차로	"	"
19	80러2171	박*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11 00:29	양재IC 4차로	"	"
20	75나1888	이*백	서울특별시 중구	2019-05-12 14:20	장충체육관 3차로	"	"
21	86더9754	오*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12 06:35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	"
22	96더8265	이*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5-12 17:50	도봉로시계 4차로	"	"
23	서울37거3591	이*숙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12 18:07	동일로 4차로	"	"
24	서울56나4460	박*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12 09:20	삼성역 3차로	"	"
25	02나2324	최*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13 11:41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3차로	"	"
26	57모5686	이*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13 10:43	강변북로 (서울방향) 1차로	"	"
27	72나9083	김*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13 10:47	서하남IC 3차로	"	"
28	80러2712	김*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13 13:16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29	93소2676	신*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13 15:39	서하남IC 1차로	"	"
30	16너5004	이*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5-14 02:43	광희문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31	46나9992	박*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5-15 12:25	수서IC 3차로	"	"
32	80너3501	주-남*라면 상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15 14:56	강일IC 4차로	"	"
33	94저6515	서*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5-15 20:54	분당내곡로 2차로	"	"
34	서울80누3640	김*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15 06:18	동일로 4차로	"	"
35	서울83가8318	이*식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15 14:45	도봉로시계 3차로	"	"
36	70저2458	나*덕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5-16 16:41	통일로 1차로	"	"
37	86거8657	유*열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16 17:23	강일IC 1차로	"	"
38	서울40고7360	김*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5-16 10:19	해화문 1차로	"	"
39	80너5172	주-지*플레 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17 14:46	강일IC 4차로	"	"
40	80도2523	유*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5-17 10:39	해화문 2차로	"	"
41	92더3636	이*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17 16:29	올림픽대로 (공방방향) 5차로	"	"
42	92러7564	이*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17 15:00	작동터널 1차로	"	"
43	06다7919	김*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18 05:59	서오릉로 3차로	"	"
44	08마9126	노*근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18 06:31	개봉교후방 1차로	"	"
45	34어5784	곽*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18 23:26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1차로	"	"
46	41수1681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18 17:49	철산대교 3차로	"	"
47	46구6877	배*현외1(임 *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5-18 14:56	장충체육관 2차로	"	"
48	80노8007	(주)필에*이엘 미디어	서울특별시 중구	2019-05-18 12:00	개화역 1차로	"	"
49	85부6683	김*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18 19:02	덕은교 1차로	"	"
50	86두9305	윤*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18 17:34	경인고속도로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51	88서1045	가*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18 14:33	삼육대입구 2차로	"	"
52	01로5091	이*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19 19:11	호암로 1차로	"	"
53	02구5860	차*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19 13:12	망우리고개 3차로	"	"
54	45부4376	김*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19 13:20	개화역 3차로	"	"
55	46소2037	박*숙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19 12:26	장충체육관 1차로	"	"
56	48가7358	노*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19 14:05	도봉로시계 3차로	"	"
57	70거1758	문*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19 06:48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58	70모1739	박*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5-19 16:19	삼성역 4차로	"	"
59	80누2170	김*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19 10:30	망우리고개 2차로	"	"
60	90가1593	김*하	서울특별시 중구	2019-05-19 10:30	북부간선도로 3차로	"	"
61	91가2868	이*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19 02:38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3차로	"	"
62	서울46노3238	(주)가*백화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19 17:34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63	03고8137	박*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0 14:46	안양천로 3차로	"	"
64	66무3260	이*만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20 07:52	서하남IC 1차로	"	"
65	80보2178	고*흥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5-20 10:54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5차로	"	"
66	89가9394	강*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0 17:48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67	89오5659	김*관	서울특별시 중구	2019-05-20 12:42	흥인지문 3차로	"	"
68	93거6381	신*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0 17:31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4차로	"	"
69	97소8505	김*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20 11:58	양재IC 1차로	"	"
70	서울73머6431	송*숙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20 17:53	강일IC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71	서울82도6802	이*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20 18:00	수서IC 1차로	"	"
72	21도3875	박*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21 07:06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73	57부7056	강*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5-21 20:15	강변북로 (서울방향) 4차로	"	"
74	75너5698	정*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21 22:13	대곡교후방 1차로	"	"
75	80버5850	(주)세*폴리텍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21 18:03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1차로	"	"
76	89모9988	강*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21 17:00	도봉로시계 2차로	"	"
77	서울87아5521	(주)범*상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1 10:28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4차로	"	"
78	서울87자1821	김*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1 13:42	화곡로입구 2차로	"	"
79	49어3133	황*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22 15:24	동일로 4차로	"	"
80	84러9735	인*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22 23:20	분당내곡로 3차로	"	"
81	서울46도8424	임*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22 19:26	분당내곡로 2차로	"	"
82	43서3648	김*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3 09:22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4차로	"	"
83	80고6157	채*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23 17:09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84	80무6187	최*쌍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3 17:57	개화역 3차로	"	"
85	80어2116	주식회사 삼*종합전력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23 08:37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86	80오1380	문*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23 07:52	사당IC주도로 1차로	"	"
87	86노4077	최*락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23 09:02	소의문터 2차로	"	"
88	89고9337	주식회사 대*이노베이 션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23 14:26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89	90오1960	김*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3 17:18	석수역 5차로	"	"
90	92보3415	최*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5-23 09:07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91	서울85바3600	케이*화물하 역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23 13:04	수주삼거리 1차로	"	"
92	10주2706	신*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4 13:03	소의문터 1차로	"	"
93	18러3877	이*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24 19:12	양재IC 1차로	"	"
94	24도4260	이*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24 14:57	사당IC주도로 2차로	"	"
95	32머5328	NI FA*HU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5-24 15:48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3차로	"	"
96	36나3887	김*옥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24 16:23	삼육대입구 1차로	"	"
97	36도7105	이*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5-24 17:30	양재IC 1차로	"	"
98	39나1311	사*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24 19:53	서하남IC 3차로	"	"
99	77주4070	김*억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24 06:40	장충체육관 3차로	"	"
100	87오3601	주식회사 에*지자산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24 11:48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	"
101	92오3841	최*종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24 19:02	서하남IC 3차로	"	"
102	98주2610	주식회사 삼*종합전력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24 07:41	덕은교 1차로	"	"
103	서울51무3179	(주)태*종합건 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24 08:14	덕은교 1차로	"	"
104	서울85고2421	정*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5-24 13:48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105	서울85고6565	유*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4 13:09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106	서울87바8160	합*경동택배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24 06:29	흥인지문 3차로	"	"
107	01더5987	(주)온*쉬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25 00:25	서하남IC 3차로	"	"
108	12로2934	윤*섭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25 10:40	망우리교개 3차로	"	"
109	16고4837	박*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5 15:25	덕은교 1차로	"	"
110	20라4471	박*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5 18:38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11	29구4977	기*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5-25 11:34	강일IC 3차로	"	"
112	39구6755	이*애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25 21:27	분당수서고속화 도로 1차로	"	"
113	48보4495	김*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5 11:29	개봉교후방 1차로	"	"
114	55도7227	이*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25 07:38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	"
115	56노1399	김*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25 15:43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4차로	"	"
116	80버2539	오*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5-25 13:27	삼육대입구 3차로	"	"
117	81더0956	이*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5 18:44	개화역 4차로	"	"
118	90부8305	유*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5 18:29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2차로	"	"
119	92오1564	주식회사 동*금속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25 16:29	도봉로시계 4차로	"	"
120	96보1441	선우*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5-25 11:51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121	서울30고7241	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5-25 11:38	흥인지문 3차로	"	"
122	서울36러1962	홍*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5-25 14:14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123	서울38더1802	박*운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5 15:57	개화역 4차로	"	"
124	서울85두2419	박*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25 15:28	상일IC진출로 2차로	"	"
125	서울88사8563	태*운수(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25 06:56	북부간선도로 3차로	"	"
126	01라4079	한*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5-26 18:18	망우리교개 2차로	"	"
127	02버3754	(주) 비*메딕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5-26 17:10	분당수서고속화도로 2차로	"	"
128	03오1301	김*삼	서울특별시 중구	2019-05-26 16:44	장충체육관 2차로	"	"
129	18라9560	염*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26 18:55	강일IC 2차로	"	"
130	28부4948	염*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26 11:20	양재IC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31	31나6847	김*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26 10:03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2차로	"	"
132	34서1196	유*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26 19:29	서하남IC 1차로	"	"
133	37조7713	소*애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26 02:56	호암로 1차로	"	"
134	39조6275	오*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5-26 19:00	광희문 1차로	"	"
135	40러5649	권*옥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5-26 18:44	강변북로 (서울방향) 5차로	"	"
136	62더3855	위*복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26 14:35	양재IC 1차로	"	"
137	70구3778	윤*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5-26 16:22	북부간선도로 3차로	"	"
138	70소1133	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26 23:43	가마산로 2차로	"	"
139	80오5869	백*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26 08:00	양재IC 4차로	"	"
140	90나3300	김*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26 06:30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2차로	"	"
141	92더8146	지*화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26 14:49	강일IC 3차로	"	"
142	92보6038	(주)세*폴리텍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26 14:27	삼육대입구 1차로	"	"
143	서울36노6593	박*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5-26 04:53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144	서울41고7702	허*섭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26 08:53	서오릉로 1차로	"	"
145	서울50러5640	정*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26 12:31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3차로	"	"
146	10버7229	김*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27 11:50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5차로	"	"
147	19루7114	정*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27 11:40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4차로	"	"
148	27보1864	김*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27 22:35	강일IC 1차로	"	"
149	28라7478	김*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27 07:21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1차로	"	"
150	33고2072	명*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7 13:32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51	35조7443	김*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27 20:45	석수역 3차로	"	"
152	43나6138	이*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27 22:58	통일로 1차로	"	"
153	43나9110	박*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27 11:42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154	43서4909	조*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27 15:06	서하남IC 3차로	"	"
155	48조7101	김*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27 18:15	삼성역 3차로	"	"
156	68머9989	조*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27 14:13	망우리고개 2차로	"	"
157	73노2107	김*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27 17:50	경인고속도로 2차로	"	"
158	75버1797	강*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27 19:54	가마산로 1차로	"	"
159	80도4480	김*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7 19:55	개화역 4차로	"	"
160	80소3858	송*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7 19:28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3차로	"	"
161	82구1571	윤*화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27 11:26	개봉교후방 1차로	"	"
162	98가8454	정*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7 15:32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	"
163	서울54로5543	(주)동*기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27 15:24	삼육대입구 2차로	"	"
164	서울73누1732	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27 17:02	분당내곡로 2차로	"	"
165	서울84사5716	홍*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7 13:46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1차로	"	"
166	서울85노4167	김*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27 09:45	삼육대입구 2차로	"	"
167	서울85다6999	이*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27 10:43	경인고속도로 1차로	"	"
168	서울85바3718	합동경*택배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27 06:36	양재IC 4차로	"	"
169	01나4283	하*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5-28 15:58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170	01노6158	김*수외1인(손*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5-28 21:19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71	26두3458	심*택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28 17:42	동일로 2차로	"	"
172	41부8771	주식회사 유*피솔루션	서울특별시 중구	2019-05-28 03:08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1차로	"	"
173	46가7405	김*학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28 14:00	호암로 2차로	"	"
174	66버3652	배*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5-28 19:15	강일IC 2차로	"	"
175	80가2508	김*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5-28 06:48	대곡교후방 2차로	"	"
176	80너6417	최*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28 16:56	서오릉로 3차로	"	"
177	80노8515	김*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8 15:42	경인고속도로 3차로	"	"
178	80더1201	최*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28 12:22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2차로	"	"
179	80부4863	권*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28 07:41	양재IC 1차로	"	"
180	80서3347	박*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28 10:14	양재IC 4차로	"	"
181	84모8952	김*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28 10:08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2차로	"	"
182	90소6371	우*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28 22:49	삼성역 3차로	"	"
183	92로8801	이*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28 19:34	강변북로 (서울방향) 5차로	"	"
184	92모6705	백*숙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28 16:52	서오릉로 3차로	"	"
185	서울31머1663	(주)가*텔레콤	서울특별시 중구	2019-05-28 14:43	작동터널 2차로	"	"
186	서울44노4998	김*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5-28 15:07	해화문 2차로	"	"
187	서울73고2386	심*보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28 17:01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188	서울73더1950	서*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8 15:25	화곡로입구 2차로	"	"
189	서울80모1155	이*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28 18:46	광희문 3차로	"	"
190	01로2791	최*석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29 18:46	동일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91	02버1785	권*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5-29 10:37	삼성역 1차로	"	"
192	04너5233	신*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29 19:14	유한공고 2차로	"	"
193	08모3242	XU SH*HENG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29 22:15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2차로	"	"
194	12로2312	김*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5-29 14:41	지방도309 2차로	"	"
195	15너9774	김*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9 17:45	개화역 2차로	"	"
196	20두6155	㈜월드*건설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29 15:17	상일IC주도로 2차로	"	"
197	22주7818	김*운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29 16:26	강일IC 2차로	"	"
198	38가4753	곽*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29 04:45	개화역 2차로	"	"
199	39가8665	이*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29 16:52	석수역 2차로	"	"
200	43나2402	이*익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29 15:15	인천국제공항고속도 로 3차로	"	"
201	47누9146	김*복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29 17:58	호암로 2차로	"	"
202	59누3971	CUI H*UN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29 12:21	석수역 4차로	"	"
203	70라1099	킨*슬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29 10:09	수서IC 2차로	"	"
204	74더1012	기쁨이* 교회(윤*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5-29 11:53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205	75조2391	김*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29 10:16	수서IC 2차로	"	"
206	80노8683	양*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5-29 14:27	덕은교 1차로	"	"
207	80누5084	송*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29 09:11	수서IC 4차로	"	"
208	86서3888	전*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29 18:13	통일로 2차로	"	"
209	92가9248	박*필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29 19:33	유한공고 1차로	"	"
210	92어7652	배*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5-29 13:08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11	93다3135	조*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29 09:14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	"
212	94다7953	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5-29 11:13	해화문 3차로	"	"
213	95어4010	황*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29 08:33	상일IC주도로 3차로	"	"
214	서울43고8425	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5-29 12:21	분당내곡로 3차로	"	"
215	서울45노4799	최*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29 16:24	경인고속도로 3차로	"	"
216	서울82도5495	문*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5-29 04:59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4차로	"	"
217	서울84사6519	이*빈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29 13:16	도봉로시계 1차로	"	"
218	01도9089	김*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30 22:38	개화역 3차로	"	"
219	01라6015	김*형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0 23:35	화곡로입구 1차로	"	"
220	02고1618	박*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30 18:56	작동터널 1차로	"	"
221	02노5794	주식회사 강*후르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0 01:54	개화역 2차로	"	"
222	03너4203	나*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30 17:01	양재IC 3차로	"	"
223	03모5669	최*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30 17:06	밤고개로 1차로	"	"
224	04노9834	송*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30 14:13	덕은교 1차로	"	"
225	04머1318	심*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30 18:42	개화역 1차로	"	"
226	04오6770	배*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30 14:57	해화문 2차로	"	"
227	09더6196	안*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30 15:37	삼성역 3차로	"	"
228	21너8173	의료법인 의*의료 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5-30 21:24	광희문 1차로	"	"
229	34가7016	소*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30 21:16	망우리교개 3차로	"	"
230	37두3723	조*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5-30 17:00	서하남IC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31	37조7090	조*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30 15:02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1차로	"	"
232	38다1056	이*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30 23:44	강일IC 3차로	"	"
233	43나9235	이*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30 08:27	석수역 5차로	"	"
234	45모9288	권*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30 20:59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1차로	"	"
235	50부4168	JIN MI*ZI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30 07:41	호암로 2차로	"	"
236	61보7343	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5-30 20:31	강변북로 (서울방향) 5차로	"	"
237	64주0793	이*병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0 11:27	분당내곡로 1차로	"	"
238	67노5256	CUI GU*HU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30 12:46	철산대교 3차로	"	"
239	68다0252	이*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30 17:31	대곡교후방 3차로	"	"
240	77소4245	김*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5-30 15:43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	"
241	79서9106	김*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30 17:01	철산대교 3차로	"	"
242	80거5676	서*틴(주)	서울특별시 중구	2019-05-30 15:23	안양천로 2차로	"	"
243	80고3619	최*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30 10:26	개봉교후방 1차로	"	"
244	80노3912	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30 07:34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245	80누4062	㈜건축사 사무소 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30 06:09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2차로	"	"
246	80로5560	최*옥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30 15:42	광희문 1차로	"	"
247	80오9167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30 12:44	분당내곡로 2차로	"	"
248	83고1205	류*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30 09:10	수서IC 1차로	"	"
249	88도3331	이*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5-30 06:59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250	88오1624	우*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30 12:34	수서IC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51	89서8391	양*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5-30 11:59	사당IC주도로 3차로	"	"
252	91오6990	지포*딩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0 17:28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1차로	"	"
253	92라6404	윤*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5-30 15:50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254	96두4383	송*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30 09:13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	"
255	98나1077	한국방*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30 10:41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	"	"
256	98소1167	주식회사 수*에스엔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0 12:16	수서IC 4차로	"	"
257	98주2603	주식회사 삼*종합전력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30 07:29	덕은교 1차로	"	"
258	서울44누1785	김*복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30 17:30	수주삼거리 1차로	"	"
259	서울44루3283	강*덕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30 16:15	돈의문터 2차로	"	"
260	서울46머3369	김*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30 19:00	석수역 5차로	"	"
261	서울71마8935	공*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30 06:42	삼성역 2차로	"	"
262	서울80배5004	주*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5-30 12:18	덕은교 1차로	"	"
263	서울83나4785	오*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5-30 13:04	망우리고개 3차로	"	"
264	서울83노7093	안*춘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30 14:08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265	서울85바3694	합동경*택배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30 17:19	수주삼거리 1차로	"	"
266	서울85바6379	주식회사 엔*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30 07:44	양재IC 4차로	"	"
267	서울86나3798	공*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30 14:47	망우리고개 3차로	"	"
268	01라2191	정*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1 10:06	개화역 1차로	"	"
269	01로9655	(주)지*그룹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31 19:25	호암로 2차로	"	"
270	02나1104	서울특별시 중*청	서울특별시 중구	2019-05-31 13:25	광희문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71	02부6660	최*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5-31 11:40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1차로	"	"
272	02어4839	김*봉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31 16:51	서하남IC 3차로	"	"
273	02저5031	주-신*냉난 방시스템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31 00:22	화곡로입구 2차로	"	"
274	05도7348	우*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31 14:34	소의문터 1차로	"	"
275	07구3627	정*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31 16:58	호암로 1차로	"	"
276	10어3212	송*권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1 17:33	개화역 2차로	"	"
277	11라1392	김*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31 15:07	도봉로시계 3차로	"	"
278	17루8547	김*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31 11:11	사당IC주도로 1차로	"	"
279	21마0306	방*완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31 09:11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	"
280	22더9848	김*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1 13:58	화곡로입구 1차로	"	"
281	27조5935	윤*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5-31 05:51	강변북로 (서울방향) 5차로	"	"
282	28보4220	임*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31 18:43	삼육대입구 1차로	"	"
283	32모4692	김*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5-31 11:35	흥인지문 3차로	"	"
284	33모5793	최*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5-31 20:55	장충체육관 3차로	"	"
285	36다3473	남*학	서울특별시 중구	2019-05-31 17:45	소의문터 1차로	"	"
286	37어6948	박주*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31 21:54	분당수서고속화도로 1차로	"	"
287	37저2680	김*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31 18:45	상일IC진출로 3차로	"	"
288	45노9933	한*배터리 사회적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31 14:26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2차로	"	"
289	45루9538	주식회사 바*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5-31 21:41	강일IC 3차로	"	"
290	45마7737	김*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31 18:38	상일IC진출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91	47너1256	황*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1 23:06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	"
292	53버4962	노*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31 18:56	강일IC 2차로	"	"
293	53버6901	윤*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5-31 17:35	강일IC 1차로	"	"
294	57더8594	전*근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31 07:42	해화문 1차로	"	"
295	57수5451	오*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31 21:44	통일로 2차로	"	"
296	60가4373	김*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5-31 20:08	흥인지문 3차로	"	"
297	61라9414	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5-31 21:48	서오릉로 2차로	"	"
298	61서7967	PIAO Y*NG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31 12:56	철산대교 4차로	"	"
299	67러0714	박*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1 18:33	개화역 4차로	"	"
300	68노3657	김*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31 15:27	삼육대입구 1차로	"	"
301	70다1772	최*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5-31 05:32	돈의문터 1차로	"	"
302	70로1963	(주)동*전관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31 12:46	철산대교 3차로	"	"
303	72노5471	이*협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31 15:02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304	72오5800	오*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1 19:31	개화역 4차로	"	"
305	73부6009	김*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31 14:54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306	75너3506	최*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31 20:24	북부간선도로 3차로	"	"
307	75더3733	CUI F*UN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31 16:47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5차로	"	"
308	75수3855	박*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5-31 07:58	개봉교후방 1차로	"	"
309	80고1971	윤*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5-31 15:19	해화문 1차로	"	"
310	80나2909	김*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1 05:55	안양천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311	80너3839	김*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5-31 17:57	망우리고개 3차로	"	"
312	80노6591	최*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1 12:28	오쇠삼거리 1차로	"	"
313	80라3117	허*범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31 18:54	양재IC 3차로	"	"
314	80라3441	박*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1 17:25	개화역 3차로	"	"
315	80버5857	권*범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5-31 11:15	흥인지문 2차로	"	"
316	80서2051	박*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31 20:13	서오릉로 1차로	"	"
317	80소3066	김*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31 18:14	개봉교후방 2차로	"	"
318	80수8901	김*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5-31 17:44	광희문 3차로	"	"
319	86거1751	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5-31 17:13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320	86고7671	김*범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31 12:25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	"
321	86더1900	(주)엘*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31 09:38	수주삼거리 1차로	"	"
322	87러2433	씨*이엠(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31 07:08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323	87로6304	김*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5-31 15:12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324	88거9644	전*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5-31 05:30	광희문 2차로	"	"
325	88서4034	장*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5-31 22:52	삼성역 1차로	"	"
326	90가8432	노*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31 15:23	호암로 2차로	"	"
327	90다1191	박*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31 13:09	서하남IC 2차로	"	"
328	90러4119	류*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31 18:50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329	90소9471	이*순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31 07:50	밤고개로 3차로	"	"
330	91두4065	강*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31 13:26	양재IC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331	92로7483	주식회사 아*프라이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5-31 22:02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332	99버2822	박*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31 15:40	강변북로 (서울방향) 3차로	"	"
333	서울30머6095	이*백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31 15:34	광희문 2차로	"	"
334	서울31더4545	김*철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31 08:10	혜화문 3차로	"	"
335	서울35러5651	이*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5-31 14:08	양재IC 1차로	"	"
336	서울40누2964	이*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1 06:26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337	서울42너3798	권*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5-31 20:17	혜화문 2차로	"	"
338	서울42더1317	안*태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31 20:37	서오릉로 2차로	"	"
339	서울47노5872	김*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31 16:01	철산대교 4차로	"	"
340	서울48로6164	권*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5-31 08:36	안양천로 1차로	"	"
341	서울51무5313	주-씨*지골 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5-31 15:22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5차로	"	"
342	서울54모9589	조*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5-31 06:33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1차로	"	"
343	서울73너4123	김*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5-31 11:48	광희문 3차로	"	"
344	서울81고1967	주-승*주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1 19:31	별말로 1차로	"	"
345	서울82노6586	탁*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5-31 12:12	장충체육관 4차로	"	"
346	서울82무2524	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5-31 15:48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347	서울83가3757	박*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5-31 17:35	양재IC 4차로	"	"
348	서울83나8705	(주)씨*스카이 무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1 16:05	철산대교 4차로	"	"
349	서울83더9037	서*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5-31 14:07	장충체육관 3차로	"	"
350	서울83사3797	이*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31 13:11	작동터널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351	서울83자4033	(주) 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5-31 19:48	철산대교 2차로	"	"
352	서울85구3872	이*파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31 18:46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1차로	"	"
353	서울85나1761	김*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5-31 09:55	수주삼거리 1차로	"	"
354	서울88바9293	김*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5-31 13:05	통일로 2차로	"	"
355	서울89자9549	안*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5-31 17:41	강변북로 (서울방향) 3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9년 8월 2일(금)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
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Fax 02-2133-1025)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9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0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이정용	인천시 남동구 장00로128번길00 0동4**호(서0동)	일시 : 2019-04-20 05:50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내용 : 차량의 폭 초과 (0.18미터 초과)	과태료:30만원
김영균	경기도 광명시 안*로 00번길 00(2**호, 하*동)	일시 : 2019-03-29 04:45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초과 (0.25미터 초과)	과태료: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1,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97호**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도봉구 쌍문동 88-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8-2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I. 열람 기간 : 2019. 7. 19. ~ 2019. 8. 1.(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1팀(☎02-2133-6297)

I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	184,840	-	184,840	1996.07.05. (서울시 고시 제195호)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4,840.0	—	184,84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75,365.6	—	75,365.6	40.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2,477.0	—	2,477.0	1.3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4.0	—	2,334.0	1.3	
	제3종일반주거지역	32,740.0	—	32,740.0	17.7	
	준주거지역	37,814.6	—	37,814.6	20.5	
상업 지역	소 계	67,625.4	—	67,625.4	36.6	
	일반상업지역	67,625.4	—	67,625.4	36.6	
공업 지역	소 계	41,849.0	—	41,849.0	22.6	
	준공업지역	41,849.0	—	41,849.0	22.6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최대개발규모(변경 없음)

나.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없음)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⑥	36	100.5	쌍문제3동 88-13대	100.5	선택적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 88-2, 88-135
		92.9	쌍문제3동 88-7대	92.9	
		99.8	쌍문제3동 88-12대	99.8	
		95.5	쌍문제3동 88-8대	95.5	
		101.2	쌍문제3동 88-11대	101.2	
		95.5	쌍문제3동 88-9대	95.5	
		105.5	쌍문제3동 88-142대	105.5	
		109.1	쌍문제3동 88-138	109.1	
		105.5	쌍문제3동 88-141대	105.5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⑥	36	109.1	쌍문제3동 88-146대	109.1	선택적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 88-2, 88-135
		105.8	쌍문제3동 88-140대	105.8	
		109.1	쌍문제3동 88-136대	109.1	
		403.7	쌍문제3동 88-2대	532.6	
		128.9	쌍문제3동 88-135대		

주) 1. 가구번호는 6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구획된 가구로 구분함

2. 가구번호 ①~⑤, ⑥-1~⑥-35, ⑦~⑬ : 기재생략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1) 불허용도(변경 없음)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일반 상업지역	이면부 A-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와 비슷한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대시설 장례식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세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주) 1. 관련법령(용도지역, 미관지구,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2.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인 경우에도 불허용도는 건축 할 수 없음

2) 권장용도(변경 없음)

구 분		권장용도	비 고
35m 미만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여 개발할 경우 (2)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학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이면도 로

주) 불허용도 제외

3) 지정용도(신설)

구 분	지정용도	비 고
신설	• 공동주택^{주1)} (주거복합), 근린생활시설 ※ 단, 지상1~3층은 비주거용도 설치	• 쌍문동 88-2, 88-13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공동주택^{주1)} (주거복합), 근린생활시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쌍문동 88-2, 88-135에 한하여 지정용도 신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변경)

1) 건축물의 건폐율(변경 없음)

■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지역	건폐율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2) 건축물의 용적률(변경)

구 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일반 상업지역	이면도로 변	250% 이하	500% 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이내	—
변경			기본용적률 : 800% 이하	955.43% 이하	• 쌍문동 88-2, 88-13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주) 1. 용도지역이 상향된(1991.5.11.이후)지역에 용도제한 적용기준 적용.(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4-4-2)
 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및 준주택제외) 비율은 10% 이상 계획(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4-4-4) 하여 저층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일반상업지역내 건축물의 용도용적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적용
 4. 동일한 용도지역내에서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은 대지가 가중평균값 적용
 5.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6. 관광숙박시설 입지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서울시 2012.10)」을 적용
 ※ 상한용적률 = 기본용적률 × [1+ {1.3×가중치×α(토지)} + {0.7×α(현금·건축물)}]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변경 - 기정(기준/허용/상한) : 250% 이하 / 500% 이하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이내 - 변경(기본/상한) : 800% 이하 / 955.43%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기준 적용

■ 용적률 적용기준(신설)

구분		적용기준	비고
공공기여율		• 10% 이상(부지면적 기준 : 53.26㎡ 이상)	• 쌍문동 88-2, 88-13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용도별 비율	주거	• 80% 이상 90% 이하	
	비주거	•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규모의 경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설치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9에 의거 커뮤니티시설 층별 면적 분할 설치 가능

3) 건축물의 높이(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일반 상업지역	• 35m미만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여 개발할 경우	최고높이 30m 이하	
변경	일반 상업지역	• 35m미만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여 개발할 경우	최고높이 30m 이하	• 쌍문동 88-2, 88-13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 제한사항 완화
			최고높이 65m 이하	

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9-5)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부여하고 「건축법」 제60조제3항 도로사선제한에 대한 규정 미적용

2.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높이를 적용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높이 변경 - 지정 일반상업지역 35m 미만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여 개발할 경우 : 최고높이 30m 이하 - 변경 일반상업지역 35m 미만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여 개발할 경우 : 최고높이 65m 이하(쌍문동 88-2, 88-135에 한함)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에 따른 최고높이 완화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변경)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변경 없음)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건축 한계선	· 광로 3-17(도봉로), 대로3-37(노해로) , 중로2-98(우이천로)	3m	
	· 중로3-68, 소로2-70 , 소로2-73, 소로2-173, 소로2-128, 소로3-261, 소로3-334	2m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건축선 결정(변경)조서

■ 지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㉔-3 (이면부)	쌍문제3동 88-72번지일원	용도(불허/권장)	A-2 / 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50% 허용용적률 : 500%
		최고높이	30m 이하
		형태	-
		건축선	대로 3-37 : 3m 건축한계선 소로 2-70 : 2m 건축한계선 소로 3-334 : 2m 건축한계선 88-61도 : 1.5m 건축한계선 88-71도 : 1.5m 건축한계선 88-131도 : 1m 건축한계선

※ 도면번호 ㉔-1 ~ ㉔-2, ㉔-1 ~ ㉔-5 : 기재생략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6]-3 (이면부)	쌍문제3동 88-72번지일원	용도(불허/권장)	A-2 / 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50% 허용용적률 : 500%
		최고높이	30m 이하
		형태	-
		건축선	대로 3-37 : 3m 건축한계선 소로 2-70 : 2m 건축한계선 소로 3-334 : 2m 건축한계선 88-61도 : 1.5m 건축한계선 88-71도 : 1.5m 건축한계선 88-131도 : 1m 건축한계선
	쌍문제3동 88-2, 88-135	용도(지정/불허/권장)	I / A-2 / 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본용적률 : 800% 상한용적률 : 955.43% 이하
		최고높이	65m 이하
		형태	-
		건축선	대로 3-37 : 3m 건축한계선 소로 2-70 : 2m 건축한계선

※ 도면번호 [1]-1 ~ [6]-2, [7]-1 ~ [13]-5 : 기재생략(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대지내공지(변경 없음)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대로3-37(노해로)	· 3m 보도조성	-
	· 중로3-68, 소로2-70 , 소로2-73, 소로2-173, 소로2-128, 소로3-261, 소로3-334	· 2m 보도 및 차도 조성	소로2-70 보도조성

나. 대지내 통로(변경 없음)

다.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변경 없음)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광로3-17, 대로3-37 , 중로2-79, 중로2-98	· 도봉로변 잦은 세가로 접속 및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 개별필지의 주차진출입은 연결도로 중 최하위도로에서 진출입	-
공동주차 출입구 및 통로	쌍문동 88-2 , 88-106, 96-24, 96-4, 103-66 일원 창동 643-2, 650-46, 655-11, 655-20, 659- 일원	· 도봉로변 연결한 2필지의 공동 주차출입 유도로 간선도로로 접속 최소화 · 폭 30m 이상 도로변에 차량출입금지(원칙적으로)	-

라. 경관 및 환경 친화적 요소 계획(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지반보존	지하에 인공구조물에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조성 권장	-
옥상녹화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
녹색주차장	잔비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중수도시설설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 권장	-
빗물이용시설설치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라 설치 권장	-
신재생에너지사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법령’ 및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11호)’ 의 기준에 따라 설치 권장	-
에너지절약계획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 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설치 권장	-

마.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 분	내 용	면 적	비 고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65.19㎡	· 쌍문동 88-2, 88-13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기반시설(도로)	도로 설치 및 제공	79.60㎡	
계	-	144.79㎡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함

※ 면적은 추후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공공기여계획 신설 - 기부채납 사항 : 공공임대주택 토지지분, 기반시설(도로)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준수하여 공공기여계획 수립

4. 인센티브 운영계획(변경 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9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I. 열람 기간 : 2019. 7. 19. ~ 2019. 8. 1.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 (☎02-2133-6297)

I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	증) 883.0	883.0	-

◦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883.0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83.0	-	883.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883.0	감)883.0	-	-	-
	준주거지역	-	증)883.0	883.0	100.0	-

◦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사유
		기정	변경		
변경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883.0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 함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계재생략)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철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본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본선)	강북구 우이동 325번지 일대 (우이유원지)	동대문구 신설동 132-259번지 일대 신설동역(1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보문역(6호선) 신설동역(1호선)	B=8.3~20 L=11,089	A=110,660.7	서울시고시 제2009-44호 (2009.02.05.)	

◦ 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철도	도시철도(L02)	강북구 우이동 57-28일대 도봉구 쌍문동 507-50일대	2,330 (지하사용토지 19㎡ 포함)	-	2,330 (지하사용토지 19㎡ 포함)	서울시고시 제2009-44호 (2009.02.05.)	솔밭 공원역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철도)

구분	시설명	위 치		구분	결정내용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경량전철 (우이-신설도 시철도) 본선환기구 (L02S1)	도봉구 쌍문동 507-4대	도봉구 쌍문동 507-4대	길이	6.4m	-	6.4m	도봉구고시 제2011-24호 (2011.09.08.)	
				폭	2.9m	-	2.9m		
				높이	해발고도 최저27.6~최고37.2m	-	해발고도 최저27.6~최고37.2m		

2)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계재생략)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

1.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883.0	

◦ 결정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신설	●획지 신설 : A = 883.0㎡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일단의 획지로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계획내용	비고
용도 계획	지정용도	A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단, 지상1층은 비주거용도 설치	
	불허용도	U1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용도계획	●지정용도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준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지정용도계획 수립
	●불허용도 신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불허용도 계획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기본용적률 : 40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 용적률 이하	-
높이	●20m 이하	●고도지구(20m 이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결정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건폐율	●60% 이하 적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용적률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적용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용적률 결정
높이	●20m 이하 적용	●고도지구 : 20m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 건축물의 높이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6층이하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비율	•부지면적의 15%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공동임대주택 부속토지 : 15.02%(132.63㎡)	기본용적률 400%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15% 미만(가로변 비주거설치 의무)	•주거 : 비주거 = 89.02% : 10.98%		
	주거 주거비율	•85% 이상			
	공공임대:민간임대	•15 : 85	•공공임대 : 민간임대 = 16.85% : 83.15%		
주택 건설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16㎡, 35㎡ •민간임대주택:15㎡, 16㎡, 20㎡, 34㎡, 35㎡, 43㎡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 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 무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커뮤니티시설 108.00㎡ 계획 - 용도 : 체력단련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삼양로) : 대지경계로부터 3m •이면도로변(삼양로154길) : 대지경계로부터 1m	-

◦ 결정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신설	•건축한계선 계획	•대상지가 접한 간선도로변 3m 폭원, 이면도로변 1m 폭원의 건축한계선 지정

나.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간선도로변(3m) : 보도부속형 •이면도로변(1m) : 보도부속형	-

◦ 결정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신설	•전면공지 계획	•대상지가 접한 간선도로변에 건축한계선(3m), 이면도로변에 건축한계선 (1m)으로 전면공지 확보

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공공기여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4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15% 이상 ^{주1)} (132.45㎡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15.02% (132.63㎡)	-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IV.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안)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종합결정(안)도



V.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99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4463)	㈜케이지아이 (198-86-00470)	권효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회대로 105, 301호 (보광빌딩)	2019. 7. 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02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9. 7. 18. ~ 2019. 8. 1.(14일)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 실시		법적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스케마종합건설 (김영배)	건축공사업 01-381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나길 31, 비101호 (동선동3가, 벨로시빌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7년 자본금)	영업정지	2019.8.5. (월) 11:00 건설혁신과 청문실	공인회계사 김명준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전화 02-2133-8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03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19.7.18.~2019.8.1.(14일)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주)스케마종합건설 (김영배)	건축공사업 01-381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나길 31, 비101호(동선동3가, 벨로시빌딩)	하도급대금 중 건설기계대금 지급의무 위반	법 제34조제1 항	영업정지 1개월 (2019.8.1. 2019.8.31.)	법 제82조 제1항제8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0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18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등 1,309명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19. 07. 18 ~ '19. 08. 01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19. 8. 02 ~ 2019. 8. 13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50%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장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5, 팩스번호 : 02-2133-4904
 - ※ 인터넷(<http://cartax.seoul.go.kr>)통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공시충달(사전통지서)명단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	64하6580	(사)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2019-05-06 11:42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2	전남91바5535	(유)동국화물	2019-06-19 08:54	전라남도 신안군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60,000
3	62라8068	(주)객코스해운대	2019-06-13 15:30	부산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	52호3569	(주)고막컬처	2019-05-01 19:31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	36노9044	㈜고운모터스 *상품용*	2019-06-15 16:55	대전광역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	36노9044	㈜고운모터스 *상품용*	2019-06-15 16:52	대전광역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	56하8008	(주)글로벌콘	2019-05-10 12:1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	50우3459	(주)대지	2019-06-17 09:0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	20타1112	(주)더씨닉디자인	2019-06-19 11:0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	22누1390	(주)리디아앨앤씨	2019-06-11 18:06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1	61노0642	(주)메드플레이	2019-05-02 13: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	80라5936	(주)메타올로지	2019-06-17 10:3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	53조3562	(주)멜렘	2019-06-12 20:38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4	48저0170	(주)무아필름	2019-06-13 17:40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5	58보8986	(주)미래식품기계	2019-06-18 20:31	경기도 고양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6	2070282	(주)미학인우주선	2019-05-11 20:57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7	2070282	(주)미학인우주선	2019-05-07 10:13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8	37하5546	(주)백스민백	2019-05-20 13:2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	24라9235	(주)성광티앤에스	2019-06-17 20:1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	42호3271	(주)성훈어패럴	2019-05-24 17:26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	08호7534	(주)솔푸드	2019-05-08 09:18	강원도 횡성군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2	24거9399	(주)에플집	2019-06-19 09:25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	39하4531	(주)어매이정푸드 솔루션	2019-05-17 08:43	경기도 성남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24	69라4733	(주)엠프랜드	2019-06-10 19:5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5	57하9899	(주)온림알에이치	2019-05-08 16:54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	57하9899	(주)온림알에이치	2019-05-13 22:59	경기도 수원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7	33누2605	(주)이론중합건설	2019-06-22 09:23	경기도 안성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	09호2661	(주)인터미디어엔티	2019-05-03 07:22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29	31무5855	(주)제이손관광	2019-06-10 18:06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30	45저4793	(주)젠트리	2019-06-13 19:15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31	66호2992	(주)지비텔레콤	2019-05-03 18:27	경기도 시흥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32	경기71바7138	(주)코리아투어	2019-06-12 07:25	경기도 용인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60,000
33	46주1906	(주)코인빌	2019-06-15 08:55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	31누7362	㈜크레디아 인터내셔널	2019-06-18 19:5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	03구2850	(주)키트케	2019-06-21 09:25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6	18호2874	(주)김스미래	2019-04-23 17:37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	21호8353	(주)투비에이	2019-05-03 16:0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8	15하0655	(주)티와이엘	2019-05-14 19:2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39	27어1789	(주)페이퍼북	2019-06-14 18:37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0	45하4984	(주)플러시	2019-05-17 19:33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1	89조8921	(주)피와이라이브	2019-06-21 13:50	경기도 고양시	서울글로벌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42	33오1417	(주)피와이레이치	2019-06-20 18:1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	33오1417	(주)피와이레이치	2019-06-19 18:02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4	33오1417	(주)피와이레이치	2019-06-10 13:57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	33오1417	(주)피와이레이치	2019-06-19 09:3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6	33오1417	(주)피와이레이치	2019-06-19 18:0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	33오1417	(주)피와이레이치	2019-06-20 18:16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8	33오1417	(주)피와이레이치	2019-06-19 09:35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	15서3250	(주)하늘과미소	2019-06-12 20:3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	59오1704	(주)헬씨라이프	2019-06-14 17:2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	06수0324	강산포장건설(주)	2019-06-20 20:41	강원도 홍천군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2	63하0818	금호산업(주)	2019-05-02 22:24	서울특별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53	66하6754	대금특수화물	2019-05-16 16:24	경기도 구리시	상계동 669 숯고기	전용차로위반 50,000
	54	53우9010	도치극	2019-06-17 19:3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5	27보2152	동성엔콘(주)	2019-06-18 14:3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6	경기74사3079	두레고속관광(주)	2019-06-13 08:54	경기도 구리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60,000
	57	경기76자3037	두레고속관광(주)	2019-06-12 08:10	경기도 구리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60,000
	58	경기76자3037	두레고속관광(주)	2019-06-14 08:26	경기도 구리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60,000
	59	경기78바7923	두레고속관광 주식회사	2019-06-13 08:15	경기도 구리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60,000
	60	49호2793	모디아티코	2019-06-02 10:41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1	50하8577	법무법인신영	2019-06-14 17:3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2	65호9703	법무법인에이원부 산문사무소	2019-04-20 12:02	부산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3	21하3383	베이사이드프라이 빗에쿼터(주)	2019-05-11 09:5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4	37하9241	비이에스건기	2019-06-01 11:49	경상남도 창원군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65	47소0784	사단법인태극기 무궁화사랑회	2019-06-13 08:53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6	38도3354	산수음료㈜	2019-06-20 11:59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7	89라3429	산하에코앤디 주식회사	2019-06-12 15:13	인천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	58너5828	서울카멜(주)	2019-06-18 18:28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9	61보4430	세계건설(주)	2019-06-14 16:38	인천광역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0	26수0103	셀렉트정보기술 (주)	2019-06-19 19:0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1	59호8029	스튜디오자곤	2019-05-06 14: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2	59하2599	에스엘사이언스	2019-05-10 19:25	경기도 의정부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3	69호4806	에이피유포레이팅 (주)	2019-05-20 19:27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74	16머0995	헬스건설주식회사	2019-06-17 20:13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5	65조1134	유한화사티슈	2019-05-07 16:54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6	09하9911	제이비전	2019-05-14 17:5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7	56호3020	제이에프	2019-05-07 07:1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78	56부3417	제타바이트(주)	2019-06-15 11: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79	13가7810	주) 다인인베스트먼트	2019-06-21 21: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섯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0	55라5347	주식회사 국제로지스	2019-06-17 15:44	경기도 안산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81	04오8142	주식회사 기영에프앤비	2019-06-14 20:13	대구광역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2	경기76자3422	주식회사 나래고속관광	2019-06-18 14:07	경기도 파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60,000
83	36마1699	주식회사 디에스홀바이리치	2019-06-19 19: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84	39하6079	주식회사 디투글로벌컴퍼니	2019-06-09 11:5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85	49하5365	주식회사루크투어	2019-05-03 08:04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6	18호1161	주식회사삼광산업	2019-05-28 07:11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7	21무0423	주식회사 스칸디나비아	2019-06-21 19:18	경기도 이천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88	46하5832	주식회사쏘카	2019-06-18 14:01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9	05호0642	주식회사쏘카	2019-06-15 11:06	경기도 수원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 앞 사외	전용차로위반	50,000
90	44하4239	주식회사쏘카	2019-06-10 20:22	경기도 시흥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1	44호0404	주식회사쏘카	2019-06-16 17:01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2	29호2776	주식회사쏘카	2019-06-22 03:22	경기도 화성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 앞 사외	전용차로위반	50,000
93	12무6344	주식회사 씨에스테크닉	2019-06-21 15:3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4	45호1807	주식회사에이일	2019-05-08 18:19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5	49너2804	주식회사 엘로함프로덕션	2019-06-18 19:50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6	01하1026	주식회사 엠브이퍼펙트카	2019-06-16 10:17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7	62바0267	주식회사엠엘코	2019-05-28 15:18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8	53저1970	주식회사열두달	2019-05-08 20:36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9	64라0426	주식회사 영은인터내셔널	2019-05-03 15:53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00	12구0440	주식회사일신정밀	2019-06-19 17:30	경기도 평택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1	40하7157	주식회사전한	2019-04-19 20:14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2	08노0302	주-콩테크	2019-05-09 08:33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3	09다3113	지데이터레이딩 주식회사	2019-06-13 13:51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3 파라곤	전용차로위반	50,000
104	85주7907	창용시	2019-06-15 11: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60,000
105	88너8598	청인건설(주)	2019-06-17 08:36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6	88너8598	청인건설(주)	2019-06-17 08:35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7	81무6674	케이그린건설(주)	2019-06-11 18:4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8	42부0208	케이파크레이티브 에이전시	2019-06-12 17:57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9	51로6390	태주종합철강 주식회사	2019-06-17 19:01	경상북도 안동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0	59호5521	파리바케트강동경 회점	2019-05-08 16:54	서울특별시	잠실동 22-7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11	16수7577	파우더텍준(주)	2019-06-20 11:17	경기도 김포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2	49버7782	A**	2019-06-11 18:15	강원도 춘천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3	49버7782	A**	2019-06-11 18:18	강원도 춘천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4	45호1345	A**	2019-05-04 14:04	울산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5	45호1345	A**	2019-05-03 17:33	울산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6	48보0703	A**	2019-06-10 13:20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7	91저6841	A**	2019-06-10 18:2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8	59거4669	B**	2019-06-16 20:29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9	32버4686	B**	2019-06-14 18:18	경기도 의정부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0	45고1731	B**	2019-06-11 17:14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1	40조4596	C**	2019-06-20 13:3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2	28마1896	C**	2019-06-13 08:18	세종특별자치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23	68다5463	C**	2019-06-14 08:33	경기도 군포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24	51보5486	D**	2019-06-18 17:45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5	46러9448	D**	2019-06-11 08:35	경기도 수원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26	56주3117	D**	2019-06-19 10:51	경기도 김포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127	59조0982	D**	2019-06-12 14:15	경기도 성남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28	20호4614	G**	2019-05-24 18:04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9	34고7196	G**	2019-06-13 16:10	인천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0	39오5259	H**	2019-06-10 19:21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1	15가3905	H**	2019-06-11 20:0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2	68오0546	J**	2019-06-18 10:42	경기도 광주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 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33	68오0546	J**	2019-06-18 10:47	경기도 광주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 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34	14라1358	J**	2019-06-21 11:3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5	14라1358	J**	2019-06-21 11:34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6	10다2213	J**	2019-06-05 19:50	경기도 고양시	퇴계로2가 교차로~명동성당 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7	18누8177	J**	2019-06-17 14:51	경기도 부천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8	28로2505	J**	2019-06-16 16:28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39	40부2625	J**	2019-06-21 15:5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0	67더1106	J**	2019-06-20 17:3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41	54더4844	K**	2019-06-12 10:48	충청남도 아산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2	23다0407	K**	2019-06-20 15:40	충청북도 진천군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43	61루9097	K**	2019-06-21 08:58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44	55고0268	K**	2019-06-22 08:52	경기도 화성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45	28여8137	L**	2019-06-20 08:4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6	43고2004	L**	2019-06-14 20:00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47	01거1044	L**	2019-06-14 19:13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48	03두8368	L**	2019-06-20 20:02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49	27보3243	L**	2019-06-20 18:12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50	05로4688	L**	2019-06-20 13:14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51	67루6632	N**	2019-06-15 09:11	경기도 부천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2	69호9876	N**	2019-04-28 17:45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 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153	43조6251	N**	2019-06-13 13:13	경상남도 통영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4	43조6251	N**	2019-06-13 13:10	경상남도 통영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5	12구0610	N**	2019-06-13 19:16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56	38마2365	P**	2019-06-11 09:38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57	33부1687	P**	2019-06-17 19:30	경기도 성남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58	22우4025	P**	2019-06-11 18:4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9	49마8856	Q**	2019-06-20 17:2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60	50소6840	S**	2019-06-15 18:4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1	50소6840	S**	2019-06-15 18:45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2	37하9872	S**	2019-05-31 18:0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3	08마3745	T**	2019-06-17 15:57	충청남도 예산군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4	08마3745	T**	2019-06-17 15:58	충청남도 예산군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5	26우3050	W**	2019-06-19 13: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66	11버5827	W**	2019-06-21 19:0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7	66무8898	Y**	2019-06-20 14:36	경기도 광명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8	02더9896	Y**	2019-06-10 13:32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69	11고2516	Z**	2019-06-18 14:24	인천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0	50저6020	Z**	2019-06-14 16:29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 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71	19어0518	Z**	2019-06-18 14:13	인천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72	43보4480	Z**	2019-06-19 17:14	경기도 군포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73	30소3017	Z**	2019-06-15 18:20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74	14도6947	강**	2019-06-10 21:08	서울특별시	YBM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175	96고9039	강**	2019-06-12 12:59	인천광역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6	36루1669	강**	2019-06-13 13:49	경기도 안양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77	26도3666	강**	2019-06-18 20:07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78	34부2403	강**	2019-06-12 16:44	경기도 양주시	학여울역-대저우성아파트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9	20주2193	강**	2019-06-18 09:43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80	01우6254	강**	2019-06-12 19:39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1	61서3566	강**	2019-06-12 18:11	경기도 남양주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82	경기98자6129	강**	2019-06-21 12:45	경기도 고양시	39-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60,000
	183	69버9389	강**	2019-06-18 14:0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84	서울31아5358	강**	2019-06-20 07:26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5	98부5033	강**	2019-06-20 10:56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60,000
	186	98부5033	강**	2019-06-20 10:57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60,000
	187	54로3108	강**	2019-06-16 23:33	인천광역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 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88	10호8549	강**	2019-05-10 18:48	경상남도 김해시	봉천동 870-13	전용차로위반 50,000
	189	서울31사4933	강**	2019-06-11 13:11	경기도 의정부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90	36서4441	강**	2019-06-14 19:59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91	38우5526	강**	2019-06-10 07:45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2	38우5526	강**	2019-06-12 07:40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3	27리4044	강**	2019-06-14 08:27	경기도 남양주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94	경기83바3696	강**	2019-06-11 09:45	경기도 안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95	02다5173	강**	2019-06-10 18:30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96	04너4786	강**	2019-06-10 17:54	경기도 사천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7	11보7329	고**	2019-06-16 14:21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98	11거8604	고**	2019-06-19 18:1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9	52어9627	고**	2019-06-17 09:05	경기도 군포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0	14주3612	고**	2019-06-11 12:5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1	57오1573	고**	2019-06-10 08:56	경기도 부천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02	64너7960	고**	2019-06-14 08:3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3	67라0246	고**	2019-06-17 20:43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4	63소6324	고**	2019-06-17 18:51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05	54서9954	공**	2019-06-19 20:45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06	09다2212	공**	2019-06-20 18:28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07	28라5189	공**	2019-06-18 15:03	대전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8	14로1379	곽**	2019-06-19 15:16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9	35저1997	곽**	2019-06-20 18:0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0	20버1197	곽**	2019-06-11 18:1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1	12너0794	곽**	2019-06-13 09:41	경기도 하남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2	30투3961	곽**	2019-06-15 17:21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213	14라3238	곽**	2019-06-12 10:48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14	69마2066	곽**	2019-06-11 18:16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5	59조8638	구**	2019-06-19 07:56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6	16라3613	구**	2019-06-14 18:18	경기도 수원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7	10우7164	구**	2019-06-18 13:53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8	05저6983	국**	2019-06-12 09:21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19	05저6983	국**	2019-06-21 09:32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20	57고6249	국**	2019-06-13 20: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1	41나6828	권**	2019-05-03 19:3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2	서울31자1708	권**	2019-06-20 20:49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23	32호7936	권**	2019-05-08 19:03	대구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4	32호7936	권**	2019-05-08 19:01	대구광역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5	17버0431	권**	2019-06-20 18:4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26	13누6018	권**	2019-06-18 19:19	경기도 의정부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27	68거8334	권**	2019-06-17 20:0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28	45나8434	권**	2019-06-10 12:43	경기도 이천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9	32구7302	권**	2019-06-18 18:56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30	84두0561	권**	2019-06-19 09:02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31	31노9206	권**	2019-06-12 17:39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2	28어1436	권**	2019-06-18 16:23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33	07다9325	권**	2019-06-11 09:43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4	63저1818	권**	2019-06-17 18:04	대구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35	63저1818	권**	2019-06-17 18:03	대구광역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36	12구4427	길**	2019-06-18 20:22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7	28누2766	김**	2019-06-17 19:5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38	18가0748	김**	2019-06-13 10:11	충청북도 증평군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39	18가0748	김**	2019-06-13 10:10	충청북도 증평군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240	88무0839	김**	2019-06-13 17:58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41	47부1430	김**	2019-06-21 17:53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2	경기51도5556	김**	2019-06-13 19:51	경기도 부천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43	07가2494	김**	2019-06-11 18:09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4	07소6977	김**	2019-06-22 15:06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5	38다7659	김**	2019-06-11 18:21	경기도 양평군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46	25노2921	김**	2019-06-12 19:17	경기도 양평군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47	21고0859	김**	2019-06-12 08:14	충청남도 천안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8	67와5031	김**	2019-06-18 09:28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49	64나2713	김**	2019-06-19 18:26	충청북도 충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50	34호6405	김**	2019-05-07 18:57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51	19다6029	김**	2019-06-10 09:1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2	서울31바8595	김**	2019-06-20 19:58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53	16보4899	김**	2019-06-18 09:44	인천광역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4	16구9168	김**	2019-06-20 08:27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55	16구9168	김**	2019-06-20 08:26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56	38구6153	김**	2019-06-20 09:4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57	49저0796	김**	2019-06-13 17:23	충청남도 예산군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58	서울31자6731	김**	2019-06-14 09:46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9	서울31자2509	김**	2019-06-12 18:17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0	65보8508	김**	2019-06-21 20:29	경기도 포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61	45루3326	김**	2019-06-21 20:18	충청남도 당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62	서울32아3935	김**	2019-06-17 17:27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63	03도5350	김**	2019-06-10 17: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4	04머7689	김**	2019-06-11 17:51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65	51보3493	김**	2019-06-12 13:52	경기도 용인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66	38부4152	김**	2019-06-15 19:5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7	88머2533	김**	2019-06-11 20:06	경기도 수원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68	49부9957	김**	2019-06-20 17:50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69	35가5405	김**	2019-06-18 18:51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70	56부1707	김**	2019-06-20 08:02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1	62수3108	김**	2019-06-21 17:38	경기도 구리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72	32수9831	김**	2019-06-21 09:30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73	41부1409	김**	2019-06-17 08:50	서울특별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74	06도0611	김**	2019-06-17 18:0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75	17다0781	김**	2019-06-13 19:0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76	01서9588	김**	2019-06-10 17:37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77	69도0353	김**	2019-06-20 07:3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78	14다2386	김**	2019-06-10 16:34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9	28부6755	김**	2019-06-14 07:3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280	36도0576	김**	2019-06-10 20:09	경기도 성남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81	42로9808	김**	2019-06-19 19:22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2	39고2678	김**	2019-06-20 19:38	경상남도 양산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3	24더0967	김**	2019-06-20 12:48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284	62가8396	김**	2019-06-21 09:00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85	06라1603	김**	2019-06-17 14:3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86	28모1651	김**	2019-06-20 18:57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87	서울31사7065	김**	2019-06-14 20:47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8	33버5799	김**	2019-06-10 17:33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89	50다3669	김**	2019-06-11 11:1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90	58부3772	김**	2019-06-12 12:52	대전광역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91	57라3271	김**	2019-06-10 19:52	경기도 평택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2	60모2181	김**	2019-06-17 18:46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93	01모8434	김**	2019-06-19 14:25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94	63마1102	김**	2019-06-11 09:2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95	52라5593	김**	2019-06-21 15:47	경기도 포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96	88노4253	김**	2019-06-18 08:25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97	62저1237	김**	2019-06-21 09:11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98	69고1999	김**	2019-06-12 09:24	경상북도 포항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9	06부5405	김**	2019-06-10 07:5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00	41버3771	김**	2019-06-11 11:29	경기도 고양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301	17보3584	김**	2019-06-11 19:19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02	63오2740	김**	2019-06-11 19:5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03	26라5550	김**	2019-06-12 08:51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04	63조1326	김**	2019-06-21 19:24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05	30오2969	김**	2019-06-10 17:31	경기도 안산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06	23다7682	김**	2019-06-10 15:35	대전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7	23다7682	김**	2019-06-10 15:37	대전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8	82버0335	김**	2019-06-19 12:13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309	32두4002	김**	2019-06-16 13:38	인천광역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310	29라0678	김**	2019-06-12 11:43	경기도 남양주시	중화동 메디렌즈 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311	41소7203	김**	2019-06-14 19:03	경기도 성남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12	39하8471	김**	2019-05-05 12:17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313	14수5848	김**	2019-06-21 09:1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14	46저4973	김**	2019-06-17 16: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15	48무7725	김**	2019-06-20 20:01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16	43노8364	김**	2019-06-21 09:14	경기도 김포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17	60우3545	김**	2019-06-12 20:10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8	15라9352	김**	2019-06-14 18:58	경기도 구리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19	서울32바5882	김**	2019-06-17 10:29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20	39마0220	김**	2019-06-13 19:27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21	54수8903	김**	2019-06-11 19:50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22	42마0979	김**	2019-06-14 12:13	경기도 과천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323	31가6116	김**	2019-06-12 09:35	경기도 수원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24	서울31아1994	김**	2019-06-19 09:41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325	09라2193	김**	2019-06-11 12:07	경기도 고양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6	09라2193	김**	2019-06-11 12:09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7	48오9595	김**	2019-06-22 11:47	충청남도 천안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328	13호7476	김**	2019-06-03 07:51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9	03라6615	김**	2019-06-18 19:0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30	12도3350	김**	2019-06-19 17:23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31	26부8871	김**	2019-06-13 20:22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32	51서4673	김**	2019-06-10 07:1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33	68버9722	김**	2019-06-12 14:47	세종특별자치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34	55보0498	김**	2019-06-12 12:3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35	서울31바7741	김**	2019-06-20 17:15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36	57여1235	김**	2019-06-22 18:11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37	54너1711	김**	2019-06-19 1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38	96가9881	김**	2019-06-20 17:28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39	12마4773	김**	2019-06-19 16:55	경기도 남양주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40	48소3981	김**	2019-06-13 08:5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341	서울32자2770	김**	2019-06-16 11: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승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342	02다7789	김**	2019-06-18 19: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43	64다2075	김**	2019-06-13 10:04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4	16라9624	김**	2019-06-14 07:11	인천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5	16라9624	김**	2019-06-14 07:13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6	12로2104	김**	2019-06-15 11:0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7	28보4772	김**	2019-06-14 18:45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48	56조4661	김**	2019-06-20 18:43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49	01다3717	김**	2019-06-15 13:01	경기도 의정부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50	37여9149	김**	2019-06-19 16:38	경기도 파주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51	서울32사5703	김**	2019-06-20 10:1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2	69여0792	김**	2019-06-14 20:4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3	32바0783	김**	2019-06-13 09:27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4	08수8228	김**	2019-06-12 09:49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55	37라2878	김**	2019-06-14 20:16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56	87오3619	김**	2019-06-10 20:16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57	85노7866	김**	2019-06-13 19:01	인천광역시	신림동 538-15	전용차로위반	50,000
358	66로9449	김**	2019-06-10 20:45	경기도 남양주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9	27오2815	김**	2019-06-21 19:50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60	31부7897	김**	2019-06-14 18:59	경기도 남양주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61	24다6070	김**	2019-06-20 07:34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2	35오0909	김**	2019-06-20 17:46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3	09로9273	김**	2019-06-13 16:02	서울특별시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4	46나6415	김**	2019-06-14 15:56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65	62모6880	김**	2019-06-12 08:52	대전광역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66	56가6077	김**	2019-06-18 07:3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7	68저3690	김**	2019-06-21 08:40	경기도 부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8	09라2236	김**	2019-06-14 19:37	경기도 남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69	34버8885	김**	2019-06-14 17:4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370	서울32사8627	김**	2019-06-19 10:12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371	19부9790	김**	2019-06-14 19:4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372	경기32바4278	김**	2019-06-11 10:56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73	18오0449	김**	2019-06-13 17:4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74	경기49바4259	김**	2019-06-13 18:05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75	30모8298	김**	2019-06-10 08:5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76	69모0617	김**	2019-06-11 17:56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377	50소9476	김**	2019-06-22 09:03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78	64라3314	김**	2019-06-12 19:30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79	65나9803	김**	2019-06-14 20:48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80	18누7453	김**	2019-06-12 18:1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81	53우1228	김**	2019-06-17 19:30	경기도 화성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82	30조1635	김**	2019-06-17 20:04	경기도 성남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83	69서4836	김**	2019-06-11 20:1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84	34주7303	김**	2019-06-12 17:24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85	08라8042	김**	2019-06-12 08:36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6	34부4162	김**	2019-06-13 19:2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87	45모4119	김**	2019-06-12 19:47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88	서울31아1645	김**	2019-06-21 20:33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89	25다7127	김**	2019-06-22 16:45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0	20무7158	김**	2019-06-22 04:16	충청남도 아산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91	서울31사5370	김**	2019-06-14 20:09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2	86라9728	김**	2019-06-22 11:11	전라북도 완주군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3	41우2560	김**	2019-06-12 11:02	경상남도 창원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4	41우2560	김**	2019-06-12 11:04	경상남도 창원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5	05부9309	김**	2019-06-20 19:54	대전광역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96	89주9235	김**	2019-06-21 17:24	경기도 하남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7	경기45바4011	김**	2019-06-14 08:25	경기도 고양시	영등포구 갯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98	36고8086	김**	2019-06-13 19:50	경기도 의정부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9	40나5494	김**	2019-06-20 17:22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00	20수1103	김**	2019-06-11 19:15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401	59보3464	김**	2019-06-14 10:51	경기도 파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02	30노1198	김**	2019-06-13 20:3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03	30노1198	김**	2019-06-13 20:37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04	13서6714	김**	2019-06-14 18:46	경기도 안성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05	서울31사7028	김**	2019-06-17 20:01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20	전용차로위반	50,000
406	32나0804	김**	2019-06-20 19:25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07	61노3336	김**	2019-05-03 16:09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08	61노3336	김**	2019-06-07 10:56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09	40나2190	김**	2019-06-14 18: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10	09어5832	김**	2019-06-12 18:05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11	28오2292	김**	2019-06-20 16:2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12	63호8602	김**	2019-04-30 09:41	경기도 용인시	종합운동장역~삼성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13	39나2141	김**	2019-06-13 20:20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14	01거7715	김**	2019-06-18 20:49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15	41부1243	김**	2019-06-21 20:24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416	64거9386	김**	2019-06-12 07:19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17	42나6646	김**	2019-06-13 19:32	경상북도 안동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8	68보3103	김**	2019-06-12 09:47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19	49우2164	김**	2019-06-19 15:40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0	49우2164	김**	2019-06-19 17:15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1	02더1959	김**	2019-06-12 14:47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22	48서6699	김**	2019-06-19 20:4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23	82고4633	김**	2019-06-17 09: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24	서울31바2146	김**	2019-06-17 08:58	서울특별시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25	서울32사1936	김**	2019-06-12 15: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426	08거9390	김**	2019-06-19 11:1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27	22부2597	김**	2019-06-21 11:22	경기도 이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28	88모3446	김**	2019-06-12 20:2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29	18모1506	김**	2019-06-12 17:50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0	14노0492	김**	2019-06-15 17:22	전라북도 익산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1	34라5094	김**	2019-06-17 17:32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32	43보4849	김**	2019-06-18 17:20	대전광역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3	40누5348	김**	2019-06-14 18:32	경기도 의정부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4	57고9761	김**	2019-06-12 10:59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35	18하1176	김**	2019-05-02 12:49	대구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6	18하1176	김**	2019-05-03 10:22	대구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7	45도0571	김**	2019-06-10 18:47	경기도 하남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38	30주2583	김**	2019-06-17 09:19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439	16수7834	김**	2019-06-12 10:5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40	68두7560	김**	2019-06-21 18:15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1	85고3454	김**	2019-06-21 12:43	경상남도 김해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42	85고3454	김**	2019-06-10 11:40	경상남도 김해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43	85고3454	김**	2019-06-17 11:57	경상남도 김해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44	85고3454	김**	2019-06-10 11:41	경상남도 김해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45	85고3454	김**	2019-06-17 11:56	경상남도 김해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46	29가7153	김**	2019-06-21 19:05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47	43모6585	김**	2019-06-13 15:52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48	43모6585	김**	2019-06-12 10:11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49	63호3192	김**	2019-05-01 17: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셋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50	55다2277	김**	2019-06-15 14:3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1	40오5000	김**	2019-06-21 11:07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52	03구6107	김**	2019-06-21 19:28	전라북도 전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53	38호3810	김**	2019-06-04 08:00	경기도 안성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54	04라6525	김**	2019-06-13 08:0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55	49다4049	김**	2019-06-14 14:34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56	45저6321	김**	2019-06-13 20:12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57	02소9821	김**	2019-06-11 18:12	충청남도 천안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58	68보9926	김**	2019-06-10 08:1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59	59가7808	김**	2019-06-15 17:49	전라남도 목포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460	59가7808	김**	2019-06-15 17:50	전라남도 목포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61	경기52더8735	김**	2019-06-20 12:04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62	경기52더8735	김**	2019-06-20 12:03	경기도 안양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63	35가0198	김**	2019-06-11 17:11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64	69구1810	김**	2019-06-17 17:3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65	64투9420	김**	2019-06-21 18:50	경기도 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66	53구3136	김**	2019-06-17 17:40	광주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67	서울31아6881	김**	2019-06-13 17:12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68	33라6570	김**	2019-06-13 09:03	경기도 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69	42수5382	김**	2019-06-14 16:37	서울특별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70	81조6671	김**	2019-06-17 11: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71	15거2252	김**	2019-06-18 07:25	경상남도 창원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72	경기14도7464	김**	2019-06-11 09:47	경기도 고양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473	09저4044	김**	2019-06-10 08:29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74	13가8563	김**	2019-06-17 17:5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75	82투1857	나**	2019-06-20 18:28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76	51여3625	나**	2019-06-10 10:4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7	51여3625	나**	2019-06-10 10:42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8	57보0138	나**	2019-06-11 08:5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79	35마0946	남**	2019-06-17 11:18	경기도 남양주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480	87도7500	남**	2019-06-18 20:39	충청남도 논산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481	63모7177	남**	2019-06-11 18:45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2	40마9891	남**	2019-06-19 17:3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83	15로8672	남**	2019-06-20 20:4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84	64모9057	남**	2019-06-14 07:17	경기도 용인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5	50서8525	남**	2019-06-12 19:0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6	68라3596	남**	2019-06-10 08:5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87	61마6423	노**	2019-06-13 18:48	전라북도 익산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88	40구5327	노**	2019-06-10 08:03	경기도 광주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89	40구5327	노**	2019-06-10 08:01	경기도 광주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0	서울31바6911	노**	2019-06-19 16:4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91	05수0986	노**	2019-06-21 08:25	경기도 광주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92	67여5162	노**	2019-06-18 13:38	서울특별시	잠실동 22-6 cu	전용차로위반	50,000
493	37라1522	노**	2019-06-19 07:2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94	82버2741	노**	2019-06-20 17:54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5	82버2741	노**	2019-06-21 17:31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6	82버2741	노**	2019-06-20 17:5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7	서울32사5498	라**	2019-06-20 20:2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98	서울31바6439	류**	2019-06-21 09:49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99	05거1113	류**	2019-06-19 17:4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00	56보1494	마**	2019-06-19 18:13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01	서울31사6729	명**	2019-06-19 19:31	서울특별시	잠실역사거리~송파구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2	39소0505	명**	2019-06-17 17:5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3	59로9411	명**	2019-06-20 15:01	전라남도 순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504	60보3531	문**	2019-06-22 15:22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05	인천31머3360	문**	2019-06-17 09:23	인천광역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6	17보9180	문**	2019-06-13 19:22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07	37버5053	문**	2019-06-20 17:17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08	33구0671	문**	2019-06-18 19:44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9	51서5735	문**	2019-06-14 18:3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10	64마8023	문**	2019-06-21 17:30	광주광역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11	55다3831	문**	2019-06-15 15:31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12	23소0263	문**	2019-06-14 15:57	경기도 과천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13	06소0614	문**	2019-06-21 20:03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14	인천84바1682	문**	2019-06-12 10:51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15	05오3273	문**	2019-06-14 09:32	경기도 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16	32소8641	문**	2019-06-19 15:25	경기도 구리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17	18두2080	문**	2019-06-10 19:32	경기도 시흥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18	38가3000	민**	2019-06-20 18:07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19	21노0334	민**	2019-06-21 20: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20	24보0358	민**	2019-06-21 09:39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21	21주0700	민**	2019-06-17 08:5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22	46수7909	박**	2019-06-21 20:20	경기도 안성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23	12고4730	박**	2019-06-20 16:49	경기도 안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24	03라0757	박**	2019-06-11 15:21	인천광역시	서울글로벌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525	서울31사6792	박**	2019-06-20 08:24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26	09더9421	박**	2019-06-10 20:06	경기도 수원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27	80보6173	박**	2019-06-13 08:0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28	24소1122	박**	2019-06-17 19:32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29	08수2944	박**	2019-06-22 20:02	광주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30	08수2944	박**	2019-06-22 20:04	광주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31	36서1131	박**	2019-06-19 18:0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32	34도2877	박**	2019-06-15 17:05	전라북도 전주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33	34도2877	박**	2019-06-15 17:03	전라북도 전주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34	46부8495	박**	2019-06-11 18:08	경기도 의정부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35	경기85바4308	박**	2019-06-11 14:19	경기도 안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36	87고6207	박**	2019-06-13 09:33	인천광역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37	17부4243	박**	2019-06-14 20:39	강원도 홍천군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38	86더7169	박**	2019-06-21 20:24	강원도 정선군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39	43로6034	박**	2019-06-15 19:32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40	55거3912	박**	2019-06-10 23:48	서울특별시	잠실동 잠실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541	30거7004	박**	2019-06-11 17:07	경기도 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42	30거7004	박**	2019-06-11 14:14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43	03나2690	박**	2019-06-20 17:4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544	51주3558	박**	2019-06-12 18:49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45	25버4833	박**	2019-06-12 15: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46	91무7767	박**	2019-06-19 16:52	서울특별시	상계동 669 숯고기	전용차로위반 50,000
	547	04누3052	박**	2019-06-18 20:21	경기도 구리시	영등포구롯데캐슬엠피아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548	04누3052	박**	2019-06-10 21:45	경기도 구리시	영등포구한국교육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49	84도4509	박**	2019-06-12 13:59	서울특별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50	82버3576	박**	2019-06-11 08:31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51	16수6034	박**	2019-06-20 09:4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52	23우7396	박**	2019-06-14 20: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53	52마9154	박**	2019-06-21 19:31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54	93저3538	박**	2019-06-12 18:30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55	07호3665	박**	2019-05-22 08:47	충청남도 천안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56	45부8684	박**	2019-06-20 19:1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57	서울32자1653	박**	2019-06-17 19:59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58	19수7253	박**	2019-06-18 08:0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59	48거5060	박**	2019-06-17 21:56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60	13노9289	박**	2019-06-18 14:10	경기도 남양주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61	13노9289	박**	2019-06-18 14:11	경기도 남양주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62	16두5835	박**	2019-06-13 19:07	서울특별시	태릉~화랑대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63	45주2421	박**	2019-06-19 17:57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64	04노2779	박**	2019-06-16 21:59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잠실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65	65거4249	박**	2019-06-13 09:24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66	42수2840	박**	2019-06-12 13:03	경기도 파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67	54주0729	박**	2019-06-11 19:1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68	61노7368	박**	2019-06-13 20:0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69	32우6741	박**	2019-06-11 15:02	경기도 평택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70	37마8013	박**	2019-06-12 11:41	충청남도 천안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71	37마8013	박**	2019-06-12 11:44	충청남도 천안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72	서울31사3063	박**	2019-06-11 18:05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73	46마1917	박**	2019-06-12 08:4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74	24더9358	박**	2019-06-12 09:1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75	08두1234	박**	2019-06-11 08:04	강원도 양구군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76	08두1234	박**	2019-06-11 18:59	강원도 양구군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77	69고3714	박**	2019-06-17 21:48	서울특별시	YBM빌딩	전용차로위반
	578	18서7992	박**	2019-06-16 10: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엠피아	전용차로위반
	579	39부4987	박**	2019-06-12 18:53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80	30고7880	박**	2019-06-14 20:17	경기도 안양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81	58서3561	박**	2019-06-17 13:36	광주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82	60모8889	박**	2019-06-10 12:2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83	43노0134	박**	2019-06-12 07:48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84	05나7157	박**	2019-06-11 18:47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85	36수6077	박**	2019-06-20 09:44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86	55누1675	박**	2019-06-10 19:58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87	81마4906	박**	2019-06-18 10: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한국교육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88	16주9425	박**	2019-06-21 14:41	경기도 의왕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89	57소6230	박**	2019-06-14 18:33	경기도 양평군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90	65거8481	박**	2019-06-20 18:14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91	01고5465	박**	2019-06-14 10:16	경기도 용인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592	47너7958	박**	2019-06-12 09:38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93	25주1764	박**	2019-06-21 15:11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94	25주1764	박**	2019-06-21 15:09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95	60거7503	박**	2019-06-14 18:59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96	41부4028	박**	2019-06-11 19:25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97	80로0954	박**	2019-06-20 17:50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98	서울31사5671	박**	2019-06-16 17:13	경기도 의정부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599	30수0281	박**	2019-06-18 20:07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00	30노8801	박**	2019-06-19 18:17	충청남도 태안군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01	42조5033	박**	2019-06-14 18:48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02	84누4670	박**	2019-06-13 17:2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03	50루5556	박**	2019-06-12 19: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04	46루5340	박**	2019-06-18 09:36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05	42저0537	박**	2019-06-20 17:41	서울특별시	봉천동 861-6	전용차로위반	50,000
606	23수0743	박**	2019-06-21 17:53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07	26우9139	박**	2019-06-11 19:3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08	80부4496	박**	2019-06-21 17:10	경기도 의정부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09	03누9404	박**	2019-06-22 18: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610	42라9622	박**	2019-06-14 17:32	경기도 하남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11	50두9686	박**	2019-06-19 10:1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12	35보6197	박**	2019-06-17 19:25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13	37조2580	박**	2019-06-13 20:22	경기도 포천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14	68부9817	박**	2019-06-20 10:37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15	06노5891	박**	2019-06-10 09:49	경기도 남양주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16	34오0484	박**	2019-06-10 07:37	충청북도 음성군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17	41수8197	박**	2019-06-17 11:5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18	93소0779	박**	2019-06-10 19:28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19	41조0330	박**	2019-06-10 19:24	경기도 구리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20	서울80자4010	박**	2019-06-14 19:47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21	31고6962	박**	2019-06-10 18:39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22	17무1086	박**	2019-06-15 16:3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3	62부1393	박**	2019-06-20 12:55	경기도 부천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4	27라5856	박**	2019-06-12 17:4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25	27주0270	박**	2019-06-21 20:1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26	85너1855	박**	2019-06-21 10:17	경기도 고양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7	85너1855	박**	2019-06-19 17:59	경기도 고양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8	69가2424	박**	2019-06-13 19:1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29	서울31바5380	박**	2019-06-20 17:32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30	38호4412	박**	2019-06-01 16:30	경상남도 사천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31	27어1533	방**	2019-06-14 13:24	경기도 하남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32	13더3043	방**	2019-06-14 16:40	서울특별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33	경기14로6554	방**	2019-06-12 13:27	인천광역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60,000
634	82고4641	방**	2019-06-11 17:20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35	서울88바7808	배**	2019-06-17 17:3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636	28고6231	배**	2019-06-10 08:38	경기도 성남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37	15주3242	배**	2019-06-10 20:45	경기도 남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38	56고5334	배**	2019-06-14 20:48	인천광역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39	61마6698	배**	2019-05-29 20: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40	08아5094	배**	2019-06-10 11:14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41	28너9756	배**	2019-06-20 18:14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42	28너9756	배**	2019-06-17 18:43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43	27로9735	배**	2019-06-20 20:09	경기도 평택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44	78머7660	백**	2019-06-12 15: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60,000
645	29호7033	백**	2019-05-04 07:54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646	31어9631	백**	2019-06-14 19:09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47	46구7955	백**	2019-06-20 19:4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48	38거0894	백**	2019-06-18 19:5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49	10고3626	백**	2019-06-21 19:54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50	26모0307	백**	2019-06-11 07:58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51	29러1020	백**	2019-06-20 19:3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52	28기5769	백**	2019-06-21 14:4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53	26무2455	변**	2019-06-18 15:1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54	17조4120	변**	2019-06-21 12:3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55	57소0464	변**	2019-06-20 16:29	서울특별시	잠실동 22-6	전용차로위반	50,000
656	31노0609	사**	2019-06-11 20:50	경기도 광주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7	31노0609	사**	2019-06-11 20:49	경기도 광주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8	04거6747	서**	2019-06-17 16:37	경기도 안산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59	34소6242	서**	2019-06-20 12:1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60	55대2777	서**	2019-06-10 12:30	충청북도 청주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661	14아9026	서**	2019-06-17 10:54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62	36기6296	서**	2019-06-12 20:06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63	08러6865	서**	2019-06-14 18:40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64	29더9004	서**	2019-06-19 20:13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65	36버3146	서**	2019-06-16 16:56	대전광역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6	경기32바4839	서**	2019-06-14 08:18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67	11고7957	서**	2019-06-15 13:13	서울특별시	YBM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668	66고8238	서**	2019-06-10 20:30	대구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69	36우3247	서**	2019-06-13 17:01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70	14모2099	석**	2019-06-15 15:36	경기도 수원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671	34두0288	석**	2019-06-19 18:20	경기도 하남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72	25수8864	석**	2019-06-20 16:4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73	서울32아3233	선**	2019-06-22 18: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674	20도9296	성**	2019-06-19 19:05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75	62누2722	성**	2019-06-13 17:05	경기도 수원시	잠실동 50	전용차로위반	50,000
676	19마9359	성**	2019-06-18 17:57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77	14버5843	소**	2019-06-12 15:13	전라남도 순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78	34로7464	손**	2019-06-18 19:11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79	32두7895	손**	2019-06-13 20:47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680	04소2700	손**	2019-06-10 10:5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81	30구6299	손**	2019-06-21 20:47	경기도 양평군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82	67머2509	손**	2019-06-12 09:31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83	02두9850	손**	2019-06-20 08:16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84	42도6272	손**	2019-06-10 17:20	경기도 오산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85	30서8925	손**	2019-06-10 20:14	경기도 김포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86	34누4007	손**	2019-06-15 18:0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7	40무3457	손**	2019-06-12 20:29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88	20하0410	손**	2019-05-11 16:56	경기도 고양시	남가좌동 가좌삼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689	85하6476	손**	2019-06-19 09:4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90	30로2559	손**	2019-06-19 17:27	경기도 가평군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91	69우6520	송**	2019-06-12 18:34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92	69우6520	송**	2019-06-12 18:35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93	서울31바5762	송**	2019-06-17 08: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94	60조3598	송**	2019-06-19 07:49	경기도 안산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95	36호7664	송**	2019-06-21 20:23	경기도 하남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96	29호3151	송**	2019-04-27 15:18	서울특별시	연신내역~구파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97	37두8648	송**	2019-06-12 20:16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98	63누3961	송**	2019-06-22 17: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99	93오8137	송**	2019-06-14 09:05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00	16하5782	송**	2019-06-11 18:34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01	32호4267	송**	2019-05-07 18:45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02	45노4339	송**	2019-06-18 19:3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03	47니5746	신**	2019-06-11 17:57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04	47니5746	신**	2019-06-20 17:33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05	34조5090	신**	2019-06-20 17:33	경기도 의정부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06	45마9123	신**	2019-06-12 10:43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7	61오5932	신**	2019-06-14 17:2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8	서울31사7873	신**	2019-06-19 20:00	경기도 의정부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09	26마9129	신**	2019-06-12 09:41	경기도 화성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10	16더8719	신**	2019-06-10 19:57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11	51너6587	신**	2019-06-10 09:46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12	39다3820	신**	2019-06-18 19:4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3	38로9782	신**	2019-06-18 20:0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14	60우3059	신**	2019-06-12 08:24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15	12더1724	신**	2019-06-17 18:16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16	53모2166	신**	2019-06-21 19:57	경기도 과천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17	11도0583	신**	2019-06-20 21:17	경기도 성남시	잠실동 잠실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718	69부0930	신**	2019-06-10 20:43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9	67오0708	신**	2019-06-11 08:06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20	37주9408	심**	2019-06-15 20:35	경기도 광명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 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721	38버7793	심**	2019-06-20 17:19	대전광역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22	33우0428	심**	2019-05-09 07:42	경기도 용인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23	14수1938	안**	2019-06-20 19:51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724	24모5006	안**	2019-06-11 10:59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25	24보7073	안**	2019-06-12 13:09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26	69무4999	안**	2019-06-19 18:34	경기도 고양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27	12구4028	안**	2019-06-14 11:26	경기도 부천시	39-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728	29나0565	안**	2019-06-12 17:36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29	04호6977	안**	2019-05-10 17:30	경기도 의정부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0	26로6060	안**	2019-06-13 19:10	경기도 수원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31	24나2237	안**	2019-06-18 11:41	부산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2	24나2237	안**	2019-06-20 12:41	부산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3	46려9876	안**	2019-06-19 17:34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34	08주1569	안**	2019-06-19 17:43	경기도 부천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35	16로0847	안**	2019-06-22 16:54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36	38고9127	안**	2019-06-17 19:23	부산광역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37	35조5796	안**	2019-06-11 15:14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38	65마6614	안**	2019-06-19 20:35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39	02하6469	안**	2019-06-06 18:04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40	24모6392	안**	2019-06-10 20:19	경기도 구리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741	10버0816	양**	2019-06-12 17:42	충청남도 천안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42	15버3213	양**	2019-06-11 07:48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43	85오9268	양**	2019-06-21 09:1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44	14더0261	양**	2019-06-12 12:32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45	39모0751	양**	2019-06-21 17:1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46	서울85누3207	양**	2019-06-12 20:13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47	36누0528	양**	2019-06-14 07:35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48	36누0528	양**	2019-06-18 07:40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49	12우4878	양**	2019-06-13 18:41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50	43라8411	양**	2019-06-20 19:20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51	69무2699	양**	2019-06-12 19:0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52	43소1314	양**	2019-06-12 17:48	경기도 성남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53	55우4765	양**	2019-06-21 20:37	충청북도 음성군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54	37수2326	양**	2019-06-11 20:1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55	서울91자2568	양**	2019-06-18 17:06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756	30저2906	양**	2019-06-20 17:55	전라북도 완주군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57	60투8784	양**	2019-06-12 19:09	경기도 안산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58	33보2820	양**	2019-06-19 19:48	서울특별시	잠실동 181-3	전용차로위반 50,000
	759	26마3507	양**	2019-06-11 09:5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60	41투2822	여**	2019-06-12 17:23	충청남도 부여군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61	43려7620	염**	2019-06-19 08:34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62	90서3480	염**	2019-06-12 13:42	경기도 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63	46투6629	염**	2019-06-12 14:34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64	24더1871	오**	2019-06-20 07:33	경기도 의정부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65	21머5596	오**	2019-06-13 20:07	경기도 의정부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66	37머1098	오**	2019-06-19 19:13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67	19도7461	오**	2019-06-20 11:08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768	49버4806	오**	2019-06-19 13:14	경기도 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69	11부5570	오**	2019-06-10 09:21	경기도 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70	17어2945	오**	2019-06-13 15:41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771	37로4267	오**	2019-06-19 17:2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72	서울52도9246	오**	2019-06-19 17:55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73	84주6364	오**	2019-06-13 10: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74	05보2668	오**	2019-06-17 08:57	서울특별시	서울어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75	69고7348	오**	2019-06-12 07:3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76	69고7348	오**	2019-06-12 07:3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77	10보7467	오**	2019-06-18 12:47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78	46저1868	오**	2019-06-19 1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갯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79	63무9201	오**	2019-06-12 11:20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0	09호1496	오**	2019-05-07 17:36	서울특별시	중화동 메디렌즈 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781	58소7176	옹**	2019-06-12 17:23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82	93로8103	옹**	2019-06-21 11:13	경기도 광주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783	12오3836	우**	2019-06-14 07:37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84	서울31사7981	우**	2019-06-17 20:50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5	서울31사7981	우**	2019-06-13 20:39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6	21어2267	우**	2019-06-12 17:12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87	06너4755	원**	2019-06-14 07:13	경상북도 구미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88	28고0475	원**	2019-06-13 08:1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89	56가0193	원**	2019-06-20 11:05	강원도 강릉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90	66서5158	위**	2019-06-10 18:10	경기도 고양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91	83노3470	유**	2019-06-21 18:2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92	10도7098	유**	2019-06-14 14:35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93	43노0729	유**	2019-06-11 14:13	경기도 안양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794	05보3891	유**	2019-06-20 13:23	강원도 춘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95	67호8955	유**	2019-05-07 11:16	경기도 평택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796	11저5910	유**	2019-06-13 20:07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97	12다2625	유**	2019-06-11 16:49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98	경기92바8113	유**	2019-06-13 11:25	경기도 광주시	중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99	62고3665	유**	2019-06-10 07:25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00	65나6692	유**	2019-06-20 10:56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01	87보0894	유**	2019-06-21 17:38	경기도 부천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02	60보0104	유**	2019-06-11 16:36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03	서울31자5839	유**	2019-06-13 17:11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04	66머7258	유**	2019-06-12 19:22	경기도 하남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05	34거8226	유**	2019-06-17 03:01	경기도 평택시	중화동 메디렌즈 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806	13소9654	유**	2019-06-14 18:46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07	48무0486	유**	2019-06-21 17:5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08	34나3046	유**	2019-06-14 20:12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09	서울83보5689	유**	2019-06-19 17:12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10	68다5468	육**	2019-06-11 11:10	경기도 광주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1	28나7534	윤**	2019-06-13 09:29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812	17저2498	윤**	2019-06-14 18:32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13	51버8602	윤**	2019-06-18 09:26	경기도 안양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14	51허5504	윤**	2019-06-03 15:10	광주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5	11무1081	윤**	2019-06-12 19:14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16	55버5829	윤**	2019-06-17 17:15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17	40너3748	윤**	2019-06-17 18:35	경기도 고양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818	22마0921	윤**	2019-06-21 17:31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19	80버5691	윤**	2019-06-11 09:0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20	59누1680	윤**	2019-06-14 18:5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21	49누3963	윤**	2019-06-10 19:21	경기도 김포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22	09너0752	윤**	2019-06-18 19:32	강원도 속초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23	26어6847	윤**	2019-06-15 15: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24	03수7915	윤**	2019-06-17 18:4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25	52보1167	윤**	2019-06-20 20:48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26	64소6129	윤**	2019-06-10 19:30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27	31조2596	윤**	2019-06-14 12:3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28	47누7730	윤**	2019-06-18 19:42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29	35노7081	윤**	2019-06-14 17:3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30	53고2847	윤**	2019-06-12 15:52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31	62노6189	윤**	2019-06-20 14:06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32	14주2987	윤**	2019-06-20 19:45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33	05구7307	이**	2019-06-14 17:0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34	56고1064	이**	2019-06-14 20:04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35	58조7765	이**	2019-06-12 16:41	경기도 남양주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36	15나8304	이**	2019-06-20 16:10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837	서울80자6236	이**	2019-06-13 19:15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838	53려8532	이**	2019-06-20 12:5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39	27모0928	이**	2019-06-20 13:25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40	28로0108	이**	2019-06-21 11:49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41	67머5248	이**	2019-06-17 11:15	경기도 의정부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42	97모8274	이**	2019-06-19 08:27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43	17우6230	이**	2019-06-10 19:05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44	40너1939	이**	2019-06-20 09:46	경기도 김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45	61마7843	이**	2019-06-19 12:30	서울특별시	YBM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846	33더6688	이**	2019-06-21 15:4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47	67머1820	이**	2019-06-17 12:09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48	서울32자4790	이**	2019-06-19 18:0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49	14모5087	이**	2019-06-17 17:11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50	31나9526	이**	2019-06-12 17:33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어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51	54려4371	이**	2019-06-10 19:48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52	17더1510	이**	2019-06-20 19:5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53	20누6214	이**	2019-06-19 09:01	대전광역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54	20고3927	이**	2019-06-22 09:41	경기도 하남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55	20고3927	이**	2019-06-22 09:42	경기도 하남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856	서울32아2018	이**	2019-06-12 18:1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57	68보8739	이**	2019-06-12 18:46	경상북도 예천군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58	51서7395	이**	2019-06-10 19:20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59	01더7031	이**	2019-06-10 07:53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860	42노8684	이**	2019-06-21 20:14	경기도 부천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61	56구6508	이**	2019-06-14 09:57	인천광역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862	22모2660	이**	2019-06-17 17:12	경기도 용인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63	서울31자2874	이**	2019-06-16 10:56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64	49아8949	이**	2019-06-10 19:47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65	44하8341	이**	2019-05-10 04:47	경기도 성남시	홍은동 산골고개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866	32가3539	이**	2019-06-20 18:5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67	51모0617	이**	2019-06-17 15:28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68	대전85사6681	이**	2019-06-18 15:21	대전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69	대전85사6681	이**	2019-06-18 15:24	대전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70	서울31바3863	이**	2019-06-14 13:53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71	52가6772	이**	2019-06-20 16:29	인천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72	35나4410	이**	2019-06-17 14:3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73	39구2644	이**	2019-06-13 20:1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74	41보8572	이**	2019-06-21 19:52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75	14루0938	이**	2019-06-15 14:48	경기도 광주시	한남IC-잠원IC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76	06무0828	이**	2019-06-10 16:5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77	13주5946	이**	2019-06-12 16:0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78	26우7533	이**	2019-06-14 13:32	경기도 과천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879	52라6030	이**	2019-06-10 08:17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80	02주8629	이**	2019-06-19 08:2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81	충남51바2459	이**	2019-06-14 15:40	충청남도 천안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82	27누3950	이**	2019-06-13 17:50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83	18라8098	이**	2019-06-10 07:28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84	87노4329	이**	2019-06-14 09:14	경기도 양주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85	30수5702	이**	2019-06-20 18:10	경기도 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86	57수2514	이**	2019-06-12 18:0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87	56로4216	이**	2019-06-17 17:14	부산광역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888	28저7483	이**	2019-06-20 18:18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89	42나3648	이**	2019-06-20 09:43	경기도 동두천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890	07두0538	이**	2019-06-10 13:3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91	20하2743	이**	2019-05-14 20:10	경기도 파주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92	56저6488	이**	2019-06-10 17:32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893	08부6996	이**	2019-06-10 19:49	충청북도 청주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894	33부5576	이**	2019-06-15 10:54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95	21두1421	이**	2019-06-19 17:3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96	68라7049	이**	2019-06-20 08:3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97	61모8348	이**	2019-06-17 19:1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98	53고5313	이**	2019-06-22 10:41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99	40가0617	이**	2019-06-21 17:20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900	01저6683	이**	2019-06-21 20:24	경기도 시흥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01	04나0456	이**	2019-06-16 17: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902	65두3471	이**	2019-06-21 13:3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03	49어8177	이**	2019-06-14 17:49	경기도 광주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04	43고3360	이**	2019-06-10 18:3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05	46도6957	이**	2019-06-11 07:17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906	30누5031	이**	2019-06-16 12:04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07	48우3879	이**	2019-06-11 18:00	경기도 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08	50우3144	이**	2019-05-02 18:26	충청남도 천안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09	09고3365	이**	2019-06-14 20:04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10	69투5270	이**	2019-06-18 17:29	경기도 평택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11	47노6256	이**	2019-06-20 17:20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12	33나4868	이**	2019-06-18 20:24	경기도 오산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13	16무8347	이**	2019-06-14 07:32	경기도 안산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14	31너9806	이**	2019-06-18 20:48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15	36라5523	이**	2019-06-18 09:22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16	80마0363	이**	2019-06-11 20:3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17	28모1087	이**	2019-06-21 17:27	강원도 속초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18	48누1554	이**	2019-06-18 08:57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19	45라2307	이**	2019-06-14 14: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셋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20	03나0266	이**	2019-06-14 16:54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21	48너2528	이**	2019-06-17 17:23	서울특별시	잠실동 22-6	전용차로위반	50,000
922	59너1553	이**	2019-06-13 20:39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23	96마2512	이**	2019-06-10 18:29	충청북도 청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24	56버9579	이**	2019-06-22 10: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925	59도1051	이**	2019-06-11 14:05	경기도 안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26	15모4906	이**	2019-05-09 17:49	경기도 구리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27	15모4906	이**	2019-05-25 13:14	경기도 구리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28	19투2868	이**	2019-06-13 15:06	경기도 화성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929	23버8837	이**	2019-06-11 17:57	강원도 태백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30	30주7034	이**	2019-06-13 17:40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31	57조7917	이**	2019-06-19 15:52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32	93거0780	이**	2019-06-18 20:49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33	62마9451	이**	2019-06-10 17:1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34	21투2074	이**	2019-06-21 07:24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35	65거4117	이**	2019-06-11 09:4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36	22누5330	이**	2019-06-19 19:0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37	09호7004	이**	2019-05-09 18:39	경기도 김포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38	09호7004	이**	2019-05-23 18:28	경기도 김포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39	36서5733	이**	2019-06-12 17:48	경기도 광주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40	36서5733	이**	2019-06-12 17:47	경기도 광주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41	64노7247	이**	2019-06-18 17:22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42	59우3147	이**	2019-06-12 20:39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43	37구7453	이**	2019-06-10 18:3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944	70호1790	이**	2019-05-24 20: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엠피아	전용차로위반 60,000
	945	70호1790	이**	2019-05-18 15: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셋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60,000
	946	17보3660	이**	2019-06-14 18:4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47	30소8049	이**	2019-06-12 17:5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48	85무8061	이**	2019-06-10 08:1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49	61가0487	이**	2019-06-10 18:31	경기도 용인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50	63조7282	이**	2019-06-10 18:49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51	60가8341	이**	2019-06-14 18:06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52	37두8993	이**	2019-06-20 17:1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53	81다9375	이**	2019-06-21 16:40	경기도 파주시	영등포구 신송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954	08도2620	이**	2019-06-14 19:57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55	93서6070	이**	2019-06-20 18:32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56	93서6070	이**	2019-06-20 18:3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57	91소5186	이**	2019-06-21 14:25	충청남도 예산군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58	39부6097	이**	2019-06-17 08:21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59	39부6097	이**	2019-06-17 08:20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60	27오2456	이**	2019-06-11 09:43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61	42구9055	이**	2019-06-21 17:43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62	07누0499	이**	2019-06-21 13:22	강원도 원주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63	38너7588	이**	2019-06-19 17:55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64	서울38가8910	이**	2019-06-17 23:27	서울특별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965	54고6000	이**	2019-06-19 15:41	경기도 수원시	영등포구 셋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66	19머2038	이**	2019-06-22 18:0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67	서울31사7822	이**	2019-06-21 20:30	경기도 고양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68	15부2423	이**	2019-06-10 20:2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69	11마0986	이**	2019-06-10 00:52	경기도 부천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70	서울89자2567	이**	2019-06-18 20:30	서울특별시	YBM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971	서울89자2567	이**	2019-06-17 21:39	서울특별시	YBM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972	36두8890	이**	2019-06-11 15:13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73	29누8455	이**	2019-06-13 12:54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74	29누8455	이**	2019-06-13 12:5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75	11보7551	이**	2019-06-12 11:04	경기도 남양주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976	06보2865	이**	2019-06-21 19:20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77	34부0280	이**	2019-05-08 07:28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78	15서2572	이**	2019-06-11 11:19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79	49다6889	이**	2019-06-18 17:48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80	서울32가1149	이**	2019-06-21 18:24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81	68머0456	이**	2019-06-11 20:30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82	10호2432	이**	2019-03-09 16:46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83	14조4625	이**	2019-06-13 17:1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84	서울31바6331	이**	2019-06-21 18:00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85	06로2142	이**	2019-06-13 09:38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86	96누9460	이**	2019-06-12 16: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987	68가1573	이**	2019-06-14 20:05	강원도 원주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988	65어6230	이**	2019-06-11 17:5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89	29두5143	이**	2019-06-10 19:28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90	02소1187	이**	2019-06-19 18:1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91	41호9647	이**	2019-05-31 17:30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992	08머9410	이**	2019-06-11 14: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한국국외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993	50구0206	이**	2019-06-11 08:21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94	69하0220	이**	2019-05-10 18:03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95	48버2393	이**	2019-06-11 17:3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96	23마7237	이**	2019-06-12 20:23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97	17누2922	이**	2019-06-13 09:14	경기도 군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98	17누2922	이**	2019-06-12 09:09	경기도 군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99	11고2918	이**	2019-06-19 12:22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00	30보8651	이**	2019-06-16 13: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승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1,001	92저2281	이**	2019-06-14 18:40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02	92저2281	이**	2019-06-13 19:12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03	14누5312	이**	2019-06-14 09: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1,004	63투5914	이**	2019-06-20 08:06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05	02너1684	이**	2019-06-10 09:12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06	20하6688	이**	2019-04-25 10:04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07	36무5495	이**	2019-06-20 19:33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08	61덕2686	이**	2019-06-20 18:55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09	14고1924	이**	2019-06-19 12:59	경기도 시흥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10	62무1002	이**	2019-06-19 17:43	경기도 고양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11	09버7092	이**	2019-06-15 13:38	경기도 양주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12	09버7092	이**	2019-06-15 13:35	경기도 양주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13	31더5830	이**	2019-06-13 20:47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14	28투0875	이**	2019-06-14 08:5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15	10호1961	인**	2019-05-30 20:14	경기도 오산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16	21거7296	임**	2019-06-14 07:4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17	02너6040	임**	2019-06-14 17:1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018	64투9014	임**	2019-06-17 09:43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19	61도8944	임**	2019-06-11 10:4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20	25조6836	임**	2019-06-17 20:1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21	45나5113	임**	2019-06-19 15:09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22	56부1073	임**	2019-06-18 17:06	대전광역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023	45호4261	임**	2019-05-05 17:40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24	63조3489	임**	2019-06-21 21: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한국국외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025	84우0360	임**	2019-06-10 08:2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26	49라5846	임**	2019-06-10 09:13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27	32도3232	임**	2019-06-18 14:4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28	47주3974	임**	2019-06-14 20:42	경기도 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29	19주0838	임**	2019-06-13 07:22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30	46라8923	임**	2019-06-19 19:1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31	30고5888	임**	2019-06-14 08:50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1,032	80머5734	임**	2019-06-20 18:04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33	26머0502	임**	2019-06-15 11:1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034	68노1970	임**	2019-06-17 18:20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35	20머5541	임**	2019-06-20 16:5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36	14고2756	임**	2019-06-18 13:5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37	35우1440	장**	2019-06-14 20:17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38	07도9801	장**	2019-06-14 20:2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39	92로4580	장**	2019-06-21 11: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1,040	07무2857	장**	2019-06-18 13: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041	58모6301	장**	2019-06-14 17:56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42	45노6117	장**	2019-06-17 17:54	경기도 남양주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43	42도9751	장**	2019-06-10 18:32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44	33보2277	장**	2019-06-14 17: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45	경기89사6065	장**	2019-06-12 13:14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46	06하8204	장**	2019-05-31 12:18	광주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47	06하8204	장**	2019-05-31 12:16	광주광역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48	23거7524	장**	2019-06-19 10:45	서울특별시	봉천동 979-2 애터미	전용차로위반	50,000
1,049	06루9003	장**	2019-06-17 17:46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50	53우3915	장**	2019-06-20 08:44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51	14거3459	장**	2019-06-20 18:3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52	13하4319	장**	2019-06-01 16:00	충청남도 서산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53	43터2266	장**	2019-06-15 16:59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54	43터2266	장**	2019-06-15 17:00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55	01하2617	장**	2019-02-24 11:39	인천광역시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056	64보0298	장**	2019-06-11 07:53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57	75노4420	장**	2019-06-11 10:18	경기도 의왕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60,000
1,058	서울85자1601	전**	2019-06-17 10:44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59	11구4142	전**	2019-06-20 20: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60	경기140야5026	전**	2019-06-12 13:59	경기도 부천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60,000
1,061	08루7907	전**	2019-06-12 20:17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62	56머8127	전**	2019-06-17 15:29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63	20우0565	전**	2019-06-21 08:3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064	34모5209	전**	2019-06-21 13:5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65	11노3753	전**	2019-06-20 16:44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66	17소0346	전**	2019-06-17 19:42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67	52수3778	전**	2019-06-14 17:23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68	09고5403	전**	2019-06-12 15:14	경기도 수원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69	30루4009	전**	2019-06-12 17:53	경기도 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70	30루4009	전**	2019-06-20 17:35	경기도 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71	41다3851	전**	2019-06-16 09:20	서울특별시	홍은동 산골고개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072	29머8455	전**	2019-06-11 18:45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73	68고2322	전**	2019-06-18 17:47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74	14러8346	전**	2019-06-11 14: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075	49로8789	정**	2019-06-14 09:49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076	29누9554	정**	2019-06-18 08:17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077	27수4007	정**	2019-06-22 17:07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78	27누3702	정**	2019-06-12 18:12	서울특별시	구산동 223 린나이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79	33구7428	정**	2019-06-13 09:4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80	97수7615	정**	2019-06-19 10:20	경기도 김포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81	14두1452	정**	2019-06-20 12:12	서울특별시	봉천동 979-7 에터미	전용차로위반	50,000
1,082	21부5576	정**	2019-06-13 17:12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83	67수8541	정**	2019-06-14 16:38	서울특별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84	34기2356	정**	2019-06-17 15:35	충청북도 청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85	55서2804	정**	2019-06-13 19:22	경기도 고양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086	03노8255	정**	2019-06-21 17:3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87	04무3912	정**	2019-06-14 17:30	경기도 의왕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88	37노3865	정**	2019-06-14 17:47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89	54보6218	정**	2019-06-21 18:50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90	60노3863	정**	2019-05-02 10:1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91	42보7415	정**	2019-06-12 18:23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92	서울31사9785	정**	2019-06-22 10:21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93	40하5251	정**	2019-05-02 16:12	경기도 오산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94	63구0549	정**	2019-06-22 13:05	대전광역시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095	07도5032	정**	2019-06-18 11:2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96	12수3833	정**	2019-06-13 17:45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97	97두6445	정**	2019-06-18 20:37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98	91무2897	정**	2019-06-12 10:46	서울특별시	봉천동 923-24 에터미	전용차로위반	50,000
1,099	경기38노4992	정**	2019-06-13 18:21	경기도 부천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00	14수4340	정**	2019-06-14 11:49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01	02보3690	정**	2019-06-22 21:51	경기도 화성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02	10노6731	정**	2019-06-18 14:07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03	12우0422	정**	2019-06-12 13:55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04	31누9748	정**	2019-06-21 07:32	경기도 수원시	잠원동 잠원현대캐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105	71거1359	정**	2019-06-17 15:58	서울특별시	성신여대입구역~길음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1,106	64우5150	정**	2019-06-17 07:59	경기도 하남시	상일IC~길동생태공원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07	61려9175	정**	2019-06-12 13:47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08	35소9304	정**	2019-06-12 17:40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09	59나1498	정**	2019-06-18 19:32	경기도 남양주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10	38너7679	정**	2019-06-11 18:20	경기도 의정부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11	66모7139	정**	2019-06-20 19:18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12	17로0376	정**	2019-06-18 18:3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13	02노5256	정**	2019-06-10 10:09	서울특별시	봉천동 923-23 에터미	전용차로위반	50,000
1,114	서울32사6874	정**	2019-06-20 14: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송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1,115	60저4125	정**	2019-06-12 17:28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16	03거4203	정**	2019-06-12 07:25	부산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17	03거4203	정**	2019-06-12 07:27	부산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18	61노8089	정**	2019-06-14 17:4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19	61소9515	정**	2019-06-12 09:03	경기도 평택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1,120	01모7163	정**	2019-06-12 16:4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21	24수7427	정**	2019-06-14 16:24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22	24수7427	정**	2019-06-14 16:23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23	83버9413	정**	2019-06-17 20:33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24	16하9657	정**	2019-05-28 23:16	경상북도 경산시	홍은동 산골고개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125	28버2006	정**	2019-06-11 19:32	서울특별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26	45소0965	정**	2019-06-19 09:04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27	63수2828	정**	2019-06-14 16:41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28	48누1157	정**	2019-06-20 13:1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29	59도2481	정**	2019-06-18 20:10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130	경기14모8722	정**	2019-06-12 13:10	인천광역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60,000
1,131	10고2675	정**	2019-06-17 08:38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132	12무8728	정**	2019-06-19 18:36	전라남도 장성군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33	51머3938	정**	2019-06-13 20: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34	41우5565	정**	2019-06-11 17:33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35	서울32자1323	정**	2019-06-18 20:48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36	10저8912	정**	2019-06-20 08:21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37	54마5227	정**	2019-06-10 09:1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38	54마5227	정**	2019-06-20 08:5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39	33라5002	정**	2019-06-19 10:48	경상남도 함양군	영등포구 셋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40	65거9261	제**	2019-06-21 20:2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41	27수6560	조**	2019-06-17 07:16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42	26저6095	조**	2019-06-12 11:4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43	22가6824	조**	2019-06-15 12:48	서울특별시	종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44	06모4993	조**	2019-06-21 19:58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145	60로1155	조**	2019-06-21 17:23	경기도 이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46	서울32자2474	조**	2019-06-17 09:44	서울특별시	잠실역사거리~송파구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47	62라8033	조**	2019-06-17 15:04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48	20가0752	조**	2019-06-17 18:45	경기도 안양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49	57구7542	조**	2019-06-21 20:17	충청남도 당진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50	48소3793	조**	2019-06-13 20:21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51	49너7855	조**	2019-05-09 10: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52	서울32사4689	조**	2019-06-11 11:04	서울특별시	YBM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1,153	35라8245	조**	2019-06-10 07:52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54	67다2165	조**	2019-06-21 20:03	충청북도 제천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55	39투0989	조**	2019-06-10 20:20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56	02도3034	조**	2019-06-11 14:50	경상남도 창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57	68투6304	조**	2019-06-17 17:16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58	40저8382	조**	2019-06-17 16:3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59	64더1044	조**	2019-06-21 19:18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60	08로2665	조**	2019-06-12 18:10	서울특별시	중화동 메디엔느 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1,161	56호4723	조**	2019-04-30 17:34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62	84더9308	조**	2019-06-22 10:2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163	16아6539	조**	2019-06-17 09:3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1,164	41주0156	조**	2019-06-11 17:39	충청북도 괴산군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65	81주1399	조**	2019-06-19 08:51	경기도 부천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66	62우8444	조**	2019-06-12 18:48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67	58소1140	조**	2019-06-18 11: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68	39다0998	조**	2019-06-10 07:5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69	26조1873	조**	2019-06-18 09:14	충청남도 아산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170	53라4450	주**	2019-06-12 02:33	서울특별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171	24서0547	주**	2019-06-14 08:59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72	26여5559	주**	2019-06-13 20:47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73	서울41머3650	주**	2019-06-20 08: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74	53수6711	주**	2019-06-14 16:37	서울특별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75	38다0717	주**	2019-06-20 13:20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76	01로1758	지**	2019-06-12 18:4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77	35기3783	지**	2019-06-14 17:11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78	60조2664	지**	2019-06-10 13:01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79	서울32자2390	지**	2019-06-12 12:23	서울특별시	봉천동 979-7 에터미	전용차로위반	50,000
1,180	64호6698	진**	2019-04-29 17:49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81	43무8605	진**	2019-06-13 10:26	경기도 군포시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182	61여2194	진**	2019-06-20 17:2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83	62우3075	차**	2019-06-21 18:53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84	16마6091	차**	2019-06-19 19:54	인천광역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85	36버4594	차**	2019-06-13 19:12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86	36버4594	차**	2019-06-13 19:1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87	26여2685	차**	2019-06-10 08:58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88	45루6879	채**	2019-06-11 19:32	경기도 하남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89	01머7450	천**	2019-06-17 19:0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90	27너3307	최**	2019-06-20 18:02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91	36소0634	최**	2019-06-14 17:22	경기도 고양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92	22너0507	최**	2019-06-16 16:21	충청남도 천안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93	65오0869	최**	2019-06-11 18:00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94	35라4435	최**	2019-06-19 18:01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95	72마9964	최**	2019-06-15 13:14	경기도 용인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60,000
1,196	45우9950	최**	2019-06-11 19:37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97	40너0555	최**	2019-06-18 18:23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98	01라2502	최**	2019-06-21 19:59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99	22저6830	최**	2019-06-21 16:5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00	50가8277	최**	2019-06-18 20:33	경기도 화성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 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201	12누3010	최**	2019-06-21 15:55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02	86우5505	최**	2019-06-11 16: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1,203	20호9763	최**	2019-05-07 18:15	전라남도 강진군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04	45고4348	최**	2019-05-11 13:24	경기도 고양시	잠원동 잠원현대힐리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205	27보7170	최**	2019-06-17 12:26	경상남도 김해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06	27보7170	최**	2019-06-17 12:27	경상남도 김해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1,207	27리0722	최**	2019-06-17 14:17	강원도 춘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08	17누8214	최**	2019-06-12 17: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209	15주0708	최**	2019-06-12 18:4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210	15주0708	최**	2019-06-14 18:44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211	63노7430	최**	2019-06-14 17:1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12	83마7735	최**	2019-06-22 13:5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13	06로3324	최**	2019-06-18 19:12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14	07루0476	최**	2019-06-10 18:08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15	42부3439	최**	2019-06-12 16:44	경기도 부천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16	12호4021	최**	2019-04-27 08:18	충청남도 아산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217	05서8624	최**	2019-06-20 10:03	전라남도 목포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18	39하7411	최**	2019-05-17 19:45	경상북도 구미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19	13조5662	최**	2019-06-13 08:4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220	66수3773	최**	2019-06-11 09:33	충청북도 청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21	08루6264	최**	2019-06-17 11: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22	31라1274	최**	2019-06-14 15:04	경기도 남양주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23	32서7299	최**	2019-06-13 13:02	경기도 시흥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24	47누6608	최**	2019-06-19 21:55	충청남도 천안시	종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225	62저4506	최**	2019-06-13 11:0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26	48부4846	최**	2019-06-14 16:37	경기도 부천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27	34호1600	최**	2019-06-04 17:44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28	27거3650	최**	2019-06-16 13: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승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1,229	경기14모8906	최**	2019-06-12 13:16	인천광역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60,000
1,230	81우3651	최**	2019-06-14 17:32	충청북도 제천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31	81우3651	최**	2019-06-14 17:34	충청북도 제천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32	63나3627	최**	2019-06-18 10:43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33	52너4854	최**	2019-06-21 08:14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34	07누4000	최**	2019-06-19 17:44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35	61하6800	최**	2019-05-09 17:43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36	64가5928	추**	2019-06-18 18:54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37	26서3970	편**	2019-06-18 18:11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238	46모1573	편**	2019-06-21 17:31	경기도 성남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39	52로8013	편**	2019-06-12 18:23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40	67소5699	하**	2019-06-15 09:18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41	45호1608	하**	2019-05-16 09:03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42	35주1631	하**	2019-06-17 07:52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43	89두0710	한**	2019-06-15 17:1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44	73구2149	한**	2019-06-10 08:42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60,000
1,245	73구2149	한**	2019-06-14 08:42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60,000
1,246	22리7373	한**	2019-05-03 19:09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47	01두3844	한**	2019-06-10 20:42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248	55서7793	한**	2019-06-17 17:06	전라북도 군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49	경기34바4239	한**	2019-06-10 09:14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250	46우6602	한**	2019-06-19 11:23	충청남도 아산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1,251	43조6880	한**	2019-06-17 15:54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52	33하9146	한**	2019-05-09 14:55	경기도 성남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253	23도8193	한**	2019-06-19 08:50	경기도 시흥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54	서울31아6640	한**	2019-06-10 20:04	경기도 의정부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55	56머3446	한**	2019-06-18 13:18	경기도 의정부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56	61로8357	한**	2019-06-16 19:35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57	28주5698	한**	2019-06-11 09:34	경기도 남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258	01두7056	한**	2019-06-10 17: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59	28기2440	한**	2019-06-21 19:47	서울특별시	등촌동 566-13	전용차로위반	50,000
1,260	90나5412	한**	2019-06-14 17:22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61	36조3913	한**	2019-06-19 17:32	경기도 고양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62	24노9107	한**	2019-06-11 10:4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63	50거5544	한**	2019-06-20 11:58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64	81나9019	한**	2019-06-17 20:20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65	22무2265	한**	2019-06-14 09:18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266	37수5599	한**	2019-06-12 08: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67	07두0609	함**	2019-06-14 19:2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68	35서0555	함**	2019-06-19 18:56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69	89조8367	함**	2019-06-10 10:36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70	58거7200	함**	2019-06-17 18:35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71	50라2516	허**	2019-06-19 09:15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72	35로6803	허**	2019-06-11 17:2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73	08여3156	허**	2019-06-20 14:3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74	34저4719	허**	2019-06-21 17:5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75	서울31아1468	허**	2019-06-10 17:23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276	57여8017	현**	2019-05-07 17:59	대전광역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77	45수6200	현**	2019-06-12 13:03	경기도 광주시	영등포구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1,278	38루5669	홍**	2019-06-12 17:40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79	06거6730	홍**	2019-06-20 15:25	대전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80	23거9548	홍**	2019-06-19 12:31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81	46구5763	홍**	2019-06-18 19:26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82	21무5427	홍**	2019-06-11 18:4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83	23나0337	홍**	2019-06-21 20:09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284	23나0337	홍**	2019-06-14 17:27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285	12나7042	홍**	2019-06-12 09: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86	서울32아5059	홍**	2019-06-11 11:16	서울특별시	종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287	05라0721	홍**	2019-06-13 20:04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88	42부6532	홍**	2019-06-10 12:18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89	42부6532	홍**	2019-06-10 12:19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90	67거6715	홍**	2019-06-11 17:51	경기도 광명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91	51호9214	홍**	2019-05-17 15:27	경기도 양평군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92	65구3182	황**	2019-06-10 12:32	서울특별시	39-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293	08고6271	황**	2019-06-15 14:25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94	24너2848	황**	2019-06-14 18:24	경기도 광주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1,295	58조7793	황**	2019-06-11 18:52	경기도 광주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96	36주9398	황**	2019-06-15 11:48	울산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97	20하3930	황**	2019-05-09 17:31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98	89소4275	황**	2019-06-19 13:13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99	97두5031	황**	2019-06-17 08:11	충청남도 부여군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00	32노5395	황**	2019-06-14 17:46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301	08너6114	황**	2019-06-15 14:37	전라남도 나주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302	89다3514	황**	2019-06-12 16:03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03	59저0376	황**	2019-06-14 20:0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304	85노5821	황**	2019-06-21 19:58	경기도 화성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305	36다5821	황**	2019-06-11 17:11	경기도 남양주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306	40하5917	황**	2019-05-08 19:04	경기도 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07	47서1378	황**	2019-06-11 12:11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308	06노2562	황**	2019-06-11 19:19	강원도 원주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09	06노2562	황**	2019-06-11 19:21	강원도 원주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9-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8-85호(2018.9.6.)로 「홍지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종로구공고 제2018-863호(2018.9.27.)로 실시계획 열람공고 및 종로구고시 제2018-114호(2018.10.18.)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종로구고시 제2019-1호(2019.1.10.), 제2019-14호(2019.1.31.)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한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건설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129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 2) 명 칭 :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건설 사업

다. 사업규모 및 내용(변경없음)

- 1) 도로개설(금회)
 - 소로 3-3 : 폭 4~6m, 연장 125m
 - 소로 3-4 : 폭 3~4.5m, 연장 20m
- 2) 주차장건설(평면식, 면적 584.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사. 고시방법 : 시보게재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도로과(☎02-2148-3165), 주차관리과(☎02-2148-3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 건설 사업

1. 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목	현실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부암동	185-55 (분할전:185-15)	전	도로	27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 901호(동문그린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 301호(홍제동)				
2	종로구 부암동	185-53 (분할전:185-8)	대	도로	6	강병곤	87.583 /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101호(부암동,중앙하이츠빌라)	주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청계8가지점)	근저당	101호
						하영이	87.583 /1051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삼충로241번길 18-6				102호
						김재홍	87.583 /1051	경북 청도군 풍각면 원명길 100-5				103호
						지원종	87.583 /1051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19, 3층동(부암동)	주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84(을지로2가) 여의도영입부	근저당	104호
						윤선희	87.583 /1051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19, 3층동(부암동)				
						정옥조	87.584 /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201호(부암동,중앙하이츠빌라)				201호
						홍승환	87.584/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202호(부암동,중앙하이츠빌라)				202호
						오창균	87.584 /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203호(부암동,중앙하이츠빌라)	회현동새마을금고	서울시 중구 남대문시장길 45-10(남창동)	근저당	203호
						민경보	87.584 /1051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22가길 17-13(구기동)				204호
						김양수	87.583 /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3층동 1호 (부암동,중앙하이츠빌라)				301호
						김은숙	87.583 /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302호(부암동,중앙하이츠빌라)	주제일은행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개인여신운용팀)	근저당	302호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소매여신운영부)	근저당	
									주안국은행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5-30	근저당	
						김용대	87.583 /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304 (부암동,중앙하이츠빌라)				303호
						김용대	87.583 /1051					304호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목	현실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종로구 부암동	185-56 (분할전: 185-22)	대	대	4	강준기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6 (부암동)	(주)안양 저축은행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안양동) (평촌지점)	근저당				
			대	도로	66										
4	종로구 부암동	185-58 (분할전:18 5-23)	전	전	36.6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 901호(동문그린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301호(홍제동)							
5	종로구 부암동	185-59 (분할전:18 5-23)	전	도로	36.4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 901호(동문그린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301호(홍제동)							
6	종로구 부암동	185-64 (분할전:18 5-52)	대	대	2	나도업	528.5 /1057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솔대길 121-9							
						나상수	528.5 /1057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7길 25-71							
7	종로구 부암동	185-60 (분할전: 185-24)	전	전	75.5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 901호(동문그린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301호(홍제동)							
8	종로구 부암동	185-61 (분할전: 185-24)	전	도로	17.5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 901호(동문그린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301호(홍제동)							
9	종로구 부암동	185-63 (분할전: 185-50)	전	전	93.3	조명운		서울시 종로구 종로58가길 9, 6층 601호(송인동, 블루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청계지점)	근저당				
									한광정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62길 57 (상도동)	근저당				
			전	도로	34.7				김성희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53길 70, 201동 206호 (상도동, 상도에스에이치빌)	근저당				
									이의용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38번길91, 407동 1006호 (삼승동,양주자이아파트)	근저당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목	현실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	종로구 부암동	388-6 (분할전: 388-1)	전	전	172	남광영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66-2				
			전	도로	64							
		388-6 (분할전: 388-1)	전	전	172	남봉순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80-1 스카이빌라 A동 302호				
			전	도로	64							
11	종로구 부암동	390-14 (분할전: 390-7)	전	전	66	최문정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4-1 현대구기빌라 4-C101				
			전	도로	19							
12	종로구 부암동	384-11	구		13	종로구						

2. 주차장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목	현실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홍 지동	129-33 (분할전: 129-5)	전	전	274	조혜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3길 33(홍지동)				
2	종로구 부암동	384-11	구		27.7	종로구						
3	종로구 부암동	390-13 (분할전: 390-7)	전	전	273	최문정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4-1 현대구기빌라 4-C101				
4	종로구 부암동	388-7 (분할전: 388-1)	전	전	6	남광영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66-2				
						남봉순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80-1 스카이빌라 A동 302호				
5	종로구 부암동	388-8 (분할전: 388-1)	전	전	4	남광영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66-2				
						남봉순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80-1 스카이빌라 A동 302호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건설 사업

1. 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부암동	185-58 (분할전 185-23)	조경석	자연석 L 9m	1	식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901호(동문그린 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301호(홍제동)				
2	종로구 부암동	185-60 (분할전: 185-24)	수목	아카시아나무 (B31)	1	주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사철나무 (B6)	1	주							
				팽나무 (B11)	1	주							
				팽나무 (B10)	1	주							
				단풍나무 (B22)	2	주							
			화단	적벽돌 0.8 × 3	1	식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901호(동문그린 시티아파트)				
				적벽돌 0.6 × 3.7	1	식							
				적벽돌 0.35 × 1.7	1	식							
				적벽돌 0.2 × 3	1	식							
				적벽돌									
3	종로구 부암동	185-63 (분할전: 185-50)	담장	적벽돌 H 2m	11	m	조명운	서울시 종로구 종로58가길 9, 6층 601호(송인동, 블루빌)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청계지점)	근저당	경매 진행	
			담장	블록담장 H 2m	15	m							
			수목	은행나무 (B53)	1	주			한광정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62길 57 (상도동)	근저당		
				단풍나무 (B13)	1	주							
				소나무 (B15)	1	주							
				소나무 (B10)	1	주							
				천나무 (B12)	1	주							
				소나무 (B21)	1	주							
				소나무 (B20)	1	주			김성희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53길 70, 201동 206호 (상도동, 상도에스케이치빌)	근저당		
				수종물가 (B20)	1	주							
				갯나무 (B11)	1	주							
				소나무 (B9)	1	주							
				향나무 (B16)	1	주			이의용	경기도 양주시 삼송로38번길91, 407동 1006호 (삼송동, 양주자이아파트)	근저당		
				단풍나무 (B8)	1	주							
				수종물가 (B26)	1	주							
			조경석	자연석 L 9m	1	식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종로구 부암동	388-6 (분할전: 388-1)	웬스	메쉬웬스 H 2.05m	43	m	남광영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66-2				
							남봉순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80-1 스카이빌라 A동 302호				
		수목	감나무 (B29)		1	주	남광영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66-2				
							남봉순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80-1 스카이빌라 A동 302호				

2. 주차장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홍지동	129-33 (분할전: 129-5)	수목	수양버들 (B57)	1	주	조혜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3길 33(홍지동)				
				고사목	1	주							

<변경 후>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업명 :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 건설 사업

1. 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목	현실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부암동	185-55 (분할전:185-15)	전	도로	27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 901호(동문그린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 301호(홍제동)				
2	종로구 부암동	185-53 (분할전:185-8)	대	도로	6	강병근	87.583 /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101호(부암동, 중앙하이츠빌라)	주우리는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청계8가지점)	근저당	101호
						하영이	87.583 /1051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삼충로241번길 18-6				102호
						김재홍	87.583 /1051	경북 청도군 풍각면 원명길 100-5				103호
						지원종	87.583 /1051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19, 3층동(부암동)	주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84(을지로2가)여의도영업부	근저당	104호
						윤선희	87.583 /1051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19, 3층동(부암동)				
						정옥조	87.584 /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201호(부암동, 중앙하이츠빌라)				201호
						홍승환	87.584 /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202호(부암동, 중앙하이츠빌라)				202호
						오창균	87.584 /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203호(부암동, 중앙하이츠빌라)	회현동새마을금고	서울시 중구 남대문시장길 45-10(남창동)	근저당	203호
						민경보	87.584 /1051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22가길 17-13(구기동)				204호
						김양수	87.583 /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3층동 1호 (부암동, 중앙하이츠빌라)				301호
						김은숙	87.583 /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302호(부암동, 중앙하이츠빌라)	주제일은행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개인여신운용팀)	근저당	302호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소매여신운영부)	근저당	
									주안국은행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5-30	근저당	
						김용대	87.583 /10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0, 304 (부암동, 중앙하이츠빌라)				303호
						김용대	87.583 /1051	(부암동, 중앙하이츠빌라)				304호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목	현실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종로구 부암동	185-56 (분할전: 185-22)	대	대	4	강준기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1길 16 (부암동)	㈜안양 저축은행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안양동) (평촌지점)	근저당	
			대	도로	66							
4	종로구 부암동	185-58 (분할전:185-23)	전	전	36.6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 901호(동문그린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301호(홍제동)				
				도로	18.4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 901호(동문그린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301호(홍제동)				
5		185-59 (분할전:185-23)	전	도로	18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 901호(동문그린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301호(홍제동)				
6	종로구 부암동	185-64 (분할전:185-52)	대	대	2	나도업	528.5 /1057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솔대길 121-9				
						나상수	528.5 /1057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7길 25-71				
7		185-60 (분할전: 185-24)	전	전	70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 901호(동문그린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301호(홍제동)				
8	종로구 부암동	185-61 (분할전: 185-24)	전	전	5.5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 901호(동문그린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301호(홍제동)				
				도로	17.5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 901호(동문그린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301호(홍제동)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목	현실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종로구 부암동	185-63 (분할전: 185-50)	전	전	93.3	조명운	서울시 종로구 종로58가길 9, 6층 601호(송인동, 블루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청계지점)	근저당		
			전	도로	34.7			한광정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62길 57 (상도동)	근저당		
								김성희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53길 70, 201동 206호 (상도동, 상도에스에이치빌)	근저당		
								이의웅	경기도 양주시 삼송로38번길91, 407동 1006호 (삼송동,양주자이아파트)	근저당		
10	종로구 부암동	388-6 (분할전: 388-1)	전	전	172	남광영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66-2				
			전	도로	64							
		388-6 (분할전: 388-1)	전	전	172	남봉순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80-1 스카이빌라 A동 302호				
			전	도로	64							
11	종로구 부암동	390-14 (분할전: 390-7)	전	전	66	최문정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4-1 현대구기빌라 4-C101					
			전	도로	19							
12	종로구 부암동	384-11	구		13	종로구						

2. 주차장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목	현실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홍 지동	129-33 (분할전: 129-5)	전	전	274	조혜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3길 33(홍지동)				
2	종로구 부암동	384-11	구		27.7	종로구						
3	종로구 부암동	390-13 (분할전: 390-7)	전	전	273	최문정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4-1 현대구기빌라 4-C101				
4	종로구 부암동	388-7 (분할전: 388-1)	전	전	6	남광영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66-2				
						남봉순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80-1 스카이빌라 A동 302호				
5	종로구 부암동	388-8 (분할전: 388-1)	전	전	4	남광영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66-2				
						남봉순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80-1 스카이빌라 A동 302호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건설 사업

1. 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부암동	185-58 (분할전 185-23)	조경석	자연석 L 9m	1	식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901호(동문그 린시티아파트)				
							박윤수	9/3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2,301호(홍제동)				
2	종로구 부암동	185-60 (분할전: 185-24)	수목	아카시아나무 (B31)	1	주	박대선	12/30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239(부암동)				
				사철나무 (B6)	1	주							
				뽕나무 (B11)	1	주							
				뽕나무 (B10)	1	주							
				단풍나무 (B22)	2	주							
			화단	적벽돌 0.8 × 3	1	식	박정선	9/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 502동901호(동문그 린시티아파트)				
				적벽돌 0.6 × 3.7	1	식							
				적벽돌 0.35 × 1.7	1	식							
				적벽돌 0.2 × 3	1	식							
				적벽돌 0.2 × 3	1	식							
3	종로구 부암동	185-63 (분할전: 185-50)	담장	적벽돌 H 2m	11	m	조명운		서울시 종로구 종로58가길 9, 6층 601호(송인동, 블루빌)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청계지점)	근저당	경매 진행
			담장	블록담장 H 2m	15	m							
			수목	은행나무 (B53)	1	주							
				단풍나무 (B13)	1	주							
				소나무 (B15)	1	주							
				소나무 (B10)	1	주							
				전나무 (B12)	1	주							
				소나무 (B21)	1	주							
				소나무 (B20)	1	주							
				수종불가 (B20)	1	주							
				잣나무 (B11)	1	주							
				소나무 (B9)	1	주							
				향나무 (B16)	1	주							
				단풍나무 (B8)	1	주							
				수종불가 (B26)	1	주							
			조경석	자연석 L 9m	1	식							
			한광정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62길 57 (상도동)	근저당								
			김성희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53길 70, 201동 206호 (상도동, 상도에스케이치빌)	근저당								
			이의용	경기도 양주시 삼송로38번길91, 407동 1006호 (삼송동, 양주자이아파트)	근저당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종로구 부암동	388-6 (분할전: 388-1)	웬스	메쉬웬스 H 2.05m	43	m	남광영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66-2				
							남봉순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80-1 스카이빌라 A동 302호				
			수목	감나무 (B29)	1	주	남광영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66-2				
							남봉순	1/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80-1 스카이빌라 A동 302호				

2. 주차장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홍지동	129-33 (분할전: 129-5)	수목	수양버들 (B57)	1	주	조혜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3길 33(홍지동)				
				고사목	1	주							

◆ 용산구고시 제2019-94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호(2012. 2. 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용 산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태원동 126-2외 4필지의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및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D-b	5,372	이태원동 126-2	238		획지면적: 1,297㎡
			이태원동 126-6	428	공동개발(지정) : 이태원동 126-23	
			이태원동 126-17	297		
			이태원동 126-23	52	공동개발(지정) : 이태원동 126-6	
			이태원동 126-31	282		
변경	D-b	5,328.2	이태원동 126-2	238.3	단위획지개발	획지면적 : 1,253.2㎡
			이태원동 126-6	428.4		
			이태원동 126-17	297.2		
			이태원동 126-23	7.3		
			이태원동 126-31	282.0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교통처리계획

■ 공동주차출입구

적용대상	기정	변경	비고
이태원동 126-2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공동주차출입구 일부 폐지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III. 관계도면 : 붙임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IV.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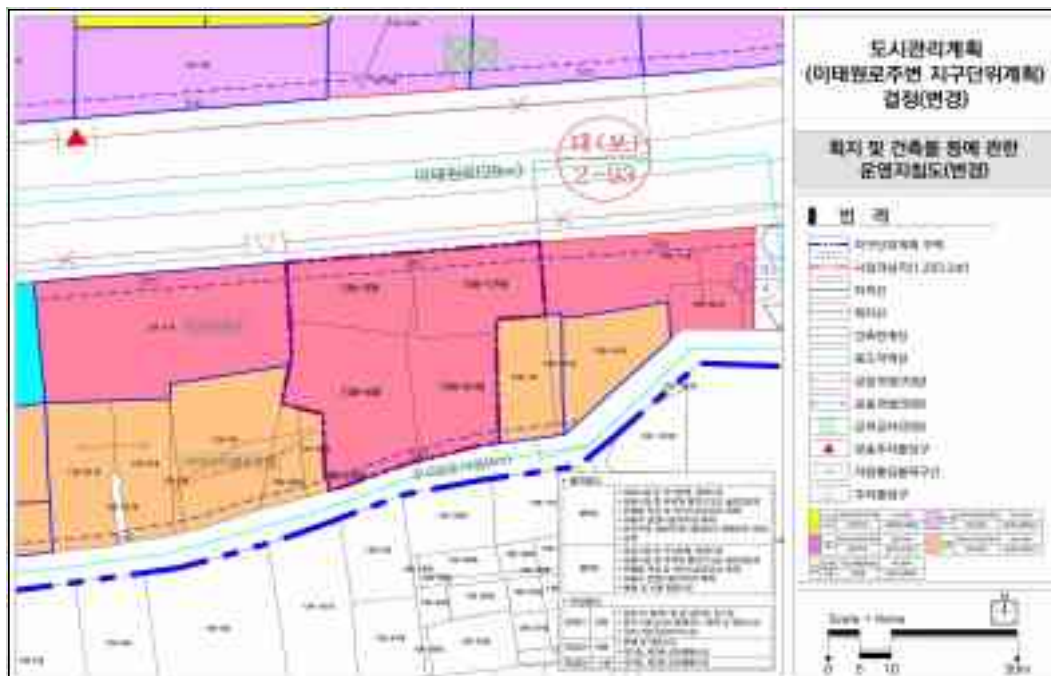
V.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운영지침도(기정·변경) 1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운영지침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운영지침도(변경)



◆ 용산구고시 제2019-95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호(2012. 2. 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용 산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태원동 123-1외 2필지의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고
			획지	면적(㎡)		
기정	C-d	2,962	이태원동 123-1	223	단위획지개발	
			이태원동 123-29	44		
			이태원동 123-26	595	단위획지개발	
변경	C-d	2,962	이태원동 123-1	223	단위획지개발	
			이태원동 123-29	44		
			이태원동 123-26	595		

※ 가구 C-d의 일부 조서임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Ⅳ.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Ⅴ.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변경) 1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성북구고시 제2019-117호

도시계획시설(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67.12.1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0호(2015.7.16.) 및 제2018-24호(2018.1.25.)로 조성계획 결정된 성북구 성북동 산25-1번지일대,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19-768호(2019.6.9.20)로 도시 계획시설(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 계획을 작성,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18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3-3번지 외 1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북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사업의 규모 : 13,784㎡
-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간

사.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붙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자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성북동 산23-3	임야	35,862	3,516	중구 서소문동 58-17	학교법인 명지학원				
					성북구 대사관로 133	이민진				
2	성북동 산23-6	임야	1,330	1,330	중구 서소문동 58-17	학교법인 명지학원				
3	성북동 산23-9	임야	804	804	중구 서소문동 58-17	학교법인 명지학원				
4	성북동 산23-10	임야	817	768	중구 서소문동 58-17	학교법인 명지학원				
5	성북동 산23-7	임야	878	572	중구 서소문동 58-17	학교법인 명지학원				
					성북구 성북동 15-23	김종민				
6	성북동 351-1	대	543.10	479	영등포구 대림동 863-10 광운 빌딩 7층	강경애				
					성북구 성북동 351-2	강수정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7	성북동 226-99	임야	813	8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6 탑마을 113-104	주이영				
8	성북동 226-101	임야	178	1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6 탑마을 113-104	주이영				
9	성북동 226-88	임야	1,309	1,309	성북동 226-220	최수일				
					성북동 226-220	한성주				
10	성북동 226-97	임야	1,005	1,005	성북동 226-220	최수일				
					성북동 226-220	한성주				
11	성북동 226-93	임야	1,322	1,322	용신구 청파동1가 89-11	박경훈				
					강남구 청담동 65 진흥아파트 6동 1401호	이만영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자의 관리종류 및 내용	
12	성북동 226-103	임야	1,983	458	용산구 청파동1가 1-15	신정숙				
13	성북동 226-105	임야	330	86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24-1 현대아파트 509동 1104호	정말선				
					성북구 성북동 224-57	나쌍월				
					영등포구 양평동5가 76 한신아 파트 101동 502호	홍인경				
14	성북동 226-106	임야	1,144	1,144	인천시부평구 안남로 260 504동 801호(산곡동, 현대아파트)	김재환				
					강북구 수유동 291-79	백금숙				

물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 격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 적	축 량 면 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성북동 신23-3	건 물 (주택 및 부수시설)	세멘조 (지층)	-	209	주거	성북구 대사관로133(성북동)	이민진				신발생무허가
			세멘조 (1층)	-	140	영업(카페)						
			세멘조 (2층)	-	99	영업(카페)						
			세멘조 (3층)	-	14	주거						
			조립식	-	6	창고						
			조립식	-	8	창고						
2	성북동 226-97 성북동 226-88	건 물 (주택 및 부수시설)	천막	-	19	창고		미상				신발생무허가
			컨테이너	-	108	창고(6개)						
			세멘조	-	82	주거						
			세멘조	-	2	창고						
			목조	-	5	창고						
			장독대	-	11	장독대						
			목조	-	13	창고						
			목조	-	6	창고						

◆ 노원구고시 제2019-8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영축산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6호(2016.7.7.)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노원구 월계동 산125-11번지 일원 영축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서류는 노원구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18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125-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영축산근린공원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면적 : 28,098㎡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간

사. 고시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6)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붙임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영축산관린공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월계동 산125-11	임야	6,364	6,364	최상락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76, 101동 101호 (성북동, 외교관사택단지)				
2	월계동 361	전	344	344	최무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8길 16, 113동 210호 (석관동, 두산아파트)				
3	월계동 산120-5	임야	4,921	4,921 (2249/7348)	김유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47, 104동 604호 (성수동2가, 성수동롯데캐슬파크)				
				4,921 (2249/7348)	김유갑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 308동 802(잠원동, 신반포8차아파트)				
				4,921 (2249/7348)	김유필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410-88, 113동 302호 (북현동, 대명타운)				
				4,921 (69/7348)	심재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가길 13-8(월계동)				
				4,921 (50/7348)	허동욱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가길 7-9(월계동)				
				4,921 (281/7348)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석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길23(월계동, 장석 교회)(대표자: 함택)				
				4,921 (181/7348)	신민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72, 101동 1503호(명창동, 삼성아파트)	김낙삼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154(장위동)	근저당권	
				4,921 (20/7348)	김옥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9, 1103 (역촌동, 썬타폴리스)				
4	월계동 산108-24	임야	2,061	2,061 (1/2)	이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42번길 33, 201동 1205호 (마북동, 연원마을쉐르빌아파트)				
5	월계동 산114-2	임야	6,879	2,061 (1/2)	이바네사 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9, 702호 (서초동, 도무스)				
				6,879	학교법인 영광학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9(월계동)				
				694	성창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246-20, 109동 1403호(무악동, 무악현대아파트)				
6	월계동 산117-5	임야	694	694	성창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9, 702호 (서초동, 도무스)				
7	월계동 산116-2	임야	677	677	김주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38, 309동 1303 호(삼양동, 상암월드컵파크3단지)				
8	월계동 산114-4	임야	1,567	1,567	학교법인 영광학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9 (월계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	월계동 산117-6	임야	1,190	1,190	성창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246-20, 109동 1403호 (무악동, 무악현대아파트)			
10	월계동 산127-7	임야	1,213	1,213 (4396.71/4562)	우덕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3길 15, 201동 303호 (하계동, 청구빌라)			
11	월계동 산127-6	임야	1,084	1,213 (165.29/4562)	최석자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6번길 31-9(의정부동)			
				1,084 (1/2)	전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6, 104동 1803호(용두동, 용두독산위브)			
				1,084 (1/2)	전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104동 1104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04 (662/6347)	윤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51, 5동 407호(하계동, 한신동성아파트)			
				1,104 (595/6347)	윤인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진호대로97길 29-1, 11동 1층 (장안동)			
				1,104 (992/6347)	윤상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165, 215동 804호(신내동, 신내우대안2단지)			
				1,104 (992/6347)	윤상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 107동 1102호(대원리, 한라아파트)			
				1,104 (331/6347)	윤상욱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62, 110동 402호(소사본동, 소사skview아파트)			
12	월계동 산138-1	임야	1,104	1,104 (330/6347)	윤점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9길 60, 104동 1601호 (정릉동, 정릉중앙하이츠빌1단지아파트)			
				1,104 (330/6347)	윤해욱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62길 38, 402호(독산동, 삼성빌)			
				1,104 (330/6347)	윤상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8길 42, 703동 403호 (중계동, 주공아파트)			
				1,104 (595/6347)	윤오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동로 264, 103동 905호(방학동, 청구아파트)			
				1,104 (99.13/6347)	이인숙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83, 1005동 1401호(중동, 꿈마을)			
				1,104 (165.29/6347)	윤상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96길 36-6(장위동)			
				1,104 (165.29/6347)	윤명욱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83, 1004동 804호(중동, 꿈마을)			
				1,104 (165.29/6347)	강순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96길 36-6 (장위동)			
				1,104 (595/6347)	박선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발로 265, 11동 1005호(중계동, 롯데아파트)			

별첨 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구역	수량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	월계동 산127-6	주택	50㎡	1식	박종복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90-5				
2	월계동 산127-6	창고	25㎡	1식	박종복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90-5				
3	월계동 산127-7	주택	71㎡	1식	박종덕	서울특별시 월계동 산127-3				

◆ 노원구고시 제2019-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9호(2019.7.1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9-41호(2019.3.2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 산43-1번지 일대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서류는 노원구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18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43-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면적 : 17,413㎡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간

사. 고시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6)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붙임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근린공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월계동 산43-1	임야	2,777	2,777 (1/5)	김태학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18-7, 204동 1203호 (가농동, 에스케이뷰아파트)	강북구 국(도농 세무서)				임류 임류
				2,777 (1/5)	김홍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1길 32(신길동)					
				2,777 (1/5)	김문식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70, 103동 403호 (경기동, 청송마을)	김포시				임류
				2,777 (1/5)	김미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68번길 23, 301동 502호 (청학리, 청학주공아파트)					
				2,777 (1/5)	김동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11번길 26, 163동 201호 (상현동, 상현마을 현대상우2차아파트)					
2	월계동 산46-3	임야	9,946	9,946	학교법인 영광학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길9(월계동)					
3	월계동 산45-15	임야	300	300	김윤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평로 318, 209동 907호 (외도일동, 외도2차 부영아파트)	이성자 ㈜현대 저축은행	서초구 반포대로7길45, 103-1001 (서초동, 더샵 오메움) 강남구 선릉로652(삼성동)	근저당 근저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평로 318, 209동 907호 (외도일동, 외도2차 부영아파트)	이성자 ㈜현대 저축은행	서초구 반포대로7길45, 103-1001 (서초동, 더샵 오메움) 강남구 선릉로652(삼성동)	근저당 근저당		
5	월계동 산34	임야	298	298	태양극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대로 24, 217동 603호 (문정동, 웨빌리아파트)					
6	월계동 산33-8	임야	455	455	김상원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경로 384, 2408동 1101호 (별내동, 대원칸타빌리아파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길 69, 101동 204호 (구기동, 장구빌라)					
7	월계동 산33-6	임야	412	412	안정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월계동 산37-18	임야	608	608 (596.48/7438)	이각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길 21, 118동902호 (월계동, 롯데캐슬루니아파트)			
				608 (265.24/7438)	윤규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127동 305호 (서현동, 한신아파트)			
				608 (265.24/7438)	윤홍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27, 606동 304호 (화정동, 은빛마을)			
				608 (265.24/7438)	윤우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38, 309동 403호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3단지아파트)			
				608 (64220/2417350)	백선욱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57, 132동 903호 (어은동, 한빛아파트)			
				608 (64220/2417350)	백인걸	서울시 송파구 잠실3동 갤러리아팰리스 A동 3401호			
				608 (64220/2417350)	백경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70, 109동 2702호 (반포동, 빈포자이)			
				608 (1284024/7350)	백상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A동 3401호 (잠실동, 갤러리아 팰리스)			
				608 (2/130)	이경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05-15, 109동 801호 (연남동, 하마마을동일하이빌1차아파트)			
				608 (9/130)	이상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05-15, 109동 602호 (연남동, 하마마을동일하이빌1차아파트)			
				608 (2/130)	이홍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10, 102동 1602호 (마북동, 교동마을 마북 이-편한세상)			
				608 (4/130)	이상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09, 3동 103호 (개포동, 현대아파트)			
				608 (5/130)	이상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로 86, 103동 1003호 (성북동, 성동마을웰지빌리지1차)			
				608 (4/130)	손재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령로 355, 101동 201호 (월계동, 우남아파트)			
				608 (661.6/7438)	김정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2동 2307호 (용산동5가, 파크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월계동 신41-8	임야	1,028	608 (413/3719)	이주형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55, 205동 1206호 (봉덕동, 2차대덕맨션)			
				608 (99/7438)	함양응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38-70			
				608 (496/7438)	변은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 531동 1901호 (화정동, 은빛마을아파트)			
				608 (243/7438)	심원홍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신행길 1, 108동 805호 (방배동, 우성아파트아파트)			
				608 (242/7438)	심원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5315동 1801호 (창곡동, 위례호반베르디움)			
				608 (242/7438)	심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길 12, 112동 804호 (문래동3가, 문래자이아파트)			
				608 (330/7438)	한세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80길, 43, 101호 (청담동, 동궁빌리지)			
				608 (100.6/7438)	원영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 5동 206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608 (550/37190)	이백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 27동 1502호 (잠실동, 우성아파트)			
				608 (550/37190)	이백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309-4(방화동)			
				608 (550/37190)	이백진지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 27동 1502호 (잠실동, 우성아파트)			
				1,028 (1020/88740)	남정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3(동소문동6가, 기업은행)			
				1,028 (2040/88740)	김광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33			
				1,028 (2040/88740)	김영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2동 186-317			
				1,028 (2040/88740)	김우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345			
				1,028 (2040/88740)	김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3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28 (2040/88740)	김호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33			
				1.028 (510/88740)	김연식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38(주안동)			
				1.028 (1020/3060)	강성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801-88, 6층 602호 (운수리, 수동시니어타운)			
				1.028 (530/3060)	김영화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03(상도1동)			
				1.028 (9180/133100)	조규진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38, 507호(삼전동)			
				1.028 (6120/133100)	김학수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53길 67-10(구의동)	주보광 해마리마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141-32	대위자
				1.028 (6120/133100)	김학주	서울시 송파구 백계고분로22길 39, 101동 203호 (삼전동, 현대아파트)	주보광 해마리마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141-32	대위자
				1.028 (6120/133100)	김학임	서울시 서초구 병설로 33, 105동 801호 (방배동, 삼환나파르빌)	주보광 해마리마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141-32	대위자
				1.028 (6120/133100)	김학준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38, 507호(삼전동)	주보광 해마리마트 (제)신용보 증재단 중앙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141-32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713, 14,15층(월평동, 나라키움 대전센터)	대위자 기업주
				1.028 (6120/133100)	전병향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03-18(송림리)			
				1.028 (6120/133100)	최신영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30, 1505동 302호 (월내동, 월내아이파크2차)			
				1.028 (1000/6120)	유수영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5길 21(상도동)			
				1.028 (500/6120)	신명수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104동 2002호 (반포동, 반포리제)			
				1.028 (500/6120)	송범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5, 301동 3102호 (정자동, 아이파크 분당)			
10	월계동 신41-9	임야	1,556	1,556 (1020/88740)	남정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3(동소문동6가, 기업은행)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의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56 (2040/88740)	김광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33			
				1.556 (2040/88740)	김영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33			
				1.556 (2040/88740)	김우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33			
				1.556 (2040/88740)	김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33			
				1.556 (2040/88740)	김호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33			
				1.556 (510/88740)	김연식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38(주안동)			
				1.556 (1020/3060)	강성춘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801-88, 6층 602호 (문수리, 수동시니어타운)			
				1.556 (530/3060)	김영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03(상도1동)			
				1.556 (9180/133100)	조규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전로 38, 507호(잠전동)	주보광 해마리마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2	대위자
				1.556 (6120/133100)	김학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3길, 67-10(구의동)	주보광 해마리마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2	대위자
				1.556 (6120/133100)	김학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재고분로22길 39, 101동 203호 (삼전동, 현대아파트)	주보광 해마리마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2	대위자
				1.556 (6120/133100)	김학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보로 33, 105동 801호 (명배동, 삼환나파르빌)	주보광 해마리마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2	대위자
				1.556 (6120/133100)	김학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전로 38, 507호(잠전동)	주보광 해마리마트 (재)신용보 증재단 중앙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2	대위자
				1.556 (6120/133100)	전병향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03-18(송림리)			
				1.556 (6120/133100)	최신영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30, 1505동 302호 (별내동, 별내아이파크2차)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56 (1000/6120)	유수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승배기로5길 21 (상도동)			
				1,556 (1000/6120)	신명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104동 2002호 (반포동, 반포리제)			
				1,556 (1000/6120)	송범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5, 301동 3102호 (정자동, 아이파크 분당)			

◆ 은평구고시 제2019-8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459호(1995.1.7.)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286호(1989.6.20.)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2018-2호(2018.1.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봉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봉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626호(2019.4.25.)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131-21 등 6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봉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토지보상 36,010㎡(구산동 산131-21 등 6필지)

라. 사업시행자

- 1) 성 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고시일로부터 ~ 2019.12.31.까지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봉산도시자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1	구산동	산131-21	임야	33	33	김진영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신아파트 111-1005				
2	구산동	산136-5	임야	28,059	28,059	한충국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				
						변수연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98				
						심형보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4				
						김정길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94				
						차봉천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5-12 유진연립 에이동 103호				
						박성숙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박석호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김영선	서울 은평구 통일로82나길9, 401호(불광동 우성빌라)				
						김정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27길 20-5(구산동)				
3	구산동	산138-2	임야	435	435	김형규	서울 은평구 구산동 355-98 동익파크아파트 2-801				
4	구산동	산139-1	임야	6,401	6,401	김학균	서울 은평구 구산동 355-98 동익파크아파트 2-801				
5	증산동	산18-2	임야	1,886	313	한양조씨가산공 파총회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9-4				
6	증산동	산24-15	임야	769	769	최용근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22				
						양정분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22				
						최숙진	서울 도봉구 공릉동 366-19				
						최왕진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22				
						최여진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22				
						최유진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22				
						최덕진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22				

◆ 동작구고시 제2019-5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6-241호(2016.8.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9-35호(2019.5.9)로 실시계획인가된 상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11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18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당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115 등 12필지
변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248 등 12필지
- 면 적 : 18,315㎡
- 내 용 : 토지보상 18,315㎡, 지장물 보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노량진로 74, ☎.820-11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당초	계		108,430	18,315							
변경	계		18,315	18,315							
1 (당초)	상도동 산65-115	임야	7,141	5,794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9-17	재단법인 지덕사	1/1				
1 (변경)	상도동 산65-248	임야	5,794	5,794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9-17	재단법인 지덕사	1/1				
2 (당초)	상도동 산65-159	임야	39,605	137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9-17	재단법인 지덕사	1/1				
2 (변경)	상도동 산65-249	임야	137	137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9-17	재단법인 지덕사	1/1				
3 (당초)	상도동 산65-227	임야	6,328	2,304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0-99	재단법인 지덕사	1/1				
3 (변경)	상도동 산65-247	임야	2,304	2,304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0-99	재단법인 지덕사	1/1				
4 (당초)	상도동 산67-13	임야	6,175	1,416	경기도 송탄시 신장동 227-11	이대하	4958.7/10672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530 탑마 을 진덕아파트 508동 402호	김경식	2975.22/320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60-4 반포미 도아파트 301동 702호	이귀배	2975.22/32016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30 성원아 파트 115동 1803호	박남주	2975.22/32016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4-1 장기 파랑새마을 201-1307	배경숙	2738.08/10672				
4 (변경)	상도동 산67-121	임야	1,416	1,416	경기도 송탄시 신장동 227-11	이대하	4958.7/10672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530 탑마 을 진덕아파트 508동 402호	김경식	2975.22/320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60-4 반포미 도아파트 301동 702호	이귀배	2975.22/32016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30 성원아 파트 115동 1803호	박남주	2975.22/32016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4-1 장기 파랑새마을 201-1307	배경숙	2738.08/10672				
5 (당초)	상도동 산67-118	임야	2,927	971	경기도 송탄시 신장동 227-11	이대하	4958.7/10672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530 탑마 을 진덕아파트 508동 402호	김경식	2975.22/3201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1동 702호(반포동, 반포미도아 파트)	이귀배	2975.22/32016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30 성원아 파트 115동 1803호	박남주	2975.22/32016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4-1 장기 파랑새마을 201-1307	배경숙	2738.08/10672				
5 (변경)	상도동 산67-122	임야	971	971	경기도 송탄시 신장동 227-11	이대하	4958.7/10672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530 탑마 을 진덕아파트 508동 402호	김경식	2975.22/3201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1동 702호(반포동, 반포미도아 파트)	이귀배	2975.22/32016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30 성원아 파트 115동 1803호	박남주	2975.22/32016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4-1 장기 파랑새마을 201-1307	배경숙	2738.08/10672				
6	상도동 산65-228	임야	133	133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0-99	재단법인 지덕사	1/1				
7 (당초)	상도동 산65-41	임야	30,402	3,151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0-99	재단법인 지덕사	1/1				
7 (변경)	상도동 산65-246	임야	3,151	3,151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0-99	재단법인 지덕사	1/1				
8 (당초)	상도동 산57-44	임야	9,870	2,167	서울 용산구 원효로66, 이동 1208호(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허충경	1/1				
8 (변경)	상도동 산57-113	임야	2,167	2,167	서울 용산구 원효로66, 이동 1208호(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허충경	1/1				
9	상도동 산57-104	임야	620	620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0-60	한면수	1/1				
10 (당초)	상도동 산57-77	임야	2,017	497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7 양지마 을 301동 1804호	유형석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0 (변경)	상도동 산57-114	임야	497	497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7 양지마 을 301동 1804호	유형석	1/1				
11 (당초)	상도동 산57-98	임야	903	40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703호 (토당동, 한라비발 디리버아파트)	최학수	1/5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2길 25, 112동 919호 (신길동, 삼성아파트)	최진수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703호 (토당동, 한라비발 디리버아파트)	최영수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 을로 100, 303동 1001호 (식사동, 은행마을)	최혜수	1/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611-7, 103동 909호 (심미아파트)	최경수	1/5				
11 (변경)	상도동 산57-115	임야	407	40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703호 (토당동, 한라비발 디리버아파트)	최학수	1/5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2길 25, 112동 919호 (신길동, 삼성아파트)	최진수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703호 (토당동, 한라비발 디리버아파트)	최영수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 을로 100, 303동 1001호 (식사동, 은행마을)	최혜수	1/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611-7, 103동 909호 (심미아파트)	최경수	1/5				
12 (당초)	상도동 산57-15	임야	2,309	7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703호 (토당동, 한라비발 디리버아파트)	최학수	1/5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2길 25, 112동 919호 (신길동, 삼성아파트)	최진수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703호 (토당동, 한라비발 디리버아파트)	최영수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 을로 100, 303동 1001호 (식사동, 은행마을)	최혜수	1/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611-7, 103동 909호 (심미아파트)	최경수	1/5				
12 (변경)	상도동 산57-112	임야	718	7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703호 (토당동, 한라비발 디리버아파트)	최학수	1/5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2길 25, 112동 919호 (신길동, 삼성아파트)	최진수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703호 (토당동, 한라비발 디리버아파트)	최영수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 을로 100, 303동 1001호 (식사동, 은행 마을)	최혜수	1/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611-7, 103동 909호 (심미아파트)	최경수	1/5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 용			
1 (당초)	상도동 산65-115 (양녕로 22바길 96)	건물	9㎡	1		동작구 상도2동 산65	주명갑	동작구 양녕로 22바길 96	정상균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102㎡	1									
		창고	4㎡	1									
		창고	2㎡	1									
		건물	48㎡	1									
		감나무	B18	1									
		포도나무	B11	1									
		목란	H1.0	1									
		사철나무	H1.0~1.5	105									
		탱자나무	R9	1									
		은행나무	R11~14	3									
		산사나무	H2.0	1									
		사철나무	R27	1									
		두충나무	B26	1									
석등	H1.0	1											
1 (변경)	상도동 산65-248 (양녕로 22바길 96)	건물	9㎡	1		동작구 상도2동 산65	주명갑	동작구 양녕로 22바길 96	정상균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102㎡	1									
		창고	4㎡	1									
		창고	2㎡	1									
		건물	48㎡	1									
		감나무	B18	1									
		포도나무	B11	1					장영선				
		목란	H1.0	1									
		사철나무	H1.0~1.5	105									
		탱자나무	R9	1									
		은행나무	R11~14	3									
		산사나무	H2.0	1									
		사철나무	R27	1									
		두충나무	B26	1									
석등	H1.0	1											
2 (당초)	상도동 산65-115 (양녕로32 길54)	건물	59㎡	1	공가	관악구 봉천동 956-4, 1층 03호	장문희				기존 무허가		
		창고	4㎡	1									
2 (변경)	상도동 산65-248 (양녕로32 길54)	건물	59㎡	1	공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7, 10층(여의도동, 한주빌딩)	태려건설 산업				기존 무허가		
		창고	4㎡	1									
3 (당초)	상도동 산65-115 (양녕로32 길56)	건물	44㎡	1	공가		미상				무허가		
3 (변경)	상도동 산65-248 (양녕로32 길56)	건물	44㎡	1	공가		미상				무허가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 용	
4 (당초)	상도동 산65-115 (양녕로32 길58-8)	출입구 기둥	50*50*110	1		동작구 양녕로32길58-8	김미숙				기존 무허가 건물 부지
		담벽	80*19*120	1							
		주목	H1.0~1.2	2							
		감나무	R3~5	4							
		회양목	H0.5	1							
		자두나무	R7~12	2							
		팽나무	R10	1							
		불두화	W2.0	1							
		무궁화	H2.5	2							
		단풍나무	R8~12	5							
		벚나무	R9~18	4							
		컨테이너	5*2*3m	1							
		영산홍	H0.5	20							
		불상	H2.0	1							
		배롱나무	R5~6	2							
		벚나무	R11	1							
4 (변경)	상도동 산65-248 (양녕로32 길58-8)	출입구 기둥	50*50*110	1		동작구 양녕로32길58-8	김미숙				기존 무허가 건물 부지
		담벽	80*19*120	1							
		주목	H1.0~1.2	2							
		감나무	R3~5	4							
		회양목	H0.5	1							
		자두나무	R7~12	2							
		팽나무	R10	1							
		불두화	W2.0	1							
		무궁화	H2.5	2							
		단풍나무	R8~12	5							
		벚나무	R9~18	4							
		컨테이너	5*2*3m	1							
		영산홍	H0.5	20							
		불상	H2.0	1							
		배롱나무	R5~6	2							
		벚나무	R11	1							

◆ 동작구고시 제2019-6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1-66호(2011.3.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사항을 아래와 같이 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18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현충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산88-68 등 16필지
- 면 적 : 93,233㎡
- 내 용 : 토지보상 93,233㎡, 지장물 보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192,932	93,233							
1	흑석동 산88-68	임야	13,212	4,717	서울 동작구 흑석동 34-35	박완용	561 /124508	흑석2동 새마을금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50-2	근저당권 분할로 인하여 등기 종소 산88-14에서 전사 공동담보 : 분할후의 토지 등기 종소 산88-14, 산88-67, -69, -7 0, -71	
2	흑석동 산79-2	임야	5,779	5,779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길 5, 205호	김영민	165.3 /4812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6, 109동 104호	김영채	165.3 /48123				
					서울 동작구 흑석동 269-3	흑석제4구 역주택재개 발정비사업 조합	57.5 /5029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스트리트910 그라마시피엘 202지구 90019	김인수	165.3 /481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압류 압류	
3	사당동 산31-1	임야	73,481	18,89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6, 101동 2401호 (한강로3가, 한강대우트림프월드3차)	한자영	1/1				
4	사당동 산22-1	임야	5,957	5,957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8길 49	이태구	1/2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8길 49 (서초동)	이동준	1/2				
5	사당동 산21-1	임야	34,720	13,178	서울 관악구 사당동 57-7	김상길	1/4				
					서울 구로구 시흥동 868-34	이만숙	1/104				
					서울 구로구 시흥동 868-34	김유자	2/104				
					서울 구로구 시흥동 868-34	이우창	2/10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2-4 롯데빌리지 다-102	설준희	1/16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26길 19-5 (노량진동)	이덕상	10/104				
					서울 양천구 목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27-305	김수자	1/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827 반포아파트 78-103	김숙자	1/40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23길 14 (휘경동)	이옥상	10/104				
					서울 동작구 흑석3동 59-10	김미경	1/8				
					서울 강남구 선릉로190길 64, 401호 (청담동, 연세리버테라스)	설상희	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 화성시 송산동 97-15 화산주택 사-101	최상근	3/520				
					경기 화성시 송산동 97-15 화산주택 사-101	최서연	2/520				
					인천 남구 미추로35번길 14 (송의동)	성계제	1/4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64번길 7, 117동 2101호	조영실	2/40	국	처분청:서인천세무서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311 (염리동168-9) (인천서부지사)	압류	
								동해시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압류	
								인천광역시		압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압류	
					서울 동작구 상도로53길 8, 301동603호 (상도동,래미안상도3차아파트)	김주희	5/16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131, 6동306호 (성포동,선경아파트)	김승주	5/160				
					서울 서초구 효령로36길 36, 202호 (방배동,해피빌)	김현주	5/160				
					서울 영등포구 63로7, 에이동206호 (여의도동,은하아파트)	성정은	3/160				
					서울 영등포구 63로7, 에이동206호 (여의도동,은하아파트)	김민성	2/160				
6	사당동 175-49	도로	2,202	27	서울 동작구 사당로2차길 15-11 (사당동)	박병일	1/1	양천구		압류	
								운영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37, 209동 1202호 (명촌동, 초원아파트)	근저당권	
								주식회사 두나개발	경기 김포시 봉화로 44, 도화길 28, 113동 302호 (도화동,마포삼성아파트)	근저당권	
7	사당동 산22-21	임야	16,500	16,012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8길 49	이태구	6500/16500				
					서울서초구사임당로18길49(서초동)	이동준	10000/16500				
8	사당동 산31-2	임야	3,273	3,273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8 대림아파트 7-1003	정준식	945.014 /3273				
					경기 의왕시 삼동 178 우성아파트 2-423	이진일	165 /3273				
					경기 의왕시 삼동 146 우성아파트 4-313	김주선	231 /3273				
					경기 의왕시 삼동 176-5 효성빌라 2-301	민정혜	165 /3273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4-1 지층	권현경	198 /3273				
					서울 구로구 개봉로11길 10-38, 나동402호 (개봉동,영진빌라)	김연주	99 /3273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11-35	강귀분	132 /3273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67 신도림대영타운 107-804	이중현	149 /3273				
					울산 동구 방어동 1134-9 청운스카이빌 에이동201호	윤수정	99 /3273				
					서울 동작구 상도동 431 래미안상도3차아파트 318-701	김주희	165 /3273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3 벽산아파트 520-1201	유종우	99 /327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18 보라매갑을아파트 101-608	배경	99 /3273				
					서울 동작구 흑석동 50-68	김선자	165 /327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5-1 현대에코르아파트 107동1001호	박효경	231.406 /3273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390, 114동2104호 (평촌동,인덕원대우아파트)	김금일	330.58 /3273				
9	동작동 산12	임야	2,628	56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57-7	강연식	38/88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7 은하마을 502-501	강근임	10/88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법박동 153-2 현대홈타운2단지 202-2502	강연순	10/88				
					경기 의왕시 내손로70-14, 1501동2001호 (내손동,의왕내손이편한세상아파트)	강승철	15/88				
					경기 의왕시 포도원로46, 205동702호 (오전동,대명구름채아파트)	강승혜	15/88				
10	동작동 산14	임야	1,944	233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63길 23 (사당동)	박수웅	1/3				
					서울 동작구 동작동 102-44 조양맨션-301	박정숙	1/3				
					서울 동작구 현충로14가길 14-1	박승구	1/3				
11	동작동 산20	임야	4,051	128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47, 22동303호 (압구정동,한양아파트)	최계향	1/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28 한양아파트 72동309호	김성두	1/5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아파트 102동1002호	김경두	1/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3 한양아파트 22동303호	김형두	1/5				
					대전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132동106호	김미혜	1/5				
12	동작동 산13-1	임야	4,496	785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6-36	강형수	224 /145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동작구 사당동 44-60	강병수	224 /1456				
					서울 동작구 본동 234	강현식	84 /1456				
					서울 동작구 본동 234	김정애	28 /1456				
					서울 동작구 본동 234	강옥희	28 /1456				
					서울 동작구 본동 234	강신호	56 /1456				
					서울동작구흑석동238-1	강옥식	14/1456				
					서울 강남구 방배동 954-15	강옥분	14 /1456				
					서울 동작구 사당동 91-99	강철식	96 /1456				
					서울 동작구 사당동 91-99	김유선	32 /1456				
					서울 구로구 개봉동 147-21	강신애	32 /145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27-1	강택준	64 /1456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1-17	강신용	168 /1456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7길 5 (사당동)	강태원	56 /1456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 호계이-편한세상아파트 116-703	김용예	264 /27456				
					서울 구로구 개봉동 354-15	김희경	11 /27456				
					서울 구로구 고척동 52-332 한효아파트 1-801	김상현	11 /27456				
					서울 강서구 화곡동 967-6	김희숙	11 /27456				
					서울 강서구 화곡동 967-6	김희정	11 /27456				
					경기 화성시 안녕동 210 남산마을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4-1006	김동현	11 /2745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34-1 삼성래미안아파트 108-303	최관용	33 /27456				
					인천 연수구 옥련동 641-1 태평아파트1 01-2203	최은미	33 /27456				
					과테말라국 콜마르시칼조나11 24 갈레 8-80	김용옥	66 /27456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5-1 상아하이츠빌라 비02	김용희	66 /2745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노스리지시 대본서스트리트 18013 143호	김영옥	66 /2745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노스리지시 윈들리메비뉴 10535 33호	김영자	66 /27456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9-37	김미라	528 /2745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03-4 1층	신금여	72 /2745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웨스트아담스 블러바드 3300 307비호	박해성	48 /27456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167-20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106-1003	박상태	48 /27456				
					경기 용인시 기흥구 통백동 689 동원마을동원로알듀크아파트 107-802	박상용	48 /27456				
					경기 김포시 사우동 857 풍년마을 116-802	박상일	48 /2745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헛스위스 대본셔스트리트 20718-에이	박미자	264 /27456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22길 27-5, 1층동 102동 (방학동)	김수연	66 /27456				
					인천 계양구 양지말3길 3, 401호 (동양동,그린파크빌)	연옥희	11 /27456				
					경기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269-19	강신영	224 /1456				
					인천 부평구 마정로220번길 13, 101동2103호 (산곡동,한신휴아파트)	김옥선	132 /27456				
					인천 부평구 부흥로123번길 36, 202동1315호 (산곡동,뉴서울아파트)	김옥길	132 /27456				
					서울 강서구 양천로3길 17, 104동202호 (방화동,개화산동부센트레빌)	김성현	33 /27456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8길 37 (목동)	김태현	33 /27456				
13	동작동 102-73	임야	397	147	경기 성남시 성남동 915	김애자	1/3				
					서울 강남구 삼성로212, 31동910호 (대치동,은마아파트)	강진명	6/15				
					서울 강남구 삼성로212, 31동910호 (대치동,은마아파트)	안동건	4/15				
14	동작동 102-14	임야	2,175	1,459	경기 성남시 성남동 915	김애자	262 /2175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0 대림아파트 5-504	정희권	331 /217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79-6	정성욱	331 /2175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9-31	김예준	234 /2175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6-8 주공삼산타운아파트 406-502	조명식	154 /6525				
					서울 송파구 문정동 118-6 1층	조혜선	22 /6525				
					영국 캠브리지 체리헌튼 티셀웨이 19번지	조형무	22 /6525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5 극동아파트 109-506	이은선	192 /2175				
					서울 강남구 삼성로212, 31동910호 (대치동,은마아파트)	강진명	315 /2175				
					서울 강남구 삼성로212,31동910호 (대치동,은마아파트)	안동건	210 /217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관악구 봉천로377, 3층(봉천동)	박경애	234 /2175				
15	동작동 산18-1	임야	13,839	13,839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12, 비동3604호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민정자	38470.72 /244552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1-16 약수맨션 씨동604호	민승구	14000 /244552				
					3670 이스트이저트인 라스베가스 네바다 89121	민희숙	2000 /244552				
					3670 이스트이저트인 라스베가스 네바다 89121	민명숙	2000 /244552				
					1744 이스트4가비 온타리오 캘리포니아 91764	민승준	8000 /244552				
					541 웨스트로쿠스트리트 온타리오 캘리포니아 91761	민승만	8000 /244552				
					서울 도봉구 수유동 519-21	강호선	24000 /1956416				
					서울 도봉구 수유동 519-21	민요한	24000 /1956416				
					서울 도봉구 수유동 519-21	민미숙	16000 /1956416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43, 347동 303호	황승현	15.731 /11116				
					서울 도봉구 창동 341 동진빌리지 102-301	홍종수	4.767 /11116				
					경기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아파트 114-104	홍성모	19.545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4 은하수아파트 105-1401	허의도	14.778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4 은하수아파트 105-1401	허남근	16.684 /11116				
					경기 안산시 월피동 447 한양아파트 10-1210	허정	14.301 /11116				
					서울 도봉구 수유동 205 수유백산아파트 10-1406	한상봉	16.684 /1111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이매촌 1007-1502	한기수	19.545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1 우성아파트 105-1108	한규언	19.545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376-10	최춘호	15.731 /11116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90-4.5 골드-401	최영추	14.301 /11116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인화안길 15	최관호	14.301 /1111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3길 9, 나동 202호	진성원	14.301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799 반포아파트 68-202	조화영	14.301 /111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39, 101동 1701호	조문연	14.778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광주 광산구 월곡동 614-2 한성아파트 205-1501	조규봉	19.545 /1111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12-206	조권상	15.254 /11116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17-105	정형재	19.545 /111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55, 102동 901호	정태홍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택지개발지구 15블럭 한솔마을아파트 307-207	정일웅	19.545 /11116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1109동 2504호	정철	15.254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4 삼익아파트 3-810	전철원	14.301 /11116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8-6	임호환	14.301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441-149	임재식	14.301 /11116				
					대구 달서구 월성동 84 주공아파트 102동209호	이한방	9.534 /11116				
					서울 구로구 독산동 161-25	이청규	14.301 /11116				
					서울 송파구 오금로32길 10, 3동 603호	이정태	14.301 /11116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9-7	이재석	14.301 /11116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11-1003	이율범	19.545 /11116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111-302	이은석	14.301 /11116				
					경기 안양시 호계동 1055 무궁화아파트 109-1705	이용재	14.301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5-59	이선희	14.301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1동 3704호	이상용	17.161 /11116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60-1	이상섭	19.545 /11116				
					경기 과천시 별양동 7 주공아파트 410-804	이상선	11.917 /11116				
					서울 구로구 독산동 1061-13	이덕호	14.301 /11116				
					서울 강동구 길동 152-7	이기남	19.545 /11116				
					춘천시 후평동 481 주공아파트 507-209	이광우	14.301 /11116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8, 117동 403호	윤태종	16.684 /11116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 동남아파트 4-414	윤병연	13.109 /1111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45-19 은성빌라 나-202	유재화	14.301 /11116	국	처분청:동안양사무서	압류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강릉시 저동 246-1	유재원	7.1505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 도시개발아파트 305-402	유강근	16.684 /11116				
					서울 광진구 독성로56가길 10, 301동 902호	안재규	14.301 /11116				
					서울 강동구 둔촌동 30-4 현대아파트 14동1310	심재순	14.301 /11116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 주공아파트 103-302	신대호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701-605	송철재	13.109 /111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8번길 8, 101동 308호	손경종	16.684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0-18	손백	14.301 /1111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34-23 영광빌라 나-102	변종억	16.684 /11116				
					안산시 성포동 584 주공아파트 1003-1201	배운태	14.301 /1111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18번길 29	방동한	10.011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택지개발지구 15블럭 한솔마을아파트 303-501	박해성	14.301 /11116				
					안산시 월피동 448 현대아파트 203-1003	박종훈	19.545 /11116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2가 8-7	박일수	19.545 /11116				
					안산시 본오동 872-20 우성아파트 2-109	박영목	16.684 /11116				
					원주시 단계동 793 단계아파트 11-501	박승균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601-601	박세훈	19.545 /11116				
					광주 서구 화정동 740-6 현대아파트 101-1203	민윤식	14.301 /11116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5 초원아파트 609-1002	문영목	7.627 /1111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4 백운아파트 505	나상열	14.301 /1111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아파트 201-803	노화래	15.254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7-27, 105동 701호	노석환	14.301 /11116				
					서울 강서구 가양동 지개발지구 6블럭 도시개발아파트 606-505	김효철	14.301 /1111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79-6 101호	김효분	15.969 /1111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9안길 21, 401호	김형수	19.545 /11116				
					의왕시 내손동 691-19 효성빌라 나동202호	김현태	14.301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광주 광산구 월곡동 538-1 일신아파트 105-808	김하경	14.301 /11116				
					광주 북구 운암동 363 삼호아파트 1-603	김판중	14.301 /11116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501동 1206호	김태선	19.545 /11116				
					과천시 별양동 24-6	김진혁	15.254 /11116				
					안산시 고잔동 672 주공아파트 910-503	김진식	14.301 /111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390, 103동 1304호	김주인	14.301 /11116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1-442	김주원	14.301 /11116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5-22	김종만	15.731 /11116				
					전북 이리시 동산동 158-15 삼호아파트 3-1105	김정수	14.301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2-309	김인홍	19.545 /11116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5-1	김원식	17.62807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284-51	김영철	19.545 /11116				
					광주 서구 화정동 859-1 현대아파트 101-807	김영선	14.301 /11116				
					서울 노원구 중계동 3블럭 주공아파트 515-707	김수웅	19.545 /11116				
					광주 서구 진월동 344 협진해밀리 101-1304	김성열	19.545 /11116				
					안산시 성포동 585-4 신우연립 8-106	김상필	14.301 /11116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0 주공아파트 604-1301	김상택	19.545 /1111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3-3 목련아파트 903동1203호	김봉석	14.301 /11116				
					대전 동구 용전동 1 신동아파트 12동202호	김병희	16.684 /11116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149 해성아파트 나-508	김광식	14.301 /111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4번길 6, 106동 302호	권훈일	16.684 /11116				
					청주시 가경동 847	권영덕	16.684 /1111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6 제일아파트 1-106	구익서	14.301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64-33	곽창호	14.301 /11116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96, 502동 1102호	고용규	14.301 /11116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45, 103동 105호	고선봉	14.301 /11116	중부지방고 용노동청안 양지청		압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4-14 원형빌라 101호	강환실	14.301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460-30	이공진	12.793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09 반포아파트 6동503호	이영완	15.209 /111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95, 119동 104호	문정일	12.935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북 안동시 태화동 666-27	김창수	12.793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숭실마을1로 87, 508동 1604호	문정수	15.636 /11116				
					서울 은평구 불광동 382-15	이형주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24동47호	조남욱	15.209 /11116	파산자주식 회사해당신 용금고의파 산관재인예 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33	가압류	
								서울보증보 험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연지동 136-74(강남보상서비 스지원단)	가압류	
					서울 은평구 불광동 312-122	성수현	16.7761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0-78	윤공보	17.484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529동506호	정인심	13.077 /1111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7-1 신동아아파트 3동102호	남현숙	12.793 /11116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66-17	최영호	12.793 /11116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463 강남아파트 2동1108호	이상갑	12.793 /1111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58, 102동 1601호	정기화	12.793 /11116				
					서울 은평구 응암동 365-46	박송문	12.793 /11116				
					서울 동작구 상도동 331-27	오세경	12.793 /11116				
					경기 고양시 마두동 739 백마마을 205동1204호	박상용	12.793 /11116				
					대구 남구 대명동 1253-12	정효련	12.793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751-4 성보연립 예이동201호	이종선	12.793/11116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21 문래현대아파트 102동201호	이대권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0-7 우성아파트 403동1407호	박인규	14.214 /11116				
					서울 양천구 신목로6길 6	박병선	17.484 /11116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2, 102동 2203호	최은	15.209 /11116	주식회사 플러스상호 저축은행	부산 중구 대창동1가 43-1	가압류	
								기술신용 보증기금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1 (서울지점)	가압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류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신용지원부)	가압류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2 현대도곡아파트 2동1505호	양윤식	15.209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중랑구 면목동 52-28 현대파크 지층2호	김순기	15.636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8-1 개포6차우성아파트 3동503호	이춘재	15.209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아파트 1동107호	이경희	15.209 /11116				
					서울 관악구 봉천동 300-8	장비심	13.077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587-24	이홍순	13.077 /11116	국민건강보 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파주지사)	압류	
					서울 마포구 도화동83 도화3지구우성아파트 6동1103호	김선옥	16.062 /111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변영로 2774-29	신지호	15.636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아파트 115동303호	김종명	17.484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19, 102동 703호	이종숙	15.636 /1111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34, 206 2001호	최규섭	15.209 /1111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4-18 한양연립 가동103호	홍종선	7.6045 /1111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205 (31) 우림뷰전빌아파트 102동 906호	홍수경	16.204 /11116				
					서울 서초구 명달로6길 24, 101동 901호	홍성주	15.494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7동402호	허성용	15.209 /11116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15-4	유상복	15.209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5-189 현대아파트 103동107호	최병찬	14.499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28 목동건영아파트 101동407호	전진국	15.636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8 한강아파트 5동1003호	신현길	15.209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63-34 잠원한신로아파트 1동112호	이정규	13.077 /11116				
					서울 강동구 천호동 144-12	전병모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9-2 현대아파트 23동205호	이원표	15.209 /11116	권용희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155 삼성아파트 101-405	가압류	
								서울보증보 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민천지점)	가압류	
					인천 북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08동1201호	김광수	17.484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1동 3704호	이강주	16.489 /11116	주식회사국 민은행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0번길 23, (여신관리센터)	가압류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16-1블록 사랑마을 1611동201호	윤공섭	12.793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양천구 목동 9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21동902호	유찬욱	15.636 /111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3-8	안성우	13.077 /11116				
					서울 강서구 화곡동 56-70 안곡빌라 202호	박석규	15.209 /11116				
					서울 중로구 필운동 176-2	박정욱	15.209 /11116				
					서울 구로구 오류동 97-4 서울가든빌라 3동206호	박용하	15.636 /11116				
					서울 강서구 강서로36길 13	이현경	15.209 /11116				
					서울 도봉구 쌍문동 158 한양아파트 701동106호	김주문	15.636 /11116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10동401호	김용달	15.636 /11116				
					서울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지구1-1블럭 동신아파트 101동506호	신석균	12.793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405 목동대림아파트 1011동1207호	김시연	13.362 /11116				
					서울 구로구 구로1동 642-33 현대의보아파트 804호	김성환	15.636 /11116				
					서울 송파구 잠실5동 27 주공아파트 509동1402호	유병일	15.209 /11116				
					서울 노원구 월계동 447-2 한전빌라 에이동202호	김명욱	17.484 /11116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712 청구강변아파트 101동1706호	김동우	14.214 /11116				
					서울양천구목동928목동건영아파트104동50 4호	권신	17.484 /11116				
					경기 고양시 주엽동 12 문촌마을 1708동601호	강현구	13.362 /11116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103동 4003호	안병춘	17.484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1 우성아파트 105동803호	임일호	15.209 /11116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8-49	차명석	12.793 /11116	서울특별시 등작구 희망모아유 동화전문유 한회사	세무1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압류 가압류	
					서울 서초구 효령로53길 18, 311호	박재길	12.793 /11116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신용지원1부)	가압류	
								주식회사솔 로몬상호저 축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6-9	가압류	
								국민건강보 험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8-9(서초남부지사)	압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무2과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서초남부지사)	압류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아파트 12동906호	윤석원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 방배삼호아파트 가동409호	이철재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7-76	나상엽	15.920 /11116				
					충남 천안시 업성동 465-4	장국현	7.96 /11116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1211-3	김선익	15.920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6동1407호	김창준	15.920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지구 11블럭 목련타운아파트 109동1208호	정대봉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 8, 102동 701호	안광진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14 302호	정경영	15.920 /11116	국	이천세무서 재산세과	압류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7동1304호	김홍기	14.783 /11116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0-13	김철영	15.920 /11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무2과	압류	
								조영숙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7 삼익아파트7동303호	가압류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41-13	장광술	18.194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7동1506호	백광재	18.194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아파트 9동610호	유재현	16.062 /11116				
					충북 청주시 사창동357-54	이문상	12.793 /11116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20-135 금화시민아파트 15동지층1호	손미화	17.747830 /111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1과	압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9-14	강경선	9.097 /11116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420-5 강북화성파크드림 102-1306	구소원	12.793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902 목동신시가자아파트 230동302호	김상정	12.793 /11116	국	양천세무서 징세과	압류	
								국	안양세무서	압류	
								과천시	세무과	압류	
								국	역삼세무서	압류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5가길 21	곽창순	12.793 /111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길198, 204-608 (창신동,쌍용아파트)	김하영	18.194 /11116	국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압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2과	압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무1과세외	압류	
								신용보증 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 (동대문지점)	근저당권	
					서울 동작구 대방동 416-2	심기백	15.920 /11116				
					경기 광명시 광명동 중앙하이츠아파트 104동1306호	김금라	15.920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3동1506호	엄용수	14.356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4 개포4차원대아파트 1310호	김태환	18.194 /11116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62	이계군	16.346 /11116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3-8 촌원빌라 2층203호	김한준	14.356 /11116				
					경기 안산시 본오동 1126-5	윤하병	17.199 /11116	주식회사 동인 엔지니어링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22-1	근저당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 우성아파트 230동702호	송호범	17.199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4동1403호	조희선	18.194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1동102호	원용운	12.793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2동1305호	박종운	16.630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108동1302호	조영대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0-7 우성아파트 405동1002호	한석희	16.204 /11116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5동803호	김영희	16.346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7 꿈마을아파트 307동1502호	정해인	18.194 /11116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 극동아파트 7동602호	이성우	13.645 /11116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5 현대아파트 111동703호	양재섭	15.920 /11116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12동1303호	한옥동	18.194 /11116				
					경기 의왕시 내손동 700-1	신대식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7-6	신정구	17.199 /11116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11, 5동 203호	이오주	15.920 /11116				
					서울 송파구 석촌동 7-4	박의언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59 삼성아파트 1동113호	권식	18.194 /11116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47	이효찬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83 남서울아파트 2동108호	김진홍	12.793 /11116	근로복지 공단 의정부지사		압류	
								국민연금 관리공단 고양지사		압류	
								한미금융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서울 노원구 중계동 6-1블럭 신안아파트 102동304호	이미향	18.194 /11116				
					인천 북구 십정동 302-36	전찬석	15.920 /11116				
					서울 은평구 증산동 188-5	서주열	15.493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6-42	조국형	12.793 /11116	신용보증 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강남지점	가압류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양천구 목동9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31동602호	이우진	18.194 /11116				
					서울 구로구 고척동 76-55 우성아파트 102동507호	홍성용	18.194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93-12	서공열	15.493 /11116				
					서울 종로구 창신동 703 쌍용아파트 204동508호	최성우	13.930 /1111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73-48	김철민	16.346 /1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무1과	압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16동1302호	정희옥	16.062 /11116				
					서울 송파구 오금동 35-2 현대맨션빌리지 305	이수환	19.545 /11116				
					서울 구로구 오류동 31-100	유해무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5-14	유옥분	14.356 /1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4 (본동)	이용수	5870.697 /100044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10 신반포16차아파트 120동614호	송재빈	12.793 /11116	국	강남세무서	압류	
								국	삼성세무서 재산세2과	압류	
					서울 마포구 성산동 81-123 성원그린빌라 비동302호	문남주	15.920 /1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무1과	압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672 공굴주택 예이동101호	박봉규	12.793/11116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명수대현대아파트 106동1202호	박윤석	12.793 /11116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7 사랑마을 1621-701호	김인숙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5-25	유철호	15.209 /1111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43 안성공도우림루미아트 104-403	김보섭	18.194 /11116	민병학	평택시 동석동 650 평택이안아파트 103-204	근저당권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아파트 301-404	최필자	12.793 /11116				
					서울 송파구 오금동 164 가락우창아파트 3-701	최재형	12.793 /11116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1-3 극동아파트 3-802	이미자	14.301 /11116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후리 239-3	안신호	12.793 /11116				
					서울 구로구 구로동 252-13 현대빌라 202호	김정현	15.920 /11116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익맨션 203-706	송선희	15.920 /11116				
					서울 도봉구 쌍문동 158-1 한양아파트 703-302	형진철	12.793 /11116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0-21	이의용	14.301 /11116	국	처분청: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압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15-601	백종훈	12.793 /11116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명수대현대아파트 106-1202	박선홍	95.3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1-10 방배동광빌라트 102호	강태환	12.793 /11116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5-14 을지아파트 625-1601	민원	12.793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46-1 삼풍아파트 501	심혜옥	17.199 /11116				
					경남 창원시 반림동3-1 현대아파트 102-1005	박송희	16.062 /11116	기술신용 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강남지점내강남지역관 리센터)	가처분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9-1 주공아파트 509-101	이호	14.301 /11116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065-2	최원식	15.731 /111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목화아파트 1-912	이태옥	15.920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14 삼성산주공아파트 307-1707	이혜선	14.301 /11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55, 906동 603호	안혜영	10.011 /1111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6 동부해오름아파트 101-503	김진영	12.793 /11116				
					대전 서구 둔산동 1203 은하수아파트 101-1202	김준희	7.8462 /11116				
					대전 서구 둔산동 1203 은하수아파트 101-1202	노희선	5.2308 /11116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77, 1207동 202호	조용석	1544.438 /66696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28 타워아파트 601호	배용옥	1467.68 /6669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15-28	이진아	13.109 /111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4 파크타운 125-1603	윤길례	14.301 /1111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880 디자인시티블루밍 105-801	박경자	18.194 /1111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9-4 대청아파트-505	이종섭	14.301 /1111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40, 405-1804 (신갈동, 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	박은주	16.346 /111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93-1 비02	전상훈	12.793 /11116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46, 104동201호 (신음동,현대아파트)	김정희	15.209 /11116				
					캐나다국 밴쿠버 주썬리시 15657-108에비뉴	최봉현	7.96 /1111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76, 906동606호 (풍덕천동,용인수지신명마을9단지)	김나영	18.194 /1111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월로180번길 11 (북대동)	조경배	14.301 /11116				
					강원도 춘천시 새롬공원길4번길 35 (석사동)	홍성호	7.1505 /111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7길 105, 402호(반포동)	강은향	7.6045 /111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65, 401호 (홍은동,서강주상복합아파트)	정한결	15.209 /11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7, 21동1102호 (오금동,현대아파트)	송연수	318.08 /11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7, 21동1102호 (오금동,현대아파트)	박윤수	212.06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자평대로66, 207동401호 (동빙고동,용산푸르지오파크타운)	이은미	5755.56 /100044				
					미합중국 96822 하와이주 호놀룰루 마키키스트리트 1517번지401호	이은경	5755.56 /100044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11번길 11, 205동801호 (토평동,한일아파트)	김용화	19.545 /1111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2-2, 510동1902호 (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리지5차아파트)	백용옥	785.47 /33348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37, 2동1209호 (반포동,경남아파트)	김현미	18.336 /111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15길 24, 605동1404호 (봉천동,봉천역산블루밍3차아파트)	김두수	16.684 /11116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693번길 32	이건상	13.077 /1111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347, 102동1302호 (화곡동,그랜드아이파크)	백종현	19.545 /1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 305동210호 (사당동,사당우성아파트)	홍정우	16.630 /111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3길 64 (신림동)	신백련	17.199 /1111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 2동1308호 (신당동,남산타운아파트)	최용석	6.8225 /1111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 5동1502호 (신당동,남산타운아파트)	최단비	6.8225 /11116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72, 205동204호 (호원동,호원가든2차아파트)	유승희	14.301 /111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9길 8, 105동801호 (신림동,신림현대아파트)	황규찬	19.545 /111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라길 48, 401호 (정릉동)	강원철	12.793 /111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63, 107동502호 (성수동1가,쌍용아파트)	남윤경	15.209 /111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18길 36-8 (구로동)	조하연	12.935 /11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116길 21,401호 (논현동,성지하우스)	송주호	14.925 /11116				
16	동작동 산18-5	임야	8,278	8,245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비동 3604호(잠실동,갤러리아팰리스)	민정자	40109.72 /244552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1-16 약수맨션 씨동 604호	민승구	14000 /244552				
					3670 이스트이저트인 라스베가스 네바다 89121	민희숙	2000 /244552				
					3670 이스트이저트인 라스베가스 네바다 89121	민명숙	2000 /244552				
					1744 이스트4가 비온타리오 캘리포니아 91764	민승준	8000 /244552				
					541 웨스트로쿠스트리트 온타리오 캘리포니아 91761	민승만	8000 /244552				
					서울 도봉구 수유동 519-21	강호선	24000 /1956416				
					서울 도봉구 수유동 519-21	민요한	24000 /1956416				
					서울 강북구 수유동 519-21	민미숙	16000 /1956416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43, 347동 303호	황승현	15.731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도봉구 창동 341 동진빌리지 102-301	홍종수	4.767 /11116				
					경기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아파트 114-104	홍성모	19.545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4 은하수아파트 105-1401	허의도	14.778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4 은하수아파트 105-1401	허남근	16.684 /11116				
					경기 안산시 월퍼동 447 한양아파트 10-1210	허정	14.301 /11116				
					서울 도봉구 수유동 205 수유역산아파트 10-1406	한상봉	16.684 /1111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이매촌 1007-1502	한기수	19.545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1 우성아파트 105-1108	한규언	19.545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376-10	최춘호	15.731 /11116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90-4.5 골드-401	최영추	14.301 /11116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인화안길 15	최관호	14.301 /1111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3길 9, 나동 202호	진성원	14.301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799 반포아파트 68-202	조화영	14.301 /111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39, 101동 1701호	조문연	14.778 /11116				
					광주 광산구 월곡동 614-2 한성아파트 205-1501	조규봉	19.545 /1111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12-206	조권상	15.254 /11116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17-105	정형재	19.545 /111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55, 102동 901호	정태홍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택지개발지구15블럭 한솔마을아파트 307-207	정일웅	19.545 /11116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1109동 2504호	정철	15.254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4 삼익아파트 3-810	전철원	14.301 /11116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8-6	임호환	14.301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441-149	임재식	14.301 /11116				
					대구 달서구 월성동 84 주공아파트 102동 209호	이한방	9.534 /11116				
					서울 구로구 독산동 161-25	이청규	14.301 /11116				
					서울 송파구 오금로32길 10, 3동 603호	이정태	14.301 /11116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9-7	이재석	14.301 /11116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11-1003	이을범	19.545 /11116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111-302	이은석	14.301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 안양시 호계동 1055 무궁화아파트 109-1705	이용재	14.301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5-59	이선호	14.301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1동 3704호	이상용	17.161 /11116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60-1	이상섭	19.545 /11116				
					경기 과천시 별양동 7 주공아파트 410-804	이상선	11.917 /11116				
					서울 구로구 독산동 1061-13	이덕호	14.301 /11116				
					서울 강동구 길동 152-7	이기남	19.545 /11116				
					춘천시 후평동 481 주공아파트 507-209	이광우	14.301 /11116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8, 117동 403호	윤태종	16.684 /11116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 동남아파트 4-414	윤병연	13.109 /1111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45-19 은성빌라 나-202	유재화	14.301 /11116				
					강릉시 저동 246-1	유재원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도시개발아파트 305-402	유강근	16.684 /11116				
					서울 광진구 독성로56가길 10, 301동 902호	안재규	14.301 /11116				
					서울 강동구 둔촌동 30-4 현대아파트 14동 1310	심재순	14.301 /11116				
					성남시 증원구 은행동 550 주공아파트 103-302	신대호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701-605	송철재	13.109 /111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8번길 8, 101동 308호	손경종	16.684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0-18	손백	14.301 /1111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34-23 영광빌라 나-102	변종억	16.684 /11116				
					안산시 성포동 584 주공아파트 1003-1201	배윤태	14.301 /1111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18번길 29	방동한	10.011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택지개발지구15블럭 한솔마을아파트 303-501	박해성	14.301 /11116				
					안산시 월피동 448 현대아파트 203-1003	박종훈	19.545 /11116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2가 8-7	박일수	19.545 /11116				
					안산시 본오동 872-20 우성아파트 2-109	박영목	16.684 /11116				
					원주시 단계동 793 단계아파트 11-501	박승균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601-601	박세훈	19.545 /11116				
					광주 서구 화정동 740-6 현대아파트 101-1203	민윤식	14.301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인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5 초원아파트 609-1002	문영목	7.627 /1111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4 백운아파트 505	나상열	14.301 /1111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아파트 201-803	노화래	15.254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7-27, 105동 701호	노석환	14.301 /11116				
					서울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지구6블럭 도시개발아파트 606-505	김효철	14.301 /1111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79-6101호	김효분	15.969 /1111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9안길 21, 401호	김형수	19.545 /11116				
					의왕시 내손동 691-19 효성빌라 나동 202호	김현태	14.301 /11116				
					광주 광산구 월곡동 538-1 일신아파트 105-808	김하경	14.301 /11116				
					광주 북구 운암동 363 삼호아파트 1-603	김판중	14.301 /11116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501동 1206호	김태선	19.545 /11116				
					과천시 별양동 24-6	김진혁	15.254 /11116				
					안산시 고잔동 672 주공아파트 910-503	김진식	14.301 /111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390, 103동 1304호	김주인	14.301 /11116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1-442	김주원	14.301 /11116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5-22	김종만	15.731 /11116				
					전북 이리시 동산동 158-15 삼호아파트 3-1105	김정수	14.301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2-309	김인홍	19.545 /11116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5-1	김원식	17.62807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284-51	김영철	19.545 /11116				
					광주 서구 화정동 859-1 현대아파트 101-807	김영선	14.301 /11116				
					서울 노원구 중계동 3블럭 주공아파트 515-707	김수웅	19.545 /11116				
					광주 서구 진월동 344 협진해밀리 101-1304	김성열	19.545 /11116				
					안산시 성포동 585-4 신우연립 8-106	김상필	14.301 /11116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0 주공아파트 604-1301	김상택	19.545 /1111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3-3 목련아파트 903동 1203호	김봉석	14.301 /11116				
					대전 동구 용전동 1 신동아아파트 12동202호	김병희	16.684 /11116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149 해성아파트 나-508	김광식	14.301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4번길 6, 106동 302호	권훈일	16.684 /11116				
					청주시 가경동 847	권영덕	16.684 /1111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36 제일아파트 1-106	구익서	14.301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64-33	곽창호	14.301 /11116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96, 502동 1102호	고용규	14.301 /11116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45, 103동 105호	고선봉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4-14 원형빌라 101호	강환실	14.301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460-30	이공진	12.793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09 반포아파트 6동503호	이영완	15.209 /111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95, 119동 104호	문정일	12.935 /11116				
					경북 안동시 태화동 666-27	김창수	12.793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87, 508동 1604호	문정수	15.636 /11116				
					서울 은평구 불광동 382-15	이형주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24동 47호	조남욱	15.209 /11116	파산자주식 회사해동신 용금고의파 산관재인예 금보험 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서울보증 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강남보상서비스지원단)	가압류	
					서울 은평구 불광동 312-122	성수현	16.7761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0-78	윤공보	17.484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529동 506호	정인심	13.077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4-21	홍순봉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7-1 신동아아파트 3동 102호	남현숙	12.793 /11116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66-17	최영호	12.793 /11116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3 강남아파트 2동 1108호	이상갑	12.793 /1111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58, 102동 1601호	정기화	12.793 /11116				
					서울 은평구 응암동 365-46	박송문	12.793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동작구 상도동 331-27	오세경	12.793 /11116				
					경기 고양시 마두동 739 백마마을 205동 1204호	박상용	12.793 /11116				
					대구 남구 대명동 1253-12	정효련	12.793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751-4 성보연립 에이동 201호	이종선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1 문래현대아파트 102동 201호	이대관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0-7 우성아파트 403동 1407호	박인규	14.214 /11116				
					서울 양천구 신목로6길 6	박병선	17.484 /11116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2, 102동 2203호	최은	15.209 /11116	주식회사 플러스상 호저축 은행	부산 중구 대창동1가 43-1	가압류	
								기술신용 보증기금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1 (서울지점)	가압류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신용지원부)	가압류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2 현대도곡아파트 2동 1505호	양윤식	15.209 /11116				
					서울 중랑구 면목동 52-28 현대파크 지층 2호	김순기	15.636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8-1 개포6차우성아파트 3동 503호	이춘재	15.209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아파트 1동 107호	이경희	15.209 /11116				
					서울 관악구 봉천동 300-8	장비심	13.077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587-24	이홍순	13.077 /11116				
					서울 마포구 도화동 83 도화3지구 우성아파트 6동1103호	김선옥	16.062 /111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774-29	신지호	15.636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아파트 115동303호	김종명	17.484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19, 102동 703호	이종숙	15.636 /1111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34, 206 2001호	최규섭	15.209 /1111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4-18 한양연립 가동103호	홍종선	7.6045 /1111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205 (31) 우림푸전빌아파트 102동 906호	홍수경	16.204 /11116				
					서울 서초구 명달로6길 24, 101동 901호	홍성주	15.494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7동402호	허성용	15.209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15-4	유상복	15.209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5-189 현대아파트 103동107호	최병찬	14.499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28 목동 건영아파트 101동407호	전진국	15.636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8 한강아파트 5동1003호	신현길	15.209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63-34 잠원한신로얄아파트 1동1112호	이정규	13.077 /11116				
					서울 강동구 천호동 144-12	전병모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9-2 현대아파트 23동205호	이원표	15.209 /11116	서울보증 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민천지점)	가압류	
					인천 북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08동1201호	김광수	17.484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1동 3704호	이강주	16.489 /11116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기업여신관리센터)	가압류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16-1 블록사랑마을 1611동 201호	윤공섭	12.793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21동 902호	유찬욱	15.636 /111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3-8	안성우	13.077 /11116				
					서울 강서구 화곡동 56-70 안곡빌라 202호	박석규	15.209 /11116				
					서울 종로구 필운동 176-2	박정욱	15.209 /11116				
					서울 구로구 오류동 97-4 서울가든빌라 3동 206호	박용하	15.636 /11116				
					서울 강서구 강서로36길 13	이현경	15.209 /11116				
					서울 도봉구 쌍문동 158 한양아파트 701동 106호	김주문	15.636 /11116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10동 401호	김용달	15.636 /11116				
					서울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지구 1-1블럭 동신아파트 101동 506호	신석균	12.793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405 목동대림아파트 1011동 1207호	김시연	13.362 /11116				
					서울 구로구 구로1동 642-33 현대의보아파트 804호	김성환	15.636 /11116				
					서울 송파구 잠실5동 27 주공아파트 509동 1402호	유병일	15.209 /11116				
					서울 노원구 월계동 447-2 한전빌라 예이동 202호	김명욱	17.484 /11116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712 청구강변아파트 101동 1706호	김동우	14.214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28 목동건영아파트 104동 504호	권신	17.484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 고양시 주엽동 12 문촌마을 1708동 601호	강현구	13.362 /11116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103동 4003호	안병춘	17.484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1 우성아파트 105동 803호	임일호	15.209 /11116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8-49	차명석	12.793 /11116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유한 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서울 서초구 효령로53길 18, 311호	박재길	12.793 /11116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신용지원1부)	가압류	
								주식회사 솔로몬 상호 저축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6-9	가압류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아파트 12동 906호	윤석원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 방배삼호아파트 가동 409호	이철재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7-76	나상엽	15.920 /11116				
					충남 천안시 업성동 465-4	장국현	15.920 /11116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1211-3	김선익	15.920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6동 1407호	김창준	15.920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지구 11블럭 목련타운아파트 109동 1208호	정대봉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 8, 102동 701호	안광진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14302호	정경영	15.920 /11116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7동 1304호	김홍기	14.783 /11116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0-13	김철영	15.920 /11116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41-13	장광술	18.194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7동 1506호	백광재	18.194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아파트 9동 610호	유재현	16.062 /11116				
					충북 청주시 사창동 357-54	이문상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5 개포4차 우성아파트 2동 405호	전옥실	18.194 /11116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20-135 금화시민아파트 15동 지층1호	손미화	17.747830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9-14	강경선	9.097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반포동 82-19 양지연립 에이동 201호	백승진	12.793 /11116				
					대구 광역시 북구 태전동 420-5 강북 화성파크드림 102-1306	구소원	12.793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30동302호	김상정	12.793 /11116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5가길 21	곽창순	12.793 /11116				
					경기 여주군 산북면 후리 239-3	손상태	12.793 /111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길 198, 204-608 (창신동,쌍용아파트)	김하영	18.194 /11116	신용보증 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 (동대문지점)	근저당권	
					서울 동작구 대방동 416-2	심기백	15.920 /11116				
					경기 광명시 광명동 중앙하이츠아파트 104동 1306호	김금라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3동 1506호	엄용수	14.356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4 개포4차원대아파트 1310호	김태환	18.194 /11116				
					서울 송파구 풍납동 391 극동아파트 3동 1405호	조명선	18.336 /11116	신용보증 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 (송파지점)	가압류	
								근로복지 공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가압류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62	이계군	16.346 /11116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3-8 춘원빌라 2층 203호	김한준	14.356 /11116				
					경기 안산시 본오동 1126-5	윤하병	17.199 /11116	주식회사 동인 엔지니어링	경기도광명시하안동32 2-1	근저당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 우성아파트 230동 702호	송호범	17.199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4동 1403호	조희선	18.194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1동 102호	원용운	12.793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2동 1305호	박종운	16.630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8동 1302호	조영대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0-7 우성아파트 405동 1002호	한석희	16.204 /11116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5동 803호	김영희	16.346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7 꿈마을아파트 307동 1502호	정해인	18.194 /11116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 극동아파트 7동 602호	이성우	13.645 /11116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5 현대아파트 111동 703호	양채섭	15.920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12동1303호	한옥동	18.194 /11116				
					경기 의왕시 내손동 700-1	신대식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7-6	신정구	17.199 /11116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11, 5동 203호	이오주	15.920 /11116				
					서울 송파구 석촌동 7-4	박의연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59 삼성아파트 1동113호	권식	18.194 /11116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47	이효찬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83 남서울아파트 2동108호	김진홍	12.793 /11116	국민연금 관리공단 교양지사		압류	
					서울 노원구 중계동 6-1 블루신안아파트 102동304호	이미향	18.194 /11116				
					인천 북구 십정동 302-36	전찬석	15.920 /11116				
					서울 은평구 증산동 188-5	서주열	15.493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6-42	조국형	12.793 /11116	신용보증 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강남지점	가압류	
					서울 양천구 목동 9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31동602호	이우진	18.194 /11116				
					서울 구로구 고척동 76-55 우성아파트 102동507호	홍성용	18.194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93-12	서공열	15.493 /11116				
					서울 종로구 창신동 703 쌍용아파트 204동508호	최성우	13.930 /1111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73-48	김철민	16.346 /11116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16동1302호	정희옥	16.062 /111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 (19/4) 동남아파트 2동 308호	노준래	13.077 /11116				
					서울 송파구 오금동 35-2 현대맨션빌리지 305	이수환	19.545 /11116				
					서울 구로구 오류동 31-100	유해무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5-14	유옥분	14.356 /1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4(본동)	이용수	5825.097 /100044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10 신반포16차아파트 120동614호	송재빈	12.793 /11116				
					서울 마포구 성산동 81-123 성원그린빌라 비동 302호	문남주	15.920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672 공골주택 예이동101호	박봉규	12.793 /11116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77, 1207동 202호	조용석	1514.738 /66696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명수대현대아파트 106동1202호	박윤석	12.793 /11116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7 사랑마을 1621-701호	김인숙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5-25	유철호	15.209 /1111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43 안성공도우림루미아트 104-403	김보섭	18.194 /11116	민병학	평택시 동삭동 650 평택이안아파트 103-204	근저당권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산 37-4 현대아파트 301-404	최필자	12.793 /11116				
					서울 송파구 오금동 164 가락우창아파트 3-701	최재형	12.793 /11116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1-3 극동아파트 3-802	이미자	14.301 /11116				
					서울 구로구 구로동 252-13 현대빌라 202호	김정현	15.920 /11116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익맨션 203-706	송선희	15.920 /11116				
					서울 도봉구 쌍문동 158-1 한양아파트 703-302	형진철	12.793 /11116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0-21	이의용	14.301 /11116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명수대현대아파트 106-1202	박선홍	132.9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1-10 방배 동광빌라트 102호	강태환	12.793 /11116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5-14 을지아파트 625-1601	민원	12.793 /11116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46-1 삼풍아파트 501	심혜옥	17.199 /11116				
					경남 창원시 반림동 3-1 현대아파트 102-1005	박송희	16.062 /11116	기술신용 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강남지점내강남지역 관리센터)	가처분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9-1 주공아파트 509-101	이호	14.301 /11116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065-2	최원식	15.731 /111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목화아파트 1-912	이태옥	15.920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14 삼성산 주공아파트 307-1707	이혜선	14.301 /11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55, 906동 603호	안혜영	10.011 /1111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6 동부해오름아파트 101-503	김진영	12.793 /11116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28 타워아파트 601호	배용옥	1437.98 /6669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15-28	이진아	13.109 /111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4 파크타운 125-1603	윤길래	14.301 /1111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880 디자인시티블루밍 105-801	박경자	18.194 /1111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9-4 대청아파트-505	이중섭	14.301 /1111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 40, 405-1804 (신갈동, 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	박은주	16.346 /11116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46, 104동201호 (신음동, 현대아파트)	김정희	15.209 /1111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일로 180번길 11(북대동)	조경배	14.301 /111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7길 105, 402호(반포동)	강은향	7.6045 /111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65, 401호 (홍은동, 서강주상복합아파트)	정한결	15.209 /11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17, 21동1102호 (오금동, 현대아파트)	송연수	265.88 /11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7, 21동1102호 (오금동, 현대아파트)	박윤수	177.26 /111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66, 207동401호 (동빙고동, 용산푸르지오파크타운)	이은미	5709.96 /100044				
					미합중국 96822 하와이주 호놀룰루 마키키스트리트 1517번지 401호	이은경	5709.96 /100044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11번길 11, 205동801호 (토평동, 한일아파트)	김용화	19.545 /1111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2-2, 510동1902호 (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리지5차아파트)	백용옥	785.47 /33348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15길 24, 605동 1404호 (봉천동, 봉천역산블루밍3차아파트)	강현자	16.684 /11116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693번길 32	이건상	13.077 /1111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347, 102동1302호 (화곡동, 그랜드아이파크)	백종현	19.545 /1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 305동210호 (사당동, 사당우성아파트)	홍정우	16.630 /111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3길 64 (신림동)	신백련	17.199 /1111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 2동1308호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최용석	6.8225 /1111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 5동1502호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최단비	6.8225 /11116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72, 205동204호 (호원동, 호원가든2차아파트)	유승희	14.301 /111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9길 8, 105동801호 (신림동, 신림현대아파트)	황규찬	19.545 /111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라길 48, 401호 (정릉동)	강원철	12.793 /111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 63, 107동502호 (성수동1가,쌍용아파트)	남윤경	15.209 /111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8길 36-8(구로동)	조하연	12.935 /11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 116길 21, 401호 (논현동,성지하우스)	송주호	14.925 /11116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현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사당동 신31-1	분묘	-	1			미상				
2	사당동 신31-2	분묘	-	1							
		감나무	R20	1							
		반송	H1.0~1.5	3							
		병아리 꽃나무	H1.5	2							
		복사나무	H2.0~2.5	3							
		홍나무	H2.0~3.0	2							
		주목	H1.0~2.0	7							
3	사당동 신22-1	천막 구조물	5*8*8m	1		서울 동작구 양녕로25마길 35, 403호	윤지영				
4	동작동 신18-1	분묘	-	4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72 LG아파트 103동 1502호	이정재				
		분묘	-	1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45-6 명훈빌딩 401호	김소동				
		분묘	-	2							
5	동작동 신18-5	분묘	-	3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270-64 개미연립 B동 101호	박정재				
		분묘	-	1			미상				
		컨테이너	3*3*4m	1							
		컨테이너	3*4*8m	1							
		패널헬스	2.5*27m	1		경기도 여주시 소지개길 33-56	양병천				
		패널헬스	5.0*30m	1							
		대문	2.5*5.0m	1							

◆ 송파구고시 제2019-93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잠실동 183-4외 2필지 공동개발(지정)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에 대하여 2019년 제3차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05.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송 파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잠실동 183-4외 2필지에 대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지정))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367,687 (1,193.5)	-	367,687 (1,193.5)	서울시고시 제2015-296호 (15.09.24)	-

* 면적의 ()는 사업대상지 내 사항 임.

I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B3-6	잠실동 183-4	162.3	1,193.5	단독개발	공동개발(지정)	-
	잠실동 183-5, 183-10	1,031.2		공동개발(지정)		-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잠실동 183-4, 183-5, 183-10	◦ 단독개발, 공동개발 지정 → 공동개발 지정	◦ 주민제안에 의한 공동개발 지정	-

③ 제3차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

■ 조건사항

- 대상지내 계획된 공공보행통로에 보행통로 1m 이상 추가 확보(건축물 1층은 캔틸레버 구조 가능)
- 아래 사항을 보완 후 건축심의 시 반영 검토할 것.
 - 장애인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과 같이 한쪽으로 모아서 계획하는 등 배치 재검토
 - 엘리베이터 홀 및 건축물 주출입구 복도 폭원 확폭
 - 근린생활시설층(1~4층)의 공용화장실(여) 변기 수 추가 확보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300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강동구고시 제2019-97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강동구 고시 제2019-36호(2019.3.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18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당초: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6-1번지 외 3필지
- 변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6-3번지 외 3필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 사업

라. 사업의내용(변경없음):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

- 당초: 토지보상 1,551㎡
- 변경: 토지보상 1,518㎡

바. 사업기간(변경없음):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따로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지분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4필지	변경 4필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주 소			성명	주 소	
계	4필지	4필지	5,570	1,551	1,551	1,518	안*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 ***동 ****호(** 등, *****)		480/1920				
1	136-1	136-3	4,760	741	741	741	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320/1920	승*호	충청북도 청주시 **구 **동 ***-*, ***호		근저당권,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박*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신**-*		80/1920				
							이*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가 ***-*		80/1920				
							김*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80/1920				
							홍*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80/1920				
							이*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 ***동 ****호(** 등, ****아파트)		240/1920				
							김*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길 **, ****동 ****호(** 등, **** 아파트)		80/1920				
							김*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 , ****호(*동)		80/1920				
							이*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동 ****호(** 등, *****)		160/1920				
							김*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로**번길 **, ***동 ***호(*동, ****아파트)		160/1920				
2	137-6	137-6	331	331	331	331	강*호	경기도 부천시 **로 ***, ***동 (*동, *****)		80/1920				
							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동)		3/9				
							김*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로 ***, ***동 ****호 (**동, ****아파트)		2/9				
							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호(*동, ****)		2/9				
							김*화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동 ****호 (**동, **아파트)		2/9				
3	137-7	137-7	331	331	331	331	박*택	서울특별시 도봉구 **로**길 **-* , ***호(** 등, *****)						
4	192-3	192-3	148	148	148	115	사회복지법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길 **(*동)						

사용가능수용능력조치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이용현 황	소 유 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권리명세		
계															
1	136-1	136-3	비닐하우스	비닐, 보온덮개	466.5 ㎡, 2동	890㎡, 4동	농업용	인*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 ***동 *****(**동, *****)	480/1920					
								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320/1920	승*호	충청북도 청주시 **구 ***동 ****-, ***호	근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박*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산**	80/1920					
								이*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가 ***-**-*	80/1920					
								김*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동 ***호	80/1920					
								홍*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80/1920					
								이*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240/1920					
								김*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 **길 **, ***동 ***호(**동, *****) 아파트)	80/1920					
								김*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 **길 **-, ***호(*동)	80/1920					
								이*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동 ***호(**동, *****)	160/1920					

구 공 고

◆ 성동구공고 제2019-76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2019-65호(2019. 7. 11.)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성동구 성수1가동 656-304호외 1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저촉토지, 무허가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공원녹지과(☎2286-5654)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8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동 656-304호외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사업의 명칭 : 성수1가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다. 사업의 규모 : 284㎡

라. 사업시행자 : 성동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조서 등 : 별첨

사. 열람장소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2286-5654)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성수1가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관리청)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성수1가	656-304	전	258	25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2	성수1가	656-305	전	26	26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 동대문구공고 제2019-68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호선, 주차장③)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79호(2016.11.17)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7-38호(2017.05.1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시 의제처리 사항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7-6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호선, 주차장③) 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의 변경고시)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7월 18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65-1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호선, 주차장③)사업 실시계획(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의 고시)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명칭 : 도로 : 소로1-3호선, 주차장③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

- 도로 : 333.8㎡
- 주차장 : (당초) 692㎡ → (변경) 67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당초
 - 1) 성명 : (주)에이치앤에이 (대표 최춘길)
 - 2)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60, 2층

○ 변경

- 1) 성명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 ~ 고시일로부터 24개월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4층 건축과 사무실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건축과(☎ 02-2127-4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첨 1. 토지조서

토 지 조 서

연번	위치	지번		면적(㎡)		소유구분			비고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기타권리	
합 계				1517.0	1009.8				
1	휘경동	165-9	대지	26.0	9.0	김일성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94		주차장
2	휘경동	165-12	대지	82.0	82.0	김동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66-29		
3	휘경동	165-15	대지	82.0	82.0	오형문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65-15		
4	휘경동	165-18	대지	40.0	40.0	김일성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94		
5	휘경동	165-19	대지	96.0	96.0	주혜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68-67		
6	휘경동	166-4	도로	26.0	26.0	정이동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94		
7	휘경동	166-7	대지	60.0	60.0	문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60, 101동 1904호 (휘경동, 휘경SK VIEW아파트)		
8	휘경동	166-8	대지	69.0	69.0	이정덕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66-8		
9	휘경동	165-13	대지	79.0	79.0	이병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3-1 건영아파트 4-605		
10	휘경동	165-14	대지	83.0	83.0	김정수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65-15		
11	휘경동	166-6	대지	50.0	50.0	정상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42-2		
12	휘경동	161-11	도로	281.0	281.0	송미령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5길5, 401호(서초동, 로얄스위트서초빌라)		도로
13	휘경동	146-134	도로	362.0	19.2	서울시			
14	휘경동	154-52	대지	53.0	30.3	김신애	27린 디알 624, 토론토온, 캐나다 엠2케이 오에이6		
15	휘경동	154-23	대지	128.0	3.3	차성일	서울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63-1(휘경동)	근저당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 재단	

■ 별 첨 2. 지장물조서

지 장 물 조 서

연번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휘경동	165-12	단층주택	시멘트 블로조 시멘트기와지붕	35.17	m ²	1/1	김동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6-29	
2	휘경동	165-12	대문	벽돌조 철재대문 L:2.0, H:2.0	1	식	1/1	김동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14가길 3(휘경동)	
3	휘경동	165-12	차양	철파이프및 목조 썬라이트 지붕 (빗물받이 포함) 1.0*5.0	1	식	1/1	김동근		
4	휘경동	165-12	바닥포장	콘크리트 2.5*7	1	식	1/1	김동근		
5	휘경동	165-12	간판	아크릴 0.5*2.5	1	식	1/1	김동근		
6	휘경동	165-12	기타잡자재	CCTV 등 일체	1	식	1/1	김동근		
7	휘경동	165-12	영업	정두사	1	식	1/1	김동근		
8	휘경동	165-12	단상	목재합판 4.2*1.0	1	식	1/1	김동근		
9	휘경동	165-12	기타자재	액자, 촛대석, 병풍, 연꽃, 그림, 불상등 집기품일체	1	식	1/1	김동근		
10	휘경동	165-15	단층주택(1층)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36.80	m ²	1/1	오형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14가길 11(휘경동)	
11	휘경동	165-15	단독주택(2층)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36.80	m ²	1/1	오형문		
12	휘경동	165-15	단독주택(지하실)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46.52	m ²	1/1	오형문		
13	휘경동	165-15	옥탑방	적벽돌조 슬라브지붕 위 스레이트덱씌움(보 일러설비 포함) 3.5*3.5	12.25	m ²	1/1	오형문		
14	휘경동	165-15	베란다확장 (1층,2층)	적벽돌조 1.0*7.0	7.00	m ²	1/1	오형문		
15	휘경동	165-15	창고	적벽돌조 슬라브지붕 위 스레이트덱씌움 2.0*2.5	5.00	m ²	1/1	오형문		

연번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6	휘경동	165-15	화장실	적벽돌조 슬라브지붕 위 스레이트덧씌움 (양변기 및 오수처리시설 포함) 3.5*1.5	5.25	m ²	1/1	오형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14가길 11(휘경동)	
17	휘경동	165-15	전실(옥탑)	샷시조 2.0*1.5	3.00	m ²	1/1	오형문		
18	휘경동	165-15	전실(2층)	샷시조 3.0*1.0	3.00	m ²	1/1	오형문		
19	휘경동	165-15	전실겸 세면장(지하)	샷시조블럭 (바닥타일마감 및 세면설비 포함) 2.0*1.5	3.00	m ²	1/1	오형문		
20	휘경동	165-15	계단(옥탑)	인조석(난간포함) W:1.0, L:5.5	1	식	1/1	오형문		
21	휘경동	165-15	계단(2F)	인조석(난간포함) W:1.0, L:8.0	1	식	1/1	오형문		
22	휘경동	165-15	계단(1F)	인조석(난간포함) W:1.0, L:2.5	1	식	1/1	오형문		
23	휘경동	165-15	계단(지하)	콘크리트 W:1.0, L:2.0	1	식	1/1	오형문		
24	휘경동	165-15	정문	벽돌문주 슬라브지붕 철재대문 0.7*1.5H*2짝	1	식	1/1	오형문		
25	휘경동	165-15	쪽문	적벽돌문주 철재대문 0.8*1.5H*1짝 0.3*1.5H*1짝	1	식	1/1	오형문		
26	휘경동	165-15	담장	블록조 L:7m, H:3m 조적세멘 L:3m, H:2m 블록조 세멘 L:4m, H:2m	1	식	1/1	오형문		
27	휘경동	165-15	관정	오수용(모터시설 및 콘크리트 관정보호함 포함) D:3m	1	식	1/1	오형문		
28	휘경동	165-15	바닥포장	화강암 1.0*2.5 콘크리트 (8.0*0.8)+(5.5*1. 2)+(9.0*0.8)	1	식	1/1	오형문		

연번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편입 면적	단위	지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9	휘경동	165-15	인테리어 (1층,2층)	화장실 보수, 천정 전수교체, LED등 교체	1	식	1/1	오형문		
30	휘경동	165-15	기타설비	지하방수설비 건물내부 수도배관 교체설비 건물샷시조 방법창 및 방충망	1	식	1/1	오형문		
31	휘경동	165-15	잡자재	화분(반송 15년생 1주, 라일락 10년생 4주, 블루베리 10년생 1주, 사철나무 20년생 1주 포함) 등 기타잡자재 일체	1	식	1/1	오형문		
32	휘경동	165-19 166-8	단독주택 (1층)	연와조 평스라브 위 기와잇기	83.04	m ²	1/2	주혜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68-67	도시 가스 설비 포함
33	휘경동	165-19 166-8	단독주택 (2층)	연와조 평스라브 위 기와잇기	83.04	m ²	1/2	주혜림		도시 가스 설비 포함
34	휘경동	165-19 166-8	단독주택 (지층)	연와조 평스라브 위 기와잇기	83.88	m ²	1/2	주혜림		도시 가스 설비 포함
35	휘경동	165-19 166-8	옥탑방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 지붕(샷시시공) 3.0*3.0 적벽돌조 샌드위치 지붕(빗물받이대 포함) (6.4*3.0)+(1.0*1. 0)	29.20	m ²	1/1	주혜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68-67	
36	휘경동	165-19 166-8	보일러실1 (옥탑)	샌드위치 판넬 0.3*0.7	0.21	m ²	1/1	주혜림		
37	휘경동	165-19 166-8	보일러실2 (지층)	벽돌조 시멘트몰딩 1.2*2.0	2.40	m ²	1/1	주혜림		
38	휘경동	165-19 166-8	창고1(지층)	적벽돌조 0.7*1.0	0.70	m ²	1/1	주혜림		
39	휘경동	165-19 166-8	전실겸 하수구 (지층)	시멘트(방수처리포 함) 1.0*1.0	1.00	m ²	1/1	주혜림		

연번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편입 면적	단위	지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40	휘경동	165-19 166-8	정문대문	벽돌조 철재대문 1.2*2.3H*2짝	1	식	1/1	주혜림		
41	휘경동	165-19 166-8	계단1(1층)	적벽돌조 인조석 (난간포함) H:12.5m, W:1m	1	식	1/1	주혜림		
42	휘경동	165-19 166-8	계단2(2층)	적벽돌조 인조석 (난간포함) H:5m, W:1m	1	식	1/1	주혜림		
43	휘경동	165-19 166-8	계단3(옥탑)	콘크리트 (철재 난간포함) H:4.6m, W:1m	1	식	1/1	주혜림		
44	휘경동	165-19 166-8	담장1(정문)	적벽돌조 L:12m, H:1.5	1	식	1/1	주혜림		
45	휘경동	165-19 166-8	담장2(정문)	조적조 L:4m, H:1m	1	식	1/1	주혜림		
46	휘경동	165-19 166-8	담장3	샌드위치 패널 L:2.2m, H:1.5m	1	식	1/1	주혜림		
47	휘경동	165-19 166-8	바닥포장1 (지층)	콘크리트 (8.7*3.0)+(5.5*3.5)+(4.0*2.0*1/2)	1	식	1/1	주혜림		
48	휘경동	165-19 166-8	바닥포장2 (지층)	콘크리트 (3.1*2.3)+(1.2*3.1*1/2)	1	식	1/1	주혜림		
49	휘경동	165-19 166-8	바닥포장3 (옥탑)	에폭시 (7.5*3.2)+(1.5*5.5)	1	식	1/1	주혜림		
50	휘경동	165-19 166-8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1 (1F)	샷시조 5.0*1.0	3.15	m ²	1/1	주혜림		
51	휘경동	165-19 166-8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3 (2F)	샷시조 5.0*1.0	3.15	m ²	1/1	주혜림		
52	휘경동	165-19 166-8	차양1(옥탑)	샌드위치패널조 5.5*2.2	1	식	1/1	주혜림		
53	휘경동	165-19 166-8	차양2(옥탑)	샌드위치패널조 1.0*1.0	1	식	1/1	주혜림		
54	휘경동	165-19 166-8	차양3(지층)	샌드위치패널 1.2*0.5	1	식	1/1	주혜림		
55	휘경동	165-19 166-8	화단(지층)	시멘트 적벽돌조 1.0*0.5	1	식	1/1	주혜림		

연번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편입 면적	단위	지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56	휘경동	165-19 166-8	철파이프 구조물 (옥탑)	철파이프조 (일부 차광막씌움) 3.2*5.5	1	식	1/1	주혜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68-67	
57	휘경동	165-19 166-8	창문난간대 (옥탑)	철파이프조 2.0*0.7	1	식	1/1	주혜림		
58	휘경동	165-19 166-8	수전시설	설비일체	1	식	1/1	주혜림		
59	휘경동	165-19 166-8	감나무 화단	시멘트조 100φ*0.2H	1	식	1/1	주혜림		
60	휘경동	165-19 166-8	감나무	30년생 25R*5H*1주 30년생 15R*3.5H*1주	2	주	1/1	주혜림		
61	휘경동	165-19 166-8	인테리어 (옥탑)	보일러교체, 장판교체, 화장실(타일, 세면대, 천정등)교체, 싱크대교체, 벽지도배, LED등 교체, 불박이장 설치, 방범창설치, 방충망 설치등 인테리어시설 일체	1	식	1/1	주혜림		
62	휘경동	165-19 166-8	인테리어 (2층)	보일러교체, 장판(강화마루)교체, 화장실(타일, 세면대, 천정등)교체, 싱크대교체, 벽지도배, LED등 교체, 불박이장 설치, 신발장 설치, 방충망 설치등 인테리어시설 일체	1	식	1/1	주혜림		
63	휘경동	165-19 166-8	인테리어 (1층)	보일러교체, 장판교체, 화장실(타일, 세면대, 천정등)교체, 싱크대교체, 벽지도배, LED등 교체, 불박이장 설치, 신발장 설치, 방충망 설치등 인테리어시설 일체	1	식	1/1	주혜림		

연번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64	휘경동	165-19 166-8	인테리어 (지층)	보일러교체, 장판교체, 화장실(타일, 세면대, 천정등)교체, 싱크대교체, 벽지도배, LED등 교체, 불박이장 설치, 방범창설치, 방충망 설치등 인테리어시설 일체	1	식	1/1	주혜림		
65	휘경동	165-19 166-8	잡자재	의자, 향아리25개, 고무대야, 화분30개(반송 10년생 1주 포함), 신발장, 옷장등 잡자재 일체	1	식	1/1	주혜림		
66	휘경동	165-19 166-8	단독주택 (1층)	연와조 평스라브 위 기와잇기	83.04	m ²	1/2	이정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12길 15(휘경동)	
67	휘경동	165-19 166-8	단독주택 (2층)	연와조 평스라브 위 기와잇기	83.04	m ²	1/2	이정덕		
68	휘경동	165-19 166-8	단독주택 (지층)	연와조 평스라브 위 기와잇기	83.88	m ²	1/2	이정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12길 15(휘경동)	
69	휘경동	165-19 166-8	옥탑방	샷시조 판넬지붕 (방범창포함) (4.0*4.7)+(4.6*2.6)	30.76	m ²	1/1	이정덕		
70	휘경동	165-19 166-8	창고(옥탑)	샷시조 판넬지붕 (1.0*2.0)+(1.3*4.3)	7.59	m ²	1/1	이정덕		
71	휘경동	165-19 166-8	보일러실 (지층)	적벽돌조 샷시조 2.0*1.0	2.00	m ²	1/1	이정덕		
72	휘경동	165-19 166-8	대문	적벽돌문주 철대문 0.8*1.6H*2짝	1	식	1/1	이정덕		
73	휘경동	165-19 166-8	쪽문	조적조 철재대문 0.8*1.7H*2짝 0.8*1.5H*1짝	1	식	1/1	이정덕		
74	휘경동	165-19 166-8	계단	적벽돌조 인조석 (난간포함) L:4m, W:0.5m L:12m, W:0.8m	1	식	1/1	이정덕		
75	휘경동	165-19 166-8	담장1	블록조(시멘트 몰딩) L:3.5m H:1.5m	1	식	1/1	이정덕		

연번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편입 면적	단위	지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76	휘경동	165-19 166-8	담장2	적벽돌조 L:0.5m, H:1.5m	1	식	1/1	이정덕		
77	휘경동	165-19 166-8	바닥포장 (지층)	콘크리트 2.5*8.0	1	식	1/1	이정덕		
78	휘경동	165-19 166-8	바닥포장 (옥탑)	에폭시 (8.2*2.5)+(5.4*0.5)-(0.5*2.0)	1	식	1/1	이정덕		
79	휘경동	165-19 166-8	철재선반 (2층)	1.3*0.4	1	식	1/1	이정덕		
80	휘경동	165-19 166-8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1 (1층)	샷시조 3.8*1.0	3.80	m ²	1/1	이정덕		
81	휘경동	165-19 166-8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2 (2층)	샷시조 (1.0*2.0)+(1.3*4.3)	7.59	m ²	1/1	이정덕		
82	휘경동	165-19 166-8	인테리어 (지층)	안방 창문 8자 샷시(방충망교체포 함)시공, 방2개 실크벽지 도배, 방 및 주방 바닥 장판교체, 방문2개 페인트 도색 및 손잡이 교체, LED조명등 방,주방등 2개 교체, 싱크대 설치와 수도꼭지 교체, 화장실 변기, 세면대, 샤워기 교체(2018년), 화장실 타일시공 및 방수처리, 보일러 새로 교체(2018), 부대시설(에어컨,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책상, 신발장)설치, 방범창 설치등 인테리어시설 일체	1	식	1/1	이정덕		
83	휘경동	165-19 166-8	인테리어 (1층)	안방 및 거실 창문 8자 샷시(방충망교체포 함)시공, 방3개 실크벽지 도배, 방3개 및 거실바닥 장판 교체,	1	식	1/1	이정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12길 15(휘경동)	

연번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편입 면적	단위	지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방문3개 페인트 도색 및 손잡이 교체, LED조명등 방, 거실, 주방, 센서등 6개 교체, 싱크대 설치와 수도꼭지 교체, 화장실 변기, 세면대, 샤워기 교체(2018년), 화장실 방수처리, 보일러 새로 교체(2018), 현관문 보조키 및 번호키등 인테리어시설 일체						
84	휘경동	165-19 166-8	인테리어 (2층)	방2개 및 거실 마루바닥 공사, 안방 및 거실 창문 8자 샷시(방충망교체포 함)시공, 방3개 실크벽지 도배, 방문3개 페인트 도색 및 손잡이 교체, LED조명등 방, 거실, 주방, 센서등 6개 교체, 싱크대 설치와 수도꼭지 교체, 화장실 변기, 세면대 교체(2018년), 보일러 새로 교체(2018)등 인테리어시설 일체	1	식	1/1	이정덕		
85	휘경동	165-19 166-8	인테리어 (옥탑층)	안방 창문 샷시(방충망교체포 함)시공, 방 및 주방 바닥 장판교체, 방2개 실크벽지 도배, LED조명등 방, 주방등 2개 교체, 싱크대 설치와 수도꼭지 교체, 화장실 변기, 세면대, 샤워기 교체(2018년), 화장실 타일시공 및 방수처리,보일러 새로교체(2018),	1	식	1/1	이정덕		

연번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지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현관문 철재로 교체, 부대시설(에어컨,냉장고,가스렌지,세탁기,책상,신발장) 설치등 인테리어시설 일체						
86	휘경동	165-19 166-8	잡자재	의자, 향아리, 대야, 화분 등 잡자재 일체	1	식	1/1	이정덕		
87	휘경동	166-7	단층주택	시멘트복조 세면기와지붕	32.40	m ²	1/1	문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60, 101동 1904호 (휘경동, 휘경SK VIEW아파트)	
88	휘경동	166-7	조적문주	철재대문 0.6*1.7H*2짝	1	식	1/1	문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60, 101동 1904호 (휘경동, 휘경SK VIEW아파트)	
89	휘경동	166-7	바닥포장	보도블럭 3.0*1.0	1	식	1/1	문재원		
90	휘경동	166-7	대문2	조경석마감문주 연와지붕(철재대문) 0.5*1.7H*2짝	1	식	1/1	문재원		
91	휘경동	166-7	개수대	콘크리트(오배수시 설 포함) 1*1	1	식	1/1	문재원		
92	휘경동	166-7	철재계단	W:0.5, H:2.3	1	식	1/1	문재원		
93	휘경동	166-7	장독대	연와조 0.8*0.4*0.5	1	식	1/1	문재원		
94	휘경동	166-7	내부인테리어	벽지, 장판교체, 대문, 벽 페인트칠,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수리 등 인테리어 일체	1	식	1/1	이명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14가길 8(휘경동)	
95	휘경동	166-7	잡자재	장독, 화분등 기타잡자재 일체	1	식	1/1	이명순		
96	휘경동	154-23	근린생활시 설 주택 1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 3층	63.78	m ²	1/1	차성일	서울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63-1(휘경동)	
97	휘경동	154-23	근린생활시 설 주택 2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 3층	62.79	m ²	1/1	차성일		
98	휘경동	154-23	근린생활시 설 주택 3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 3층	52.26	m ²	1/1	차성일		

연번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편입 면적	단위	지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99	휘경동	154-23	근린생활시 설 주택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 3층	67.41	m ²	1/1	차성일		
100	휘경동	165-13	단층주택	세멘부록조 세멘외집	35.50	m ²	1/1	이병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3-1 건영아파트 4-605	
101	휘경동	165-14 166-6	단층주택	세멘부록조 세멘외집지붕 1층	49.56	m ²	1/1	김정수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65-15	
102	휘경동	166-6	단층주택	세멘 부록조 세멘외집	33.06	m ²	1/1	신민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36-4(휘경동)	

◆ 성북구공고 제2019-900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67.12.1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45호 (2019.5.16)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에 대하여,
2. 조성계획 변경(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8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성북구 성북동 226-109일원(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나. 공원면적 : 101,059㎡

다. 주요변경내용

<신설>

- 조경시설 : 잔디마당 98.13㎡, 조형산 16.48㎡, 화계 13.87㎡, 앉음벽 16.16㎡
- 휴양시설 : 데크쉼터-3 101.96㎡, 데크쉼터-4 42.47㎡, 전망데크 37.19㎡, 평상 15.16㎡
- 교양시설 : 초화원-1 59.75㎡, 초화원-2 130.41㎡, 초화원-3 55.99㎡

<변경>

- 기반시설 : 도로 9,401.10㎡ → 9,684.82㎡ (증 283.72㎡)
광장 1,465.67㎡ → 1,738.31㎡ (증 272.64㎡)
- 조경시설 : 1,050.56㎡ → 1,195.20㎡ (증 144.64㎡)
- 휴양시설 : 670.30㎡ → 867.08㎡ (증 196.78㎡)
- 교양시설 : 440.64㎡ → 686.79㎡ (증 246.15㎡)
- 녹지 및 기타 : 85,262.73㎡ → 84,118.80㎡ (감 1,143.93㎡)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성북구 성북동 산25-1일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공원시설지구	계	1,928,680	21,709.27	4	1,143.02	2,827.02	83	1,928,680	22,853.20	4	1,143.02	2,827.02	108		
	공원시설지구	소 계	208,649	21,709.27				83	208,649	22,853.20				108	
		성 북 지 구	101,059	15,796.27	3	397.02	397.02	70	101,059	16,940.20	3	397.02	397.02	95	
		정 법 사 지 구	107,590	5,913	1	746	2,430	13	107,590	5,913	1	746	2,430	13	
시 설 지 구 외		1,720,031						1,720,031							
공원시설지구율 (법정 20% 이하)		(208,649㎡ / 1,928,680㎡) × 100% = 10.82%						(208,649㎡ / 1,928,680㎡) × 100% = 10.82%							
공원시설률 (법정 20% 이하)		(21,709.27㎡ / 1,928,680㎡) × 100% = 1.13%						(22,853.20㎡ / 1,928,680㎡) × 100% = 1.18%							
공원건폐율 (법정 4% 이내)		(1,143.02㎡ / 1,928,680㎡) × 100% = 0.06%						(1,143.02㎡ / 1,928,680㎡) × 100% = 0.06%							

나. 시설구역총괄표(성북지구) - (위치 : 성북구 성북동 226-109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계			101,059	15,796.27	3	397.02	397.02	70	101,059	16,940.20	3	397.02	397.02	95	(증1,143.93)
기 본 시 설		소 계	10,866.77	10,866.77					11,423.13	11,423.13					(증556.36)
		도 로	9,401.10	9,401.10					9,684.82	9,684.82					(증283.72)
		광 장	1,465.67	1,465.67					1,738.31	1,738.31					(증272.64)
조경시설			1,050.56	1,050.56				4	1,195.20	1,195.20				6	(증144.64)
휴양시설			670.30	670.30	1	87.02	87.02	48	867.08	867.08	1	87.02	87.02	60	(증196.78)
운동시설			2,075	2,075				9	2,075	2,075				9	-
교양시설			440.64	440.64					686.79	686.79					(증246.15)
편익시설			105.00	105.00					105.00	105.00					-
관리시설			588	588	2	310	310	9	588	588	2	310	310	20	-
녹지 및 기타			85,262.73						84,118.80						(감1,143.93)
공 원 시 설, 를 (법정 40%)			(15,796.27㎡ / 101,059㎡) × 100% = 15.63%						(16,940.20㎡ / 101,059㎡) × 100% = 16.76%						법정 40%이하
공 원 건 폐, 을 (법정 10%)			(397.02㎡ / 101,059㎡) × 100% = 0.39%						(397.02㎡ / 101,059㎡) × 100% = 0.39%						법정 10%이내

다. 시설조서(성북지구)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본 시설	합 계			101,059	15,796.27	3	397.02	397.02	70				3	397.02	397.02	95		
	소 계			10,866.77	10,866.77													
		도 로		전지역	9,401.10	9,401.10												
	가-1		성북동 226-32	26.85	26.85						가-1	성북동 226-32	26.85					
	가-2		성북동 226-32	43.07	43.07						가-2	성북동 226-32	43.07					
	가-3		성북동 226-106외	92	92						가-3	성북동 226-106 외	92					
	가-4		성북동 226-109	84	84						가-4	성북동 226-109 외	183.82					
	가-5		성북동 226-32	23.36	23.36						가-5	성북동 226-32	23.36					
											가-6	성북동 226-65 외	74.2					
	광 장	가-7	성북동 285 외	92	92						가-7	성북동 285 외	92					
		가-8	성북동 226-93	23	23						가-8	성북동 226-93	23					
		가-9	성북동 226-99	27	27						가-9	성북동 226-99	27					
		가-10	성북동 59 외	360	360						가-10	성북동 59 외	360					
		가-11	성북동 산25-52	49	49						가-11	성북동 산25-52	49					
		가-12	성북동 산25-1	131	131						가-12	성북동 산25-1	131					
		가-13	성북동 산25-1	105	105						가-13	성북동 산25-1	105					
		가-14	성북동 산25-1	378	378						가-14	성북동 산25-1	378					
		가-15	성북동 산25-14	11.44	11.44						가-15	성북동 산25-14	11.44					
		가-16	성북동 산226-320	15.56	15.56						가-16	성북동 산226-320	15.56					
		가-17	성북동 산226-320	4.39	4.39						가-17	성북동 산226-320	4.39					
											가-18	성북동 226-33	47.82					
											가-19	성북동 226-33 외	22.26					
										가-20	성북동 226-33 외	28.54						
조경	소 계			1,050.56	1,050.56				4					1,195.20	1,195.20	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층)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층)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	스탠드	라-1	성북동 226-32	40.94	40.94						라-1	성북동 226-32	40.94	40.94							
	장식벽	라-2	성북동 226-32	35.95	35.95						라-2	성북동 226-32	35.95	35.95							
	소폭포	라-3	성북동 산25-14	30.22	30.22						라-3	성북동 산25-14	30.22	30.22							
	연못	라-4	성북동 226-1 외	195.06	195.06						라-4	성북동 226-1 외	195.06	195.06							
	잔디광장	라-5	성북동 226-32	748.39	748.39						라-5	성북동 226-32	748.39	748.39							
	잔디마당										라-6	성북동 226-65	98.13	98.13							
	조형산										라-7	성북동 226-68 외	16.48	16.48							
	화계										라-8	성북동 226-69 외	13.87	13.87							
	앉음벽										라-9	전지역	16.16	16.16							
휴양 시설	파고라	①	전지역	(92.6)	(92.6)					4	①	전지역	(92.6)	(92.6)					4	29.5㎡ (17기) 17.5㎡ (17기)	
	파고라-1										②	성북동 226-65	(47.0)	(47.0)					2		
	소개			670.30	670.30								867.08	867.08				60			
	아유회장	나-1	성북동 266-101외	25	25							나-1	성북동 266-101외	25	25						
		나-5	성북동 산25-52	36	36							나-5	성북동 산25-52	36	36						
		나-6	성북동 41	45	45							나-6	성북동 41	45	45						
		나-7	성북동 51	36	36							나-7	성북동 51	36	36						
		나-8	성북동 산25-52	6	6							나-8	성북동 산25-52	6	6						
		나-9	성북동 산25-1외	80	80							나-9	성북동 산25-1외	80	80						
		나-10	성북동 57 외	88	88							나-10	성북동 57 외	88	88						
		나-11	성북동 226-32	58.49	58.49							나-11	성북동 226-32	58.49	58.49						
		나-12	성북동 226-32	145.72	145.72							나-12	성북동 226-32	145.72	145.72						
		나-13										나-13	성북동 226-68 외	101.96	101.96						
	데크쉼터-1																				
	데크쉼터-2																				
데크쉼터-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층)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층)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데크쉼터-4									나-14	성북동 226-65	42.47	42.47					
	전망데크								나-15	성북동 226-69	37.19	37.19						
	평상								나-16	성북동 226-69	15.16	15.16						
	의자	③	전지역	-	-			48	③	전지역	-	-				60		
	전망정자	⑥	성북동 226-32	63.07	63.07				⑥	성북동 226-32	63.07	63.07						
	휴게소	⑦	성북동 226-32	87.02	87.02	1	87.02		⑦	성북동 226-32	87.02	87.02	1	87.02	87.02			
	소계			2,075	2,075			9			2,075	2,075			9			
	배드민턴장	다-1	성북동 226-57외	420	420				다-1	성북동 226-57외	420	420				2면		
		다-2	성북동 신25-52외	425	425				다-2	성북동 신25-52외	425	425				2면		
	체력단련장	마-3	성북동 25-52	105	105				마-3	성북동 25-52	105	105						
운동 시설		마-4	성북동 25-1	270	270				마-4	성북동 25-1	270	270						
		마-5	성북동 25-1	95	95				마-5	성북동 25-1	95	95						
		자-1	성북동 41 외	40	40				자-1	성북동 41 외	40	40						
		자-2	성북동 51 외	122	122				자-2	성북동 51 외	122	122						
		자-3	성북동 53 외	324	324				자-3	성북동 53 외	324	324						
	자연체험장	자-4	성북동 신25-52	23	23				자-4	성북동 신25-52	23	23						
		자-5	성북동 259	148	148				자-5	성북동 259	148	148						
		자-6	성북동 52 외	103	103				자-6	성북동 52 외	103	103						
	그늘오르기	⑤-1	성북동 259	-	-			1	⑤-1	성북동 259	-	-				1		
	경사오르기	⑤-2	성북동 259	-	-			1	⑤-2	성북동 259	-	-				1		
타잔그네	⑤-3	성북동 259	-	-			1	⑤-3	성북동 259	-	-				1			
밧줄타기	⑤-4	성북동 41 외	-	-			1	⑤-4	성북동 41 외	-	-				1			
마법의 다리	⑤-5	성북동 51 외	-	-			1	⑤-5	성북동 51 외	-	-				1			
짚라임	⑤-6	성북동 51 외	-	-			1	⑤-6	성북동 51 외	-	-				1			
버마브릿지	⑤-7	성북동 52 외	-	-			1	⑤-7	성북동 52 외	-	-				1			
숲속공방	⑤-8	성북동 52 외	-	-			1	⑤-8	성북동 52 외	-	-				1			
벽타기	⑤-9	성북동 신25-52	-	-			1	⑤-9	성북동 신25-52	-	-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층)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층)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 시설	소계			440.64	440.64							686.79	686.79					
	야생초화원	바-1	성북동 226-32	288.93	288.93					바-1	성북동 226-32	288.93	288.93					
		바-2	성북동 226-22	97.00	97.00					바-2	성북동 226-22	97.00	97.00					
	아외무대	바-3	성북동 226-32	54.71	54.71					바-3	성북동 226-32	54.71	54.71					
	초화원-1									바-4	성북동 226-33 외	59.75	59.75					
	초화원-2									바-5	성북동 226-69 외	130.41	130.41					
편의 시설	초화원-3									바-6	성북동 226-65	55.99	55.99					
	소계			105.00	105.00							105.00	105.00					
	약수터	사	성북동 산25-1	105	105					사	성북동 산25-1	105	105					
관리 시설	소계			588	588	2	310	310	9			588	588	2	310	310	20	
	안내관	④	전지역						8	④	전지역						9	
	주차장	아	성북동 67 외	197	197					아	성북동 67 외	197	197					
	관리사무소	차-1	성북동 75 외	288	288	1	172	172		차-1	성북동 75 외	288	288	1	172	172		
		차-2	성북동 61	103	103	1	138	138		차-2	성북동 61	103	103	1	138	138		
	안전헬스	⑧	성북동 226-32	-	-				1	⑧	성북동 226-32	-	-				1	
복지 시설	조영시설			-	-					⑨	전지역	-	-				9	
	CCTV			-	-					⑩	전지역	-	-				1	
	누 지 및 기 타			85,262.73								84,118.80						

라. 도로조서(성북지구)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계				3,505.9	9,401.10				
변경					3,674.1	9,684.82				
당초	중로	소계			310.0	3,720.00				
당초	중로	3	1	12.0	310.0	3,720.00	주간입로	지구계	지구계	도시계획 도로
당초	산책로	소계			3,195.9	5,681.10				
변경					3,364.1	5,964.82				
당초	산책로		1	2.0	78.0	156.00	진입로	지구계	광장8	
			2	2.0	63.0	126.00	연결로	산책로1	광장3	
			3	2.0	9.1	18.62	연결로	광장3	산책로4	
			4	1.5	56.3	84.48	연결로	광장3	광장2	
			5	2.0	33.2	85.74	산책로	산책로6	지구계	
			6	1.5	8.7	13.07	산책로	지구계	산책로5	
			7	2.0	2.4	4.78	산책로	산책로5	가-1	
			8	1.5	13.6	25.00	산책로	산책로9	나-12	
			9	2.4	115.9	282.83	산책로	지구계	광장5	
			10	1.5	177.3	275.08	산책로	산책로9	광장5	
			11	1.5	59.5	90.38	산책로	광장16	지구계	
			12	1.5	32.7	48.88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10	
			13	1.5	68.7	102.50	연결로	산책로11	지구계	
			14	1.5	14.2	21.36	산책로	광장2	산책로15	
			15	1.5	27.2	45.64	산책로	산책로10	산책로16	
			16	1.5	196.5	294.82	산책로	산책로10	광장2	
			17	1.5	34	51	연결로	지구계	산책로39	
			18	1.5	32	48	연결로	산책로39	산책로38	
			19	2.0	29	58	연결로	산책로25	배드민턴장2	
			20	1.5	56	84	진입로	중로 3-1	산책로37	
당초			21	5.0	80	400	연결로	지구계	중로 3-1	
변경				5.0	45.4	237.73	연결로	지구계	산책로45	
당초				22	2.0	19	진입로	중로 3-1	산책로24	
				23	3.0	178	연결로	산책로20	배드민턴장2	
				24	1.5	542	산책로	광장11	산책로27	
				25	1.5	374	산책로	산책로39	광장12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26	1.5	20	30.00	연결로	산책로25	산책로24	
			27	1.5	296	444.00	산책로	산책로24	약수터2	
			28	1.5	72	108.00	산책로	광장13	지구계	
			29	1.5	26	39.00	연결로	산책로25	배드민턴장2	
			30	2.0	45	90.00	연결로	산책로24	배드민턴장2	
			31	3.0	24	72.00	연결로	산책로24	산책로23	
			32	3.0	10	30.00	연결로	산책로24	산책로31	
			33	1.5	18	27.00	연결로	광장10	광장14	
			34	1.5	6	9.00	연결로	주차장	산책로33	
			35	1.5	4	6.00	연결로	주차장	광장10	
			36	1.5	6	9.00	연결로	배드민턴장1	산책로23	
			37	1.5	40	61.00	연결로	광장14	산책로20	
			38	1.5	54	81.00	연결로	광장7	산책로18	
			39	1.5	250.0	376.00	연결로	산책로18	자연체험장3	
			40	1.5	24.6	36.92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0	
신설			41	1.0	39.7	49.40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42	
			42	3.0	48.9	138.74	산책로	중로 3-1	지구계	
			43	2.0	93.2	187.59	산책로	광장4	산책로45	
			44	2.0	7.2	16.39	산책로	광장6	산책로45	
			45	2.0	13.8	53.87	산책로	중로 3-1	산책로21	

마. 시설구역총괄표(사업대상지) - (위치 : 성북구 성북동 226-109 일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772.00 (5,772.00)	246.27					3,772.00 (5,772.00)	1,390.20				25	(증1,143.93)
기반 시설	소 계		246.27	246.27					802.63	802.63					(증556.36)
	도 로(산책로)		162.27	162.27					445.99	445.99					(증283.72)
	광 장		84.00	84.00					356.64	356.64					(증272.64)
조경시설									144.64	144.64				2	(증144.64)
휴양시설									196.78	196.78				12	(증196.78)
운동시설									-	-					
교양시설									246.15	246.15					(증246.15)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11	
녹지			3,533.81						2,381.80						(감1,152.01)
기타			(2,000.00)						(2,000.00)						서울시 배수지 면적 제외부지
공 원 시 설 른 (법정 40% 이하)			(246.27㎡ / 3,772.00㎡) × 100% = 6.53%						(1,390.20㎡ / 3,772.00㎡) × 100% = 36.86%						
공 원 건 폐 율 (법정 10% 이내)			-						-						

바. 시설조서(사업대상지)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전				변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동)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동)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합	계			3,772.00	246.27				3,772.00	1,390.20				3,772.00	1,390.20	
	소계			246.27	246.27				802.63	802.63						25
기반 시설	도로		전지역	162.27	162.27				445.99	445.99						
	가-4		성북동	84.00	84.00				183.82	183.82						
									74.2	74.2						
									47.82	47.82						
									22.26	22.26						
									28.54	28.54						
조경 시설	소계								144.64	144.64						2
	잔디마당								98.13	98.13						
	조형산								16.48	16.48						
	화계								13.87	13.87						
	앉음벽								16.16	16.16						
	파고라-1								(47.0)	(47.0)						29.5㎡ (1기) 17.5㎡ (1기)
휴양 시설	소계								196.78	196.78						12
	데크원터-3								101.96	101.96						
	데크원터-4								42.47	42.47						
	전망데크								37.19	37.19						
	평상								15.16	15.16						
	의자								-	-						12
교양 시설	소계								246.15	246.15						
	초화원-1								59.75	59.75						
	초화원-2								130.41	130.41						
	초화원-3								55.99	55.99						
	소계								-	-						11
	안내판															1
관리 시설	조영시설															9
	CCTV															1
	소계								2,381.80	2,381.80						
	녹지								2,381.80	2,381.80						
	및															
	기타								(2,000.00)	(2,000.00)						서울시 배수지 면적 제외부지

사. 도로조서(사업대상지)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계				34.6	162.27					
변경					202.8	445.99					
당초	신설		21	5.0	34.6	162.27	연결로	지구계	중로 3-1		
변경					0	0					
		산책로		41	1.0	39.7	49.40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42	
				42	3.0	48.9	138.74	산책로	중로 3-1	지구계	
				43	2.0	93.2	187.59	산책로	광장4	산책로45	
				44	2.0	7.2	16.39	산책로	광장6	산책로45	
				45	2.0	13.8	53.87	산책로	중로 3-1	산책로21	

※ 산책로 21은 기점/종점을 변경하여 사업대상지 내 삭제됨

◆ 강서구공고 제2019-1085호

도시계획시설(염창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138호(“77.7.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112호(1990.5.1)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강서구 고시 제1999-34호(1999.8.2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8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염창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산24-18번지 등 5필지

다. 사업의규모 : 2,429㎡

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사.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12.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도첨부

자. 열람장소 :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3층 공원녹지과(☎02-2600-4255, 주무관 남준영)

차.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염창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공공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상 (㎡)	편입 (㎡)									
계	5필지		2,429	2,429									
1	강서구 염창동 산24-18	임야	262	262	-	주식회사 길음시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69(고잔동, 1층)		한국전력공사 [114671-0001456]	전라남도 나주시 전례로55(빛가람동 120)		구분지상권 (송전선로)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110111-0762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11층(서현동, 분당퍼스트타워)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110111-0672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상록수 지점)		근저당권	
2	강서구 염창동 산24-19	임야	218	218	-	주식회사 길음시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69(고잔동, 1층)		한국전력공사 [114671-0001456]	전라남도 나주시 전례로55(빛가람동 120)		구분지상권 (송전선로)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110111-0762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11층(서현동, 분당퍼스트타워)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110111-0672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상록수 지점)		근저당권	
3	강서구 염창동 산30-71	임야	59	59	-	염창동증미 산지역주택 조합 [1121-0207 5] 대표자 김용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3길 38 강서한솔파크(염창동중미산1지역 주택조합) 대표자 김용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앙천로5길 5-7(면목동)		-	-	-	-	
									-	-	-	-	
4	강서구 염창동 산30-72	임야	983	983	-	이승현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6 정동상림원 A동 701호		-	-	-	-	
5	강서구 염창동 산30-73	임야	907	907	-	이승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파트 15동 306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0136-0027690]	서울특별시 중구 홍정로1가 75(회현역지점)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0136-0027690]	서울특별시 중구 홍정로1가 75(회현역지점)		지상권 (수목)	

◆ 강서구공고 제2019-1100호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138호(1997.0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93호(2001.06.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7호(2013.04.0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강서구 화곡동 산 1번지 일대 봉제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강 서 구 청 장

1. 공원현황

-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봉제산근린공원
- 나.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산 1번지일대
- 다. 면 적 : 917,917.60㎡

2. 조성계획 결정(변경)

- 가. 주요 변경내용 : 봉제산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물놀이장 조성 등에 따른 공원시설 종류 및 면적 변경

나. 변경내역

- 기반시설 : 20,270.0㎡ → 19,922.0㎡ (감 348.0㎡)
- 유희시설 : 2,377.0㎡ → 4,011.0㎡ (증 1,634.0㎡)
- 운동시설 : 10,313.0㎡ → 10,313.0㎡ (-)
- 편의시설 : 1,723.0㎡ → 1,808.6㎡ (증 85.6㎡)
- 녹지및기타 : 841,362.60㎡ → 839,991.00㎡ (감 1,371.60㎡)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 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 02-2600-4255)

6.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봉제산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총괄표 (강서구 화곡동 산1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연 면 적				동수 (동)	바닥면적			연 면 적
계	917,917.60	76,555.00	7	721.00	1,725.00	379	917,917.60	77,926.60	12	1,618.40	2,683.15	413	
참고사항	시설율	76,555.00㎡ ÷ 917,917.60 ㎡ × 100 % = 8.34 % (4 0 %이하)					77,926.60㎡ ÷ 917,917.60 ㎡ × 100 % = 8.48 % (40%이하)						
	건폐율	721.00㎡ ÷ 917,917.60㎡ × 100 % = 0.08 % (20 %이하))					1,618.40㎡ ÷ 917,917.60 ㎡ × 100 % = 0.18 % (20%이하)						

가. 총괄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통)	바닥면적	연 면 적				동수 (통)	바닥면적	연 면 적		
계		917,917.60	76,555.00	7	721.00	1,725.00	379	917,917.60	77,926.60	12	1,618.40	2,683.15	413	시설면적 : 증 1,371.60㎡
기반 시설	소 계	20,270.0	20,270.0	-	-	-	9	19,922.00	19,922.00	-	-	-	9	시설면적 감) 348.0㎡
	도 로	19,225.00	19,225.00	-	-	-	-	18,877.00	18,877.00	-	-	-	-	시설면적 감) 348.0㎡
	광 장	1,045.00	1,045.00	-	-	-	9	1,045.00	1,045.00	-	-	-	9	
조경시설		11,548.00	11,548.00	-	-	-	46	11,548.00	11,548.00	-	-	-	46	
휴양시설		5,761.00	5,761.00	2	366.00	1,370.00	91	5,761.00	5,761.00	2	366.00	1,370.00	91	
유흥시설		2,377.00	2,377.00	-	-	-	78	4,011.00	4,011.00	-	-	-	96	시설면적 증) 1,634.0㎡
운동시설		10,313.00	10,313.00	-	-	-	109	10,313.00	10,313.00	1	811.8	872.55	125	
교양시설		24,363.00	24,363.00	-	-	-	46	24,363.00	24,363.00	-	-	-	46	
편익시설		1,723.00	1,723.00	3	155.00	155.00	-	1,808.60	1,808.60	7	240.6	240.6	-	시설면적 증) 85.6㎡
관리시설		200.0	200.0	2	200.0	200.0	-	200.0	200.0	2	200.0	200.0	-	
녹지.기타		841,362.60	-	-	-	-	-	839,991.00	-	-	-	-	-	감 1,371.60㎡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면적										면적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동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동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반 시설	총 계			917,917.60	76,555.00		7	721.00	1,725.00	379			917,917.60	77,926.6,		12	1,618.40	2,683.15	413			
	소 계			20,270.0	20,270.0					9			19,922.00	19,922.00					9			
	도로		전지역	19,225.00	19,225.00							전지역	18,877.00	18,877.00								
	광 장	가		1,045.00	1,045.00					9	가		1,045.00	1,045.00					9			
		가-1	화곡동 산41-6	(90.00)	(90.00)						가-1	화곡동 산41-6	(90.00)	(90.00)								
		가-3	화곡동 산25-9	(218.00)	(218.00)					3	가-3	화곡동 산25-9	(218.00)	(218.00)					3			
가-4		화곡동 산24-31	(222.00)	(222.00)					2	가-4	화곡동 산24-31	(222.00)	(222.00)					2				
조경 시설	가-5	화곡동 산22-21	(378.00)	(378.00)					1	가-5	화곡동 산22-21	(378.00)	(378.00)					1				
	가-6	화곡동 산5-3	(137.00)	(137.00)					3	가-6	화곡동 산5-3	(137.00)	(137.00)					3				
	소 계	나		11,548.00	11,548.00				46	나		11,548.00	11,548.00					46				
	잔디광장	나-1	화곡동 산47-16	(1,348.00)	(1,348.00)					8	나-1	화곡동 산47-16	(1,348.00)	(1,348.00)					8			
		나-2	화곡동 산47-16	(293.00)	(293.00)					1	나-2	화곡동 산47-16	(293.00)	(293.00)					1			
		나-3	화곡동 산22-20	(206.00)	(206.00)					7	나-3	화곡동 산22-20	(206.00)	(206.00)					7			
나-4		화곡동 42-114	(138.00)	(138.00)						나-4	화곡동 42-114	(138.00)	(138.00)									
조각공원	다	등촌동 산23-4	506.00	506.00					10	다	등촌동 산23-4	506.00	506.00					10				
미니수목원	라	화곡동 산22-1	416.00	416.00						라	화곡동 산22-1	416.00	416.00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구조	층수 (층)	바닥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층)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 시설	산마루공원 조경녹지	마	화곡동 산1	751.00	751.00					20	마	화곡동 산1	751.00	751.00						20	
		바		7,890.00	7,890.00					8	바		7,890.00	7,890.00						8	
		바-1	화곡동 산47-16	(7,788.00)	(7,788.00)					8	바-1	화곡동 산47-16	(7,788.00)	(7,788.00)						8	
		바-2	화곡동 산42-1	(102.00)	(102.00)						바-2	화곡동 산42-1	(102.00)	(102.00)							
휴양 시설	휴게소	소 계		5,761.00	5,761.00	R.C조	2	366.00	1,370.00	91			5,761.00	5,761.00	R.C조	2	366.00	1,370.00	91		
		사		4,731.00	4,731.00					87	사		4,731.00	4,731.00					87		
		사-1	화곡동 산22-4	(1,337.00)	(1,337.00)					24	사-1	화곡동 산22-4	(1,337.00)	(1,337.00)					24		
		사-2	화곡동 산5-3	(392.00)	(392.00)					8	사-2	화곡동 산5-3	(392.00)	(392.00)					8		
		사-3	화곡동 산21	(232.00)	(232.00)					4	사-3	화곡동 산21	(232.00)	(232.00)					4		
		사-4	등촌동 산24-2	(110.00)	(110.00)					3	사-4	등촌동 산24-2	(110.00)	(110.00)					3		
		사-5	화곡동 산47-16	(321.00)	(321.00)					2	사-5	화곡동 산47-16	(321.00)	(321.00)					2		
		사-6	화곡동 산42-1	(285.00)	(285.00)					1	사-6	화곡동 산42-1	(285.00)	(285.00)					1		
		사-7	등촌동 산87	(124.00)	(124.00)					17	사-7	등촌동 산87	(124.00)	(124.00)					17		
		사-8	화곡동 산5-5	(506.00)	(506.00)					12	사-8	화곡동 산5-5	(506.00)	(506.00)					12		
		사-9	화곡동 산5-5	(187.00)	(187.00)					3	사-9	화곡동 산5-5	(187.00)	(187.00)					3		
		사-10	화곡동 산5-3	(398.00)	(398.00)					3	사-10	화곡동 산5-3	(398.00)	(398.00)					3		
사-11	화곡동 산41-7	(638.00)	(638.00)					10	사-11	화곡동 산41-7	(638.00)	(638.00)					10				
사-12	화곡동 42-114	(201.00)	(201.00)						사-12	화곡동 42-114	(201.00)	(201.00)									

- 484 -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구조	층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농구장	카	1개소	519.00	519.00						카	1개소	519.00	519.00								
		카-1	화곡동 산47-16	(519.00)	(519.00)						카-1	화곡동 산47-16	(519.00)	(519.00)								
		타	화곡동 산47-16	509.00	509.00						타	화곡동 산47-16	509.00	509.00								
	다목적운동장	파-1	화곡동 산47-16	792.00	792.00					3	파-1	화곡동 산47-16	792.00	792.00						3		
		하	4개소	1,973.0	1,973.0					64	하	4개소	1,973.0	1,973.0						67		
		하-1	화곡동 42-114	(1,360.00)	(1,360.00)					44	하-1	화곡동 42-114	(1,360.00)	(1,360.00)						44		
	체력단련장	하-2	화곡동 산204	(397.00)	(397.00)					6	하-2	화곡동 산204	(397.00)	(397.00)						6		
		하-3	화곡동 산48-2	(106.00)	(106.00)					5	하-3	화곡동 산48-2	(106.00)	(106.00)						5		
		하-4	화곡동 산42-1	(64.00)	(64.00)					9	하-4	화곡동 산42-1	(64.00)	(64.00)						9		
		하-5	화곡동 산47-16	(46.00)	(46.00)					3	하-5	화곡동 산47-16	(46.00)	(46.00)						3		
교양시설	소계			24,363.00	24,363.00					46			24,363.00	24,363.00						46		
		거	1개소	23,171.00	23,171.00					26	거	1개소	23,171.00	23,171.00						26		
	조경녹지	거-1	화곡동 산42-6 외	(19,792.00)	(19,792.00)					14	거-1	화곡동 산42-6외	(19,792.00)	(19,792.00)						14		
		광장	화곡동 산43-20	(1,576.00)	(1,576.00)						거-2	화곡동 산43-20	(1,576.00)	(1,576.00)								
	자녀 체험 학습 원	파고라	화곡동 산42-6	(42.00)	(42.00)					1	거-3	화곡동 산42-6	(42.00)	(42.00)						1		
		육각정자	화곡동 산42-6	(25.00)	(25.00)					1	거-4	화곡동 산42-6	(25.00)	(25.00)						1		
	어린이놀이터	거-5	화곡동 산41-6	(731.00)	(731.00)					1	거-5	화곡동 산41-6	(731.00)	(731.00)						1		
		감성놀이마당	화곡동 산43-20	(163.00)	(163.00)					5	거-6	화곡동 산43-20	(163.00)	(163.00)						5		
	다목적운동장	거-7	화곡동 산42-6	(842.00)	(842.00)					4	거-7	화곡동 산42-6	(842.00)	(842.00)						4		
		농수대	화곡동 산42-1	1,192.00	1,192.00					20	너	화곡동 산42-1	1,192.00	1,192.00						2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구조	층수 (층)	바닥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층)	
편익시설	소계			1,723.0	1,723.0	3	155.00	155.00				1,808.6	1,808.6	7	240.6	240.6		증) 85.6㎡
	주차장	더	4개소	1143.00	1143.00					더	4개소	1143.00	1143.00					
		더-1	화곡동 산47-16	(593.0)	(593.0)	아스콘				더-1	화곡동 산47-16	(593.0)	(593.0)	아스콘				
		더-2	화곡동 산42-1	(346.00)	(346.00)	투수블럭				더-2	화곡동 산42-1	(346.00)	(346.00)	투수블 럭				
		더-3	화곡동 산42-1	(204.00)	(204.00)	투수블럭				더-3	화곡동 산42-1	(204.00)	(204.00)	투수블 럭				
	약수터	러	2개소	150.00	150.00					러	2개소	150.00	150.00					
		러-1	화곡동 산1	(50.00)	(50.00)					러-1	화곡동 산1	(50.00)	(50.00)					
		러-2	화곡동 산1	(100.00)	(100.00)					러-2	화곡동 산1	(100.00)	(100.00)					
		③	화곡동 산47-16	310.00	310.00	R.C조	1	35.00	35.00	③	화곡동 산47-16	310.00	310.00	R.C조	1	35.00	35.00	
	화장실	④-1	화곡동 산22-83	60.00	60.00	R.C조	1	60.00	60.00	④-1	화곡동 산22-83	60.00	60.00	R.C조	1	60.00	60.00	
		④-2	화곡동 산22-80 임	60.00	60.00	R.C조	1	60.00	60.00	④-2	화곡동 산22-80임	60.00	60.00	R.C조	1	60.00	60.00	
										④-3	화곡동 산22-31임	19.80	19.80	경량 철골조	1	19.80	19.80	증) 19.8㎡
										④-4	화곡동 산5-5임	25.00	25.00	경량 철골조	1	25.00	25.00	증) 25.0㎡
										④-5	등촌동 산23-4	19.80	19.80	경량 철골조	1	19.80	19.80	증) 19.8㎡
									④-6	화곡동 42-134	21.00	21.00	경량 철골조	1	21.00	21.00	증) 21.0㎡	
관리시설	소계			200.0	200.0	2	200.0	200.0			200.0	200.0	2	200.0	200.0			
	관리사무소	⑤	화곡동 산43-1	140.00	140.00	R.C조	1	140.00	140.00	⑤	화곡동 산43-1	140.00	140.00	R.C조	1	140.00	140.00	
		⑥	화곡동 산47-16	60.0	60.0	R.C조	1	60.0	60.0	⑥	화곡동 산47-16	60.0	60.0	R.C조	1	60.0	60.0	
복지 및 기타	복지		시설 지역외	841,362.6						시설 지역외	839,991.00						복지면적 감) 1,37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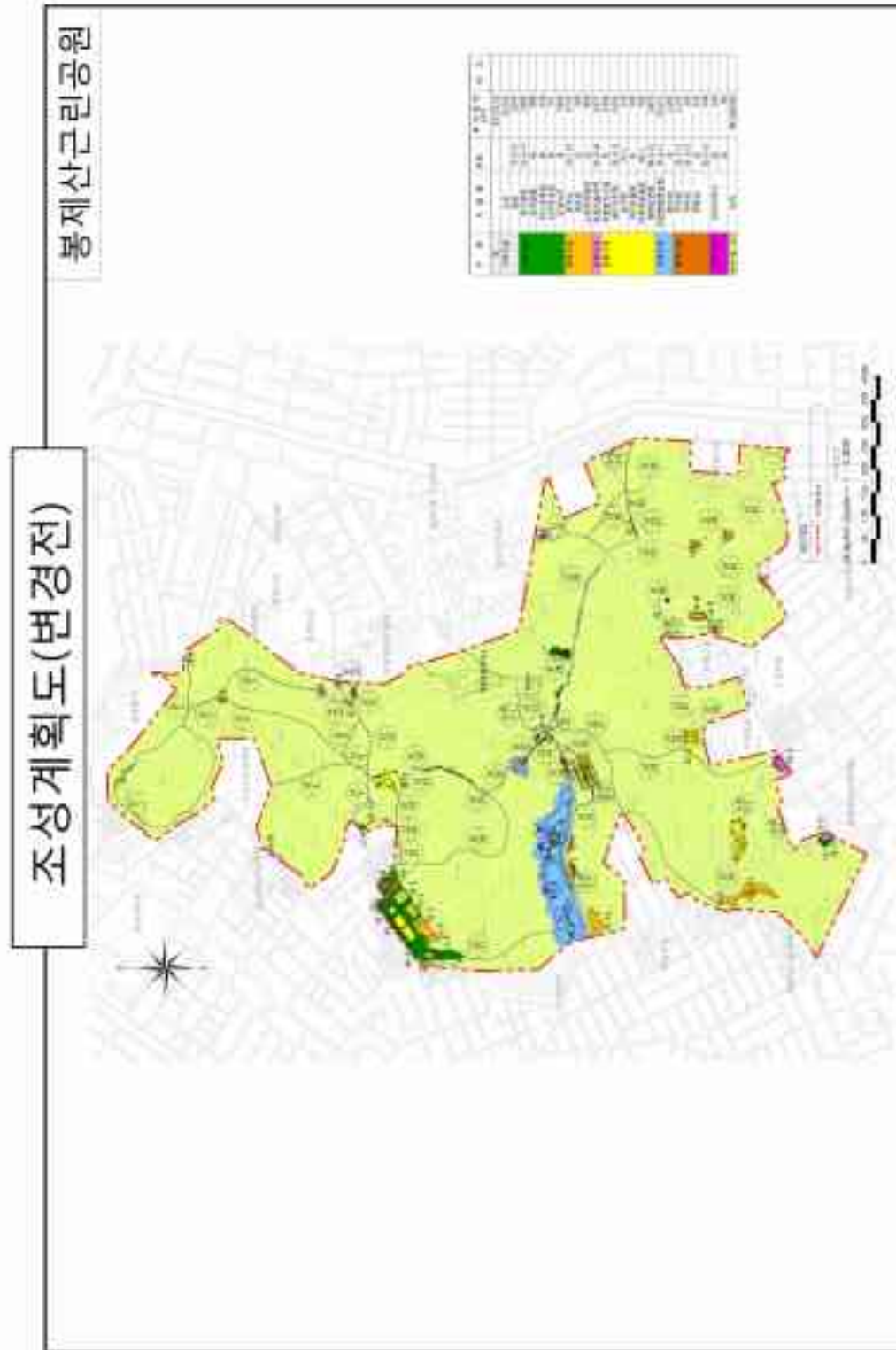
다.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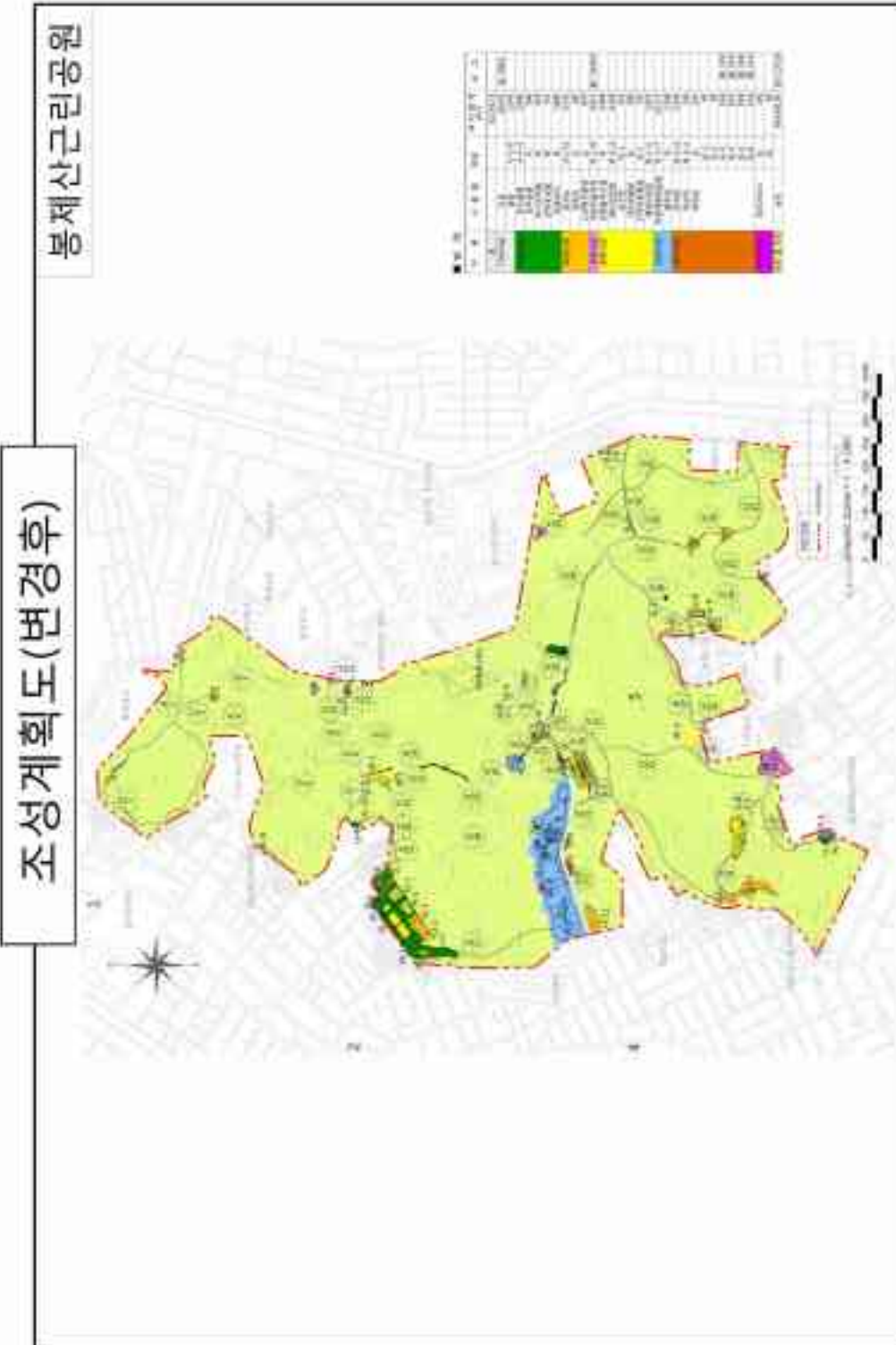
구 분	등 급	류 별	번호	폭원 (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9,634.00	19,225.00				
변경					9,439.00	18,877.00				
당초		소 계			1,379.00	4,581.00				
변경					1,294.00	4,398.00				
당초	소로	3	1	3	325.00	975.00	진입도로	국립동물검역소	휴게소 7-6	
당초		3	2	6	370.00	2,220.00	진입도로	노인복지회관	배드민턴장 10-2	
당초		3	3	3	36.00	108.00	진입도로	화곡 산42-3임	배드민턴장 10-2	
당초		3	4	1.5	64.00	96.00	진입도로	화곡 680도	배수지	
당초		3	5	3	204.00	612.00	진입도로	어린이놀이터 8-4	모험놀이시설 9-2	
변경		3	5	3	167.00	501.00	진입도로	어린이놀이터 아-2	모험놀이시설 자	
당초		3	6	1.5	222.00	333.00	진입도로	광장 1-4	화곡 산22-16임	
변경		3	6	1.5	174.00	261.00	진입도로	소로 3-5	잔디광장 나-3	
당초		3	7	1.5	70.00	105.00	진입도로	장수공원입구	약수터	
당초		3	8	1.5	88.00	132.00	진입도로	등촌 산86-3임	등촌 산86임	
당초	소 계				8,255.00	14,644.00				
변경					8,145.00	14,479.00				
당초	산책로	3	1	1.5	680.00	1,020.00	산책로	화곡 산210임		
당초		3	2	1.5	148.00	222.00	부진입 도로	광장 1-1	화곡 산204임	
당초		3	3	1.5	72.00	108.00	등산로	화곡 산204임	모험놀이시설 9-1	
당초		3	4	1.5	166.00	429.00	등산로	모험놀이시설 9-1	체력단련장 14-1	
당초		3	5	1.5	310.00	465.00	산책로	모험놀이시설 9-1	휴게소 7-2	
당초		3	6	1.5	182.00	273.00	등산로	그리스도신학대	화곡 산24-2임	

구 분	등 급	류 별	번호	폭원 (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3	7	2.5	114.00	285.00	부진입 도로	화곡 42-114	체력단련장 14-1	
당초		3	8	2.0	75.00	150.00	등산로	광장 1-2	체력단련장 14-1	
당초		3	9	1.5	86.00	129.00	등산로	등촌 산24-2임	등촌 산24-2임	
당초		3	10	1.5	220.00	330.00	부진입 도로	휴게소 7-2	체력단련장 14-1	
당초		3	11	1.5	20.00	30.00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8-2	휴게소 7-2	
당초		3	12	1.5	24.00	36.00	부진입 도로	광장 1-2	어린이놀이터 8-2	
당초		3	13	1.5	404.00	606.00	산책로	등촌 산24-2임	연화사	
당초		3	14	1.5	90.00	135.00	부진입 도로	화곡 42-114대	체력단련장 14-2	
당초		3	15	2.0	11.00	22.00	등산로	체력단련장 14-2	화곡 42-125대	
당초		3	16	3.0	62.00	186.00	등산로	체력단련장 14-1	조각공원	
당초		3	17	2.0	223.00	446.00	산책로	잔디광장 2-2	자연학습원 15-1	
당초		3	18	1.5	408.00	612.00	등산로	배드민턴장 10-1	화곡 42-1임	
당초		3	19	3.0	38.00	114.00	등산로	화곡 산 42-1임	조각공원	
당초		3	20	3.0	76.00	228.00	등산로	화곡 산 42-1임	봉수대	
당초		3	21	3.0	96.00	288.00	산책로	연화사	미니수목원	
당초		3	22	3.0	564.00	1,692.00	등산로	봉수대	화곡 산5-1임	
당초		3	23	1.0	30.00	30.00	등산로	휴게소 7-6	체력단련장 14-3	
당초		3	24	2.5	92.00	230.00	등산로	화곡배수지	체력단련장 14-3	
당초		3	25	3.0	31.00	93.00	등산로	화곡 산22-1임	체력단련장 14-3	
당초		3	26	2.5	52.00	130.00	산책로	배드민턴장 10-2	화곡 산42-1임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3	27	1.5	596.00	894.00	산책로	휴게소 7-7	화곡 산42-1임	
당초		3	28	3.0	80.00	240.00	산책로	산마루공원	산마루공원	
당초		3	29	1.5	224.00	336.00	부진입 도로	등촌 산15-3임	등촌 산86임	
당초		3	30	1.5	178.00	267.00	부진입 도로	어린이놀이터 8-3	화곡 산5-1임	
당초		3	31	1.5	90.00	135.00	산책로	화곡 산42-3임	화곡 산22-13임	
당초		3	32	1.5	456.00	684.00	등산로	어린이놀이터 8-4	화곡 산22-2임	
변경		3	32	1.5	346.00	519.00	등산로	어린이놀이터 아-9	화곡 산22-2임	
당초		3	33	1.5	34.00	51.00	산책로	휴게소 7-7	화곡 산22-4임	
당초		3	34	1.5	112.00	168.00	산책로	휴게소 7-7	모험놀이시설 9-2	
당초		3	35	1.5	26.00	39.00	산책로	화곡 산22-2임	배드민턴장 10-3	
당초		3	36	1.5	134.00	201.00	부진입 도로	화곡 산22-24임	배드민턴장 10-3	
당초		3	37	1.5	292.00	438.00	산책로	배드민턴장 10-3	화곡 산1임	
당초		3	38	1.5	136.00	204.00	등산로	휴게소 7-10	화곡 산5-1임	
당초		3	39	1.5	88.00	132.00	산책로	등촌 산86임	등촌 산87임	
당초		3	40	1.5	214.00	321.00	등산로	등촌 산87임	휴게소 7-8	
당초		3	41	1.5	130.00	195.00	등산로	휴게소 7-8	휴게소 7-11	
당초		3	42	1.5	66.00	99.00	등산로	휴게소 7-8	화곡 산5-2임	
당초		3	43	1.5	312.00	468.00	부진입 도로	등촌 산87임	등촌 산89-5임	
당초		3	44	1.5	146.00	219.00	부진입 도로	광장 1-5	휴게소 7-10	
당초	산책로	3	45	1.5	168.00	252.00	부진입 도로	광장 1-5	휴게소 7-12	
당초		3	46	1.5	58.00	87.00	등산로	휴게소 7-11	휴게소 7-12	
당초		3	47	1.5	244.00	366.00	부진입 도로	등촌 산89-5임	휴게소 7-12	
당초		3	48	2.0	29.0	114.0	산책로	화곡 산47-16	화곡 산47-16	

[illegible]





◆ 송파구공고 제2019-110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25호(1974.12.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26호(1992.5.1.)에 의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54호(2006.2.16.)에 의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삼전근린공원(삼전동 62-1번지)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8일

송 파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19. 7. 18. ~ 8. 1.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2991), 주차관리과(☎02-2147-3195)

다. 열람내용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원	근린 공원	송파구 삼전동 62-1 번지	6,607.6	-	6,607.6	74.12.6. (건설부 고시 제125호)	• 면적변경없음 • 주차장과 중복결정 : 4,515.3㎡
신설	주차장	노외 주차장	송파구 삼전동 62-1 번지	-	증)4,515.3	4,515.3	-	• 주차장 지하1층~지하3층 • 삼전근린공원과 중복결정 : 4,515.3㎡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 위치 : 삼전동 62-1번지 • 면적 : 4,515.3㎡ • 주차장 : 지하1층~지하3층 • 삼전근린공원과 중복결정	• 삼전동 주택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 편의 제공 • 불법 주정차 차량 흡수를 통한 이면도로 통행권 및 소방도로 확보 • 공원 이용객의 주차 수요 대응

라. 관련도서 : 생략(송파구청 도시계획과 및 주차관리과 비치 도서와 같음). 끝.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시크릿 (대표:황태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2번지(한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2번지(한강)	유선장 직접점용 1,795.5㎡ 간접점용 3,502.5㎡	유선사업	2019. 1. 1 ~ 2019. 6. 30	2019. 7. 9.
			선박 2척 (유선1, 구조선1)			
			장애인 진·출입로 152㎡			
			상·하수도 관로 21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아리랑하우스 (대표:홍정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9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96(한강)	유선장 1,321㎡ 임시승선대 150㎡	유선사업	2019. 7. 1. ~ 2019. 12. 31.	2019. 7. 1.
			유선사업 선박 51척 (동력3, 무동력48)			
			상·하수도 관로 34.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로잉코리아 (대표:김태석)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5길 9(풍납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26-1	동력선 2척, 조정5대	수상레저사업	2019.7.1. ~ 2019.12.31.	2019. 7.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허가 받은 자

- 성 명 : (주)이랜드크루즈(대표:최경민)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 점용허가(사용) 개요

- 점용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외 5개소 (한강)
- 점용면적 : 유선장 및 유선사업용 선박

- 유선장 7개소(8,674m²)
 - 잠실유선장(1,514.96m², 송파구 잠실동 1-2), 여의도유선장(2개소)(3,515.96m²,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양화유선장(1,852.33m², 영등포구 양화동 47-1), 선유도유선장(292.90m², 영등포구 양화동 95), 잠두봉유선장(797.55m², 마포구 합정동 465-7), 상암유선장(700.53m², 마포구 상암동 481)
- 선박 7척(유람선6, 청소방재선1)
 - 유람선 : 브리타니아호(277톤), 씨티호(247톤), 트리타니아호(430톤), 에비타니아호(299톤), 우바호(135톤), 아라리호(59톤)
 - 청소방재선 : 블랙홀호(20톤)
- 점용목적 : 유선사업
- 점용기간 : 2019. 7. 1. ~ 2019. 12. 31.
- 허가연월일 : 2019. 7. 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레저스포츠 (대표:김진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2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47	동력선 4척, 무동력 21대,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4대	수상레저사업	2019.7.1. ~ 2019.11.30.	2019. 7.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7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레저스포츠 (대표:김진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2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동력선 5척,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7대	수상레저사업	2019.7.1. ~ 2019.11.30.	2019. 7.1.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9-17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사전통지분)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9.7.18. ~ 7.31.(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9.8.1. ~ 2019.8.14.(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정불치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예정금액 (원)	자진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소재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16	최*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08 19:40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번길 ***-*	남세자소재주소 (상대원동)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17	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08 19:40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번길 **	(상대원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18	이*영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착용시키지 아니하 는 행위	2019-06-16 18:15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길	(서빙고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20	김*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11 21:00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동 ****호 (방화동,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21	장*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13 22:27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동****호 (방화동, 방화*단지도시 개발아파트)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25	유*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5-29 19:05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길 *-**	(은평동, *층)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26	장*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1 11:07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	***호 (관양동, 평촌라즈)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30	이*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4 12:51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길 *	*층 (성수동*가)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32	김*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4 15:55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행도로 ***	***호 (길동, 도고하임)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34	김*화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05 13:25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봉로**가 길 **	*층***호 (수유동, 진산벨라)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36	(주)창*개발(하 대표 한*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07 14:01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	(백석동)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43	이 *HAO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8 11:41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길 **-**	***호 (종암동)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45	이*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8 15:09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길 **	***호 (구의동, 명성이파트)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60	장*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9 11:00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	***호 (지양동)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61	유*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9 11:10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	***동***호 (행당동, 삼부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홍자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예정금액 (원)	자진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지상세주소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67	조*섭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1 15:54	50,000	40,000	기타	서울 중랑구 용마신로 ***	*동 ****호 (면복동, 도시개발공사면 목아파트)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68	장*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1 16:00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세로**길 **	(면복동)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70	주*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3 15:50	50,000	40,000	기타	충청남도 서산시 갯고개길 **	***동***호 (갈산동, 세창리배하우스)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74	유*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5 16:22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나길 **	류한빌딩 *층 (자양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75	백*엽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5 16:23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길 **	***호 (자양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78	이*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16 14:22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로***번 길 **	***호 (임박동, 신세기빌)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80	양*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6 14:50	50,000	40,000	폐문부재	강원도 강릉시 물곡로 ****-**	(노암동)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83	조*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1 18:30	50,000	40,000	폐문부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만 화로**번길 ***-*	***호 (강정동, 9아이스타워)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88	한*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16 16:45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번길 ***	***호 (마평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90	도*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16 16:43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화대로** 길 ***	(장안동)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93	전*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04 18:16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길 ***-*	*층가로 (동방고동)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94	김*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04 18:21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 서초구 청두곳**길 **	*층 (반배동)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198	김*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8 19:35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길 ***	***동***호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00	이*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8 20:20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진구 보광로**길 ***-**	지층 (보광동)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04	정*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19 21:09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학대로**길 **	***동 ****호 (범학동, 방화*단지도 시개별아파트)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05	황*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5-28 14:44	50,000	40,000	수하인불량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길 ***	(노량진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종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예정금액 (원)	자진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지상세주소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07	김*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5-29 23:47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평대로**길 **-*	지층***호 (염창동, 지층)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08	백*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11 14:32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번길 **	***호 (소사본동, 현대부리온아파트)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09	염*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2 19:31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마로 *	***동***호 (도림동, 도림아파트)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11	송*경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6 19:33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가 길 **~*	(한남동)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12	최*민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6 19:33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길 **	***호 (역삼동)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13	신*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5-21 17:25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갈매길 ***-*	***호 ()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16	양*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6 14:50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길 **-***	(증산동)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17	양*영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6 14:50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길 **	(대흥동)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20	이*훈	동반한 애견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 는 행위	2019-05-20 18:21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림드림*길 **	B**호 (송남동)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21	김*복	동반한 애견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 는 행위	2019-05-28 18:32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장로 **-***	***호 (천호동)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22	백*훈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5-20 17:55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	***호 (만월동, 우성르브아파트)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25	최*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5-12 18:01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길 **	B동***호 (염리동)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30	김*엽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0 21:01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문로**길 ***	(한남동)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35	김*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15 14:50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말로 ****~*	(관양동)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38	강*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13 06:45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길 x~**	***동***호 (목동)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40	장*숙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5 14:05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길 **	지층 ***호 (용문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종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예정금액 (원)	자진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지상세주소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43	정* 정* 정*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 는 행위	2019-06-15 14:20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길 ***	(이태원동)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6	001244	차*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16 15:40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번길 *	***호 (원동)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7	001262	이*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22 21:52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번길 *	(하대원동)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7	001265	오*영, 안*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22 21:58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	*동 ***호 (청천동, 무지개아파트)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7	001266	(주)비*스아 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22 21:55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반영로 **	***호 (자양동, 제이원하이텔)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7	001268	김*수, 김*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22 21:56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번 길 *	***호 (심정동, 경원빌딩)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7	001271	이*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22 21:52	50,000	40,000	기타	서울 중랑구 면목로**나길 *	(면목동)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7	001272	정*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22 21:46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호 (신림동)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9-17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9.7.18. ~ 2019.7.31.(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9.8.1. ~ 2019.8.14.(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승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제년월	과제번호	과제대상	부과금액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분주소	납세지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0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장*남	수취인불명	대구광역시 동구 방천로*길 ***	(별ოდ동)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3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남, 이*홍	이사불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	(토당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09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유*오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	(동와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3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길 **	(북아현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3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윤*원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촌로**길 ***	(용산동*가)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02	애완견 풀 미착용	50,000	홍*수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북평구 백범로***번길 *-*	***호 (심정동, 호진다온채)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03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박*원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길 ***	(목동)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08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김*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길 ***	(신길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26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재	기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	****호 (가산동, 가산양우내안 에애틀)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11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김*진	수취인불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번길 **	*층동 (가경동)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15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국*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길 ***	***호 (홍은동, 석산별라)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10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길 **	****호 (병학동, 북한선현대백 시몬오피스텔)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12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장*수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앙천로 **	*동 ***호 (면목동, 면목한신 아파트)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13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재	기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	****호 (가산동)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18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유*오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	(동와동)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16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근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길 ***	(신길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21	이륜이상 동력장치 출입	50,000	정*문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길 **	*호 (신수동, 지흥)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67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양*진	수취인불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명길 ***	(신명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65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재	기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	****호 (가산동, 가산양우내안 에애틀)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제대상	부과금액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지상세주소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68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유*오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	(동여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70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국*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길 ***-**-**	***호 (홍은동, 석산빌라)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31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양*석	수취인불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	(신평동)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28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국*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길 ***-**-**	***호 (홍은동, 석산빌라)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2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남*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행도로**길 **	B***호 (천호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93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유*오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	(동여동)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9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서*현	기타	경기도 시흥시 배곧*로 ***-**-**	***동***호 (정왕동, 한라비 발더원퍼스*자)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0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황*익, 황*동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길 *	***호 (면목동, 진영리더스)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14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 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해	폐문부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 ** 린더원	***동 ***호 (신방동, 초원그 린타운)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16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이현로**길 **	(북이현동)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21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이현로**길 **	(북이현동)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1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웅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	*동 ***호 (답십리동, 동답한 신아파트)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5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원구 덕릉로 ***	***동 ***호 (중계동, 신인아 파트)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5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	폐문부재	강원도 횡령군 근면면 수패령로 ****	***동 ***호 (근남면, 누리채 군인아파트)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5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혁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 *	(신림동)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85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국*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길 ***-**-**	***호 (홍은동, 석산빌라)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91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김*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	***호 (가양동, 기양오피스텔)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46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오*로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논현동)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4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백*진, 백*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길 ***-**-**	B동 ***호 (응암동, 초원빌라지)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제대상	부과금액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지상세주소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27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근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길 ***호 (신길동)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66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주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호 (신길동)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32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김*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길 ***호 (신길동)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13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배*호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길 ***호 (반이동)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73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길 **호 (영학동, 북한산자연대백 시온오피스텔)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15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정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길 ***호 (망원동)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1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장*규	기타	경기도 시흥시 하정로***번길 **호 (하정동)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2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장*철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호 (독수동, 옥수성 성아파트)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2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문*상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지동구 숲속마을*로 ***호 (풍동, 숲속마을* 단지아파트)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2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호 (고덕동)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84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길 **호 (영학동, 북한산자연대백 시온오피스텔)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2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송*권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길 ***호 (천호동)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2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정, 권*성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외방로**번길 ***호 (수동면)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88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김*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길 ***호 (신길동)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3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변*남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호 (구의동)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90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재	기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호 (가산동, 가산양양내안 에어빌)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837	행사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조*은	기타	경기도 오산시 수정로 ***호 (금암동, 죽미마 를 휴먼시아아파트)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1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한*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길 **호 (봉천동, 관악루 르지오피스텔)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9-07	00071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 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박*정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길 ***호 (성내동)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9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42-1번지 등 8필지
 - 면 적 : 2,250㎡(영구 405㎡, 일시 1,84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공원 나들목 설치
 - 내 역 : 보행자전용 연결통로 1개소(압입추진 방식)
육갑문 1개소,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각 1개소 등
5. 점용기간 : (당초) 2014.07.16.~2019.07.15.
(변경) 2019.07.16.~2024.07.1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9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식회사 케이티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7-379등 59필지
 - 면 적: 2,490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통신전주 설치 및 광케이블 매설
 - 내 역: 통신전주 설치 16개소(H=3m 2개소, H=6m 1개소, H=7m 1개소, H=15m 1개소, H=20m 7개소, H=25m 4개소)
관로 L=4,410m, 맨홀 31개소
5. 점용기간: (당초) 2013.05.16.~2018.05.15.
(변경) 2018.05.16.~2023.05.1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98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진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485-7번지 등 6필지
 - 면 적 : 3,277.32m²(일시 1,399.77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물놀이장 설치
- 내 역 : 물놀이 시설물(30개소)
과라솔(6개) 및 평의자(12개), 동물의자(9개)
기계실 및 외함도, 유량계실
우수관(D600 L=29.8m), U형측구(D300mm L=529m), 상수관(D50 L=217.7m)

5. 공사기간 : (당초) 2018.06.01.~2019.06.30.

(변경) 2018.06.01.~2019.07.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99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312-1
- 면 적 : 일시점용 4,5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보수공사
- 내 역 : 열수송관 보수를 위한 굴착공사(H=3.0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9.07.11.~2019.11.10.(점용기간, 공사기간 동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20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298번지 외 4필지
 - 면 적 : 일시점용 1,6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보수공사
 - 내 역 : 열수송관 보수를 위한 굴착공사(H=2.6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9.07.11.~2019.09.10.(점용기간, 공사기간 동일)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